

중소기업을 건강하게
소상공인을 따뜻하게



행정간행물발간등록번호

11-1420000-000330-10

2013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지원기관

중소기업청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장

중소기업진흥공단

1-1 정책자금 지원 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9
1-1-① 창업기업지원자금	17
1-1-② 개발기술사업화자금	20
1-1-③ 신성장기반자금	22
1-1-④ 긴급경영안정자금	24
1-1-⑤ 사업전환자금	27
1-1-⑥ 투융자복합금융자금	29
1-1-⑦ 긴급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32
1-1-⑧ 소상공인지원자금	33
1-2 건강(기업)진단사업	60
1-3 무역조정지원사업	62
1-4 FTA활용지원사업	65
1-5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66
1-6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69
1-7 온라인 수출지원 사업(Gobizkorea)	72
1-8 글로벌바이어 국내소싱 지원사업	74
1-9 중기제품 HIT500 * 중소기업 거래지원	76
1-10 글로벌협력지원	78
1-11 남북협력지원	81
1-12 외국전문인력 도입지원	84
1-13 중소기업 그린비즈 컨설팅	87
1-14 해외녹색규제 협력대응	89
1-15 중소기업 TRIZ 보급확산 사업	91
1-16 연수사업	93
1-17 청년창업사관학교	96

2장

중소기업중앙회

2-1 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화 지원	99
2-2 무역피해구제 지원센터 운영	101

2-3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	104
2-4 중소기업의 PL(제조물책임) 지원	106
2-5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사업자금 지원	108
2-6 코업비즈(Coupbiz)	112
2-7 업종공통 기술개발사업	114
2-8 중소기업 공제사업자금 지원	117
2-9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노란우산공제).....	121
2-10 외국인력지원	124
2-11 해외동포(H-2) 고용지원	127
2-12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	129
2-13 중장년 일자리 희망 사업	132
2-14 중장년 재취업 지원사업	134
2-15 산업기능요원 활용 지원	136
2-16 북한이탈주민취업지원사업	138
2-17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지원제도	141
2-18 사업조정제도	143
2-19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	146
2-20 중소기업 문화경영지원	148
2-21 중소기업 보증공제제도 운영	150

3장 신용보증기금

3-1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	154
3-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평가	156
3-3 전자상거래 보증	158
3-4 유동화회사보증	160
3-5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SOC보증)	163
3-6 중소기업 신용보험지원	165

4장 기술보증기금

4-1 2013년 보증지원계획(총괄)	171
4-2 기술보증	172
4-3 창업기업 우대지원 제도	175
4-4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보증제도	178
4-5 전자상거래보증	181
4-6 유동화회사보증	182

4-7 R&D평가 특례보증	186
4-8 특허기술가치평가 연계보증	189
4-9 문화산업완성보증	192
4-10 기술평가	195
4-11 벤처확인평가	198
4-12 이노비즈 인증평가	201
4-13 기술이전 및 M&A	204
4-14 녹색인증평가	206
4-15 보증연계투자	221
4-16 경영개선지원제도	224

5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5-1 소기업 · 소상공인 등 신용보증지원	227
5-2 청년창업 특례보증	229
5-3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230
5-4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232
5-5 나들가게 특례보증	233
5-6 희망드림론	235
5-7 일자리창출 및 성장산업 특례보증	236
5-8 햇살론 신용보증	238

6장

기업은행

6-1 2013년 중소기업 대출 지원현황	248
6-2 창업기업 대출	250
6-3 혁신형 기업대출	251
6-4 구매기업 추천서(발주서)에 의한 대출지원	252
6-5 여음할인 지원	253
6-6 기업구매자금대출	255
6-7 기업구매카드대출	256
6-8 시설투자대출	257
6-9 IBK-K · sure(한국무역보험공사) 협약보증	258

7장 한국산업은행

7-1 기업금융 종합서비스 지원	262
-------------------	-----

8장 한국수출입은행

8-1 2013년 수출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지원제도	290
8-2 글로벌 PaSS 상생협력 프로그램 ①	291
8-3 글로벌 PaSS 상생협력 프로그램 ②	293
8-4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295
8-5 수출금융① - 포괄수출금융	297
8-6 수출금융② - 특례신용대출	299
8-7 수출금융③ - 시설확장·증설용 수출자금 대출	301
8-8 수출금융④ - 단기수출자금 대출	303
8-9 수출금융⑤ - 기술개발용 수출자금	305
8-10 수출금융⑥ - 해외시장개척자금	307
8-11 해외투자금융	309
8-12 수입금융	311
8-13 무역금융	313
8-14 이행성보증	315
8-15 환위험관리 금융·비금융서비스	316

9장 한국무역보험공사

9-1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320
9-2 수출신용보증(선적전)	322
9-3 수출신용보증(선적후)	324
9-4 단기수출보험	325
9-5 중소기업Plus+보험	328
9-6 환변동보험	329
9-7 부품·소재 신뢰성보험	332
9-8 수입보험(수입자용, 금융기관용)	333
9-9 해외채권 추심업무 대행	335

10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1	해외지사화 사업	337
10-2	해외공동 물류서비스	340
10-3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343
10-4	해외 비즈니스 출장지원 서비스	346
10-5	무역사절단 파견	349
10-6	해외전시회	352
10-7	지역별 시장정보, 투자정보 서비스	354
10-8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356
10-9	KOTRA 글로벌연수원 연수 프로그램	359
10-10	온라인 화상 상담회	364
10-11	B2B e-마켓플레이스 "buyKOREA.org"	366

11장 한국무역협회

11-1	무역서비스할인클럽	369
11-2	무역전문컨설팅 서비스	371
11-3	해외지사(사무소) 설치 인증 추천	373
11-4	APEC 기업인 여행자카드(ABTC) 발급	375
11-5	무역분야 외국인 사증(VISA) 발급 추천	378
11-6	수출중소기업 외국어지원컨설팅 서비스	380
11-7	Trade SoS 현장컨설팅 서비스	382
11-8	트레이드 벤처플라자(Trade Venture Plaza) 운영	383
11-9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384
11-10	무역기금 융자	386
11-11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388
11-12	해외 한국상품 전시상담회 개최	390
11-13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서비스	392
11-14	특허청 공동 해외 출원비용 지원	394
11-15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개최	396
11-16	수출입 화주기업 물류개선 컨설팅 지원	398

12장 중소기업유통센터

12-1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	401
12-2	중소기업 구매상담회 지원	404
12-3	중소기업 공동 A/S센터	407
12-4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	410
12-5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	413

13장 대·중·소기업협력재단

13-1	구매협력네트워크 구축	417
13-2	수·위탁 분쟁조정	419
13-3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영사업	422
13-4	원가절감형 대·중소기업 공동사업	424

14장 대한상공회의소(싱글PPM품질혁신추진본부)

14-1	뿌리기업 품질혁신 지원	427
------	--------------	-----

부 록 중소기업청 및 지원기관 연락처

· 중소기업청	431
· 중소기업 옴부즈만	432
· 지방중소기업청	432
·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435
· 중소기업진흥공단	436
· 중소기업중앙회	438
· 지역신용보증재단	439

01

중소기업진흥공단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1-1 정책자금 지원 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 9
 - 1-1-① 창업기업지원자금 · 17
 - 1-1-②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20
 - 1-1-③ 신성장기반자금 · 22
 - 1-1-④ 긴급경영안정자금 · 24
 - 1-1-⑤ 사업전환자금 · 27
 - 1-1-⑥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29
 - 1-1-⑦ 긴급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 32
 - 1-1-⑧ 소상공인지원자금 · 33
- 1-2 건강(기업)진단사업 · 60
- 1-3 무역조정지원사업 · 62
- 1-4 FTA활용지원사업 · 65
- 1-5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 66
- 1-6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 69
- 1-7 온라인 수출지원 사업(Gobizkorea) · 72
- 1-8 글로벌바이어 국내소싱 지원사업 · 74
- 1-9 중기제품 HIT500 * 중소기업 거래지원 · 76
- 1-10 글로벌협력지원 · 78
- 1-11 남북협력지원 · 81
- 1-12 외국전문인력 도입지원 · 84
- 1-13 중소기업 그린비즈 컨설팅 · 87
- 1-14 해외녹색규제 협력대응 · 89
- 1-15 중소기업 TRIZ 보급확산 사업 · 91
- 1-16 연수사업 · 93
- 1-17 청년창업사관학교 · 96



1-1 정책자금 지원 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소공인특화자금을 제외한 소상공인지원자금은 별도기준 적용

창업기업지원자금 등 8개 자금(소상공인지원자금은 소공인특화자금만 포함) 지원 시
 용자대상 및 절차, 용자제한기업, 용자시기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 용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다만 용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됨
 - * 업종구분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을 말함
- 다음의 전략산업 영위기업은 우선 지원
 - * 녹색 · 신성장동력산업(별표3, 3-1), 뿌리산업(별표4), 부품 · 소재산업(별표5), 지역전략 · 연고산업(별표6),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바이오산업(별표9), 융복합산업 및 프랜차이즈산업(별표10)

● 기업당 용자한도 50억원까지(수도권은 45억원),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 지원

- * 잔액기준 한도 예외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 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를 적용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 에 공지
 - *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해당 분기의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의 중소기업진흥채권(공모) 누적 평균 발행금리에 따라 결정되며, 예산, 중소기업 자금사정 및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 신용위험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적용
 - * 대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소 2인 이상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p 금리 우대(최대 1%p, 1년간 한시 적용)

용자 방식

- 중진공에서 용자신청·접수, 용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보증서 포함)로 대출
 - *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단,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공고 시행전 발급된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은 예외)
- 청년전용창업자금 중 민간금융 매칭형은 취급은행에서 신청·접수부터 대출까지의 모든 절차를 수행

용자 절차

- ① 신청·접수 : 중진공 지역본(지)부를 통한 사전상담 또는 중진공 홈페이지(정책자금 용자도우미)를 통한 자가진단 후, 용자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춰 온라인(www.sbc.or.kr) 또는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신청·접수
 - * 시설자금(사업장 건축 및 확보, 중고설비, 외국 제작설비는 제외) 10억원 이상 신청기업은 전자거래시스템(<http://sbc.mp1.co.kr>)을 통하여 공개견적을 의뢰(기업평가 시 공개견적서 및 입찰확인서 확인)
 -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결정
 - 건강진단 생략기업은 정책자금 활용계획서를 신청·접수
 - 건강진단 실시기업은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추천서(정책자금 연계)를 발급받은 후 정책자금 활용계획서를 신청·접수
 - * 건강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 ② 기업평가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단, 청년전용창업자금 및 소공인특화자금은 기업평가등급 산정없이 별도기준으로 운영)
 - *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반영비중을 최소화
 - *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으로 기업평가등급 산정
- ③ 용자대상 결정 : 용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용자약정 체결 후 대출
 - * 중진공 직접대출로 용자하는 시설자금은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한 전자거래 의무화(단, 사업장 확보 등 일부시설은 예외)

- ④ 자금대출 : 용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용자약정을 체결 후 대출
 - * 중진공 직접대출로 용자하는 시설자금은 중진공 전용 지원시설 전자거래 사이트를 통한 전자거래 의무화(단, 사업장 건축 등 일부시설은 예외)
- ⑤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 대출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 * 청년전용창업자금(용자상환금 조정형)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사항을 점검

용자 제한 기업

-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용자대상에 포함
- ②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용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⑤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용자대상에 포함
- ⑥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I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 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 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직전사업년도 매출액 500억원 이상 기업

- ⑦ 업종별 용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신성장기반자금 중 협동화 및 협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단,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 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재해중소기업
 - 소공인특화자금 신청기업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과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은 용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 ⑧ 용자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2년 연속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 ⑨ 용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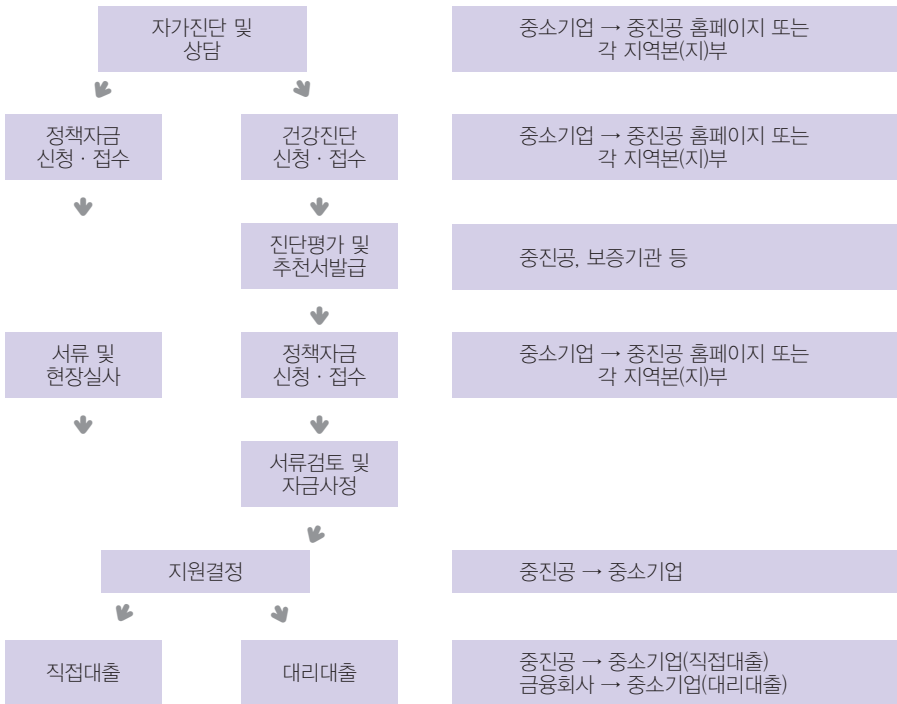
- ⑩ 용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이상 법인기업 중 정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소상공인지원자금 제외) 지원실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시설자금 :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비수도권은 50억원) 이상(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시에 해당여부를 판단)
 - 운전자금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기업(대출잔액 5억원 이상인 경우 최근 1년 이내 1회 이상 지원기업). 단,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은 지원실적 대상에서 제외

용자 시기

- 2013. 1. 2 ~ 자금 소진시까지 월별 접수하되, 사업별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음(단,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건강진단 신청기업 : 매월 1일 ~ 10일
- * 단,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은 1월에 한해 11일부터 18일까지 접수
- 청년전용창업자금 : 매월 1일 ~ 5일
- * 단, 재창업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사회적 기업, 청년전용창업자금 중 지방중소기업청 주관 청년창업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은 수시 접수

용자 체계도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별도의 용자절차 적용(창업기업지원자금 '용자방식' 참조)

신청 · 접수 및 문의처

지역본(지)부	전 화	지역본(지)부	전 화	지역본(지)부	전 화
서울 (양천구)	02) 6678-4127,37	충북 (청주시)	043) 230-6811~2	전남 (무안군)	061) 280-8000
서울동남부 (서초구)	02) 2156-2222~3	충북북부 (충주시)	043) 841-3600	전남동부 (순천시)	061) 724-1056
서울북부 (영등포구)	02) 769-6825~6	전북 (전주시)	063) 210-9900	부산 (사상구)	051) 630-7400
인천 (연수구)	032) 450-0521~4	전북서부 (군산시)	063) 460-9800	부산동부 (해운대구)	051) 712-9670
인천서부 (서구)	032) 450-0560	대구 (대구시)	053) 601-5300	울산 (울산시)	052) 703-1100
경기 (수원시)	031) 259-7911~5 7921~5	경북 (구미시)	054) 476-9321~9	경남 (창원시)	055) 212-1350
경기동부 (성남시)	031) 628-8888	경북동부 (포항시)	054) 223-2047~8	경남동부 (김해시)	055) 310-6600
경기서부 (시흥시)	031) 496-1083~4	경북남부 (경산시)	053) 212-3300~1	경남서부 (진주시)	055) 756-3060
경기북부 (고양시)	031) 920-6700	강원 (춘천시)	033) 259-7600	제주 (제주시)	064) 751-2053~7
대전 (대전시)	042) 866-0114,23	강원영동 (강릉시)	033) 655-8870		
충남 (천안시)	041)621-3687	광주 (광주시)	062) 600-3000		

지역본(지)부의 관할구역

지역본(지)부	관할구역
서울지역본부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서울동남부지부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서울북부지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인천지역본부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부천시
인천서부지부	서구, 동구, 남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경기지역본부	수원시, 안성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경기동부지부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경기서부지부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경기북부지부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대전지역본부	대전시, 공주시, 세종시,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충남지역본부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군,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충북지역본부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청원군
충북북부지부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전북지역본부	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전북서부지부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대구지역본부	대구시
경북지역본부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경북동부지부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경북남부지부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강원지역본부	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강원영동지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광주지역본부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전남지역본부	무안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전남동부지부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부산지역본부	사상구, 강서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부산동부지부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기장군
울산지역본부	울산시
경남지역본부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합천군, 창녕군
경남동부지부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경남서부지부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제주지역본부	제주시, 서귀포시



정책자금 공통 용어설명

- **융자잔액**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상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을 말함
- **자산유동화** 미래 현금 흐름이 있는 자산(Asset)을 담보로 증권(Securities)을 발행하여 현재의 시점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으로 자산의 종류에 따라 CBO(회사채), CLO(대출채권), MBS(부동산저당권) 등으로 구분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정부가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관리하는 기금
- **대출금리와 국고채 금리** 대출금리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을 말하며, 국고채 금리는 정부가 장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국고채)의 이자율을 말함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 결정방법** 국고채 5년물 평균 유통수익률을 근거로 기획재정부가 매분기 적용할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지
- **변동금리** 기준금리가 변할 때마다 대출금리가 변하는 금리
- **대위변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넘겨받는다는 조건으로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는 것
- **대지급** 은행 또는 정부가 지급보증을 통하여 특정업자의 지급신용을 책임진 후 그 특정업자가 기일 내에 지급을 불이행하였을 때 지급보증은행 또는 정부에서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것
- **화의** 기업이 파산위험에 직면할 때 법원의 중재감독 하에 채권자들과 채무변제협정을 체결하여 파산을 피하는 것
- **기업회생신청** 법원 관리 아래 진행되는 기업 구조조정(과거 법정관리)
- **청산절차** 회사가 합병·파산 이외의 원인으로 해산한 경우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 사원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 등과 각종의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절차
- **융자제한 부채비율**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계획(중소기업청 공고)에서 최근년도들의 업종별 부채비율을 기중 평균한 2~3배의 값
-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직접대출은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접수 및 평가하여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공단이 직접 대출하는 방식, 대리대출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책자금을 신청·접수 및 평가하여 융자대상을 결정하고 은행이 대출하는 방식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시설자금은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사업장 건축·확보 등의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운전자금은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함
- **거치기간**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갚지 않고 매달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1-1-① 창업기업지원자금

업력 5년 미만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용자 규모 1조 2,500억원

- * 2011년 신청기업 5,874개사 중 3,644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3.8억원
- * 2012년 신청기업 6,628개사 중 4,365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3.0억원

지원 대상 창업기업지원자금, 재창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1인 창조기업 포함)

- 창업기업지원 : 업력 5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재창업 :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①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 · 경영실권자
 - * (재창업자 요건) 실패 기업의 업종이 융자제의 대상 업종(별표)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기창업자는 영업실적 요건 예외)
- ②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 ③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 ④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 * <1-1. 공통사항>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 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 청년전용창업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용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용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소요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단, 기업 당 1회에 한정
 - 부지매입비 및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운전자금 : 창업소요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과의 납품계약(계약서 등)에 근거한 제품 생산비용 등 소요자금
 - * 단, 구매기업의 계약이행능력,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여 용자를 제한할 수 있음

용자 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기준금리)
 - * 단,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7% 이내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단,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의 대금지급일 이내(최대 180일)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구분없이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단, 재창업자금 운전자금은 10억원,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 협동화 승인기업 : 추진주체 50억원(운전 5억원), 참가기업 45억원(운전 5억원) 단, 협업화는 추진주체 40억원(운전 30억원), 참가기업 30억원(운전 5억원)

- * 협업사업 승인기업 : 추진주체 45억원(운전자금 5억원)
참가기업 40억원(운전자금 5억원)
-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회전한도내에서 계약금액의 90% 이내(최대 5억원)
-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용자 방식

- 창업기업지원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보증서 포함) 대출
- 재창업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 및 도덕성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단, 기업편의에 따라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가능)
 - * 단,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심사(신용회복위원회)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 청년전용창업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용자상환금 조정형) 또는 취급은행(우리은행)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결정후 대출
 - * 용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용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 * 민간금융 매칭형 : 지역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부로 지원(1월중 취급은행을 추가지정 예정)



1-1-②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우수 기술의 제품화 · 사업화 지원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 · 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용자 규모 3,000억원

- * 2011년 신청기업 1,432사 중 1,000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6억원
- * 2012년 신청기업 1,645사 중 1,240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5억원

지원 대상

- 전략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아래의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자체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기업
 -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 전략산업 : 녹색 · 신성장동력산업(별표3, 3-1), 뿌리산업(별표4), 부품 · 소재산업(별표5), 지역전략 · 연고산업(별표6),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바이오산업(별표9), 융복합산업 및 프랜차이즈산업(별표10)

용자 범위

- 시설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용자 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용자 방식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용자 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1-1-③ 신성장기반자금

업력 5년 이상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촉진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용자 규모 6,350억원

- * 2011년 신청기업 2,022개사 중 1,554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5.5억원
- * 2012년 신청기업 1,810개사 중 1,452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5.9억원

지원 대상

- * 최근 3년 이내 신성장기반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용자 제외
- 업력 5년 이상 중소기업
 - * 단, 업력 5년 미만 기업 중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용자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 단, 업력 5년 미만 기업 중 창업기업지원자금 용자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은 창업기업지원자금 으로 용자

용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영위기업 또는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이 사업장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 당 1회에 한해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허용
 -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부지매입비,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운전자금

-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30% 이내)
- * 혁신형기업(별표11),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시설자금의 50% 이내에서 초기가동비 지원
-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영위기업, 협동화(협업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제품생산비용, 제품개발비용 및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

● 융자 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 협동화 승인기업 : 추진주체 50억원(운전 5억원), 참가기업 45억원(운전 5억원) 단, 협업화는 추진주체 40억원(운전 30억원), 참가기업 30억원(운전 5억원)
 - * 협업사업 승인기업 : 추진주체 45억원(운전자금 5억원)
참가기업 40억원(운전자금 5억원)

● 융자 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1-1-④ 긴급경영안정자금

경영애로 해소 · 수출품 생산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

경영애로 해소, 수출품 생산비용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용자 규모 950억원

- * 2011년 신청기업 1,536개사 중 1,252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3억원
- * 2012년 신청기업 1,727개사 중 1,376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0억원

지원 대상 긴급경영안정사업과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 긴급경영안정사업 : 재해 피해를 입거나 일시적 경영애로 상태에 있는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 용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의 생산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 수출금융지원사업 이용기간(약정기간)이 5년을 초과한 기업은 용자 지원 제외(단, 해외 조달시장 참여 중소기업은 신청 가능)

용자 범위

구 분	내 용
긴급경영 안정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생산 비용, 제품개발 비용 및 시장개척비용 • 원부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에 한함) •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재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함)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복구비용

구 분	내 용
긴급경영 안정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금융기관의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진공 집중관리기업, 자본잠식 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 키코 등 환해지 파생상품 피해 기업 또는 외화대출에 따른 피해 기업 - 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업 -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대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협력 중소기업 - 전년동기(동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서, 전년도말 또는 직전분기말 당시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주요거래처의 도산 또는 결제조건 악화에 따른 매출채권 회수 지연기업 - 기술유출 피해기업 - 중소기업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1.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①항, ②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융자제한)
수출금융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용자 조건

① 긴급경영안정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6%p 가산(기준금리)
 - * 재해중소기업은 연 3%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은 연간 10억원 이내

② 수출금융지원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6%p 가산(기준금리)

● 대출기간 : 180일 이내

-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 선적 후 수출환 어음 매입시 정산. 단, 수출계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1년까지 이를 인정
-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 상환. 단, 수출실적 등을 감안하여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 대출한도 : 기업당 10억원 이내

-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 UN 및 UN산하기구, WTO정부조달협정양허기관, FTA정부조달 협정 양허기관의 조달계약에 입찰하여 낙찰받는 기업
- * 글로벌강소기업 : 수출성장 잠재역량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수출 5천 만불 이상의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선정
- 수출계약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일반기업은 최대 10억원,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은 및 글로벌강소기업은 최대 30억원) 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 이내
-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2 이내
- * 수출실적기준 이용업체는 10억원(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은 30억원)한도 내에서 수출계약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용자 방식

중진공이 자금 신청 · 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용자 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1-1-⑤ 사업전환자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 지원

경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회복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 지원 도모

용자 규모 1,700억원

- * 2011년 신청기업 318개사 중 250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5.9억원
- * 2012년 신청기업 316개사 중 304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5.4억원

지원 대상

-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별표12)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현 영위업종	전환 진출업종
모든 업종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제외)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단, <별표1>업종 제외)

- *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전체 매출액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사업이고, 향후 축소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전환의 대상이어야 함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경우, <1. 공통사항> 용자제한기업 ⑥, ⑧항 적용에서 예외
 -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 별표13
 - 서비스업 중 지원제외대상 : 별표14

용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장설치 및 안정성 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구매) 단, 기업 당 1회에 한정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기타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과 관련한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용자 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단, 업종전환의 경우 기업당 연간 40억원

● 용자 방식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를 통한 대리대출(업체가 선택)



1-1-⑥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이익공유형 대출 및 성장공유형 대출

기술성과 미래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와 융자의 장점을 복합 활용한 저금리 신용대출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융자 규모 1,500억원

지원 대상 이익공유형대출과 성장공유형대출로 구분하여 지원

- 이익공유형대출 :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일정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기업
- 성장공유형대출 : 기술성과 미래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으나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융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용자 조건

● 이익공유형대출

- 대출이자 : 고정이자와 이익연동이자로 구성

구 분	내 용	비 고
고정 이자	기업의 영업실적에 관계없이 대출잔액에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고정금리는 대출시점에서 다음의 기준금리를 적용한 신용대출금리에서 2%p를 차감 (대출기간동안 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력 5년 미만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 ■ 업력 5년 이상(시설자금)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 ■ 업력 5년 이상(운전자금)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6%p 가산
이익연동 이자	영업이익 × 3%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 발생시 당해연도 면제)	이익연동이자자는 매 결산기 이후 부과되며 원금상환 종료 차년도에 최종회차를 부과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대출(대출 방식 : 전환사채 인수)
 - 대출이자 : 표면금리 1%, 만기보장금리 4%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업력 5년 미만인 기업 :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신청 ·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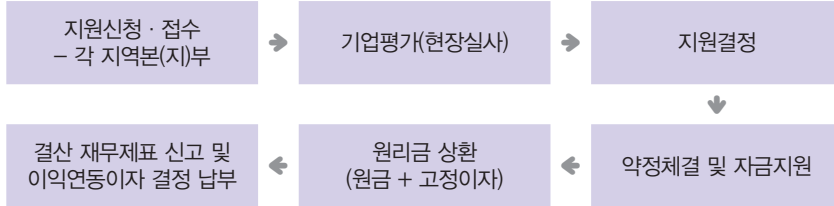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 · 지부

● 신청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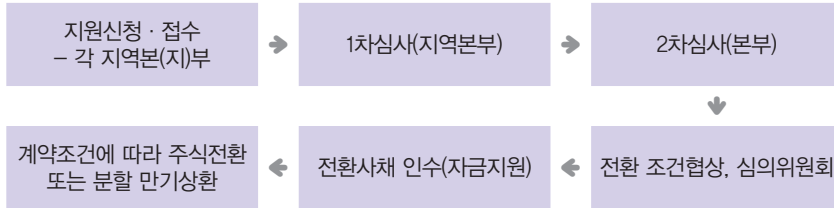
-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및 첨부서류

처리 절차

• 이익공유형 대출



• 성장공유형 대출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 중소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 : 02-769-6645



용어 설명

• 전환사채 인수

기술성과 미래성장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CB)를 중진공이 인수하여, 지원기간 이내에 기업공개(PO)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권 행사여부를 중진공이 결정함. 단, 주식 전환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은 만기보장금리로 분할 상환함.

*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 : 계약서상 정한 전환가격에 따라 계약기간 내에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



1-1-⑦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

생산 및 판매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합니다.

용자 규모 5,000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용자 범위

- 제품생산 비용, 제품개발비용 및 시장개척 비용
- 원부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제조업 전업률 30%이상 기업에 한함)

용자 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금융회사에서 결정한 대출금리에 연리 2.0~3.0%p를 보전한 금리
 - * 혁신형 중소기업(별표11) 및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은 3%p, 그 외 기업은 2.0%p 이차보전
 -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①전기 대비 10%이상 고용증가기업, ②국가 또는 지자체 인증 고용창출우수기업, ③고용확대로 세제지원을 받은 기업
- 이차보전 우대(3.0%p)는 1년간 적용(중진공에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시 1년 단위로 우대 적용)
- 대출기간 : 3년 이내(만기 일시상환)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5억원

용자 절차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용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대출취급은행에서 대출(자금신청·접수 시 대출취급은행의 사전상담 확인서 제출)



1-1-⑧ 소상공인지원자금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을 지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지원하여 신규 고용창출, 고용유지 및 국가경제의 균형 발전을 추진합니다.

용자 규모 7,500억원

- * 2011년 15,881개사 지원, 업체당 평균 28백만원
- * 2012년 14,197개사 지원, 업체당 평균 31백만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지원과 소공인특화자금으로 구분 지원

① 소상공인지원(5,000억원)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 용자제외 대상업종(별표15)에 해당되지 아닐 것

〈소상공인 일반자금〉

-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창업·경영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 소상공인컨설팅 수혜자, 나들가게,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수혜자, 신사업개발 창업자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특화자금〉

- 협업화 지원사업 참여업체, 성장유망형으로 선정된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및 재해피해 소상공인
 - * 단, 소상공인지원자금 용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5)에 해당되지 아닐 것

② 소공인특화자금(2,500억원)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소공인
 - * 단, 주된 사업의 업종이 용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기업은 용자대상에서 제외

용자 범위

- 소상공인자금
 - 소상공인 창업 후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토지구입비 제외) 및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임차보증금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용자 조건

① 소상공인자금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기준금리)
 - * 단, 재해 소상공인,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연 3% 고정금리 적용
- 대출한도
 - 소상공인 일반자금, 특화자금 : 7천만원
 - * 단, 날들가게 및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단,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대출기간 7년 이내(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
-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 단,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2년 거치 후 5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 취급은행(19개) : 국민·기업·신한·우리·외환·한국씨티·하나·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SC제일·제주·농협중앙회·저축은행중앙회·수협중앙회·새마을금고·신협중앙회

② 소공인특화자금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기준금리)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억원(운전자금은 1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취급 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응자 절차

① 소상공인자금

- 신청·접수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발급)
 -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 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자금대출 : 대출 취급은행
 - * 대출 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② 소공인특화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응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문의처

- 소상공인자금 :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 소공인특화자금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분(지)부

[별표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한 대상 업종

업종	품목코드	해당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1~42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451	자동차 판매업
	452中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판매업 중 소매업
	45302	모터사이클 및 부품소매업
	46102中	주류,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7	소매업
운수업	491, 2	철도 운송업, 육상 여객 운송업
	50中	수상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51中	항공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52914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52915	주차장 운영업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서비스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임대업	6911	자동차 임대업
	692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 2	회사본부, 비금융 지주회사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제외)
	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중 콜센터 서비스업), 전시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및충전업 (75994)제외)

업종	품목코드	해당업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85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8565), 온라인 교육학원(85504)중 기술 및 직업훈련교육은 제외)
보건업	86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문화·관광 서비스업	902	도서관, 사적지및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9113),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9119) 제외)
협회및단체	94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기타개인서비스업(산업용세탁업(96911)제외)
가구내고용및자기소비생산활동	97~9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호텔업(55111) 중 관광숙박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55119, 민박시설 운영은 제외), 자동차 임대업(6911), 기타 서비스업 중 세탁물공급업(96913), 수상오락 서비스업(9123)은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허용
- * 사업전환자금의 경우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허용
- *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 산업단체(94110) 및 '나들가게' 지원을 위한 공동물류창고를 신축하는 음·식료품 및 담배중개업(46102) 중 주류중개업이 협동화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용
- * 뷰티산업(두발미용업(96112), 피부미용업(96113), 기타미용업(96119)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은 허용
- * 재창업자금의 경우 건설업(41~42), 자동차판매업(451)은 지원대상에 허용

[별표2]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업종별 산업분류코드 중 하위코드 항목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번호	업종(KSIC-9)	평균부채 비율(%)	제한부채 비율(%)	사업전환 응자
1	A01(농업)	132.1	396.2	792.3
2	A03(어업)	126.1	378.3	756.6
3	B(광업)	138.3	414.9	829.9
4	C(제조업-중소기업)	170.3	500.0	1,000.0
5	C101-4(고기,과실,채소및유자가공업)	175.4	500.0	1,000.0
6	C105(낙농제품및식용빙과류)	47.8	200.0	400.0
7	C106,8(곡물가공업,전분제품,사료및조제식품)	132.5	397.5	795.1
8	C107(기타식품)	94.8	284.5	569.0
9	C111(알콜음료)	101.2	303.6	607.3
10	C112(비알콜음료및얼음)	80.2	240.6	481.3
11	C131(방직및가공사)	105.5	316.5	632.9
12	C132(직물직조및직물제품)	161.3	484.0	968.0
13	C133,4,9(기타섬유제품)	122.3	366.9	733.8
14	C14(의복,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중소기업)	185.5	500.0	1,000.0
15	C15(가죽,가방및신발-중소기업)	168.1	500.0	1,000.0
16	C16(목재및나무제품(가구제외)-중소기업)	184.9	500.0	1,000.0
17	C17(펄프,종이및종이제품-중소기업)	146.0	438.0	876.1
18	C18(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중소기업)	216.4	500.0	1,000.0
19	C19(코크스,연탄및석유정제품-중소기업)	131.0	393.0	786.0
20	C201(기초화학물질)	75.9	227.7	455.4
21	C202(비료및질소화합물)	123.5	370.4	740.9
22	C203(합성고무및플라스틱물질)	90.7	272.0	544.0
23	C204(기타화학제품)	83.1	249.4	498.8
24	C205(화학섬유)	146.0	438.1	876.2
25	C21(의료용물질및의약품-중소기업)	89.5	268.4	536.8
26	C221(고무제품)	118.0	354.1	708.2
27	C222(플라스틱제품)	240.3	500.0	1,000.0
28	C231(유리및유리제품)	39.3	200.0	400.0
29	C232(도자기및기타요업제품)	91.0	273.1	546.2

번호	업종(KSIC-9)	평균부채 비율(%)	제한부채 비율(%)	사업전환 유자
30	C233(시멘트, 석회, 플라스틱및그제품)	132.8	398.3	796.6
31	C239(기타비금속광물제품)	146.7	440.1	880.2
32	C241(1차철강)	82.4	247.1	494.2
33	C242(1차비철금속)	98.7	296.2	592.4
34	C243(금속주조업)	199.9	500.0	1,000.0
35	C25(금속가공제품(기계및가구제외)-중소기업)	194.4	500.0	1,000.0
36	C261,2(반도체및전자부품)	66.8	200.3	400.6
37	C263(컴퓨터및주변장치)	123.9	371.7	743.5
38	C264(통신및방송장비)	146.9	440.6	881.2
39	C265,6(영상및음향기기,마그네틱및광학매체)	158.0	474.0	948.0
40	C27(의료,정밀,광학기및시계-중소기업)	113.9	341.6	683.3
41	C281(전동기,발전기및전기변환·공급·제어장치)	130.0	390.1	780.2
42	C282,4,9(타전기장비)	107.4	322.2	644.4
43	C283(절연선및케이블)	266.4	500.0	1,000.0
44	C285(가정용기기)	134.4	403.2	806.5
45	C291(일반목적용기계)	155.9	467.8	935.6
46	C292(특수목적용기계)	148.6	445.8	891.6
47	C301(자동차용엔진및자동차)	76.6	229.9	459.8
48	C302,3(자동차차체및트레일러,자동차부품)	137.3	412.0	823.9
49	C311(선박및보트건조업)	243.9	500.0	1,000.0
50	C312,3,9(철도,항공기및그외기타운송장비)	197.8	500.0	1,000.0
51	C32(가구-중소기업)	178.8	500.0	1,000.0
52	C33(기타제품제조업-중소기업)	136.6	409.8	819.5
53	D351(전기업)	101.0	302.9	605.8
54	D352,3(가스,증기·냉온수및공기조절공급)	303.8	500.0	1,000.0
55	E(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중소기업)	145.0	435.0	870.1
56	E37,E381,2(하수,폐수및분뇨처리,폐기수집운반·처리업)	122.9	368.7	737.5
57	E383(금속및비금속원료재생업)	225.9	500.0	1,000.0
58	F41(종합건설업)	205.3	500.0	1,000.0
59	F42(전문직별공사업)	79.1	237.3	474.7
60	G45(자동차및부품판매업)	236.2	500.0	1,000.0
61	G46(도매및상품중개업)	261.1	500.0	1,000.0

• 2013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번호	업종(KSIC-9)	평균부채 비율(%)	제한부채 비율(%)	사업전환 응자
62	G4711(백화점)	92.1	276.2	552.4
63	G4711-9(종합소매업(백화점제외))	86.5	259.5	519.0
64	G472-9(일반소매업)	147.7	443.1	886.1
65	G4791(통신판매업)	109.3	327.8	655.5
66	H49(육상운송업(철도운송업제외))	121.1	363.2	726.4
67	H491(철도운송업)	94.3	283.0	565.9
68	H492(육상여객운송업)	387.5	500.0	1,000.0
69	H493,4(도로화물, 소화물전문운송업)	140.8	422.5	844.9
70	H50(수상운송업)	339.7	500.0	1,000.0
71	H51(항공운송업)	494.0	500.0	1,000.0
72	H52(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119.6	358.7	717.4
73	I55(숙박업)	95.1	285.2	570.4
74	I56(음식점및주점업)	286.9	500.0	1,000.0
75	J581(서적, 잡지및기타인쇄물출판업)	101.0	303.0	606.0
76	J582(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105.7	317.2	634.4
77	J59(영상·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249.1	500.0	1,000.0
78	J60(방송업)	51.4	200.0	400.0
79	J61(통신업)	108.3	324.8	649.5
80	J62(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97.2	291.7	583.4
81	J63(정보서비스업)	74.5	223.4	446.9
82	L68(부동산업)	644.6	500.0	1,000.0
83	L69(임대업;부동산제외)	315.0	500.0	1,000.0
84	M71(전문서비스업)	219.2	500.0	1,000.0
85	M712(법무, 회계및세무관련서비스업)	122.1	366.2	732.3
86	M713(광고업)	208.5	500.0	1,000.0
87	M74,753(기타전문서비스업)	249.6	500.0	1,000.0
88	M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	161.1	483.2	966.5
89	M73(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83.1	500.0	1,000.0
90	N74(사업시설관리및조경서비스업)	90.4	271.3	542.5

번호	업종(KSIC-9)	평균부채비율(%)	제한부채비율(%)	사업전환용자
91	N751(인력공급및고용알선업)	165.1	495.3	990.7
92	N752(여행사및기타여행보조서비스업)	123.4	370.2	740.3
93	N753(경비,경호및탐정업)	69.5	208.6	417.3
94	N759(기타사업지원서비스업)	163.9	491.8	983.7
95	P(교육서비스업-중소기업)	301.8	500.0	1,000.0
96	R(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중소기업)	1,169.0	500.0	1,000.0
97	S95(수리업)	239.4	500.0	1,000.0
98	S96(기타개인서비스업)	11,766.7	500.0	1,000.0
99	기타산업	-	500.0	1,000.0

* 제한부채비율은 최소 200%, 최대 500% 이내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의한 최근 3개년 가중평균 부채비율



[별표3]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

구분	신성장동력	세부분류
녹색 기술 산업	신재생 에너지	태양전지, 연료전지,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 폐자원에너지, 농산바이오매스에너지, 산림바이오매스자원화, 청정석탄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원전플랜트
	고도물처리	스마트상수도 막여과 시스템, 스마트상수도 수도기자재, 친환경대체용수 확보를 위한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기술, 먹는샘물, 해양심층수, 지속가능 물환경을 위한 수생태계 복원기술
	LED응용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그린카, 선박·해양시스템, 첨단철도
	첨단그린도시	U-City S/W, U-City IT H/W, U-City IT 융합 H/W, ITS, GIS, 그린홈
첨단 융합 산업	방송통신융합	차세대 융합네트워크, 차세대 무선통신, 방송통신미디어
	IT융합시스템	IT융합, RFID/USN,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로봇응용	로봇응용
	신소재·나노융합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Ionic Liquid(IL) 소재, 나노탄소 융합소재 분야, 기능성 나노 필름 분야, 나노융합 바이오머신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자원·신소재·장기, 바이오매스유래 바이오화학제품, 메디·바이오 진단시스템, 첨단의료영상 진단기기, 고령친화의료기기 및 제품
	고부가식품산업	고부가 식품산업
고부 가 서 비 스	글로벌헬스케어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교육서비스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해당사항 없음)
	콘텐츠·소프트웨어	콘텐츠, 소프트웨어
	MICE·융합관광	MICE, 생태관광

- *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하며, <별표1> 정책자금 용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배제
- * 녹색인증기업(녹색기술인증, 녹색사업인증, 녹색전문기업확인)은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
- *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 및 녹색·신성장동력 산업 기반 기술 관련 표준산업분류는 중진공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별표3-1]

녹색·신성장동력산업 기반 기술

- 녹색·신성장 동력산업과 직접 관련된 뿌리기술(별표4)과 다음의 기술로서 ‘녹색·신성장 동력산업 기반 기술(한국형 新제조기반 24개 기술)’에 해당 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

	신제조기반기술		관련 산업(제품/부품/소재)
	세부 연관기술		
진공유지	진공부품제작기술, 진공시스템설계기술, 박막코팅 공정기술		▷ 반도체(배선/유전체/전극/도핑막), 디스플레이(반도체 증착/전극/유전체), 태양전지(반도체박막/전극/배선), 자동차(금속피막증착체, 플라스틱(금속화), 공구류(경질피막/열처리) 등
재생가능 연료·소재 생산	바이오원료전처리기술, 연료전지분리막기술,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기술		▷ 대체고급연료(윤활유, 항공유), 점접착제/도료/코팅제, 화학첨가제
고기능성 고분자소재제조	나노탄소소재기술, 나노필름기술, 검지용소재기술, 식품첨가제기술		▷ IT/가전 기판, 디스플레이 필름, 반도체실장, 태양전지 전극 ▷ 자동차/조선/항공 내장재, 섬유, 패키징(포장재, 용기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소재 등
정밀화학제품 합성분리	나노복합소재 추출분리기술, 그린에너지소재 막분리 및 상분리기술, 신소재합성 미반응물 제거		▷ 의약/식품, 정밀화학제품(염료, 화장품 등), 화학플랜트(결정화/추출/증류장치)
발효생산	균주개발기술, 바이오연료전환기술, 모노머 생물합성기술, 고도발효기술		▷ 기능성 식품, 바이오화학제품, 모노머, 바이오연료
발효장치	바이오가스정제기술, 발효산물분리기술, 금속성분회수기술, 발효 약취제거기술		▷ 정밀분리막시스템, GMP/HACCP 정제장치, 결정화 분리장치
섬유 신소재	섬유방사/방적기술, 제편직/부직포화 기술, 섬유복합재료기술		▷ 화학원사, 복합방적사, 슈퍼섬유, 스마트섬유, 초경량 직편물, 인공피혁, 3차원 스페이서 직물, 자동차내장재등
섬유 신가공	섬유표면가공기술, 섬유복합가공기술		▷ 친환경염색가공, 투습방수 섬유, 자외선 차단섬유, 온도조절섬유, 기능성 염조제 등
패키징	패키징 소재기술, 인디케이터 기술, 맞춤형 설계기술, 패키징 공정 기술		▷ 편의제공 패키징(품질, 유통, 제조 포함), 품질 인디케이터, 온도시간 인디케이터, 가스 농도 인디케이터, 가스투과 제어 패키징, 위조방지 패키징

[별표4]

뿌리산업(신제조기반기술)

구분	신제조기반기술		관련 산업(제품/부품/소재)
		세부 연관기술	
금형	사출금형	디지털 금형설계기술, 초정밀가공 및 조립기술, 마이크로 성형기술, 대면적 성형기술	▷ 가전(케이스), 자동차(내장부품, 계기판부품, 휴대폰(케이스) 등
	프레스금형	디지털 금형설계기술, 초정밀가공 및 조립기술, fine blanking 및 forming die 제작기술, 난성형재 성형기술	▷ 자동차(차체 및 사시부품), 휴대폰(커넥터), 반도체(IC배선부품) 각종 기능부품 등
	특수금형	다색다중사출성형기술, blow 성형기술, 플라스틱 메탈 일체화 성형기술, IM(In Mold Assy) 성형기술	▷ 휴대폰(2색컬러케이스), 융복합 제조 ▷ 디스플레이(LCD조출림필터), 의약 및 식품산업(용기류), 카메라렌즈 및 광학부품) 등
주조	다이캐스팅	알루미늄 다이캐스팅기술, 마그네슘 다이캐스팅기술	▷ 자동차(엔진부품, 미션, 크랭크 케이스), 휴대폰(케이스), 정보통신(컴퓨터 케이스) 등
	사형주조	주철, 주강 사형주조기술, 비철사형주조 기술	▷ 자동차(실린더 블록), 조선(대형 구조부품) 등
	특수주조	금형주조기술, 정밀주조기술	▷ 정밀기계(정밀부품) 등
소성가공	단조	열·냉·온간 단조기술, 복합 단조기술, 부품 일체화 단조기술	▷ 자동차(조향장치, 엔진관련부품, 기어류), 자전거(변속기, BB), 발전시스템(축류품, 유압밸브부품, 압축기용 부품), 히프펌프(열교환기) 등
	압출·인발	형상재 압출/인발 기술, 정수압 압출기술, 가변단면 압출/인발 기술	▷ 자동차(차체/사시부품, 볼트류, 범퍼류), 히프펌프(열교환기용부품), 자전거(프레임, 포크, 핸들) 등
용접	전자접합	water Level Packaging 기술, 전자모듈 제조기술, 무연솔더링 실장기술	▷ 디스플레이, 가전, 자동차, 휴대폰(IC packaging) 등
	용접	레이저 용접기술, 이크 용접기술, 저항용접기술, 철강용접기술, 비철용접기술	▷ 조선(블록부품), 자동차(차체 및 사시부품), 건설기계(굴삭기 붐, 암 부품), 건설교량, 철재 구조물, 중공업(플랜트), 자전거 프레임 등
	용접·접합 재료 및 시스템	용접재료기술, 전자접합 소재기술, 용접전원기술, 접합시스템기술	▷ 조선용접재료, 용접전원 용접와이어 피더, 자동차(용접전원 및 접착재료), 전자(패키징소재 및 장비) 등
열처리	열처리	질화기술, 침탄기술, 템퍼링기술	▷ 자동차(기어/허브/범퍼/클러치/필러), 건설기계(실린더/부싱/축), 산업기계(사출금형/프레스금형), 에너지(베어링) 등
표면처리	건식코팅	DLC 기술, 경질코팅기술	▷ 자동차(실린더/피스톤링), 산업기계(렌즈금형/절삭공구), 휴대폰(외장) 건설기계(내마모부품) 등
	도금	일반전기도금, 무전해도금, 화성처리기술, 양극산화기술	▷ 자동차(실린더/휠/배관), 반도체(배선/커넥터), 철강(연주물드/구조물), 정밀기계(미소부품), 태양전지(전극/흡수판) 등
	PCB 표면처리	전기도금기술, 무전해도금기술, 솔더도금기술	▷ 휴대폰(연성기판), 디스플레이(COG), 전기전자(FCG), 정보통신(COF), 가전(회로기판)

* 뿌리산업 해당여부는 6대 뿌리기술 분야(금형, 주조,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를 기준으로 중진공 기술전문의의 현장 확인 후 판단하며, <별표1> 정책자금 융자제의 대상 업종은 지원 배제

[별표 5]

부품·소재산업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부품·소재” 관련 산업

구 분	적용범위(부품·소재)	품목코드
섬유제품제조업 (17)	섬유방적사(천연원료를 제외하고, 기타 방적사는 무기질 섬유사 및 텍스처사 등 가공사에 한한다)	1710
	섬유직물(특수직물 및 기타직물은 무기질 섬유직물에 한한다)	1720
	염색·가공된 섬유사 및 섬유직물(호부, 기타 섬유염색 및 정리 가공품을 제외한다)	1740
	부직포 및 펠트	17993
	산업용 특수사 및 코드직물	17994
	기계용 및 기타 공업용 섬유제품	17999
	펠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1)	공업용 기타 종이 및 판지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24)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유도체에 한한다)	24111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유도체 및 화합물에 한한다)	24119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유도체 및 화합물에 한한다)	24129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2413
	합성고무	2415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24152
	기초의약품질 및 생물학적 제재	2421
	농약 원제 및 중간체	24312
	공업용 도료 및 관련제품	24321
	공업용 인쇄잉크	24323
	계면활성제	24331
	공업용 사진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24342
	공업용 방향유 및 관련제품	24392
	접착제 및 젤라틴	24393
공업용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24399	
화학섬유	244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	타이어 및 튜브	25111
	공업용 비경화 고무제품	25191
	공업용 기타 고무제품	25199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25211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관	25212
	극세사 합성피혁	25213
	기계장비 조립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품	25240

구 분	적용범위(부품 · 소재)	품목코드
비금속광물 제품제조업 (26)	공업용 박판유리(두께 1.5mm 이하에 한한다) 공업용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판유리 가공품 기타 공업용 유리제품 공업용 도자기(파인 세라믹을 포함한다) 구조용 정형 내화제품(전주내화물에 한한다) 기능성석회(형상 및 물성제어된 제품에 한한다) 연마휠 초미립 비금속광물(평균입경 10 μ m 이하에 한한다) 공업용 내화 단열재 탄소섬유 복합소재 비금속광물	26111 26121 26122 26129 26213 26221 26312 26991 26992 26993 26994 26999
제1차 금속산업 (27)	합금철 열간압연 및 압출제품(일반철근, 보통강 형강을 제외한다) 냉간압연 및 압출제품(보통강 냉연강판을 제외한다) 철강선(보통강철선, 아연도철선, 철조망, 철망을 제외한다) 주조한 관연결류 강관(전기용접 보통강관을 제외한다)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 강재(아연도금강판을 제외한다) 그 외 기타 철강제품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철강 주조제품(희주철을 제외한다) 비철금속 주조제품	27112 27121 27122 27123 27131 27132 27191 27199 2721 2722 2731 2732
조립금속제품제조업 (28)	중앙난방 보일러 부품 및 방열기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핵반응기 부품 증기발생기 부품 금속단조 압형 및 분말아금제품(가정용 압형제품 및 병마개를 제외한다)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처리제품(금속인쇄업을 제외한다) 톱 및 호환성공구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금속스프링 금속제 이크 용접 전극, 선박의 추진기와 블레이드 및 닻, 금속제의 플레시블 튜브, 철강 및 금속의 기타제품	28121 28122 28131 28132 2891 2892 28934 28941 28943 28999

구 분	적용범위(부품·소재)	품목코드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내연기관 및 터빈	2911
	펌프 및 압축기	2912
	탭, 밸브 및 유사장치	29130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2914
	산업용 오븐 및 노 부품	29150
	산업용 트럭 및 물품취급장비 부품	2916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부품	29171
	공기조화장치 부품(자동차용은 완제품을 포함한다)	29172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부품	29173
	기체여과기	29174
	액체여과기	29175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29176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부품	2919
	가공공작기계 부품	292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부품(주형 및 금형은 완제품을 포함한다)	293
	무기 부품	29400
	기타 가정용 전열기기 부품	29511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부품	29519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부품	2952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30)	컴퓨터 기억장치	30012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기타 주변기기(컴퓨터 본체와 분리되는 CRT모니터, 프린터의 완제품을 제외한다)	30013
	복사기 부품	3002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3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발전기세트를 제외한다)	311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장치	312
	절연 금속선 및 케이블	31301
	절연 광섬유케이블	31302
	일차전지(리튬전지에 한한다)	31401
	축전지	31402
	전구 및 램프 부품	31510
	일반 조명장치 부품	31521
	내연기관용 및 차량용 전기장치	3191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부품	31991
	자석 및 자석제품	3199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체	31993
	교통통제용 전기장치 부품	31994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기장비 부품	31999

구 분	적용범위(부품 · 소재)	품목코드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2)	반도체 및 기타 전자제품	321
	통신기기 및 방송기기 부품	322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부품(안테나와 마이크로폰을 포함한다)	3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33)	의료용기기 부품(의료용 가구를 제외한다)	331
	측정, 시험, 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도안 및 제도기구를 제외한다)	332
	광섬유 및 광학요소	33321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장비 부품	33322
	기타 광학기기 부품	33329
	시계 부품	3340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4)	자동차용 엔진	34110
	자동차 부품	343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35)	선박 구성부분품	35114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장치물 부품	35202
	항공기 및 우주선의 보조장치 부품	35310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353
	모터사이클 부품	35910
	자전거 및 장애인용 차량 부품	35920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36)	운송장비용 의자	36111

* 품목코드는 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임

〈비 고〉

1. 부품은 부분품을 포함한다.
2. 동일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속하는 것 중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완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품 · 소재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3. 상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사용됨과 동시에 완제품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이를 부품으로 본다.

[별표 6]

지역별 전략산업 및 연구산업

지역	전략산업	연구산업
부산	항만물류산업, 기계부품소재산업, 관광컨벤션산업, 영상·IT산업	해양바이오산업, 실버산업, 신발산업, 수산·가공산업, 섬유·패션산업 등
대구	메카트로닉스산업, 전자·정보기기산업, 섬유산업, 생물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비즈니스서비스업, 안경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전시·컨벤션산업, 출판·인쇄산업, 시멘트, 석회, 플라스틱 및 그 제품 제조업, 의료용 기기제조업 등
대전	정보통신산업, 바이오산업, 첨단부품·소재산업, 메카트로닉스산업	영상·게임산업, 웰빙산업(실버벤처산업), 대덕구공예산업, 동구포도주가공산업, 첨단섬유소재산업, 안경산업 등
광주	광산업, 정보가전산업, 자동차·첨단부품소재산업, 디자인·문화산업	김치산업, 한복패션산업, 화훼·원예산업, 떡산업, 금형산업 등
울산	자동차산업, 조선해양산업, 정밀화학산업, 환경산업	울산농산물, 울산축산업, 선박·산업·해양관광산업 등
강원	바이오산업, 의료기기산업, 신소재·방재·플라즈마산업, 관광문화산업	생명농어업, 건강채소·화훼산업, 토종동물산업, 목재·산림산업, 유기농업, 한방·약초산업, 기능성식품, 수산가공산업, 시멘트, 석회, 플라스틱 및 그 제품 제조업,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신발부품관련 산업 등
충북	바이오산업, 반도체산업, 차세대전지,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	바이오농업, 석회석신소재산업, 옥천모목, 옷산업, 에코세라피건강산업, 약초산업, 태양광산업, 보은문화산업 등
충남	전자·정보기기산업, 자동차·자동차부품산업, 첨단문화산업, 농·축산 바이오산업	금산인삼산업, 보령머드산업, 공주자카드섬유산업, 계룡군문화엑스포, 청양칠갑산 그린투어, 서산육쪽마늘일류화사업, 예산사광가공·유통산업 등
전북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 생물산업, 방사선융합기술 및 대체에너지 산업, 전통문화·영상·관광산업	익산귀금속·보석산업, 익산니트산업, 남원울칠산업, 순창장류산업, 남원목기·허브산업, 진안홍한방산업, 고창복분자산업, 임실유기공산업 등
전남	생물산업, 신소재·조선산업, 물류산업, 문화관광산업, 신재생에너지, 자동차부품·소재	기능성식품산업, 토종약초생산·가공업, 나비디자인·천연염색산업, 도자기(삼강청자)산업, 전통애견(진도개)산업, 양식어업, 수산물가공및저장처리업, 차류가공업, 과실·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등
경북	전자·정보기기산업, 신소재·부품산업, 생물·한방산업, 문화·관광산업, 신재생에너지, 로봇산업	섬유기계산업, 한방산업, 인삼가공산업, 문화축제 이벤트산업, 농산물가공·시설채소산업, 신재생에너지, 로봇산업 등
경남	지식기반기계 산업, 로봇 산업, 지능형 홈 산업, 바이오 산업	SI&K산업, 석재가공산업, 축산사료유통산업, 녹차가공산업, 양파산업, 치과의료산업, 고령토산업, '지역정보포털'의 경남지역 향토자원 중 특산물을 활용한 산업 등
제주	관광산업, 건강·뷰티 생물산업, 친환경농업생명산업, 디지털컨텐츠산업	축산업, 수산업, 스포츠산업, 향토음식산업, 화훼산업 등

* <별표1>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배제

* 지방중소기업청장·지방자치단체장이 추가로 정하는 지역산업도 지역별 전략산업 및 연구산업에 포함

[별표 7]

지식서비스산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3900	환경정화 및 복원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12	전기통신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13	광고업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732	전문 디자인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계업
7390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532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992	전시 및 행사대행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85504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8565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901	창작, 예술관련 서비스업

[별표 8]

문화콘텐츠산업

구분	품목코드	해당업종
출판	1811	경 인쇄업
	1812	스크린 인쇄업
	1819	기타 인쇄업
	18121	제판 및 조판업
	18122	제책업
	18129	기타 인쇄관련 산업
	58111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58112	만화 출판업
	58119	기타 서적 출판업
	58121	신문 발행업
	58122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3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58190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공연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2	녹음시설 운영업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90121	연극단체
	90122	무용 및 음악단체
	90123	기타 공연단체
	90131	공연 예술가
	90132	비공연 예술가
	90191	공연 기획업
	90192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90199	그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게임	58211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영화·비디오·애니메이션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방송·광고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60100	라디오 방송업
	60210	지상파 방송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60222	유선 방송업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71310	광고 대행업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71392	광고매체 판매업
	71393	광고물 작성업
71399	그외 기타 광고업	
캐릭터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0209	기타 전문 디자인업

[별표 9]

바이오산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C10	식품 제조업
C11	음료 제조업
01110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01123	종자 및 묘목 생산업
01140	기타 작물 재배업
01299	그외 기타 축산업
10619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21101	의약품 화학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20	한약약품 제조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1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9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4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2222	저장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 제조업
22299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 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929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3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2	농학 연구개발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 위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바이오산업에 해당되는 기업(바이오산업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

- 바이오산업 : 생명체가 가지는 기능과 정보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산업적으로 유용한 생산물과 서비스로 가공·생산하는 산업

[별표 10]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구 분	적 용 범 위
융복합산업	<p>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산업간, 기술과 산업간, 기술간 또는 기업이 공동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산업</p> <p>① 농공상 융합기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7조에 의하여 농공상 융합분야로 협업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기업 - 농림수산물부 선정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p> <p>② 농공상 융합기업 이외의 융복합산업 :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라 융복합산업으로 인정되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p>
프랜차이즈산업	<p>「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가맹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가맹사업법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한 업체(가맹본부)에 한함</p> <p>* 가맹사업 해당 요건 :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 ②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③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 ④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 지급, ⑤ 지속적인 거래관계(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p>

* 융복합산업 및 프랜차이즈산업의 주된 업종이 <별표1>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배제

[별표 11]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대상

구 분	지 원 대 상
기술혁신 분야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중이 5%이상인 기업
	신기술(NET, NEP) 인증기업
	Inno-biz 선정 기업
	최근 3년 이내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사업 완료 기업 또는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기술개발 성공 기업
	주력 업종 또는 향후 주력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최근 3년 이내 특허 등록기업
	벤처기업
	녹색기술인증기업
경영혁신 분야	뿌리기술전문기업
	매출액 영업이익(영업이익/매출액)이 동종업계 중소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의 2배 이상인 기업
	경영혁신형 선정 기업
	최근 3년 이내에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기업(『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의무감사 대상기업은 제외)
	BSC, ERP, 생산정보화 등 최신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운영중인 기업
	최근 3년 이내 컨설팅을 통한 경영혁신, 생산성 향상 사전진단□컨설팅 추진기업으로 담당 컨설턴트 추천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기업
	통합 연계형 전문기업(ICMS) 컨소시엄 참여기업
	지역혁신특성화사업(RIS) 참여기업
	정부지정 우수 프랜차이즈 기업(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제외)
	우수 Green-Biz 선정 기업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학협력기업(채용협약 체결)
	우수 물류기업(국토해양부 장관 인증)
	연수인증기업(중소기업청 인증)
	농어촌사회공헌인증기업(농림수산식품부)
가족친화인증기업	

[별표 12]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사업전환의 정의

-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품목의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품목의 사업에 진출하는 것

* 사업전환은 별도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창업과 구별

● 사업전환의 유형

구분	적용대상	사업전환내용	사업전환비중
업종전환	제조업 및서비스업	영위업종 사업용자산 양도·폐기 → 새로운 업종 전환	완전전환
업종추가	제조업 및서비스업	현재 영위업종에 새로운 업종 추가	30% 이상

- * 제조업 ↔ 서비스업 업태전환도 사업전환에 포함
- * 새로운 업종의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은 세세분류(5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 제조업 예시) 일차전지 제조업(28201) → 축전지 제조업(28202)
 - 서비스업 예시) 가정용품 도매업(464) → 기계장비 도매업(465)
- * 사업전환 실시기간 :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1회에 한해 1년 이내 연장 가능)
- * 사업전환비중 : 전환·추가된 업종·품목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별표 13]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으로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2년이상 영위하면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구 분	피해인정기간	피해정도 및 비교시점
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정신청일 이전 2년 이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이상 감소 ▷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기 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지정신청일 이후 1년 이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단,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심각한 피해의 기준) 변경시 변경된 기준을 적용

[별표 14]

무역조정지원 대상 서비스업의 범위

무역조정지원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은 통계청장이 「통계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다음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농업, 임업 및 어업	A
광업	B
제조업	C
건설업	F
전기업	351
수도사업	360
철도운송업	491
항공운송업	51
우편업	6110
중앙 은행	641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4
초등교육기관	851
중등교육기관	852
고등교육기관	853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854
사회복지 서비스업	87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9022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9023
스포츠 서비스업	911
수상오락 서비스업	9123
갬블링 및 베틀업	9124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9129
협회 및 단체	94
가구내 고용활동	9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활동	98
국제 및 외국기관	99

[별표 15]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46102 중	담배 증개업
46109 중	골동품, 귀금속 증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55	숙박업, 단 생계형*은 제외
56	주점업
561 중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제외 가. 기관구내식당에 대한 여신 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소재 식당업에 대한 여신 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좋은식단" 실시 모범업소의 위생환경개선 시설자금 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여신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리업(6821), 부동산 자문 및 동일장소에서 6개월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증개업(6822) 영위 소상공인은 제외
711, 712, 731, 86	법무(711), 회계 및 세무(712), 수의업(731), 보건업(86)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8550	일반 교습 학원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1249	기타 gambling 및 베팅업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 단 생계형*은 제외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설소

※ 생계형 기준은 신청일 전 3개월 평균 지역건강보험료가 79,400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중), 숙박업(55), 주점업(56), 식당업(561중), 일반교습학원(8550), 무도장운영업(91291), 노래연습장운영업(91223)을 융자대상에 포함(단, 주점업 중 일반유희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희주점업(56212)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재해피해 소상공인에 한해 융자 허용)

[별표 16]

정책자금 폐지사업 대출금리

정책자금 신규지원 없이 대출잔액만 남아있는 사업에 대한 금리적용

지원자금		대출금리
지방중소기업기술사업화 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출금리
지방중소기업경쟁력강화자금, 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자금, 입지지원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산업기반자금		신성장기반자금 대출금리
일반경영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금리
소상공인 지원자금	청년프론티어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	3.50%
	여성가장창업자금, 소매업시설개선·운전자금, 폐업자영업자전업지원자금	소상공인지원자금 대출금리



1-2 건강(기업)진단

진단 → 처방 → 치료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

업종전문가가 진단을 통해 문제점(기업애로)을 분석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료를 위한 정책을 맞춤형으로 연계지원해 드립니다.

용자 규모 3,800개사

* '12년 지원현황 : 3,130개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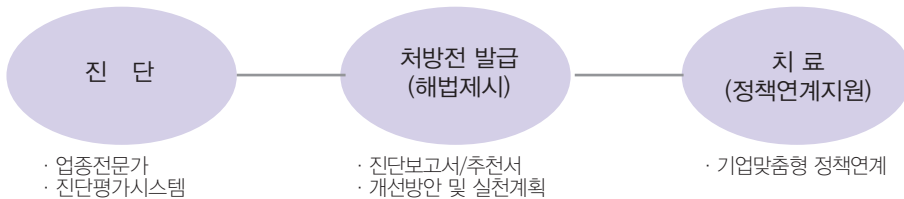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계획에서 정한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신용정보관리 규약상 연체·부도 등으로 신용거래정보에 등록된 기업

지원 내용



• 진단 및 처방

- 업종전문가로 진단팀을 구성하여 기업현장 방문, 외부 경영환경과 기업 내부능력에 대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며, 치료를 위한 사업 연계 추천서를 발급

- 정책연계지원을 통한 치료
 - 사업연계 추천서에 의해 정책자금 융자, 연수, 수출마케팅, 컨설팅 등 각종 정책을 해당 기업에 맞추어 연계지원

신청·접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방문 신청

제출 서류

건강진단 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신청서 양식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 각종 서식에 게재

처리 절차

구분	내용
신청	· 건강진단 신청서 접수(기업현황표, 정보제공동의서 등 포함) · 애로 분야 파악
진단·평가	· 업체방문/실태조사 · 정책자금 지원 필요시 기업평가등급 산출
처방	· 진단평가 결과통보(보고서 송부/프레젠테이션) · 사업연계추천서발급(중진공 내부사업) · 타기관 사업은 사업정보 제공 · 연계지원 안내 및 상담
치료	· 연계지원 실시 ① 정책자금 - 중소기업 정책자금 활용계획서 - 소요금액 사정 후 대출실시 ② 자금이외 사업 - 사업별 신청, 심사 - 사업연계지원 ③ 타기관 사업 : 정보제공 및 안내
사후관리	· 고객만족도 조사 · 지속적인 성장 관리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진단처 : 02-769-6973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1-3 무역조정지원사업

FTA 피해기업에 대한 융자 및 상담(컨설팅) 지원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따른 수입증가로 인하여 매출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융자 및 상담(컨설팅)을 지원 합니다.

융자 규모 융자 275억원, 상담(컨설팅) 4.5억원

* '12년 지원규모 : 융자 275억원, 상담(컨설팅) 5억원

지원 대상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 하면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구 분	피해인정기간	피해정도 및 비교시점
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정신청일 이전 2년 이내 발생	▷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이상 감소 ▷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기 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지정신청일 이후 1년 이내 발생	▷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단,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

*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은 5%이상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

- 휴·폐업중인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기업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 또는 지정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사업기간이 2년 미만인 기업

지원 내용

〈용자〉

- 지원대상 : 무역조정지원 지정기업 중 중진공자금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 지원내용 : 무역피해 극복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 대출금리 : 중진채 조달금리에서 1.30%p 차감(기준금리)
 - * 분기별(1,4,7,10월초) 적용기준 금리는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
 -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 8년이내 / 운전 5년이내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상담(컨설팅)〉

- 지원대상 :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5%이상 감소한 무역피해기업 중 중진공 무역피해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기업
- 지원내용 : 무역피해 극복에 필요한 경영·기술 컨설팅 비용
- 지원한도 : 업체당 4,000만원 이내
- 지원비율 : 컨설팅 소요비용의 80%까지 보조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에서 신청 ·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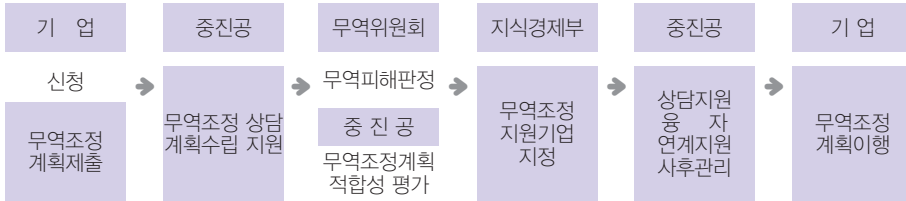
신청·서류

무역조정지원 (용자지원)	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를 위한 상담지원 (상담지원)
1.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서 2. 최근 3개년간의 재무제표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1. 경쟁력확보를 위한 상담지원 신청서 2. 최근 3개년간의 재무제표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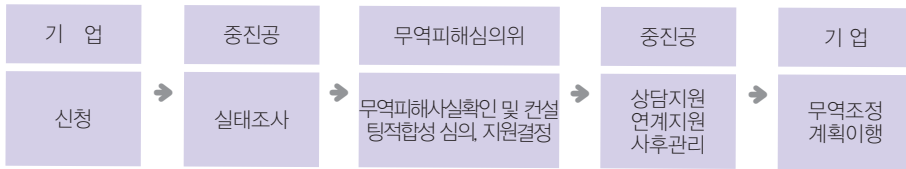
* 신청서류 양식은 무역조정지원센터 홈페이지(www.taa.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처리 절차

<무역조정지원(용자·컨설팅)>



<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를 위한 상담지원(컨설팅)>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사업전환지원센터 : 02-769-6661~3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 무역조정지원센터 홈페이지 : www.taa.go.kr

궁금해요! 중기맨

- 무역조정지원 지정과 경쟁력확보 상담지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무역조정지원 지정기업은 용자와 상담(컨설팅)을 모두 지원신청할 수 있으며 경쟁력확보 상담지원은 상담(컨설팅)만을 지원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컨설팅)지원만을 희망하실 경우 경쟁력확보 상담지원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용어 설명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

- 발효된 FTA
한-ASEAN FTA, 한-EFTA FTA, 한-싱가포르 FTA, 한-인도 CEPA, 한-칠레 FTA, 한-EU FTA, 한-페루 FTA, 한-미 FTA



1-4 FTA활용지원사업

FTA컨설팅, 활용설명회 등 FTA활용 지원

FTA컨설팅, 활용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의 FTA활용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중소기업의 FTA활용률 제고를 위해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FTA컨설팅 약 200개사, FTA활용설명회(필요시 유관기관 합동)

지원 대상

FTA를 사업에 활용중이거나 활용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FTA 컨설팅>

- FTA 전문가(관세사, 회계사/세무사)가 기업현장에 최대 5일간 방문하여 컨설팅 실시
- 생산물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 검토 및 원산지증명서 신청·발급 지원
- FTA사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한 증빙자료 보관 등 원산지관리방안 제시
- 효율적인 원산지 관리를 위한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 및 인증수출자 지정 지원

<FTA활용설명회>

- 정부의 FTA활용시책, 원산지증명, 원산지프로그램 사용, 사후검증대비책 등 FTA활용실무 위주 교육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마케팅처 : 02-769-6954



1-5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사업 등

해외전시회 참가, 무역사절단 파견,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 및 수출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해외전시회(36회), 무역사절단(127회), 수출상담회(8회), 지역특화사업(32회), 지사화사업(268개사), 해외시장조사(240개사), 비즈니스출장지원(40개사)

* 지자체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가능

지원 대상

각 지자체 관내 소재 수출중소기업 및 수출희망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휴 폐업 중인 기업 등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지원 내용

- 해외전시회
 - 세계 유명 전시회 참가 및 단독 전시회 개최 지원
 - * 전시회 참가비용 및 편도 항공료 등을 지원
- 무역사절단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세일즈단을 구성하여 파견하고,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을 지원
 - * 수출상담회 참가비용(부스설치) 등을 지원
- 수출상담회
 - 해외바이어의 방한을 유지하여 국내 업체와 수출상담의 기회를 제공
 - * 바이어 상담기회 제공(수출상담회 참가비용 무료)

- 지역특화 해외마케팅사업
 - 지역의 산업별·업종별 특성에 맞는 토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 * 각 사업에 따라 추진비용 일부 지원
- 해외지사화 사업
 - KOTRA KBC가 해외지사 설립을 희망하는 수출중소기업의 해외지사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원
- 해외시장조사
 - KOTRA KBC가 수출중소기업의 의뢰에 따라 바이어찾기,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맞춤형 시장조사(수요, 경쟁, 가격조사 등), 바이어 연락처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
- 해외비즈니스출장지원
 - 해외비즈니스 출장 시 KOTRA KBC를 통해 바이어와의 상담 장소 제공, 호텔 예약 등 현지 지원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오프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도 지자체에 따라 다름

신청 서류

사업별 신청서 및 기타 수출관련 증빙자료

처리 절차



주1) 카탈로그 수집, 송부, 항공예약, 출장자확정, 사전간담회, 인솔출장 등

주2) 바이어 발굴, 상담장 임차, 통역원 배정 등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마케팅처 : 02-769-6723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 본·지부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sbc.or.kr



궁금해요! 중기맨

- 해외전시회 및 무역사절단의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 일반적으로 해외전시회의 경우, 부스임차료, 통역비, 편도 운송비, 편도 항공료(1인) 등이 지원되며, 무역사절단은 상담장 및 차량 임차료, 해외바이어 발굴비, 통역비, 편도 항공료(1인) 등이 지원됩니다.



용어 설명

- 사후관리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지원사업(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 등)에 참가한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사업종료 후 3회 내외)하여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중진공이 수행하는 타사업(정책자금, 컨설팅, 연수)으로 연계함으로써 해외마케팅사업의 성과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1-6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임차료의 80% (2차년도는 50%) 지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조기 정착 및 수출경쟁력 배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 교역 거점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운영합니다.

지원 규모

세계 11개국 17개 지역 251개 입주실 및 수출사랑방 운영

지원 대상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휴 폐업 중인 기업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화의 법정관리 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실질적 기업주 포함)

지원 내용

- 임차료의 80%(2차년도는 50%) 지원
- 사무공간(12~20㎡) 및 공동회의실, 사무집기 및 전화·인터넷전용선 제공
- 마케팅전문가, 법률·회계컨설턴트의 자문 및 컨설팅
- 현지 시장 정보제공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
- 현지 파견 직원의 현지 조기 정착을 위한 서비스·행정지원
- 수출사랑방을 통한 중소기업의 단기 출장 지원

신청·접수 연중 수시

- 수출인큐베이터 홈페이지(www.sbc-kbdc.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우편 접수
 - * 제출처 : 우편번호 150-718,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마케팅처 수출인큐베이터 담당자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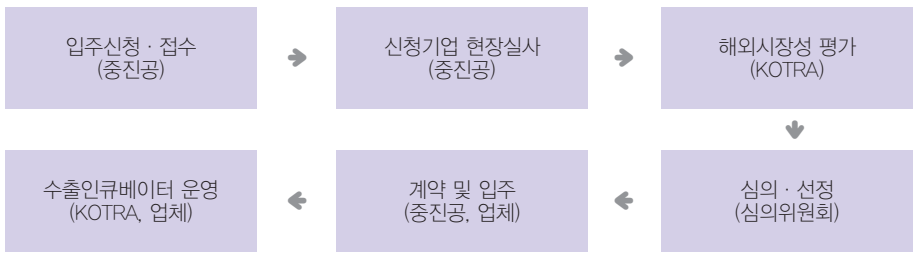
심사·평가내용

- 경영평가(25%), 제품의 시장성(30%), 현지진출지원 인프라 구축(25%), 수출인큐베이터 지원효과(20%)
 - * 수출유망중소기업, 혁신형 기업(Inno-Biz, 벤처기업 등) 등은 평가 시 가점 5점 부여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수출인큐베이터 입주신청서, 파견자 재직증명서 등
- 기타 서류 : 수출실적증명원,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증빙서류, 제품카탈로그, 회사소개자료, 국제규격자료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마케팅처 : 02-769-6729, 6958
- 수출인큐베이터 홈페이지 : www.sbc-kbdc.com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 본·지부
- 중소기업 정책정보 : www.bizinfo.go.kr



궁금해요! 중기맨

- 수출인큐베이터 입주기업이 아니더라도 수출사랑방을 이용할 수 있나요?
 - ☞ 수출사랑방은 중소기업인이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임시 사무공간, 상담실, PC 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 입주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 ☞ 입주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이며, 입주활동실적에 따라 1년 추가연장이 가능합니다. 1년 입주 후 입주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연장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활동의 적극성, 입주 후 수출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입주연장승인여부를 검토합니다.



용어 설명

- 수출사랑방
중소기업자가 수출상담이나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수출인큐베이터 설치지역 내에 단기간 출장하는 경우, 세계 11개국 16개소 수출인큐베이터(두바이 제외) 내 공동 사무공간을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활용



1-7 온라인 수출지원 사업(Gobizkorea)

홈페이지 제작 및 검색엔진 등록지원

해외홍보 및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인터넷을 이용한 수출시장 개척 및 판로 확대를 위해 홈페이지 제작, 검색엔진마케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도와 드립니다.

지원 규모 2,220개사 내외(전체예산 21억원)

* '12년 지원현황 : 상품페이지 제작 2,008개사,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100개사, 검색엔진마케팅지원 150개사 등

지원 대상 제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수출가능성이 높거나 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화의 법정관리 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실질적 기업주 포함)
- 최근 3년 이내 동일사업 지원 받은 기업

지원 내용

-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제작
- 다국어 상품페이지 제작 및 해외바이어 홍보지원
- Google, Yahoo 등 해외바이어들이 주로 이용하는 유명포털사이트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제품 키워드 및 홈페이지를 상위페이지에 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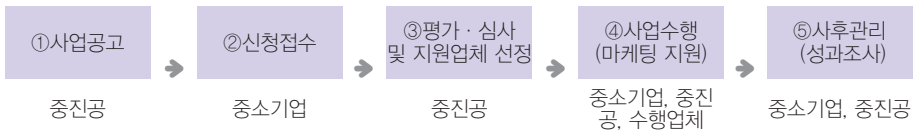
신청·접수

고비즈코리아(www.gobizkorea.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 서류

사업자등록증, 수출관련 활동 증빙서류 등

* 세부사업별로 별도 증빙자료 필요. 고비즈코리아(www.gobizkorea.or.kr) 참조

처리 절차**문의처**

- 고비즈코리아(Gobizkorea) 고객지원센터 : 1588-6234
-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 : www.gobizkorea.or.kr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궁금해요! 중기맨**

- 별도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 기업부담금은 당해연도 사업비의 10~20% 내외입니다. 2012년 기준으로 상품페이지 제작 2만원,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22만원, 검색엔진마케팅 100만원이며, 매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용어 설명**

- 검색엔진 마케팅
중소기업의 외국어홈페이지가 해외바이어들이 주로 이용하는 Google, Yahoo 등 글로벌 포털사이트의 초기화면에 일정기간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업체별 사이트 분석, 키워드 선정 등 검색엔진 최적화(SEO) 운영을 지원하는 서비스



1-8 글로벌바이어 국내소싱 지원사업

해외바이어에 대한 맞춤형 국내업체 알선 및 수출지원

해외바이어 인콰이어리를 접수받아 공급이 가능한 최적의 중소기업을 발굴·매칭하여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하는 해외마케팅사업으로 해외바이어의 인콰이어리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역전문가가 알선 이후에도 해외바이어와 알선기업 사후관리를 통해 수출성사율을 높이고 있는 바이어 맞춤형서비스입니다.

지원 규모 1,500개사(전체 예산 8.79억원)

* '12년 지원현황 : 1,506건 국내중소기업 알선, 수출액 42,042천불 달성

지원 대상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바이어

지원 내용

- 해외바이어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 알선(BMS) 및 방한바이어 지원(VAP)
- 세부사업 내역

분 야	내 용	신 청
바이어알선 지원 (B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바이어 인콰이어리 접수 및 검수 • 최적의 중소기업 발굴 및 매칭 	해외바이어
방한바이어 지원 (V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 동반방문 및 미팅 스케줄 조정, 미팅지원 • PT 대행 및 통역지원, 무역상담 등 정보제공 	국내 중소기업 해외바이어

신청 서류

- 해외바이어는 고비즈코리아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연중 수시)
- 국내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바이어 구매정보 확인 방법
 - 고비즈메일(www.gobizmail.com)사이트에서 '해외바이어 구매오피'란을 확인한 후, 자사 제품과 관련이 있는 오피에 대해 신청

처리 절차

신청 접수	해외바이어 인콰이어리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이어 알선 의뢰 접수 ▷바이어 의뢰 신청 건 평가(무역 전문가) - 바이어유효성여부 파악(이메일, 유선확인, 신용조회 실시)
발굴 매칭	국내업체 발굴 및 알선 (B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역전문가 및 지역본(지부) 활용, 최적의 중소기업 발굴 ▷중소기업에게 해외바이어를, 해외바이어에게 최적의 중소기업을 알선 소개
부가 지원	방한 바이어 지원 (VAP)	▷방한 바이어 대상, 국내업체 동반 방문, 미팅지원 및 통역 등 현장 밀착 지원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마케팅처 : 02-769-6595
- 글로벌바이어 국내소싱팀 : 02-3667-7997



궁금해요! 중기맨

- 방한바이어 지원(VAP)을 받는 것에 대한 기업부담금은 얼마인가요?
 - ☞ 방한바이어 지원(VAP) 서비스는 모두 무료로 제공됩니다. 기업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 전혀 없으니 마음놓고 이용하셔도 됩니다.
- 방한바이어 지원(VAP)을 받은 후 그 이후 발생하게 되는 바이어와의 거래진 행사항에 대해 지원해 주는 건 없나요?
 - ☞ 방한바이어 지원(VAP) 사업은 바이어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만 지원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는 순간에서부터 방한 이후 수출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필요한 지원을 계속 해줍니다.
- 지원자격이 있나요?
 - ☞ 해외바이어를 개별적으로 국내에 초청하는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영어통역이나 무역상담지원만 필요한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 해외바이어 알선(BMS : Business Matching Service)
해외바이어의 인콰이어리를 받아 최적의 국내업체 발굴하여 알선
- 방한바이어 지원 (VAP : Visitor Assitance Program)
해외바이어가 중소기업 업체방문을 위하여 방한하는 경우 업체동반방문, 통역 등을 지원하여 사후관리 지원



1-9 중기제품 HIT500 중소기업 거래지원

창업초기 중소기업 제품 마케팅 · 홍보지원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참신한 아이디어 제품을 발굴하여 소비자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마케팅을 진행함으로써 온라인 홍보에서 판로지원까지 제품의 원활한 내수시장 진입을 도와드립니다.

지원 규모 500개 제품 (전체 예산 9.32억원)

* '12년 지원현황 : 선정지원 제품수 510개 제품 마케팅 홍보 지원

지원 대상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원자격**

- 3년 미만 창업기업(사업자 등록증상 설립년월일 기준)
- 새롭게 출시한 소비재 완성품을 보유한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휴 · 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온라인홍보전시장, 온라인마케팅, 판로지원 등 3단계로 나누어 내수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 홍보 지원

구분	내 용	지원한도
Step1 온라인 홍보전시장	- 온라인 홍보 전시장 구성 · HIT500사이트 내 제품홍보페이지 제작 - 소비자(사이트 회원) 제품평가 실시	무상 지원
Step2 온라인 마케팅지원	- 포털사이트 키워드광고 - 홍보 뉴스레터 발송 지원(사이트 회원 대상)	선정제품 모두 지원
	- 무료제품 체험단 운영(소비자 직접체험) - SNS 연계 홍보 지원 (트위터, 페이스북 등)	체험단 신청 제품
Step3 제품 판로지원	- 판로 확보 마케팅 지원 · 유통사MD 마케팅 · 판로 코칭(유통사 선정 제품) · 온오프라인 판매장 입점지원 * 목동 행복한백화점 4층매장 HIT500PLAZA 입점 * 온라인 오픈마켓 판매기획관 입점	참여제품중 전문가평가단 선정 우수 제품 지원

신청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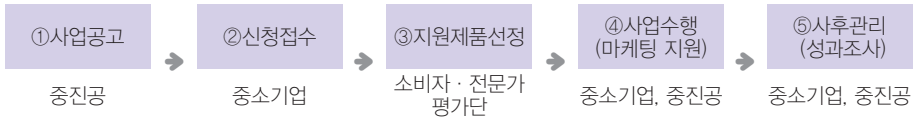
'13. 2. 1 ~ 8. 31 (2개월 단위 선정 실시)

- HIT500 홈페이지(www.hit500.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제출 서류

온라인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각종 인증서 등

- * 신청양식은 HIT500 홈페이지(www.hit500.or.kr) 신청계시판에 게재된 온라인 사업 신청 양식 참조

처리 절차**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마케팅처 : 02-769-6596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 중소기업거래지원 사이트(www.hit500.or.kr)

**궁금해요! 중기맨**

- HIT500 신청방법과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 중기제품HIT500(www.hit500.or.kr)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하신 후, HIT500 하위메뉴 중 HIT500 신청계시판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 HIT500사이트 회원인 소비자평가단과 유통사MD로 구성된 전문가평가단의 평가(설문)를 거쳐, 상위 점수 제품들을 선정하고 있으므로, 평가단이 쉽게 제품을 이해하고 강점을 알 수 있도록 신청시 제품 이미지, 설명, 특허사항 등을 자세하게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HIT500 선정 후 혜택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 HIT500은 단순 지원사업이 아니라 참여업체의 활동에 따라 사업의 성과가 좌우되는 쌍방향 사업입니다. HIT500사이트에 제품홍보페이지 제작을 시작으로, 사이트 회원들을 통해 제품을 알리는 소비자와 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 외에 제품체험단, 마케팅코칭, 언론보도 등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업체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 참여가 있어야 더 큰 마케팅·홍보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1-10 글로벌협력지원

해외진출 및 현지화 지원, 기업간 산업협력 지원

해외시장 정보제공, 해외진출지원, 기업간 산업협력 등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분야

〈해외진출 및 현지화지원〉

- 코리아데스크(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소기업지원센터(중국 청도)를 통한 현지 진출희망기업 및 기진출기업을 위한 윈스톱 상담 및 종합지원
 - ☞ 코리아데스크(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 현지 정부의 중소기업지원기관에 상주하여 투자, 무역 등 진출에 관한 제반 업무 지원
 - * 파견기관 : 인도네시아(BKPM), 말레이시아(MIDA)
 - ☞ 중소기업지원센터(중국 청도) : 현지진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세미나, 연수 및 컨설팅 실시
- 산업기술협력관 파견을 통해 선진국과 기술협력 및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개발도상 국가와는 국내기업의 성공적 현지진출을 위한 산업 및 투자환경에 대한 정보제공, 협력선 알선, 상담 업무 지원
 - ☞ 산업기술협력관 파견지역 : 미국(뉴욕), UAE(두바이), 일본(동경), 독일(프랑크푸르트)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 운영〉

- 비즈니스상담회, 컨설팅 등을 통해 APEC 회원국으로의 진출 및 글로벌화 기반 구축 도모
- 세부내용
 - 비즈니스 상담회 : 년 1회 개최, 수출유망 중소기업 10여개사 대상(행사사업비, 통역, 홍보자료 제작 등 지원)
 - 혁신컨설팅 : APEC회원국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진단 및 컨설팅 실시

〈기업간 산업협력〉

- 투자무역희망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산업협력사절단 파견 및 방한 지원, 투자무역환경 세미나 개최, 투자가이드북 발간 등
 - 한·이태리 산업협력사업, 한·스페인 기술협력사업등을 통해 산업기술협력관을 초청하여 기업간 비즈니스 지원, 진출희망국에 대한 상담지원
- ☞ 중진공 상주 산업기술협력관

산업기술협력관 파견기관명	협력관 성명
CDTI(스페인 산업기술센터)	Jordi Espluga Bach
주한 이탈리아 상공회의소(ITCCK)	Roberto Martorana
	Stefano Pianto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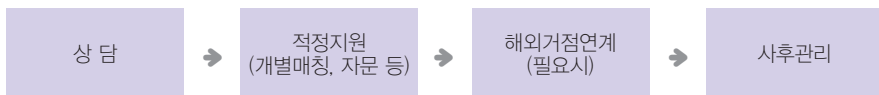
〈한·러시아 기술협력〉

- 러시아 지역의 첨단기술 발굴·도입, 선진 컨설팅 기법 도입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에 노하우 전수, 기술 사절단 파견 및 매치메이킹 설명회 개최

● 신청·접수

- 사절단, 세미나, 상담회 등 개별행사는 일정 확정시 '홈페이지(www.sbc.or.kr) -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접수
- 산업기술협력관, 코리아테스크 등 현지 지원사업은 국제협력처로 문의
- 한·러시아 기술협력사업은 녹색기술처로 문의

● 지원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제협력처 : 02-769-6841

- 중국 청도 중소기업지원센터 : +86-532-8579-3240
- 인도네시아 코리아데스크 : +62-21-5292-1302
- 말레이시아 코리아데스크 : +60-3-2267-3403r
- 미국 산업기술협력관 : +1-212-826-0900
- UAE 산업기술협력관 : +971-4-435-7650
- 일본 산업기술협력관 : +81-3-6273-4012
- 독일 산업기술협력관 : +49-69-2429-9260
- 중소기업진흥공단 녹색기술처 : 02-769-6862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홈페이지 참조)
- 중소기업 정책정보 : www.bizinfo.go.kr



궁금해요! 중기맨

- 중진공 상주 산업기술협력관과 개별상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개별상담은 산업기술협력관 담당자(스페인, 이태리 : 02-769-6706)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비즈니스 매칭, 정보제공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용어 설명

- APEC중소기업혁신센터
APEC 역내 중소기업의 발전과 성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제협력처내 설치·운영하고 있는 센터로서, APEC 역내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해외업체와의 상담회, 국제 컨퍼런스 등을 추진하고 있음.



1-11 남북협력지원

북한진출 중소기업 상담·자문, 연계지원

북한진출 희망 중소기업에 초기 사업구상에 필요한 상담, 자문 및 자금·컨설팅 등의 체계적 지원은 물론, 진출후에도 경영안정에 필요한 다양한 중진공 지원사업을 연계해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대북 위탁가공구역, 투자협력사업 등의 방식으로 남북경협사업을 추진코자 희망하는 중소기업
- 개성공단 등 북한에 이미 진출하여 가동중인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단순교역 업체는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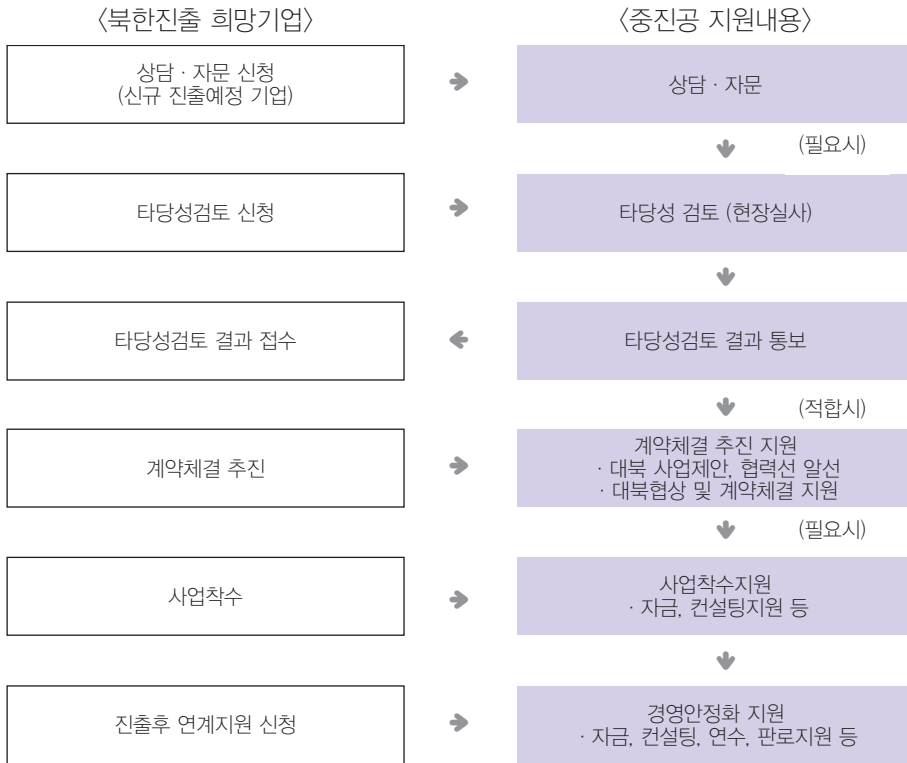
지원 분야

- 상담·자문 및 정보제공
 - 초기 사업구상 등 상담, 대북사업계획의 타당성검토·자문
 - 사업타당성 인정 시 대북 사업제안·협력선 알선, 계약 지원
- 자금·기술지원
 - 중진공의 국내 기존 자금에서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
 - 개성공단 내 협동화사업 추진 등 입주 지원
 - 진출시에 필요한 기술·경영컨설팅 지원
- 진출후 경영안정화 지원
 - 경영안정화에 필요한 중진공의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
 - 북한 현지공장에 전문가 파견을 통한 기술·경영지도
 - 북한 현지 연수, 국내외 판로지원 등의 연계지원

신청 · 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녹색기술처 남북협력팀으로 수시 상담 및 신청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녹색기술처 남북협력팀 : 02-769-6864



용어 설명

- **대북위탁가공교역**
북한에 가공임 지급조건으로 설비와 원·부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출하고, 가공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제3국에 수출하는 사업방식
- **투자협력사업**
북한 내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직접투자방식
- **단순교역**
남북한간 매매계약 등에 의해 물품을 단순 반입·반출하는 사업방식



궁금해요! 중기맨

- 북한진출에 관심이 있는 업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먼저 북한진출을 희망하는 분야·사업아이템에 대하여 중진공 남북협력팀과 상담(방문·유선)을 하시고, 진출이 가능한 분야로 판단되면 「대북진출사업 타당성 검토」를 신청하셔서 보다 상세한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북한진출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업체에 대해서는 대북사업제안, 협력선 알선, 계약체결 등 진출과정 전반을 중진공이 체계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대북진출사업 타당성 검토」는 성공적인 북한진출을 돕기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1-12 외국전문인력 도입지원

외국전문인력 활용에 소요되는 체재비, 항공료 발급비용 지원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마케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국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해외우수인력의 발굴·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전문인력난 해소 및 대외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지원 규모 190명 (전체 예산 34억원)

* '11년 지원현황 : 신청인원 374명 중 224명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1,300만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의거,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정보처리,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서비스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 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동사업 참여이력에 문제가 있거나 지원목적이 아닌 용도로 외국인력을 활용한 기업
- 보조금 반환 미이행 또는 진행중인 기업

지원 내용

- 외국전문인력을 국내에 도입하여 활용하는 경우 인력발굴, 사증추천, 소요비용(체재비, 항공료, 발급비용) 지원

■ 도입인력 자격요건

구 분	내 용
학 ·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규 대학(원)의 기술 및 경영분야 학위취득자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분야 박사학위자 해당분야 석사학위자는 2년이상의 해당분야 경력보유자 *국내대학 석사학위 취득자는 경력 무관 해당분야 학사학위자는 5년이상의 해당분야 경력보유자 비학위자는 10년이상의 해당기술분야 경력보유자
체류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E-3(연구), E-7(특정활동) 사증소지자 및 이에 준하는 자격 보유자 관리자, 전문가, 공학기술자(기능원 제외), 개발자, 연구원, 디자이너 등 ▷ 단 선진국인력의 경우 C-4, E-4 사증소지자 및 준하는 자격보유자도 가능

* 보조금 지원 없이 사증추천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 사증발급 요건에 따름

* 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해당자격 증빙서류 제출 및 이력검증 실시

* 선진국 : G7(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이태리, 캐나다) 및 과기부 선정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상위 10개국(스위스, 핀란드,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룩셈부르크)

■ 지원내용 및 한도 (업체당 4명 이내)

구 분	내 용
체 재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1,000만원/인 ~ 3,000만원/인 이내 *인력의 학력, 경력, 연봉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 차등화
항 공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입인력 입국항공료 지원(Economy 국제선, 편도 기준)
인력발굴 및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진공 등록 인력발굴 전문기관에 발굴 의뢰 또는 업체 자체 발굴 발굴비용 지원 : 수도권 200만원/인, 지방기업 300만원/인 한도
사증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E-7(특정활동) 사증(MSA) 발급을 위한 고용추천서 발급

* 인력의 국내 근무기간(고용계약에 의거 3개월이상 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

* 단, 선진국인력의 경우 3개월미만 활용가능

신청 · 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별도 첨부 증빙자료는 현장 실태조사시 확인

심사 · 평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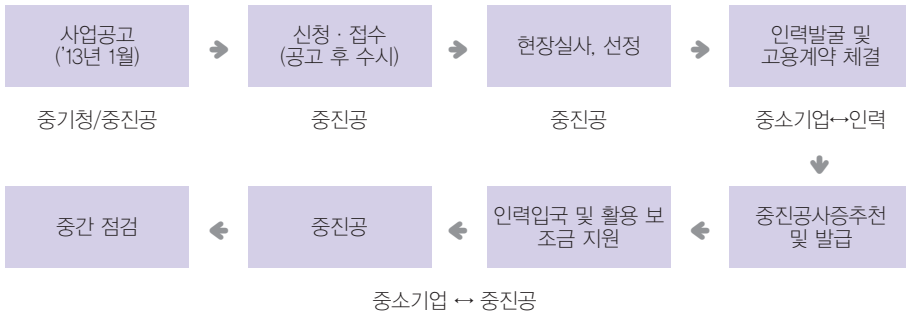
- 기업현황, 기술성, 시장성, 도입타당성, 기대성과, 고용창출 및 저탄소 녹색기업 우대 등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별도 증빙자료*

*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유선상담을 통하여 실태조사일 협의 후, 안내메일 발송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 042-481-4513
-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력개발처 : 02-769-6475



궁금해요! 중기맨

- 외국전문인력도입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인력을 도입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선진국 이외의 국가의 인력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경력 조건은 도입인력 자격요건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1-13 중소기업 그린비즈 컨설팅

전문컨설팅을 통한 우수그린비즈 육성

중소기업의 녹색경영활동을 진단하고 개선이 필요한 과제 중심으로 중장기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여 우수그린비즈 육성

지원 규모 200개사, 15억

* '12년 지원현황 : 194개사, 18.4억원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상시 종업원수 10인 이상인 기업을 원칙으로 하며, 한국산업분류 중 제조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9) 제조업 코드번호 : 10~33

지원 내용

그린비즈컨설팅

· 녹색경영 전문컨설턴트가 진단 및 개선활동 지원

녹색경영
수준평가

· 컨설팅 후 녹색경영 수준도 측정
· 평가기관 : 표준협회

우수그린비즈
선정우대

· 평가결과 SA등급의 경우 우수그린비즈로 선정하여 우대

지원조건

총사업비 (투입일수, 사업기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2,000만원 이내 (26MD이내, 6개월)	1,500만원 이내 (총 사업비의 75% 이내)	500만원 이내 (VAT 별도)

신청 · 접수 13년 3월중 신청접수 예정

- 온라인(중소기업 그린넷, www.greenbiz.go.kr)을 통한 신청서 접수

제출 서류 녹색경영평가보고서를 신청시 제출

* 계획서 양식은 중소기업 그린넷(www.greenbiz.go.kr) 공지사항에 게시

처리 절차

구 분	내 용
온라인 신청 접수	· 중소기업 그린넷(www.greenbiz.go.kr)을 통한 접수
서면평가 및 심의조정위원회	· 서면평가(중소기업진흥공단) · 심의조정위원회(중기청)
부담금 입금	· 지원확정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기업부담금 입금
협약체결	· 4자협약(중진공, 한국표준협회, 지원기업, 수행기관) · 협약은 그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체결
컨설팅 수행	· 중간보고(지원기업) 및 점검(지방청) · 완료보고(지원기업) · 중간 및 완료보고는 그린넷을 통한 보고서 등록
녹색경영평가	· 한국표준협회 주관
사후관리	· 고객만족도 조사, 완료점검(지방청) 및 사업비 정산

문 의 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녹색기술처 : 02-769-6915

궁금해요 ! 중기맨

- 수행기관 및 컨설턴트는 어떻게 선정하는 건가요?

☞ 중소기업 그린넷에 수행기관 및 수행전문가(컨설턴트)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사업신청시 중소기업 그린넷에서 수행기관 및 수행전문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1-14 해외녹색규제 협력대응

수출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친환경 부품·소재 공급망 구축지원

완제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또는 다국적 기업에 부품·소재를 공급하는 중소기업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친환경 부품·소재 공급망 공동구축 지원

지원 규모 15개 컨소시엄(165개사), 22억

* '12년 지원현황 : 10개 컨소시엄(110개사), 17억원 지원

지원 대상

- 주관기업 : 매출액 100억원, 수출비중 20%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중견·중소기업으로 최소 10개 내외의 협력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
- 협력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상시 종업원 수 10인 이상
 -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지원 내용

- 수출모기업과 협력업체간 녹색공급망관리시스템 개발, 구축 및 운용교육
- 해외 녹색규제 대응을 위한 에너지·온실가스 관리체계, 유해물질관리, 녹색경영 사내전문가 양성 등 녹색경영시스템 구축
- 지원조건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현금	현물
15억원 이내 (구축기간 1년 이내)	총 사업비의 75% 이내	기업부담의 60%이상 (총사업비의 15% 이상)	민간부담 중 현금을 제외한 금액

* VAT 별도(기업부담)

신청 · 접수 13년 3월중 신청접수 예정

- 온라인(중소기업 그린넷, www.greenbiz.go.kr) 및 오프라인 통한 접수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를 신청시 제출

- * 계획서 양식은 중소기업 그린넷(www.greenbiz.go.kr) 공지사항에 게시

처리 절차

구분	내용
온라인 신청 접수	· 중소기업 그린넷(www.greenbiz.go.kr)을 통한 접수
평가 및 선정	· 대면평가(중소기업진흥공단), 현장평가(지방청) · 심의 및 선정(중소기업청)
협약체결	· 3자협약(중진공, 지원기업, 수행기관) 체결
사업착수	· 진도보고(지원기업) 및 점검(지방청) · 완료보고(지원기업) · 중간 및 완료보고는 그린넷을 통한 보고서 등록
컨설팅 수행	· 진도보고(주관기업) 및 점검(지방청) · 완료보고(지원기업) 및 점검(지방청)
사후관리	· 성과관리 등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녹색기술처 : 02-769-6915



궁금해요! 중기맨

- 수출비중 20%는 어떻게 확인 하나요?

☞ 수출 증빙자료는 한국무역협회, 은행 등 기타 공인된 기관의 발급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15 중소기업 TRIZ 보급 · 확산 사업

중소기업 현장애로기술 해결 및 기술개발 지원

현장애로기술 및 기술개발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TRIZ(창의적문제해결 이론) 기법을 활용한 기술역량 강화 지원

* TRIZ는 러시아 알트슐러 주도로 1946년부터 발명/연구개발/기술문제해결을 위한 이론

지원 규모

5개 중소기업(조정가능)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중소기업 엔지니어 TRIZ 교육(국제트리즈협회 인증 과정 1 Level 수준)
- 중소기업 TRIZ 기술컨설팅(14MD 내외)
- 지원조건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2012년 기준)
기업부담금 외 비용	100만원

* 업체별 교육(2인) 및 컨설팅지원 포함 기준이며 '13년 기업부담금 규모는 미확정

신청 · 접수

13년 초 신청접수 예정

- 온라인(포탈사이트 korustech.sbc.or.kr) 통한 접수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를 신청시 제출

* 기타 사업안내 및 양식은 포탈사이트(korustech.sbc.or.kr) 공지사항에 게시

처리 절차

구분	내용
온라인 신청 접수	· 포탈사이트(korustech.sbc.or.kr) 통한 접수
평가 및 선정	·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중진공) · 심의 및 선정(내·외부평가위원)
협약체결	· 3자협약(중진공, 지원기업, 수행기관) 체결
사업추진	· 필수 교육과정 이수(지원기업) · 컨설팅 실시(수행기관 및 지원기업) · 진도보고(수행기관) 및 점검(중진공) · 완료보고(지원기업 및 수행기관)
사후관리	· 성과관리 등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녹색기술처 : 02-769-6862



궁금해요! 중기맨

- 모든 산업에 TRIZ 기법이 적용 가능한가요?
☞ 산업과 무관하게 TRIZ 기법 적용가능하나, 제조기반 중소기업에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됩니다.



1-16 연수사업

중소기업 CEO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중소기업의 CEO 및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현장실무 적용능력의 배양 및 신경영기법, 신기술 습득으로 중소기업의 경영·기술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연수인원 : 57,450명('12년 7만명)

연수신청대상

중소기업 경영자 및 종사자, 중소기업 취업대상자

연수 내용

- 7,000여명의 풍부한 강사진과 총 350개 다양한 공개집합연수과정 개설
- 기업의 교육훈련 니즈에 따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설계·운영(맞춤연수)
- 생산현장을 떠나기 어려운 중소기업 종사자를 위해 기업현장을 찾아가서 연수 실시(기업현장연수)
- 수요자들의 교육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인터넷·우편연수과정 제공(원격연수)
-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부 정책과 연계된 연수과정 운영(정책연계연수)
 - 청년층의 창업촉진을 위한 맞춤형 청년창업연수 실시
 -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실무연수과정 및 취업연계 과정 편성·운영
 - 경제 균형발전을 위한 대·중소기업동반성장기반을 구축하는 전문기술연수 실시

연수 과정

		연수 분야	연수 내용	
Off line	공개 집합 연수	최고경영자분야	중소기업 CEO, 글로벌 마케팅 경영전략 등	
		기술 연수	생산기술분야	기계·금속, 측정, 플라스틱, 표면처리기술 등
			디지털기술분야	전기·전자, 반도체·통신, PLC기술 등
			IT·자동화분야	ERP, 자동화, CAD·CAM·CAE, CATIA 등
		품질분야	자재·설비관리, 현장·품질혁신, ISO 등	
		경영분야	조직·인사, 마케팅, 무역, 회계·재무 등	
	맞춤연수		개별기업의 니즈를 반영, 연수과정을 설계하여 실시하는 연수	
	국제연수		외국인초청, 해외파견 및 해외현지기업 연수	
	한마음연수		조직분위기 쇄신으로 노사화합과 생산성 향상 도모	
	기업현장연수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연수	
On line	원격 연수	인터넷연수	인터넷 및 우편통신을 활용하는 연수, 항상+이러닝의 혼합형(Blended) 연수, 스마트폰 및 테블릿 PC를 활용하는 연수	
		우편통신연수		
		모바일연수		

제출 서류 연수신청서(훈련위탁의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기업할인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분)

연수비 감면지원

- 소기업, 신규연수과정 등 연수비 20~50% 감면
 - * 신규연수과정은 2013년 신규로 개설된 연수과정(원격연수를 제외한 NEW 표시)
- 교육시간 8시간 이상인 경우, 연수비의 약 40% 고용보험 환급 가능
 - 신청기관: 연수비 환급신청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 신청시기: 교육종료 후 15일 이후
 - 신청서류: 훈련비용지원신청서(소정양식), 수료증 사본, 사업자 통장사본, 계산서 사본 또는 법인카드 영수증 사본
 - * 연수대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문의 바랍니다.
- 연수수료 후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고용보험 환급신청 후 수령

〈연수비 감면제도〉

연수과정	적용 대상 및 절차	할인율
공개집합연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소기업	20%
	지방소재(수도권이외지역) 소기업	50%
	신규과정(연수과정상의적합판정과정)	30%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기업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 기타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문의처

- 중소기업연수원(안산) : 031-490-1472, <http://sbti.sbc.or.kr>
- 중소기업호남연수원(광주) : 062-250-3000, <http://gjti.sbc.or.kr>
- 중소기업대구경북연수원(경산) : 053-819-5001, <http://gsti.sbc.or.kr>
- 중소기업부산경남연수원(창원) : 055-548-8045, <http://jhti.sbc.or.kr>



궁금해요! 중기맨

-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결제해도 노동부 고용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 개인카드로 결제시 노동부 고용환급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법인카드 또는 현금(무통장 입금)으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용어 설명

- 모바일러닝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사용자를 위한 '중소기업연수원 모바일러닝(<http://mlearn.sbc.or.kr>)' 앱(App)을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연수생들이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는 모바일 학습 환경제공



1-17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자에게 창업자금 지원

청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쏠과정을 일괄 지원하여 젊고 혁신적인 청년창업CEO를 양성하는 지원프로그램입니다.

지원 규모 253.9억원, 1년간 최대 100백만원, 총사업비의 70% 이내

- * 총 모집인원 : 300명 내외
 - 경기도 안산(입소형) 및 지방 3개 권역(입소 및 준입소형) 지원
 - 지방 3개 권역 : 호남(광주광역시), 대구경북(경북 경산), 부산경남(경남 창원)
- * 신청인은 총사업비의 30% 이상 부담(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

지원 대상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미만 기업의 대표

지원이 안되는 경우

- '10~'12년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 선정자
- '10~'12년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에서 시행한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중인 자 또는 탈락, 포기한 자
-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등

지원 업종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기술집약업종(제조업 및 지식 서비스업)

선정 절차 (1단계) 서류심사 → (2단계) 면접심사 → (3단계) 심층심사

지원 내용

- 창업공간 : 사관학교(안산, 광주, 경산, 창원)내 창업준비 공간을 제공
- 창업코칭 : 전문인력을 전담교수로 1대1 배치하여 창업 전과정 집중코칭
- 창업교육 : 경영역량과 창업분야의 전문지식 등 체계적 기술창업 교육 실시
- 기술지원 : 제품설계(CAE, 역설계 포함), 시제품 제작 등 제품개발 과정의 기술 및 장비 지원
- 사업비지원 : 창업활동비, 기술개발비, 시제품제작비 등 사업비 지원
- 연계지원 : 정책자금, 투자 및 보증, 판로 및 입지 등 연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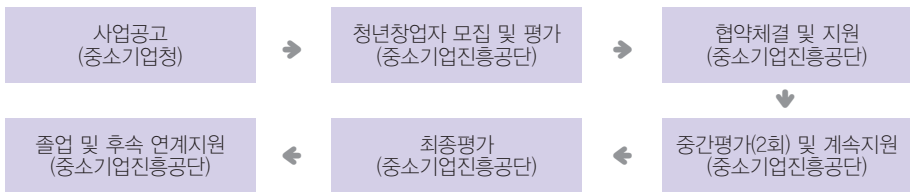
신청 서류

- 사업참가(입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접수

- 신청기간(예정) : 1차 1월 중, 2차 2월 중
- 창업정보관리시스템(www.changupnet.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 031-490-1372/ 1373/ 1371

02

중소기업중앙회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2-1 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화 지원 · 99
- 2-2 무역피해구제 지원센터 운영 · 101
- 2-3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 · 104
- 2-4 중소기업의 PL(제조물책임) 지원 · 106
- 2-5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사업자금 지원 · 108
- 2-6 코업비즈(Coupbiz) · 112
- 2-7 업종공통 기술개발사업 · 114
- 2-8 중소기업 공제사업자금 지원 · 117
- 2-9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제도(노란우산공제) · 121
- 2-10 외국인력지원 · 124
- 2-11 해외동포(H-2) 고용지원 · 127
- 2-12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 · 129
- 2-13 중장년 일자리 희망 사업 · 132
- 2-14 중장년 재취업 지원사업 · 134
- 2-15 산업기능요원 활용 지원 · 136
- 2-16 북한이탈주민취업지원사업 · 138
- 2-17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지원제도 · 141
- 2-18 사업조정제도 · 143
- 2-19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 · 146
- 2-20 중소기업 문화경영지원 · 148
- 2-21 중소기업 보증공제제도 운영 · 150

2-1 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화 지원

경영 원활화를 위한 세대간 아름다운 바통터치 지원

중소기업이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통해 고유기술, 전문인력, 경영노하우 등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거나 혹은 가업승계를 완료한 중소기업

지원 내용

- 가업승계 컨설팅 및 상담 지원(연중)
 - 상속·증여세 등 가업승계 관련 컨설팅 및 상담
 - 상담방법 : 온라인(www.successbiz.or.kr) 또는 방문·전화
- 명문 장수기업 포상(5월)
 - 업력 30년 이상 기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한 중소기업 발굴·포상
- 가업승계, 아름다운 바통터치(9~10월)
 - 중소기업 1·2세대 간 소통을 통해 기업의 비전을 공유하고 가업승계의 어려움 해소
- 가업승계 정보제공(연중)
 - 가업승계 전국순회 설명회, 매뉴얼·소식지·사례집 발간
-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 경영후계자 모임 운영(연중)
 - 경영후계자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기업경영 도모
 - 가입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전화 *회원 200여명, 9개 지역분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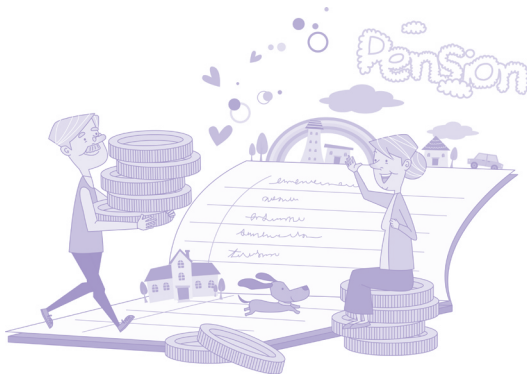
● 경영후계자 교육

구 분	가업승계기초과정	가업승계심화과정
교육시기(기간)	3월, 8월 (2회) / 2박 3일	4~7월, 9~12월(2회) / 4개월
교육인원	30명(회당)	30명(회당)
교육비	50만원(전액 센터지원)	380만원(40%~60% 센터지원)

신청 · 접수 연중 수시 (개별 지원 사업별로 신청필요)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 : 02-2124-3185~7





2-2 무역피해구제 지원센터 운영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 5,000만원 이내 지원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홍보 및 지원을 통해 수입의 급증 또는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규모 무역피해구제 제도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1.5억)

* 12년 지원현황 : 신청기업 2개사 중 2개사 지원, 업체당 2,500만원

지원 대상

- 외국으로부터 수입으로 인한 덤핑, 불공정무역행위 등 무역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무역위원회 구역구제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

유의 사항

- 무역위원회 조사개시결정 이후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최종판정 후 3개월 이내 신청가능
- 국내 기업 간의 특허권 분쟁, 외국계 기업인 경우 사안에 따라 지원이 거부될 수 있음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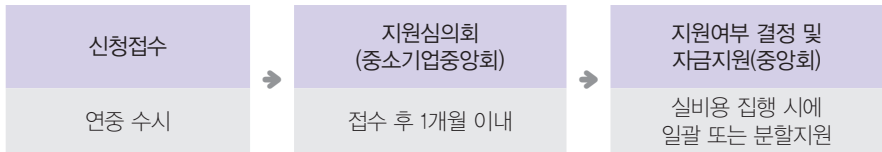
- 무역피해구제 제도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 5,000만원 한도 내)
- 무역피해에 대한 사전 조사,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 무역구제분야 전문가 상담서비스 지원

신청 · 접수 연중 수시

신청 서류

- 신청공문
- 조사신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로부터 통지 받은 조사신청서(또는 조사 개시결정서) 사본
- 대리인(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과의 계약서 사본
- 약정서(소정양식)
- 무역구제신청을 위한 예산지원신청서(소정양식)
- 무역구제 지원신청 현황(소정양식)
- 계좌통장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 수입비용지출 증명서류 (예 : 무통장입금증, 입금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 : 02-2124-3226
-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 02-2110-5551~60
- 무역투자지원센터 (www.kbiz.or.kr/trade)
- 중소기업 정책정보 (www.bizinfo.go.kr)



용어 설명

- **무역구제제도** 불공정무역 등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수입, 특정외국 물품의 수입급증 등에 대응하여 관세부과, 수량제한 등으로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 무역구제 유형(부과요건)
 - 덤핑방지관세제도 :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상계관세제도 : 외국정부의 직·간접 보조금 지급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세이프가드제도 : 외국물품의 수입급증에 따라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발생 또는 우려의 경우
 - 불공정무역행위 : 지적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위반 및 기타 건전한 수출입질서 저해로 국내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경우





2-3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

전문업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활동을 지원

전문업종 중심의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파견과 글로벌 전략품목 생산업체로 구성된 수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시장개척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3,400개사 내외 (전체 예산 190억원)

* '12년 지원현황 : 전시회 125회, 시장개척단 29회, 수출컨소시엄 13회 총 130억 지원

지원 대상 업종별 중소기업 전문단체 · 협회 · 조합 및 유관기관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지경부 등 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전시회는 제외

지원 내용

- 해외전시회 : 임차료, 장치비, 전시물품 운송비 등 직접경비의 일부, 홍보부스, 홍보물 제작 등 공동경비 지원 (업체당 10백만원 이내)
- 시장개척단 : 상담장 임차료, 바이어 섭외비, 통역 등 공동경비 지원 (업체당 10백만원 이내)
- 수출컨소시엄 : 글로벌 전략품목 주관단체 소요금액의 70~100% 지원(컨소시엄 당 2억 한도 이내)

신청 · 접수 중소기업해외전시포탈(www.sme-expo.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메뉴 중 “지원사업 → 주관단체 → 참가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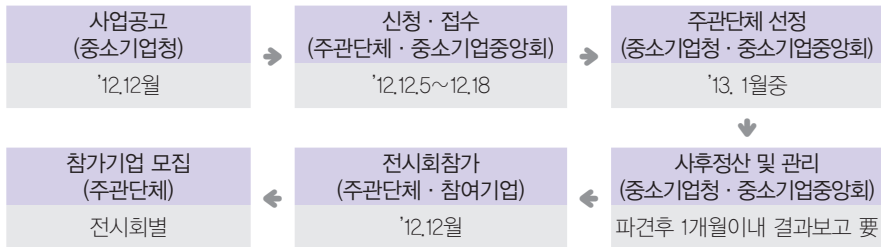
신청 서류

- 한국관(공동부스) 구성 계획안,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관단체 PT자료 및 수출관련업무 수행 실적 설명 자료, 전년도 전시회 파견업체 명단 및 후속 Follow-up 실적(업체별 수출실적 등 파견이후 현재까지 파견 성과 평가자료)

참고 및 증빙서류

-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전시회 브로셔 등), 부스임차 계약서(사전 임차의 경우), 전시물품 운송료 표준단가표 등
- 전시참가 희망업체 수요조사 결과
- 부스임차료 등이 신청 시기에 확정되지 않은 해외전시회는 관련 증빙 자료를 전년 기준으로 제출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 : 02-2124-3225~8
- 중소기업 해외전시 포탈 (www.sme-expo.go.kr)
- 중소기업 정책정보 (www.bizinfo.go.kr)



궁금해요! 중기맨

- 한국관 단체참가가 아닌 기업의 개별참가 전시회 지원은 지경부 산하 전시 산업진흥회(www.akei.or.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중소기업의 PL(제조물책임) 지원

제조물책임보험 단체가입으로 보험료 경감

중소기업이 제조물책임(PL)을 부담하는 경우에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으로 단체보험 가입시 개별 가입시 보다 보험료가 20% 이상 저렴하여 중소기업의 경비 경감을 지원합니다.

PL단체보험

- 가입대상 : 완성품 제조업체, 원재료·부품 제조업체, OEM업체, 수입업체 등
 - * 제조 또는 가공된 모든 동산으로서 원재료, 부품, 완성품 등이 대상
- 가입유형 : 가입유형(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제품종류, 판매지역(국내, 해외), 매출액 등에 따라 결정

[국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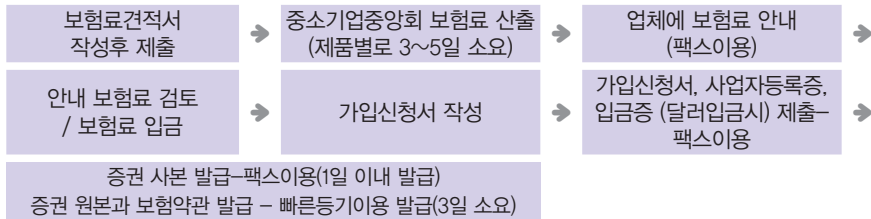
가입유형	“가”형	“나”형	“다”형	“라”형	기타
1사고당/총보상한도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임의설정)
자기부담금(1사고당)	최소 30만원 부터				

[해외용]

가입유형	“A”형	“B”형	“C”형	“D”형	기타
1사고당/총보상한도	US\$10만	US\$30만	US\$50만	US\$100만	(임의설정)
자기부담금(1사고당)	최소 US \$ 1,000 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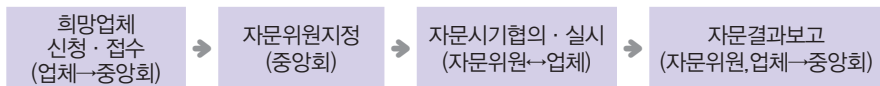
- 보험료가 개별 가입시보다 20~35% 저렴
 - * 장기가입자 및 각종 인증마크, 조달청 지정 우수제품 보험료 추가 할인

● 가입 절차



● PL교육(자문)

- 지원내용 : 강사(자문) 무료지원
 - * 강사는 PL자문단 자문위원 또는 외부 PL전문가 지원
- 지원대상 : 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
 - * PL교육의 경우 50인 이상(2개 이상 중소기업의 교육인원도 가능)
- 교육(자문)내용
 - PL법, 최근 PL동향 등 PL에 관한 사항
 - 기업 종사자의 PL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 업종별 PL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
- 교육(자문)장소 : 신청 조합(기업)이 희망하는 장소
- 교육(자문)시간 : 2~4시간 범위 내
- 신청·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개발팀 PL사업부
- 신청서류 : 보험료 산출질문서 Fax. 02-761-4432, 785-7663(홈페이지 www.plkorea.com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교육(자문) 절차



- 신청시기 : 수시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개발팀 PL사업부 : 02-2124-3081~3
 - * 홈페이지 : www.plkorea.com
- 중소기업 정책정보 : www.bizinfo.go.kr



2-5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사업자금 지원

협동조합 공동구매·판매 자금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에서 지원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원부자재 적기조달과 제품판매 원활화를 지원하기 위해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공동구매·판매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협동조합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조합
- 최근 2개월 이상 이사장(회장) 또는 상근이사가 결원 중인 조합
- 해산건의 중인 조합
-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이 아닌 조합 중 연합회 미 가입 지방조합, 연합회·전국조합 또는 지방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사업조합
- 이사의 수가 법정 최소인원인 5명(사업조합 2명)에 미달하는 조합
- 공동사업자금을 용도 외로 활용하거나 부실운영으로 시정 또는 경고조치 중인 조합

유의사항

- 중소기업이 아닌 조합원은 자금 수혜대상에서 제외
- 동일 조합원에 대한 연간지원총액은 해당조합 지원총액의 20/100이내

지원 규모

1,500억원(공제기금자금 200억원 + 중소기업은행자금 1,300억원)

* '12년 지원현황 : 8개 협동조합, 47억원 지원(공제기금자금 34억원, 중소기업은행자금 13억원)

지원 내용

- 대출금리
 - 기업은행자금 : 연 6.6~8.4% 수준(시중금리 적용, 신용등급별 차등금리)
 - 공제기금자금 : 연 5.35%(고정금리)
 - * 수수료 : 한도배정금액의 월 54/100,000(연 0.65%)를 사업자금회비로 매월 납부
- 대출기간 : 1년 이내로 익년도 자금배정 시기까지
- 대출 지원한도 : 최근 결산년도 자기자본(출자금+잉여금) 10배 이내
 - * 설립 3년 미만으로 처음 신청한 협동조합은 3억원 이내
- 채권보전 : 신용, 부동산, 보증서 중 선택
 - 신용 대출시 이사장(회장) 등 실제 경영인 보증 입보
- 대출약정기간 : 4년 변경(조합 임원 임기와 동일)

신청 · 접수 '13. 2~3월중 신청 · 접수

- 한도 배정은 매년 2월~3월 중 신청접수. 추가한도 및 임시한도는 연중 수시 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정회원은 직접 제출, 중소기업중앙회 정회원이 아닌 경우는 소속된 연합회 · 전국조합을 경유하여 제출 (우편 또는 방문접수)

심사 · 평가 주요내용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자금심의회에서 공동사업 및 자금 활용 계획, 참여조합원수, 자체자금 조달계획 등을 심사

제출 서류

- 공동사업자금 기준한도신청서, 공동사업자금 활용계획서, 2013년도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서, 2012년도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조합 등기 부등본(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조합원명부(공제기금 자금 활용시에는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자 표시, 조합원 6개업체 이상 가입), 총회 의사록 사본(차입금한도 의결내용)
 - * 관련 신청서류는 협동조합 포털(www.johap.biz)의 「알림마당」에 상시 게시되어 있음

처리 절차

자금 한도배정 신청 안내 중앙회 → 조합	→	공동구·판매 사업 참여 신청안내 및 접수 조합 → 조합원사	→	자금 한도배정 신청 조합 → 중앙회	→	한도배정 및 추천 중앙회 → 기업은행	→
공동구·판매 물량 신청 안내 및 접수 조합 → 조합원	→	대출 한도거래 약정 체결 조합 ↔ 기업은행	→	공동구·판매 계약 체결 조합 ↔ 거래기업	→	물품공급 (세금계산서 교부) 조합 ↔ 거래기업	→
세금계산서 교부 조합 → 조합원	→	대출 신청 조합(원) → 기업은행	→	판매대금 및 구매자금 지급 기업은행 → 조합, 구매처	→	공동구·판매 대출금 회수 조합원 → 조합	→
대출금 상환 조합 → 기업은행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팀 : 02-2124-3103
-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 포털(www.johap.biz)의 「알림마당」 참조
- 중소기업 정책정보 : www.bizinfo.go.kr



궁금해요! 증기맨

- 공동사업자금의 대출기간이 '1년 이내로 익년도 자금배정 시기까지'라는 것의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 ☞ 공동사업자금을 활용하는 협동조합은 매년 3월~4월 중 자금 활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중앙회 자금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자금한도를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출기간은 '1년 이내로 익년도에 자금한도를 배정받는 시기까지'가 됩니다.
- 설립 1년 미만의 협동조합에 대하여 공동사업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공동사업자금의 대출 지원한도는 '최근 결산년도 자기자본(출자금+잉여금) 10배 이내'로 산출되며, 설립 1년 미만의 협동조합은 재무제표가 미확정이거나 없는 관계로 대출 지원한도를 산정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대출이 제한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 설명

- 자금 한도배정**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하듯이 대출 약정금액의 한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수시로 입출금하여 활용할 수 있음. 이자는 자금을 출금하여 활용한 기간만큼 산정하여 지불함.
- 추가한도 배정**
 매년 3월~4월 한도 배정한 금액 외에 조합이 필요한 시기에 자금 한도를 추가로 배정하는 것
- 임시한도 배정**
 공동사업의 1회전 기간 동안만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 자금 한도를 배정하는 것





2-6 코업비즈(Coupbiz)

중소기업을 위한 원부자재 구매 지원

코업비즈는 중소기업의 원부자재 구매 경쟁력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 보증기관, 금융기관 등이 지원하는 '금융통합형 전자상거래 공동구매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

- 제조업, 유통업 등 중소기업

코업비즈란?

- 구매대행을 활용한 통합구매로 원자재를 저렴하게 구매하여 공급하며, 무보증·무담보로 구매자금을 지원하는 e-Marketplace

특 징

- 통합구매로 개별기업 구매단가 대비 원부자재 5~10% 저렴
- 다양한 품목 소싱(철강류, 비철금속, 기계류, 산업용 화학제품 등)
- 구매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B2B 보증서(무보증·무담보) 발급 지원
- 온라인을 통한 편리한 주문 시스템과 안정적 공급
- 구매금액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신용보증기금 보증서)

유의사항

- B2B 보증서 발급은 '신용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을 활용 할 수 있으며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지원으로 조건 완화하여 발급

이용 방법



신청 및 문의처

- 신청서 : 코업비즈 웹사이트 참조 (www.coupbiz.com)
- 문 의 : 중소기업 중앙회 공동사업팀(02-2124-3101~3)



궁금해요! 중기맨

- 코업비즈에서 구매 가능한 품목은 무엇입니까?
 - ☞ 모터, 베어링 등 코업비즈 웹사이트에서 구매 가능한 품목 확인이 가능하며, 품목이 없는 경우에는 코업비즈 담당자와 협의를 통하여 품목 추가, 구매가 가능합니다.
- 서울보증보험 B2B전자보증서 발급 요건은 무엇입니까?
 - ☞ 법인 제조 기업으로 신용등급 7등급까지 가능합니다.
- 코업비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제 방법은 무엇입니까?
 - ☞ 코업비즈에서는 '현금', '지급보증서',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계약 중소기업은 무보증 신용으로 원자재 구매가 가능합니다.



용어 설명

- 코업비즈(CoupBiz)
조합(Cooperative)과 위(Up) 그리고 사업(Business)의 합성어로 사업의 경쟁력을 향상 시킨다는 뜻입니다.



2-7 업종공통 기술개발사업

협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업종공통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제품·공정 등을 협동조합이 발굴하여 보급·확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제품개발 및 공정혁신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규모

- 21개 협동조합(전체예산 42억원)
* '12년 지원현황 : 신청조합 35개중 21개 협동조합 선정지원, 조합당 평균 1.8억원

지원 대상

- 주관기관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주관기관의 회원사

지원이 안되는 조합

- 해면 또는 해산건의 중인 조합
- 이사장(회장)과 상무이사 모두 공석인 조합
- 세금 체납중인 조합

참여기업 우대사항

- 주관기관인 협동조합은 비영리기관으로 기술혁신촉진법에 의거 기술료 면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녹색인증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우수 그린비즈 인증기업, 정보화경영체계 인증기업, 싱글PPM 품질인증

기업,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협업사업계획 승인 주관기업, 수·위탁거래 우수기업, 사회적 기업 등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경영성과 우수기업 등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제품·공정 등을 협동조합이 발굴하여 보급·확산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 이내, 최고 2억원까지 지원
 - 협동조합 사업비 부담액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 이어야 하며, 이중 민간부담금의 5% 이상은 현금부담

신청접수

- '13. 3월 공고, 4월 신청·접수
 - * 사업공고 후 중소기업뉴스 등 안내 및 설명회 개최
- 신청방법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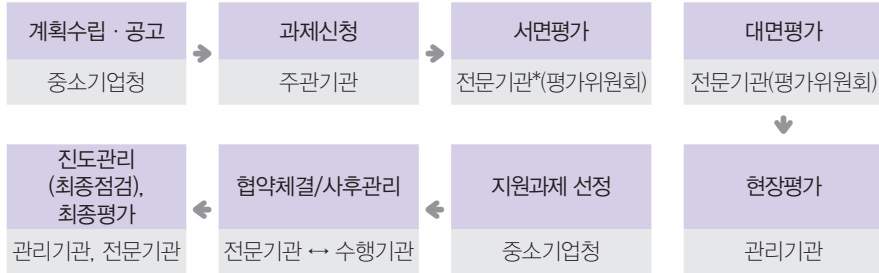
심사·평가 내용

- 기여도(협동조합 R&D역량제고) 기술성(기술개발의 필요성, 기술개발 과정·방법, 목표달성도), 사업성(시장규모, 시장의 성장성, 시장진입 가능성,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대면평가 (60%), 현장평가(40%)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경영현황표, 비목별 소요명세, 연구기자재 구입계획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청렴협약서 등

처리 절차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01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개발지원부 : 02-3787-0547
-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팀 : 02-2124-3101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 (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1661-1357(R&D 고객센터), 비즈인포(www.bizinfo.go.kr)



궁금해요! 중기맨

- 중소기업청 R&D 지원사업중 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게 있나요?

☞ 업종공동 기술개발사업 이외에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동 사업은 대학·연구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중소기업이 필요한 업계 공통 애로기술을 개발하여 협동조합을 통해 보급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입니다.



2-8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지원

네 종류의 대출로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 도모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를 대상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거나 어음수표, 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 및 단기운영 자금이 필요할 때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2013년도 계획 : 대출 3,500억원, 가입 업체 수 13,960개

대출종류	대출금액
부도어음대출(제1호공제금대출)	80억원
어음 및 수표대출(제2호공제금대출)	700억원
단기운영자금대출(제3호공제금대출)	2,220억원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대출(제4호공제금대출)	300억원
공동구판매사업자금대출	200억원

* 2012년 지원현황(11월말 현재) : 2,618억원, 가입업체수 13,499개

지원이 안 되는 업종

- 담배 · 알콜음료 증개업 또는 도매업, 주점업, 댄스홀 · 댄스교습소, 도박장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기타 중소기업중앙회장 지정업종은 제외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중소기업자

지원 내용

• 대출종류 및 지원 한도

대출종류	대출사유	지원 한도
부도어음대출 (제1호 공제금대출)	• 거래상대방의 도산으로 받은 상업어음 및 수표가 부도처리 되었을 때	부금잔액의 최고 10배 이내 - 무보증 : 1.5~6배 이내 - 담보 : 10배 이내
어음 및 수표대출 (제2호 공제금대출)	• 거래로 받은 상업어음 및 수표를 현금화 하고자 할 때	부금잔액의 최고 10배 이내 - 무보증 : 2~5배 이내 - 담보 : 10배 이내
단기운영자금대출 (제3호 공제금대출)	• 일시적으로 단기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부금잔액의 최고 10배 이내 - 무보증 : 1~3배 이내 - 담보 : 10배 이내
매출채권보험 담보대출 (제4호 공제금대출)	•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의 결제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예방과 외상매출채권의 조기현금화가 필요한 때 *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을 가입한 기업 대상	부금잔액의 최고 20배 이내 (일석e조보험 금액의 125%)
공동구판매사업 자금대출	• 원부자재의 공동구매 및 생산제품의 공동판매 사업자금이 필요한 때	조합자기자본의 10배 이내

* 중소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

〈지원조건〉

대출 종류	부도어음대출 (제1호공제금대출)	어음 및 수표대출 (제2호공제금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 (제3호공제금대출)	매출채권보험담보대출 (제4호공제금대출)	공동구판매사업 자금대출
대출 이율	대출금의 1/10을 대손보전 준비금으로 공제	신용등급별로 5.00~9.10%	신용등급별로 5.00~9.10%	5.5%	5.35% (실세금리)
대출 기간	3년 (6개월 거치 30개월 분할)	180일 이내	1년~ 3년	180일 이내	1년 이내
담보 등	대출한도에 따라 담보			매출채권보험청구권의 근질권 설정	신용대출원칙 (필요시 보증인입보)

- * 중소기업중앙회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에 의한 이차보전사업대상의 대출이율 : 1.0~2.0% 감면
- * 제2호 · 제3호 대출시 자금 건전성을 위하여 대출금액(부금잔액 초과금액)에서 대손보 전준비금 1% 추가 공제함(담보대출시 0.1%)
- * 부금잔액 내 대출과 신용보증서 대출(100% 보증)은 대손보전준비금 공제하지 않음
- * 부금잔액 내 대출이율 : 5.0%, 담보 및 신용보증서 대출이율 : 6.0%

- 부금 종류 : 10만원 단위로 10종(10~100만원), 기타 2종 : 150만원, 200만원
- 월부금 만기 : 30, 40, 42, 50, 60개월(1억원 한도)
- 부금이자 등
 - 부금납부종료일 후 미해지 시 3개월마다 소정의 장려금 지급
 - 중도 해지 시 부금납입 회차가
 - ┌ 12회 미만인 경우 원금만 지급
 - └ 12회 이상 납부 시 소정의 이자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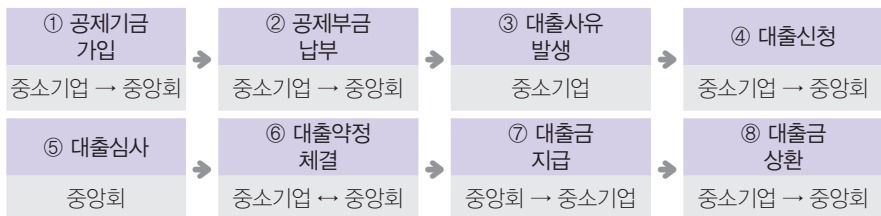
신청·접수

- 가입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대출팀 및 각 지역본부·지부(인터넷, 방문 및 팩스 가능)
- 대출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대출팀 및 각 지역본부·지부에 서류접수(인터넷 또는 방문)

제출 서류

- 가입신청 서류 : 가입청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신분증 사본
- 대출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2년간 재무제표(담당세무사 확인필), 사업장(주사무소, 공장) 부동산등기부등본, 대표자 소유(거주지 포함) 부동산등기부등본, 대표자 재산세과세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사본,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통, 법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처리 절차



문의처

- (가입 및 대출 상담) 중소기업중앙회 공제대출팀 : 02-2124-3270~6
- 중소기업 정책정보(www.bizinfo.go.kr)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홈페이지(http://fund.kbiz.or.kr)



궁금해요! 중기맨

- 공제기금 대출을 받은 후에도 부금납부를 계속해야 하나요?
 - ☞ 부금은 대출유무에 상관없이 공제가입(계약) 당시 정한 부금납부종료일이 될 때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대출 후 연속해서 3회 이상 부금을 미납할 경우 「공제기금 제 규정」에 의거 강제 해지 사유에 해당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도어음 대출업체가 다른 공제기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나요?
 - ☞ 부도어음대출(1호), 어음수표대출(2호), 단기운영자금대출(3호)을 총 대출한도액(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부금잔액 10배 이내에서 차등 적용)내에서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발행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도 할인이 가능한가요?
 - ☞ 정상적인 상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약속어음 중 은행도 발행어음만 대출이 가능합니다.(지급장소가 은행으로 되어있는 경우만) 또한 가계수표도 대출이 가능하나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 공히 대출 실행일 현재 180일 이내에 지급기일 및 발행일이 도래하는 어음 및 수표에 한합니다.
- 단기운영자금 대출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 단기운영자금 대출기간은 1년이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원금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 국세청에 신고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모두 매출채권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
 - ☞ 국세청에 신고된 전자세금계산서 중에서 세금계산서, 영세율계산서만 가능하며 면세계산서는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2-9 소기업 · 소상공人公제제도(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위한 퇴직금제도

사업주가 매월 일정부금을 납부하여 폐업, 사망,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 은퇴 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퇴직금마련 지원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폐업·사망, 퇴임·노령시 공제금 지급(연복리 이자율 적용)
 - 폐업, 사망, 질병·부상에 의한 법인대표 퇴임시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공제금 지급
 - 10년이상 납부한 가입자가 만 60세 이상이 되면 공제금 지급
-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 납입부금에 대해서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연300만원까지 사업주의 종합소득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노란우산공제 가입에 따른 절세효과 예시〉

과세표준	세율(%)	노란우산공제 절세가능액
12백만원 이하	6.6	300만원 × 6.6% = 198,000원
12백만원 ~ 46백만원 이하	16.5	300만원 × 16.5% = 495,000원
46백만원 ~ 88백만원 이하	26.4	300만원 × 26.4% = 792,000원
88백만원 ~ 3억원 이하	38.5	300만원 × 38.5% = 1,155,000원
3억원 초과	41.8	300만원 × 41.8% = 1,254,000원

* 노란우산공제 월납부금 250,000원 가정, 세율은 주민세 포함

- **수급권의 보호**
 - 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부도 등 사업실패시에도 안전
- **월부금의 150배까지 상해보험금 지급**
 - 공제 가입 후 2년 내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애 발생시 월 부금액의 최고 150배 이내 보험금 지급
- **납부 부금내 대출가능**
 - 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일 때 납부 부금내 대출 가능

가입 대상 소기업자 · 소상공인 사업주 대표(법인의 대표)

업종분류에 따른 소기업 · 소상공인의 범위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운송업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 도매업 · 소매업 · 서비스업 · 기타 업종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 * 영위하는 사업체가 비영리법인의 대표인 경우 가입할 수 없음
- * 사업자등록증 기준 주점업, 무도장 ·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은 공제가입이 제한됨
- *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50인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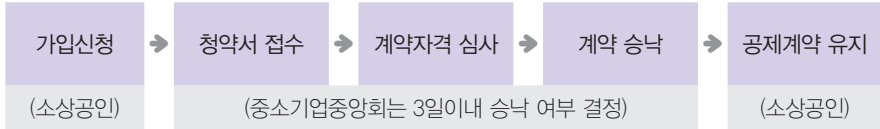
가입 기간 가입시부터 공제사유 발생시까지

월 부금 월 5만원 ~ 70만원(분기납 210만원까지 가능)

가입 방법 청약서를 제출하여 청약금(1회차 부금)을 납입

- * 자동이체 지정예금계좌는 청약자 본인 개인명의로 한함

가입 절차



- * 계약의 승낙 : 중앙회는 공제계약자로부터 청약서 접수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승낙여부 결정
- * 청약의 철회 : 공제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단순한 번심 등으로 인해 청약철회 가능
- * 계약의 취소 : 공제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약관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하였을 경우 등으로 인해 계약취소가 가능

가입 서류

노란우산공제 가입청약서(소정양식), 청약자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기타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문의 처

- 전국대표 콜센터 : 1666-9988
 -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 www.8899.or.kr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팀 : 02-2124-3240 ~ 6
- 중소기업 정책정보 : www.bizinfo.go.kr



2-10 외국인력지원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제조업종 외 농축산업은 농협중앙회, 어업은 수협중앙회, 건설업은 건설협회를 통해 지원

지원 내용

- ① 각종 신청대행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 사용자의 근로계약 체결 지원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등
 - 고용변동신고 및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
 - 업무상 재해 시 산재·사망신고 지원
 -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 ② 취업교육
 - 산업안전, 이탈방지, 기초기능, 한국문화 등 취업교육
 - 건강검진
- ③ 고충상담 및 편의제공
 - 통역지원(방문 및 유선)
 - 고용과 관련한 고충상담 및 상해수습 지원 등

신청 자격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제조업체

고용 기간

4년 10개월(3년+1년10개월)

* 성실외국인근로자 제도 도입 등으로 최대 9년 8개월 고용 가능

도입 국가

아시아 15개국

-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네팔, 캄보디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몽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태국, 베트남, 동티모르, 필리핀, 중국

고용 인원

내국인 고용 규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허용인원 상이

내국인 피보험자수	고용가능 총 인원	신규 고용인원	내국인 피보험자수	고용가능 총 인원	신규 고용인원
10인 이하	5인 이하	3명	151인 이상 200인 이하	25인 이하	5명
11인 이상 50인 이하	10인 이하		201인 이상 300인 이하	30인 이하	
51인 이상 100인 이하	15인 이하	4명	301인 이상	40인 이하	
101인 이상 150인 이하	20인 이하				

* 50인 이하 뿌리산업은 신규고용인원에서 +1명 추가로 고용 가능

* 지방기업 및 인력 부족율이 심한 업종은 20% 추가고용 가능(해당지역 및 업종은 2013년 1월 중 고시)

* 방문취업제를 통한 외국국적동포 고용 시 허용인원만큼 추가 가능

도입 쿼터

2013년도 쿼터 52,000명(제조업)

구 분	배정인원	비고
일반인력쿼터	42,600명	신청시기는 13년초 확정
재입국취업자	9,400명	수시접수
합 계	52,000명	

신청 · 접수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팀(본부) 및 지역본부(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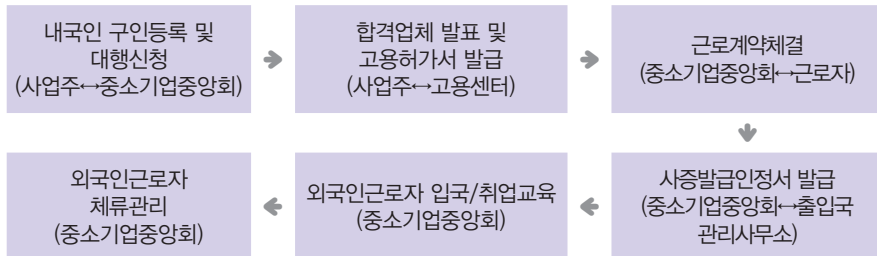
신청 서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서, 위임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서식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정보망(fes.kbiz.or.kr,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배정 기준 일정 요건에 따라 업체에 점수를 부여(가감)하고, 업체가 획득한 점수에 따라 신규외국인근로자를 배정

- 내국인 구인실적 등 4가지 요건에 의거 점수 부여(총점 100점)
- 출국만기보험 연체 등 3가지 요건에 의거 점수 감점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팀 : 02-2124-3331~2(fes.kbiz.or.kr)
- 중소기업 정책정보 : www.bizinfo.go.kr



2-11 해외동포(H-2) 고용 지원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중소기업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해외동포(H-2) 고용과 관련한 각종 행정 신고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제조업 및 서비스업종 중소기업

- * 제조업종 외 농축산업은 농협중앙회, 어업은 수협중앙회를 통해 지원
- * 해외동포 : 방문취업지자(H-2)로 입국한 중국, 구소련 출신의 외국국적 동포

지원 내용

- ① 고용 신청 관련 행정신고
 - 내국인구인노력 대행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
 - 근로개시신고, 근로계약기간 갱신신고, 고용변동 신고
 - 외국인근로자 업무상재해시 산재신고 지원
 - 계약기간 연장(취업활동기간 연장) 신청 등

도입 쿼터

30만 3천명(전 업종)

고용 기간

4년 10개월(3년+1년10개월)

고용 인원

내국인 고용 규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허용인원 상이

〈제조업〉

내국인 피보험자수	해외동포 고용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해외동포 고용인원
10인 이하	5명 이하	151인 이상 200인 이하	25명 이하
11인 이상 50인 이하	10명 이하	201인 이상 300인 이하	30명 이하
51인 이상 100인 이하	15명 이하	301인 이상 500인 이하	40명 이하
101인 이상 150인 이하	20명 이하	501인 이상	50명 이하

〈서비스업〉

내국인 피보험자수	해외동포 고용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해외동포 고용인원
5인 이하	2명 이하	16인 이상 20인 이하	7명 이하
6인 이상 10인 이하	3명 이하	21인 이상	10명 이하
11인 이상 15인 이하	5명 이하		

신청·접수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팀(본부) 및 지역본부(지부)

신청 서류 사업자등록증(영업허가증),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서,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신고서, 업무대행계약서 등

* 신청서식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정보망(fes.kbiz.or.kr,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팀 : 02-2124-3331~2(fes.kbiz.or.kr)



2-12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

청년미취업자 인턴채용 기업에 최대 1년간 고용비용 지원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에서의 인턴십과정을 통한 경력형성 및 직업 능력 배양으로 청년층의 취업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인턴 참여자 : 학교졸업 후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이 180일 미만인 만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자
- 인턴 실시기업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으로서 고용보험피보험자 5인 이상 사업장

지원 제외 · 제한 대상

- 인턴 :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단,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자는 제한 없음)
- 기업 : - 인턴지원협약체결 및 인턴채용 이전 1개월 이내 다른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한 기업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

인턴 채용 시 유의사항

-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의 당해기업 인턴참여 제한
- 외근 영업직 및 간호(조무)사, 이·미용사, 운전기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면허·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직위의 인턴 참여 제한

지원 규모 2,300명

* '12년 지원현황 : 인턴 2,280명 중소기업 채용연계

지원 내용

- 인턴과의 약정금액의 50%(최고 월80만원 한도)를 인턴기간(최대 6개월) 중 지원
- 정규직 전환 시 월 65만원을 최대 6개월간 추가 지원
 - * 지원기간 : 최대 1년(인턴 6개월,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신청·접수 2013. 1월말~12월말

- 우편 및 팩스 신청·접수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 및 지역본부)
 -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work.go.kr/intern/>)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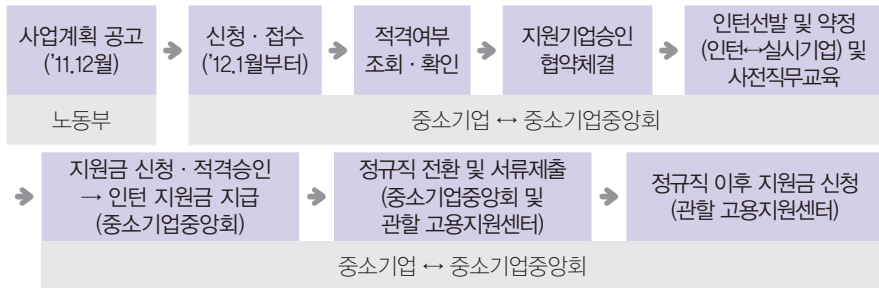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참여제한 및 부적격 대상 여부 확인

제출 서류

- 인턴 : 인턴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구직표, 신분증, 졸업(휴학)증명서
- 기업 : 인턴채용신청서, 구인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청년인턴제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다운로드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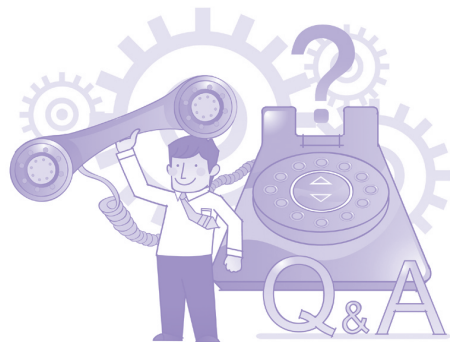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 : 02-2124-3385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www.kbiz.or.kr
- 중소기업 정책정보 홈페이지 : www.bizinfo.go.kr



궁금해요! 중기맨

- 인턴의 채용한도는 몇명인가요?
 - ☞ 최초의 인턴지원협약 체결(업체와 운영기관간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의 20%이내(소수점 이하는 절상)에서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인위적 감원시 제재사항은 무엇인가요?
 - ☞ 실시기업이 인턴기간 및 정규직 채용 후 지원기간 중에 다른 근로자를 정리하고 하거나 인위적 감원을 한 경우 그 감원 인원수만큼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며, 감원 일(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직일)로부터 1년간 인턴 추가채용이 금지됩니다.





2-13 중장년 일자리 희망 사업

퇴직 중장년인력의 중소기업 재취업 지원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퇴직 중장년인력을 중소기업에 채용 연계함으로써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아울러 중장년층 인력의 실업난 해소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중견전문인력 1,000명 이상 취업 지원(전체예산 5억원)

* '12년 지원현황 : 중견전문인력 1,794명 취업 지원(2012.12 현재)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고용보험법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
- 중장년인력

지원 내용

-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중견전문인력 알선
- 중견전문인력 : 구직자 이력 및 적성에 맞는 중소기업 알선 중장년 전직 교육 지원(희망시)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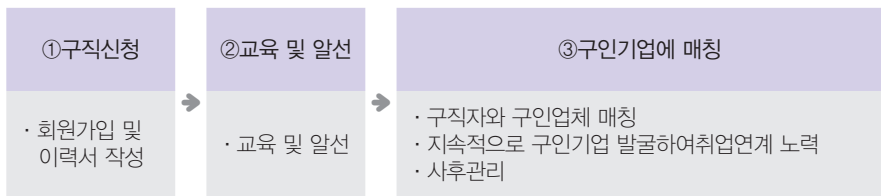
- 중소기업중앙회 중견전문인력 종합고용지원센터
-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 사이트 「커리어잡(www.careerjob.or.kr)」을 통해 구인, 구직 신청접수
 - * 상기 내용은 관련법 및 지침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신청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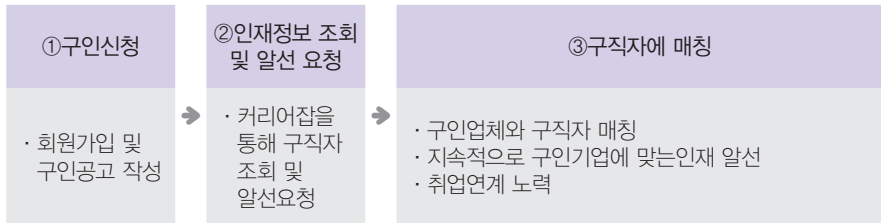
- 구인업체 - 구인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 중견전문인력 - 구직신청서, 이력서

처리 절차

• 구인업체



• 구직자



* 전직교육 희망자는 교육 신청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02-2124-3290~4

2-14 중장년 재취업 지원사업

중장년 재취업지원

중장년층을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배정하고 채용 연계함으로써 중소기업에 인력난 해소와 중장년층에게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중장년 2,000명 이상 인턴 및 정규직 전환 지원(전체 예산 60억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고용보험법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
 - ※ 업종 : 일반 중소제조업, 비제조업(비영리단체, 기관 포함)
 - 중장년 구직자
 - 중소기업에서 인턴 과정을 통한 정규직 채용 희망자
 - ※ 직종 : 생산, 경영, 일반사무, 노무 등

지원 내용

- 인턴기간 : 최대 4개월, 급여의 50%지원(최대75만원 이내)
 - ※ 정규직 전환시 매월 60만원 6개월간 지원

신청·접수

2013년 1월 초 ~ 12월 31일까지(※ 배정인원 소진시 조기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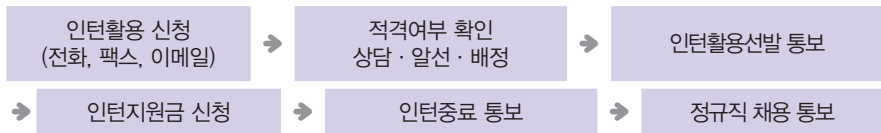
- 중소기업중앙회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02-2124-3291, 3306, 3307)
- 각 지역본부 인력담당

신청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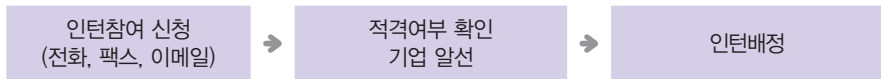
- 중소기업 : 인턴활용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턴활용계획서
- 중장년(구직자) : 인턴참여신청서, 주민등록증등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상기 내용은 관련법 및 지침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활용절차

• 구인기업



• 구직자



문의처

-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02-2124-3291, 3306, 3307)





2-15 산업기능요원 활용 지원

병역자원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자원(현역 입영 또는 소집대상 보충역)이 중소기업(지정업체)에 일정기간 근무할 경우 군복무를 대체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에 기술·기능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법인만 해당)
 - 공업 분야(통신기기제조업 포함) : 제조업종으로서 지정희망 공장의 상시종업원수가 10인 이상이며, 제조·매출실적이 있을 것
 - 광업 분야 : 광물(석탄 제외)의 채굴사업을 영위하는 상시종업원 수 10인 이상인 업체, 선광·제련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연간 1만 2천톤 이상의 석탄 채굴업체
 - 에너지산업분야 :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가스업을 영위하는 업체
 - 정보처리관련업 분야(아래의 요건 모두 만족)의 업체
 - *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
 - * 당해업체의 부설연구기관이 지정업체로 선정 혹은 신청되어 있지 않은 업체 중 S/W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지정희망 사업장의 상시종업원수가 10인 이상이고, 정보처리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30%이상인 업체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병무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1조에 해당하는 산업체(대기업, 재단법인, 공공단체, 복무관리 부실사유 등으로 고발되거나 업체의 요청으로 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산업체)
- 공업 분야(통신기기제조업 포함) 산업체 중 동일법인내의 다른 공장 또는 사업장이 지정업체로 선정되어있는 산업체
- 정보처리관련업의 경우 정보처리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30% 미만이거나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동시에 신청한 업체

지원 규모

현역 입영대상자 3,600명, 보충역 입영대상자 1,800명

지원 내용

매년 병무청으로 공업, 광업, 에너지, 정보통신 분야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 및 기존 지정업체 인원배정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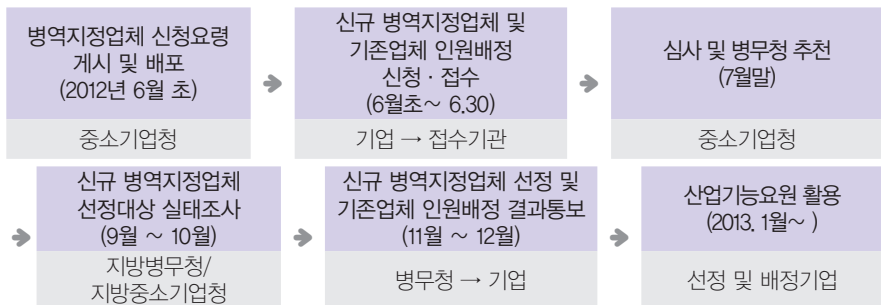
신청 · 접수

매년 6월 초~6월 30일까지

- 공업, 광업 및 에너지 분야 :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02-2124-3384)
대한상공회의소(02-6050-3425), 한국산업단지공단(02-6300-5724)
- 통신기기제조업 및 정보처리관련업 : 벤처기업협회(02-890-6350)

신청 서류

-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와 병역지정업체 추천심의회(*),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명서, 상시근로자 수 증빙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최근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추천기준별 증빙서류 각 1부

처리 절차**문의처**

- 병무청 산업지원과 : 042-481-2816
-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 : 02-2124-3384



2-16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 · 현장체험 · 채용연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경제교육, 채용박람회, 중소기업 현장체험 등 취업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 200개사, 350명 취업목표 (전체예산 10억원)
- * '12년 지원현황 : 162개사, 275명 취업

지원 대상

- 미취업 북한이탈주민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소비 · 향락업체나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 고용보험 미가입 및 고용보험 체납 사업장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 하나원생 및 사회진출자에 대한 경제교육, 채용박람회, 중소기업 현장체험 등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
- 세부내용

분 야	내 용	예산규모
하나원생 경제교육 및 채용박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원생 경제교육(13회) • 하나원생 채용박람회(6회, 180개사) 	3.0억원

분야	내용	예산규모
사회진출자 맞춤형취업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순회 중소기업 이해교육(22회, 880명) 채용박람회 개최(22회, 220개사) 중소기업현장체험(250개사, 500명) 채용기업 멘토지정 및 교육제공(4회, 160명) 	4.5억원
채용활성화 분위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이탈주민 채용기업 우수사례 발굴 홍보 북한이탈주민 취업사이트(www.nkjob.or.kr)를 통한 상시취업 알선 지원 경찰청, 하나센터,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등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2.5억원

신청·접수 연중 신청접수

-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사업 홈페이지(www.nkjob.or.kr)에 접속하여 상기사업 중 해당사업 모집 기간 중 온라인 신청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에 신청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처리 절차



- 하나원생 경제교육 및 채용박람회 : 매월(채용박람회는 격월)
- 사회진출자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 : 매월 2~3회 개최
 - * 전국순회 중소기업이해교육 → 채용박람회 → 중소기업 현장체험 → 취업연계
- 채용활성화 분위기 조성 : 연중 수시

문의처

-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 042-481-4493
-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 : 02-2124-3381
-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사업 홈페이지(www.nkjob.or.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궁금해요! 중기맨

-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한 중소기업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나요?
 - ☞ 거주지 보호기간(5년) 이내인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최대 3년까지 고용지원금(임금의 1/2내에서 최대 50만원~70만원)을 지원합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신청)



용어 설명

- 하나원생이란?
 - ☞ 입국 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하나원)에서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12주간의 사회적응교육(기초직업훈련 포함)을 받는 북한이탈주민
- 사회진출자란?
 - ☞ 하나원에서 교육 수료 후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



2-17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지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이 생산·제공하는 제품에 대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운영합니다.

지원 내용

목 적	비고
중소기업 수주 확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분리발주)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제도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운영
중소기업간 과당경쟁 방지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중소기업자간 규모별 경쟁제도 직접생산 확인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유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제도 중소기업제품 성능보험 제도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 운영
 - 정부 등 공공기관의 구매목표, 입찰정보, 구매담당부서 등 정보제공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해당제품 생산정보, 신용평가 등 재무정보, 기술 및 품질인증 정보 등 제공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등 지정 지원(추천)
 - '12년 현재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193개, 직접구매대상제품 119개 지정
 - 금년('12) 중 기간 만료로 인한 경쟁제품 지정 신청절차 이행(새로 지정된 경쟁제품은 '13. 1. 1.발효예정)

- 직접생산 확인제도 운영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국내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 / 유효기간 : 2년
- 소액수익계약 대상 업체 추천제도 운영
 - 5천만원 이하 中企간경쟁제품 계약 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아 수익계약
- 공공구매지원제도에 대한 중소기업 홍보 및 교육
-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지원제도 운영현황 및 구매실태 조사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위반신고센터 운영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지원팀(공공구매정보센터) : 1666-9988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 : www.smpp.go.kr





2-18 사업조정제도

대기업 진출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대기업들의 사업진출로 당해업종 상당수 중소기업이 수요감소 등으로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사업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축소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업종

모든 업종이 신청대상

- * 다만, 방위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조정을 할수 있는 경우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안에서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경우는 제외

신청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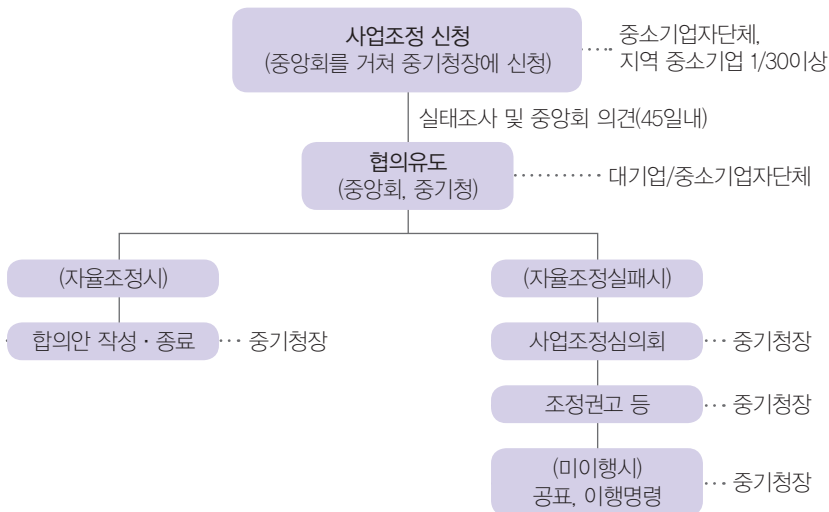
- 형식적 요건
 - 피신청인은 중소기업이 아닌 영리사업자로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상생법 시행규칙 제9조의2)
 - 신청인은 중소기업자단체(협동조합,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으로서 구성원 과반수가 중소기업인 단체)가 되며 중소기업자단체가 없을 경우에만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내 동종업종 중소기업자 1/3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
- 실질적 요건
 -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인정될 때 신청가능

신청 서류

- 일반 업종
 - (단체 신청시) 사업조정신청서, 사업조정신청사유서,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및 구성원 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조정신청내용이 포함된 이사회 결의서 또는 회의록, 대기업 진출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 명단, 기타 피해 입증관련 서류
 - (개별중소기업인 신청시) 사업조정신청서, 사업조정신청사유서, 대기업 진출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 1/3이상 동의서, 기타 피해 입증관련 서류
- SSM업종
 - (단체 신청시) 사업조정신청서, 사업조정신청사유서,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및 구성원 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조정신청내용이 포함된 이사회 결의서 또는 회의록, SSM진출에 따라 현저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명단, 피해실태조사표 등
 - (개별중소기업인 신청시) 사업조정신청서, 사업조정신청사유서, 대기업 진출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 1/3이상 동의서, 피해실태조사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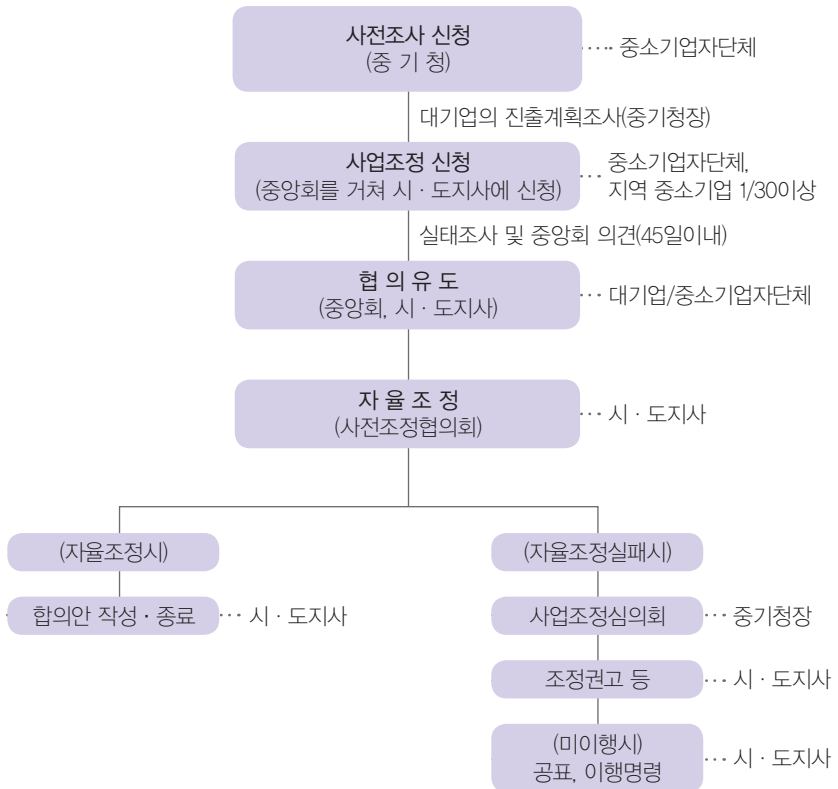
처리 절차

- 일반업종 사업조정 절차



- 시·도지사 위임업종
 - SSM, 아스콘, 레미콘

※ 위임업종 :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아스콘, 레미콘



문의처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사업조정팀 : 042-481-4366~8
-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실 : 02-2124-3194~5(www.kbiz.or.kr)



2-19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

기업 간 하도급거래에 따른 분쟁의 자율적 해결도모

기업 간 하도급거래에 있어 계약서 미교부, 납품대금 미지급, 부당한 납품단가 감액 등 분쟁발생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거, 중소기업중앙회 내에 설치된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당사자 간 자율적 해결을 유도함으로써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정 내용

- 업 종 : 제조, 수리, 용역부문의 위탁
- 조정대상
 - 제조·수리 : 원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20억원~5,000억원 미만 사건
 - 용역 : 원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10억원~500억원 미만 사건
- 조정요건
 - 원사업자의 하도급직전년도 매출액 또는 상시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의 매출액 또는 상시종업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 분쟁내용 : 하도급계약서 미교부, 납품대금 미지급,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부당한 납품단가 감액 등
- 신고접수 : 신고인이 중앙회(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하거나 신고인이 공정위에 신고하고 공정위가 협의회에 분쟁조정 의뢰

신청 서류

-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하도급계약 직전년도 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 하도급계약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사본 각 1부, 기타 관련 증거자료 등

협의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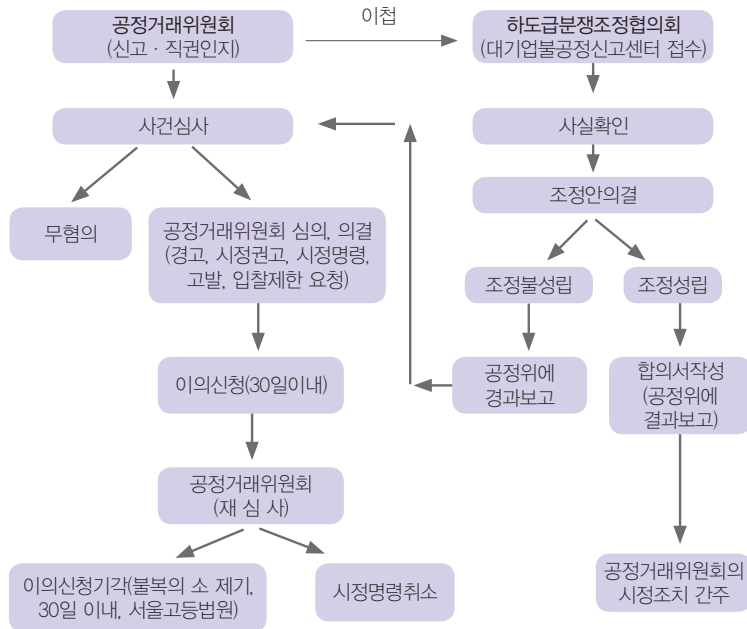
- 협의회 개최 : 약 1~2개월마다 개최
- 소요시간 : 1~2시간

위원 구성

- 위원위촉 : 중앙회 회장이 위촉(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 위 원 수 : 9인(공익대표, 원사업자 대표, 수급사업자 대표 각 3인)
 - * 위원임기 2년,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으로 선출

신청 절차

- 하도급법위반 사건처리 절차도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 : 02-3140-9676~9
-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 하도급과 : 051-460-1041~5
-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 02-2124-3195~6



2-20 중소기업 문화경영지원

중소기업 문화경영 활성화를 위한 공연 및 교육 제공

문화예술을 기업의 경영전략에 활용함으로써 창의적인 조직원을 양성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및 규모

- 찾아가는 중소기업 문화공연
 - 중소기업 현장을 공연팀이 방문해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함으로 중소기업 사기양양 및 우수 문화공연 향유기회 확대
 - * '12년 14개 기업, 2,000여명 공연 관람
 - 지원규모 : 8천만원, 20개 기업 지원 예정
 -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협력 사업
- 기업예술교육
 - 창의력개발 교육 프로그램 지원, 문화예술동호회 활동 지원, 문화예술현장 체험 지원 등 다채로운 예술교육을 통해 창의적 문화경영 실현도모
 - * '12년 16개 기업 지원
 - 지원규모 : 4,500만원, 총예산의 50%까지 국고지원(기업당 300만원 한도)
- 중소기업과 예술이 함께하는 기부여행
 - 중소기업과 예술단체가 함께 소외계층에 기부함으로써 사회적책임 수행
 - * '12년 15개 기업 지원
 - 지원규모 : 2,500만원(예술단체 공연실비 지급)
- SB문화경영아카데미
 - 모집대상 : 10인 이상 중소기업 CEO
 - 교육기간 : 2013년 4월~7월(매주 화요일 16:00~19:00)

- 내 용 :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문화경영 마인드 제시 및 문화경영 전략 활용 방안 등 문화적 감성과 예술적 감각을 일깨우는 체험 강좌
- * '12년 52명 수료('2009~2012년까지 4년간 200여명 수료)
- 지원규모 : 정부지원 150만원(개인 부담 100만원)
- 제7회 중소기업문화대상 포상
 - 목적 : 중소기업들의 문화경영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고 발전 모델로 홍보함으로써 문화경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문화경영 확산
 - 포상(안)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1
중소기업중앙회장상 2, 한국문화예술위원장상 2
 - 응모기간 : 2013년 9월~10월

신청 · 접수

- 중소기업문화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www.happyculture.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제출
 - 찾아가는 중소기업 문화공연 : '13. 5월 ~ 6월
 - 기업예술교육 : '13. 2월 ~ 3월
 - 기부여행 : '13년 년중
 - SB문화경영아카데미 : '13년. 3월
 - 중소기업문화대상 : '13년 9월 ~ 10월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문화경영지원센터 : 02-2124-3207

- ※ 홈페이지 : www.happyculture.or.kr
- ※ 기업예술교육 블로그 : blog.naver.com/kbizculture



2-21 중소기업보증공제제도 운영

중소기업의 경영난 극복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수수료 부담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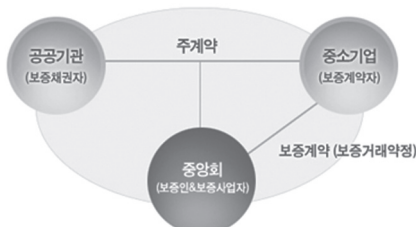
중소기업이 공공조달계약에 참여할 경우 제출해야하는 보증서를 그 동안 시장을 독점해왔던 민간보증보험사보다 저렴하게 발급하여 드립니다.

가입 대상 공공조달계약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요기관을 의미

지원 내용

- 공공기관이 조달계약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게 요구하는 ‘보증서’를 중소기업중앙회가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발급
- 보증종류 : 입찰보증, 계약보증, 하자보수보증, 선금금보증



〈공공조달계약 보증흐름도〉



이용 방법

- 중소기업중앙회(18개 지역본부 및 지회) 및 보증업무 위탁 협동조합을 통하여 보증가입약정을 체결하여 활용

처리 절차



구비서류

- 한도 · 개별거래약정 시
 - 한도 · 개별거래보증약정서(중앙회 서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 대표자 신분증 사본, 개인인감, 개인인감증명서
 - 주주명부 또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등
- 보증청약 시
 - 보증공제청약서(중앙회 서식)
 - 조달계약서(주계약서), 납품지시서 등

문의처

- 대표전화 : 1899-0098 / 홈페이지 : www.gbiz.or.kr



궁금해요! 중기맨

- 업체별 보증한도(보증가능금액) 산정 방법.
 - ☞ 업체의 보증한도는 계약자의 기업규모, 영업 활동성 및 신용등급에 의하여 산출하는 기본보증한도와 부금 납부액에 의한 부금보증한도로 구성됩니다.
 - 기본보증한도 : 보증계약자인 기업의 매출액 및 자기자본 규모액과 신용등급을 감안하여 산정
 - 부금보증한도 : 기업이 보증부금을 납입한 경우 부금잔액의 일정배수를 추가로 한도 인정
- 보증한도 및 보증료는 중앙회 업무담당자와의 통화를 통해 신속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3

신용보증기금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3-1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 · 154
- 3-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평가 · 156
- 3-3 전자상거래 보증 · 158
- 3-4 유동화회사보증 · 160
- 3-5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SOC보증) · 163
- 3-6 중소기업 신용보험지원 · 165



3-1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 채무 보증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지원제외 · 제한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등
- 휴업중인 기업,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규모

보증잔액 기준 39.0조원으로 운용

(경기상황 등을 감안하여 $\pm 5\%$ 범위 내에서 탄력적 운용 계획)

* 2012년 지원규모 : 약 39조 5천억원(11월말 보증잔액 기준)

지원 분야

- 수출기업, 녹색성장기업, 유망서비스기업등 중점지원
* 수출기업 7.2조원, 녹색성장기업 5.0조원, 유망서비스기업 4.3조원 지원
- 창업기업 9.0조원, 고용창출 기업에 8.0조원 지원

보증한도

- 운전자금한도 : 매출액한도와 자기자본한도 중 적은 금액
- 시설자금한도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제출 서류

신용조사자료	고객협조 필요사항
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부동산등기부등본	신보에게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③ 주민등록표등·초본 ④ 지방세납세증명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 동의
⑤ 금융거래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
⑥ 사업자등록증명 ⑦ (국세)납세증명서 ⑧ 납세사실증명 ⑨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에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www.hometax.go.kr)에 신청한 후 발급 번호를 신보에 고지
⑩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⑪ 재무제표	세무회계자료의 전자적 제출에 사전동의
⑫ 주주명부(주식이동상황명세서) ⑬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 거주주택)	고객이 팩스로 송부

※ 고객의 서류준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 하에 신보 직원이 직접 자료를 수집

처리 절차

보증신청 및 상담	▷신보 홈페이지를 통한 보증신청 또는 영업점 방문 보증신청 ▷신규기업은 영업점 방문상담, 기존 보증거래기업은 전화상담(방문상담 생략)
자료수집 및 신용조사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수집된 자료 및 담당자 현장출장 등을 통해 신용조사
보증심사 및 승인	▷종합신용등급 산출, 최고 보증한도 및 운전자금 보증한도 검토 ▷각종 체크리스트 충족여부 검토, 영업점 승인 또는 본부 승인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약정 체결 ▷보증료 수납 (신용카드 결제 가능)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 중소기업 정책정보 : www.bizinfo.go.kr



3-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평가

경영혁신기업 발굴

서비스업, 전통제조서비스업, 전통제조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에서 일반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경영혁신기업 발굴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8.0조원 지원

*2012년 지원 규모 9.7조원(11월말 기준)

신청대상 및 기준

구 분	주 요 내 용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정상 가동 중인 기업(전 업종)
선정절차	자가진단 60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평가 후 선정
선정기준	현장평가 결과 점수 700점 이상

처리 절차

신청 및 온라인 자가진단	관리시스템(www.mainbiz.go.kr)에서 신청기업이 직접 온라인 자가진단을 실시
↓	
현장평가 신청	자가진단 점수 600점 이상일 경우 현장평가신청
↓	
현장평가 수행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실시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및 확인서 발급	평가결과 700점 이상인 기업을 경영혁신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확인서 발급
↓	
사후관리	연 1회 사후관리 실시

중점발굴 분야

- 공동물류 마케팅 등을 통해 경영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숙박, 관광, 레저 등 순수 서비스업종
- 소프트웨어, 애니메이션, 게임 등 문화산업
- 법률, 세무,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 사업

금융지원 제도

- 보증료율 및 신용보험료율 우대 등 보증지원 우대
- 금융기관과 협약 체결을 통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금융지원
- 중소기업청 정책자금(예: 경영혁신자금) 우대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 02-710-4581
- 경영혁신형기업 인증 홈페이지 : www.mainbiz.go.kr
- 중소기업 정책정보 : www.bizinfo.go.kr



용어 설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기존의 벤처, 이노비즈와 같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지 않아도 마케팅, 조직관리, 생산 성향상 등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탁월한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기업을 의미

3-3 전자상거래 보증

B2B 전자상거래 채무 보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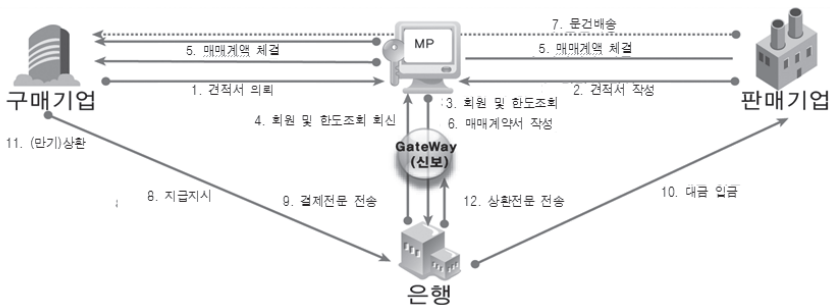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의 대금 회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간(B2B) 전자상거래에 따른 채무를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전자상거래 보증에 대한 우대지원

구분	전자상거래보증	일반보증
최고보증한도	70억원	30억원
보증한도	최근1년 매출액의 1/2 (담보용보증) 최근1년 매출액의 1/3, 1/4, 1/6 (대출보증, 제2금융보증)	최근1년 매출액의 1/3, 1/4, 1/6
보증료	0.1%p 할인(C2 등급 이상)	0.5% ~ 3.0%

지원구조

- MP가 구매기업 및 판매기업간 전자상거래를 중계하고 Gateway시스템을 통해 신보, 금융기관이 금융지원



보증상품 종류

구 분	B2B대출(제2금융)보증	B2B담보용보증
보증종류	대출(제2금융)보증	상거래담보보증
대상채무	구매기업이 전자상거래계약에 의한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구매기업이 전자상거래계약에 의하여 물품 등을 구매함으로써 판매기업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
채 권 자	· 금융기관 및 농·수협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및 정부출자법인 · 외부감사대상기업 등

신청 · 접수

신용보증기금 전 영업점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 중소기업 정책정보 : www.bizinfo.go.kr



용어 설명

- MP(마켓플레이스)
전자상거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상품의 매매 또는 중개를 하는 사업자
- Gateway 시스템
전자거래 참여기관간 시스템 연결방식 등을 표준화하여 개별적 전산연결없이 다자간 상호거래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



3-4 유동화회사보증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 발행 신보가 보증

개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또는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신보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	CPA 감사보고서 보유 : 신보의 종합신용등급 K10 이상, 미보유 : K9 이상
중견기업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등급 BB- 이상

(주1)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지원제외 · 제한

채무불이행 기업 및 신용상태 취약기업	보증금지, 보증제한, 구조조정절차 진행기업 업종별 부채비율 상한선 초과기업 당기 결산서에 의한 CPA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기업 회사채등급 BB+(신보의 종합신용등급 K6) 이하로 최근 2개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0 미만인 기업 신보의 기업가치평가시스템에 의한 기업가치가 “0”이하인 기업
재무구조 개선 대상 기업	구축법, 회생절차, 워크아웃 졸업 후 2년 미경과 기업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최대주주인 기업
지원타당성이 낮은 업종 및 기업	금융업 영위 기업 신보의 차환 유동화회사 보증 편입잔액이 있는 기업 등

연대보증인

실제경영자 1인 연대 입보 원칙

* 다만, 법인기업의 실제경영자로서 대표자에 해당하는 자가 여러명인 경우 실제경영자에 해당하는 대표자 전원 입보 (단, 회사채등급 BB+등급 이상인 상장 중견기업 또는 회사채 등급 BBB-등급 이상인 중견기업은 연대입보 생략 가능)

지원 분야 회사채 또는 대출채권 등의 유동화
 〈신용등급별 한도〉

구 분	BBB이상 (K4이상)	BBB- (K5)	BB+ (K6)	BB (K7)	BB- (K8)	B+ (K9)	- (K10)
중견기업	250억원	200억원	150억원	100억원	70억원	50억원	-
중소기업	150억원	120억원	100억원	70억원	50억원	40억원	30억원

(주1) 신보와 기보의 일반보증+보증채단보증+편입금액(이번 신청건 포함)+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

(주2) ()안은 신용보증기금 종합신용등급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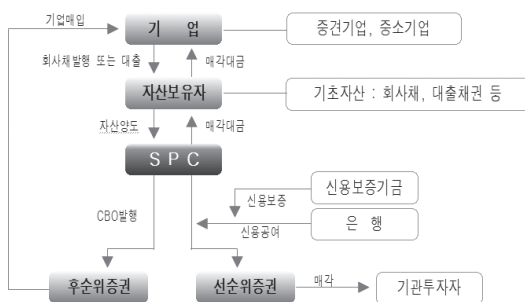
(주3) CPA 감사보고서가 없는 기업은 최고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매출액, 자기자본, 차입금 및 상법상 사채발행 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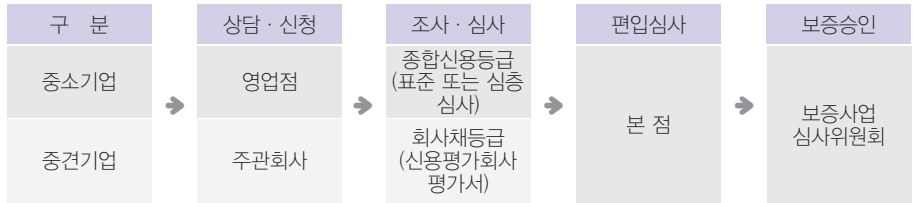
매출액 한도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최근 1년간 매출액(또는 당기매출액)의 1/3 이내 또는 최근 4개월 매출액 이내 기타 업종 :최근 1년간 매출액(또는 당기매출액) 1/4 이내 또는 최근 3개월 매출액 이내
자기자본 한도	회사채등급 BB(신보 종합신용등급 K7)이하인 기업의 경우 자기자본의 3배 이내
차입금 한도	이번 편입금액을 포함한 총차입금이 최근 1년간 매출액 또는 당기매출액 범위 이내

(주)매출액 및 자기자본한도는 신보와 기보의 운전자금보증금액(이행보증은 이행지급보증만 포함), 투자금액, 유동화회사보증 기초자산 편입금액(이번 신청건 포함)을 포함

유동화회사보증의 구조



처리 절차



* 신용평가회사의 유효한 회사채 평가등급 보유 기업 및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기업은 유동화회사보증 주관증권사에서 신청절차 담당

발행 금리

중소기업은 중견기업 대비 발행금리 우대적용

- 중소기업 : 신용등급별 4.11%(K1등급 이상) ~ 5.91%(K10등급) 수준
- 중견기업 : 신용등급별 4.61%(AAA등급 이상) ~ 6.01%(BB-등급) 수준
 - * 상기 금리수준은 2012.8.9일자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한 시가평가수익률 기준이며, 발행 시점의 수익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편입기업은 SPC가 발행하는 후순위증권을 연율 1~1.5%수준에서 별도 인수

신청 · 접수

신용보증기금 전 영업점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 중소기업 정책정보 : www.bizinfo.go.kr



용어 설명

- SPC(Special Purpose Company)
회사채 또는 대출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특수목적 법인체
- 후순위채권
채무변제순위가 선순위채권에 비해 뒤지는 채권으로, 선순위채권의 상환이 완료되고 잉여현금이 남아있을 경우 채권의 원리금이 지급

3-5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SOC보증)

민간투자사업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사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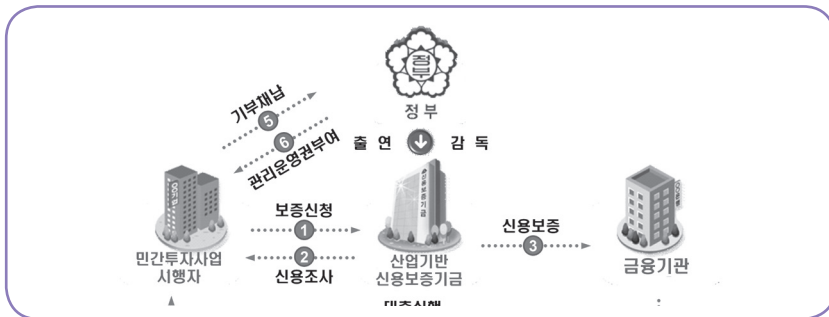
지원 규모 전체 보증규모 1조 5천억원(같은 사업당 최고 3천억원 보증)

* 2012년 지원현황 : 1조 4천억원 (11월말 기준)

지원 분야

보증종류	내용
시설자금대출보증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
사회기반시설채권보증	사회기반시설채권 발행을 통한 조달자금에 대한 보증
운영자금보증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운영자금에 대한 보증
브릿지론보증	공사준공 시까지 소요되는 비용 중 주무관청 등으로부터 보전되는 자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부족자금 보증
Refinancing보증	기존 사업을 인수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채권)으로 자금 재조달하기 위한 신규대출 또는 채권발행에 대한 보증
민간선투자대출보증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된 공공사업에 대해 당해연도 예산을 초과하여 선투자·시공하고, 향후 지급받을 연부액을 담보로 조달하는 자금에 대한 보증
산업기반유동화회사보증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하거나 그 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위하여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보증료〉 사업리스크, 기업신용도, 자금용도 등에 따라 0.15~1.5% 범위 내 차등
〈지원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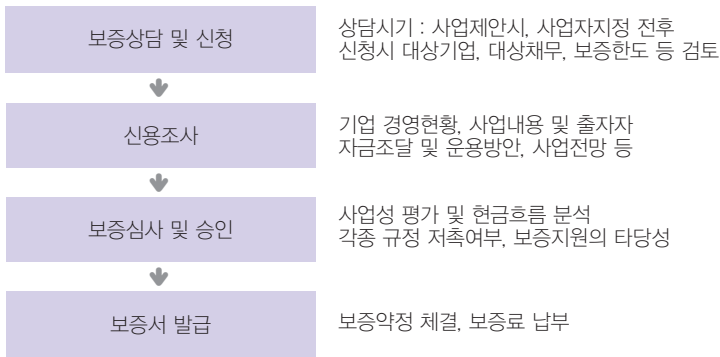


신청 서류

자료명	비고
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주주명부	
③ 사업자등록증명	
④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실제경영자 포함
⑤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거주주택
⑥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및 납세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⑦ 금융거래확인서	본건기관, 주채권기관, 당좌거래은행
⑧ 재무제표(최근 2기분)	컨소시엄의 경우 출자기업 포함
⑨ 사업계획 관련 서류 사본	실험약, 실시계획서 등
⑩ 금융약정 관련 서류 사본	대출약정서 등
⑪ 세무조정계산서상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보증료 중소기업 우대부분 적용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사항, 납세증명서, 재무제표 등 행정정보공유 시스템 및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는 신보에서 직접 수집 가능

처리 절차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SOC보증부 : 02-710-4403
- 중소기업 정책정보 : www.bizinfo.go.kr



3-6 중소기업 신용보험지원

중소기업 연쇄도산 방지와 경영안정을 도모

중소기업이 신용으로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지 못할 것에 대비해 준비하는 보험입니다. 중소기업들은 특히 경기가 불확실할 경우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지는데 신용보험을 이용하면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

보험인수 : 10조원

보험가입 대상

• 신청자격

상품구분	보험가입 요건		
	규모	업 력	업 종
매출채권보험	중소기업	제한없음 (2012.7월부터 업력제한 철폐)	제조업, 제조관련 도매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어음보험	중소기업	접수일 현재 영업실적 1년 이상 (제조관련 도매업은 2년이상)	지식기반 서비스업

• 지원조건

- 구매자의 폐업, 이행지체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또는 어음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보험가입금액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지급

가입이 안되는 기업

- 다음과 같은 기업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부실 처리한 기업
 - 휴업중인 기업 등
- 다음과 같은 기업에 대한 채권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관계기업, 해외소재기업, 보험인수심사일 현재 매입채무의 변제를 연체중인 기업 등

보험상품 종류

유형별	종류별	표준처리 기간	보험대상
매출채권 보험	하나보험	5일	개별 구매처에 이미 발생한 매출채권
	한사랑보험	8일	개별 구매처에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다사랑보험	15일	모든 구매처에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일석e조보험	15일	개별 또는 모든 구매처에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 판매위험 보장과 동시에 보험청구권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가능
어음보험	개별어음보험	8일	개별 구매처에서 이미 취득한 어음
	포괄어음보험	15일	포괄어음한도 설정 후 개별 구매처에서 수취할 어음

보험가입 한도

- 매출채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한 최고 보상한도 20억원
- 어음보험 : 10억원

보험료

- 매출채권보험 : 보험가입매출채권에 대하여 최저 0.1%~최고 5.0%
- 어음보험 : 보험금액에 대하여 최저 0.5%~최고 5.0%

신청·접수

- 신청방법
 - 회사소재지와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 신용보증기금과 거래중인 기업은 거래 관할 영업점으로 신청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신용보증기금은 계약자 및 구매자(어음관련인 포함)의 재무자료 등을 토대로 신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험인수금액, 보험인수구매자 등 결정

유의 사항

- 실제 상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매출채권(받을어음)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 예) 자금유통을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 실거래가 없는 가공의 매출채권

신청 서류

- 매출채권보험 : 매출채권보험청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근 4개 분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집계표(근보험), 세금계산서 사본(개별보험), 당기 매출액 확인자료 등
- 어음보험 : 어음보험청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어음 및 세금계산서 사본, 당기매출액 확인자료 등

보험처리 절차

보험상담	보험가입요건, 금액 등에 대해 상담
	↓
청약접수	보험가입 청약서 접수
	↓
신용조사	신청기업 및 구매자 신용조사
	↓
보험심사	인수의 적정성 심사, 구매자별 가입금액 사정
	↓
보험료납부	보험료 납부 (일시납 또는 분납)
	↓
보험증권발급	보험증권 발급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 042-481-4388
- 신용보증기금(www.kodit.co.kr) : 전국 단일전화 1588-6565



궁금해요! 중기맨

1. 신용보험과 신용보증의 차이점?

☞ 신용보험과 신용보증은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으며 상호 시너지효과를 갖는 제도입니다.

구분	신용보험	신용보증
특징	신용위험을 관리하는 금융안전망	신용보완으로 추가적 신용창출
계약의 성격	자기를 위하여 피보험자가 체결	채권자를 위한 피보증이 체결
수수료 성격	예상손실에 대한 분담금	보증에 따른 대가(수수료)
유용성	실물경제 성장 정체기에 유용	상사적신용창출필요한고성장 단계에유용

2. 신용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 ☞ 신용보험에 가입하면 거래처 도산에 따른 손실을 예방하는 본연의 기능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 운전자금 차입수요를 미리 예방함으로써 안정적인 기업경영 가능
 - 구매자에 대한 위험 모니터링으로 위험관리능력 향상
 - 매출채권의 안정적인 회수로 본인의 신용도 상승
 - 기업 간 상거래의 안전성 확보로 적극적 영업활동 및 신규시장 진입 촉진

3. 보험금 지급청구 사유와 시기?

- ☞ 구매자가 다음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당좌부도(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게 될 부도사유가 발생한 때)
 - 폐업 또는 해산등기 된 때
 - 회생, 파산,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신청이 있는 때
 - 구매자가 외상매출금을 결제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고 2월이 경과한 때
- ☞ 보험금 지급청구 시기
- 상기 보험청구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보험금 지급 청구 시 필요서류?

- ☞ 보험금 지급청구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지급 청구서(신보가 정하는 서식), 보험증권 사본
 - 매출채권의 발생 및 실제손해금액 산정 서류 사본 (물품공급계약서, 발주서, 인수증 또는 화물송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 매출채권이 어음상 채권인 경우 해당 어음 사본(전자어음인 경우 부도전자어음 확인서)
 - 기타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우수사례

● 보험가입 개요

보험가입자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금수령액
대X금융공업	19억원	2천3백만원	6억6천만원

● 보험가입후기

우리 회사는 대전에서 특수강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서 2008년부터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간 거래해 오던 장기 고정거래처라고 해도, 현재의 좋은 신용도를 계속 유지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평소 생각하여 심사숙고한 끝에 다소 보험료 부담은 있었지만,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보험가입 첫해는 거래처들로부터 수금이 잘 되어 보상청구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매출채권보험 재가입 후, 생각지도 못했던 거래처가 부도가 났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가입당시 상장회사이고 연매출액이 1천억원에 이르는 우량한 회사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싶었으나, 그 회사의 부도로 일시에 10억원 이상의 매출채권 손실이 발생하여 은행, 거래처에 지불해야 하는 결제대금조차 조달하기 어려운 자금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어려운 상황을 잘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거래처의 부도로 사업중단의 큰 위기를 매출채권보험으로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04

기술보증기금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4-1 2013년 보증지원계획(총괄) · 171
- 4-2 기술보증 · 172
- 4-3 창업기업 우대지원 제도 · 175
- 4-4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보증제도 · 178
- 4-5 전자상거래보증 · 181
- 4-6 유동화회사보증 · 182
- 4-7 R&D평가 특례보증 · 186
- 4-8 특허기술가치평가 연계보증 · 189
- 4-9 문화산업완성보증 · 192
- 4-10 기술평가 · 195
- 4-11 벤처확인평가 · 198
- 4-12 이노비즈 인증평가 · 201
- 4-13 기술이전 및 M&A · 204
- 4-14 녹색인증평가 · 206
- 4-15 보증연계투자 · 221
- 4-16 경영개선지원제도 · 224



4-1 2013년 보증지원계획(총괄)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보증지원 확대

'13년도 총보증 규모는 '12년도 대비 1조원이 증가한 18.4조원(유동화회사보증 0.8조원 제외)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지원 규모 18조 4천억원(유동화회사보증 8천억원 제외)

* '12년 지원현황 : 17조 7천억원(유동화회사보증 5천억원 제외)

(단위 : 억원)

구 분	2012년		2013년 계획(B)**	증감(B-A)
	계획(A)	실적(11월)		
보증규모*	174,000	177,164	184,000	10,000
총보증공급	168,000	164,505	181,000	13,000
신규보증	45,000	46,751	56,000	11,000

* 보증규모는 보증잔액 기준(유동화회사보증 제외)

** 2013년 계획은 유동화회사보증 제외

● 신성장동력산업, R&D 및 기술창업기업 지원 강화

(단위 : 억원)

구 분	2012년		2013년 계획(B)**	증감(B-A)
	계획(A)	실적(11월)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38,000	42,683	45,000	7,000
R&D 활성화	14,000	15,405	20,000	6,000
기술창업기업	69,000	72,270	72,000	3,000

* 2013년 계획은 유동화회사보증 제외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보증운용부 051-606-7469



4-2 기술보증

자금 · 보증 · 해외마케팅 지원시 우대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 가치를 평가하여 보증서를 발급해 드림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 18조 1천억원(2013년도, 유동화회사보증 3,000억원 제외)(업체당 최고 30억원, 시설자금은 최고 100억원)
* 2012년 지원 현황 : 17조 6천억원 지원(유동화회사보증 2,000억원 제외)

지원 대상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

지원 분야

- 대출보증 :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로 이용
- 어음보증 :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담보어음에 대해 지급을 보증
- 이행보증 : 기업이 공사, 물품의 공급,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시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이용
- 무역금융보증 : 수출기업의 원재료 구입을 위한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
- 전자상거래보증 : 기업간 전자상거래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 외상 구매자금에 대한 보증

- 구매자금융보증 : 납품기업 중심의 공급자금융방식에서 구매기업에 직접 금융을 제공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토록하는 제도로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에 대한 보증
〈보증료〉 기업의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 0.5~3.0%까지 차등 적용

신청 · 접수 기술보증기금 전 영업점

제출 서류

	구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기술사업계획서	기보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 후 사이버영업점에 제출하거나 팩스로 송부	서식
	준비서류	주주명부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발급수수료는 고객이 부담)	-
	행정정보	주민등록등 · 초본 등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기타 제공행정정보: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 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금융거래확인서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 회계자료	재무제표(최근3개년) 부가세자료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세무회계프로그램의 전송기능을 통해 온라인 제출/팩스 송부	사전 동의서
	국세청 자료	사업지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에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 신청한 후 발급번호를 기보에 고지	홈택스 서비스

* 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요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신청도 가능)
↓		
예비검토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면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본증액,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생산능력 등을 확인
↓		
심사·승인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비즈인포(www.bizinfo.go.kr)

?

궁금해요! 중기맨

- 기금에서 직접 서류를 수집하는 경우 수수료는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 서류발급시 실비가 소요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의 발급수수료(1건당 500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다만, 기업당 보증금액 1억원이하의 소액보증기업은 기금에서 부담합니다)



4-3 창업기업 우대지원 제도

미래 성장기반 육성 및 일자리창출 확대를 위해 창업기업 우대지원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창업을 유도하여 미래의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자 창업기업에 대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우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2조 2,900억원

* '12년 지원현황 : 맞춤형창업성장 1조9,655억, 청년창업특례보증 3,247억

지원 대상

분 야	대 상 기 업
맞춤형창업성장	창업후 5년 이내의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창업특례보증	창업후 3년 이내로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가 만 20~39세 이하인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분 야	주 요 내 용	우대사항
맞춤형창업성장	특성별로 구분된 6대 창업육성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지원 * 녹색성장창업, 지식문화창업, 이공계 챌린저창업, 4050창업, 1인 창조기업, 첨단·뿌리산업창업	· 보증비율 우대 · 보증료 0.3% 감면
청년창업특례보증	기업당 3억원 이내에서 간소화된 절차로 보증지원	· 보증비율 우대 · 보증료 0.3% 고정요율적용

신청 · 접수

• 기술보증기금 전 영업점

제출 서류

구 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기보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 후 사이버영업점에 제출하거나 팩스로 송부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발급수수료는 고객이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산업재산권 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 회계자료	▷ 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세무회계프로그램의 전송기능을 통해 온라인 제출/팩스 송부	사전 동의서
	국세청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에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 신청한 후 발급번호를 기보에 고지	홈택스 서비스

* 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요 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신청도 가능)
↓		
예비검토	영업점 평가담당자	→ 고객과의 면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본증액,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생산능력 등을 확인
↓		
심사·승인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비즈인포(www.bizinfo.go.kr)



궁금해요! 중기맨

- 맞춤형창업성장의 6대 창업육성분야의 지원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녹색성장창업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지식문화창업	지식기반 제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문화콘텐츠산업 영위기업
이공계 챌린저창업	대표자가 이공계 출신자로서 만45세 이하인 기업
40·50창업	대표자가 만40~55세 이하로서 동업계 종사경력 10년 이상인 기업
1인 창조기업	창의적인 아이디어, 전문지식,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하는 대표자 1인이 영위하는 기업
첨단·뿌리산업창업	첨단기술, 제품 확인기업 및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영위기업



4-4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보증제도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지원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창업기업, 지식서비스산업,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녹색성장산업 등에 중점 보증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신규인력 고용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일자리 창출기업 3조 8000억원, 고용창출 특별운전자금 1,200억원

* 2012년 지원 현황 : 일자리창출기업 보증지원 37,301억원, 고용창출 특별운전자금 지원 856억원

지원 대상

분 야	대 상 기 업
일자리창출기업 보증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1년과 비교시 10% 이상 고용이 증가한 기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확대로 세제지원을 받은 기업 ▷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일자리 창출기업* <p>* 일자리 창출효과와 관련이 깊은 업력, 업종, 고용실적, 기술성, 미래성장가능성의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일자리창출평가표 평가 결과 3개 이상 항목 충족 기업</p>
고용창출 특별운전자금한도	▷ 최근 6개월 이내, 향후 6개월 이내 신규 고용(예정) 기업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분야

분 야	주요 내용	우대사항
일자리창출기업 보증지원	▷ 원자재 구입 등 운전자금과 공장신축, 설비도입 등 시설자금	· 우대보증 지정 · 보증료 0.2%~0.4% 감면
고용창출 특별운전자금한도	▷ 인력채용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 보증지원 ▷ 신규고용 1인당 3~5천만원씩 최대 3억원(10인)까지 지원	· 고정보증료율 적용(1.0%)

신청 · 접수

기술보증기금 전 영업점

제출서류

	구 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기술사업계획서	▷ 기보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 후 사이버영업점에 제출하거나 팩스로 송부	서식
	준비서류	주주명부 임차계약서사본(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발급수수료는 고객이 부담)	-
	행정정보	주민등록등 · 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산업재산권 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 회계자료	재무제표(최근3개년)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세무회계프로그램의 전송기능을 통해 온라인 제출/팩스 송부	사전 동의서
	국세청 자료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에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 신청한 후 발급번호를 기보에 고지	홈택스 서비스

* 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요 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신청도 가능)
↓		
예비검토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면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본증액,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생산능력 등을 확인
↓		
심사·승인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 중소기업 정책정보 : www.bizinfo.go.kr



궁금해요! 중기맨

- 고용창출 특별운전자금의 신규고용인력 1인당 지원한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신규고용인력의 나이, 기술자격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 결정됩니다.

구분	1인당 지원금액
만 35세 이하 중급기술인력 이상	50백만원
만 30세 이하 초급기술인력	40백만원
그 밖의 인력	30백만원



4-5 전자상거래보증

기업간(B2B)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금결제를 위한 보증

기업간(B2B)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 외상구매 자금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12년 지원현황 : 약 1조원

지원 대상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대출금 또는 외상구매자금 보증

- 전자상거래대출보증 : B2B구매자금대출, B2B구매카드대출, B2B일반자금대출
- 전자상거래담보보증

구분	전자상거래보증	일반보증
최고보증한도	50억원(담보보증 70억원)	30억원
보증료	기준보증료율에서 0.2% 할인	0.5% ~ 3.0%

신청·접수

기술보증기금 전 영업점

- 제출서류 및 처리절차는 '기술보증'과 동일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전 영업점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 중소기업 정책정보 : www.bizinfo.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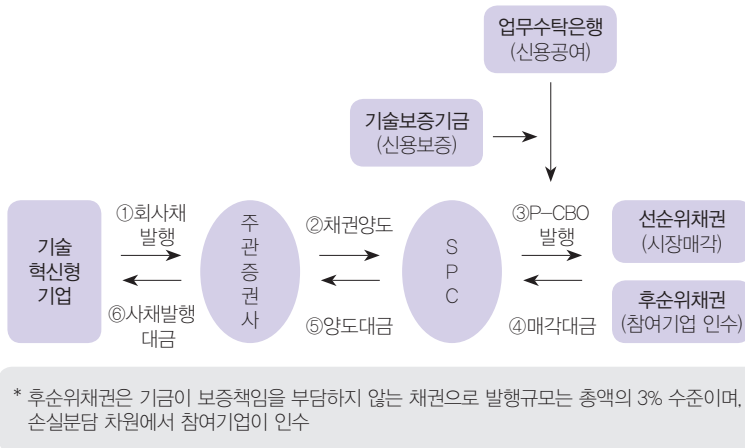


4-6 유동화회사보증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대해 기보가 보증

개별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또는 대출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전문 유한회사(SPC)를 통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기보가 보증하여 시장에 매각 후 조달된 자금으로 해당 기업을 지원하는 직접금융시장 자금조달방식의 지원 제도

기본 구조



- ① 추천심사를 거쳐 선정된 편입기업이 회사채(SB, BW, CB 등)를 발행 후 이를 주관회사인 증권회사가 인수하여 유동화전문유한회사(SPC)에 채권양도
- ②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양도받은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선순위채권(ABS) 및 후순위채권(ABS)을 발행
- ③ 기금은 이 중 선순위채권(ABS)에 대해서만 보증
- ④ 기금으로부터 보증받은 선순위채권(회사채발행대금의 97%)은 시장에 매각하여 이 매각대금으로 회사채 발행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후순위채권(회사채발행대금의 3%)은 손실분담 차원에서 회사채 발행기업이 직접 인수

지원 대상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술력과 신용도가 양호한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소속기업은 제외
 - 중소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종업원 1천명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천억원 이하인 기업(이하 “중견기업”)

지원 제한기업

- 신청기업 또는 주력기업이 보증금지 또는 보증제한기업 이거나, 보증사고사유 발생 기업
- 당기 CPA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기업
- 보증제한업종 영위기업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및 「채권 금융기관 기업 구조조정 운영협약」 등 구조조정 지원절차 졸업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기업구조조정회사가 최대주주인 기업
- 기금과 신보의 유동화회사보증 차환에 기초자산 편입잔액이 있는 기업
- 심사일 현재 최근 1년 이내 소유·지배구조의 변경, 경영진의 도덕성 문제 발생, 주력기업의 위험 노출 등 기업 신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 발생하여 신용도 및 지원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신용도취약기업 등

기초자산 회사채 또는 대출채권 등의 유동화

- 회사채(CB, BW 포함), 대출채권
 - 전환사채(CB)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기초자산 편입기업이 한국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 또는 상장 심사중인 기업에 한하여 기초자산으로 운용 가능
- 기초자산의 만기는 2년 이상으로 운용

최저 선정기준

- 중소기업은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등급 평가가 불필요하며 기술사업 평가등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선정 가능
- 중견기업은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등급 요건과 기술사업평가등급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선정 가능

구 분	기술사업평가등급	신용평가회사 회사채 등급
중소기업	BB등급 이상	해당없음
중견기업	BB등급 이상	BB-등급 이상

등급별 최고한도

구 분	AAA (BBB0이상)	AA (BBB-)	A (BB+)	BBB (BB)	BB (BB-)	B (-)
중소기업	150억원	120억원	100억원	70억원	50억원	30억원
중견기업	250억원	150억원	120억원	100억원	70억원	50억원

() 밖 : 기술사업평가등급, () 안 : 회사채등급

개별기업당 발행한도

구 분	일반보증
운전자금보증금액 사정한도	신청금액이 운전자금 보증금액 사정한도 이내
차입금 한도	신청금액을 포함한 총차입금이 당기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이내
발행기업별 발행금액 비중	신청금액은 포트폴리오에서 정한 평가등급 및 업체규모별 최대 발행금액 비중을 감안한 발행금액 이내
관계기업군 총 발행한도	신청금액은 기금의 유동화보증의 기초자산 발행금액과 보증금액(보증연계투자금액을 포함)을 기준으로 300억원 이내

처리 절차



발행 금리

- 일반회사채(SB) 표면금리는 발행시점의 ‘공모방식3년만기무보증회사채 AAA등급기준수익율’과 선순위유동화증권(ABS) 표면금리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발행기업의 기술사업평가등급 및 재무등급에 따라 기업별 차등 결정
 - 12년 발행 중소기업 표면금리 범위 : 약 4.0% ~ 6.5%
 - 중소기업은 중견기업 대비 표면금리 우대 적용
 - 분할상환방식(1년 10%, 2년 10%, 3년 80%) 선택시 표면금리 우대 적용
- 3개월 단위 이자 후납

신청 · 접수

- 관할 영업점
 - 거래 영업점 또는 사업장 인근 영업점에 신청
 - 상담은 인터넷 신청, 영업점 방문신청 또는 영업점 전화신청 가능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 중소기업 정책정보 : www.bizinfo.go.kr



4-7 R&D평가 특례보증

중소기업 R&D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R&D 개발단계별 맞춤형 자금지원

아이디어 단계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에 걸쳐 개발 및 사업화연계 R&D 금융 Matching을 통해 체계적인 R&BD금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R&D를 개발·사업화준비·사업화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특성에 맞는 평가 방법과 소요자금 사정기준을 적용하여 맞춤형 R&D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R&D 개발·사업화를 추진중인 중소기업 대상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R&D과제의 개발, 사업화 준비, 사업화 및 제품양산에 필요한 운전 및 시설자금 지원

- 개발단계 및 사업화준비단계자금
 - * 특허권은 개인기업은 대표자, 법인기업은 법인이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포함)인 경우에 한함
- 사업화단계 자금
 - KTRS(KTRS-startup)에 의한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

개발단계	사업화준비단계	사업화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일 현재 2년이내에 개발이 종료되는 과제에 대한 기술개발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술이 개발완료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과제로 개발완료후 디자인, 금형, 재료비, 성능인증 등 시제품제작에 소요되는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완료 과제의 사업화 및 제품양산에 필요한 운전 및 시설자금 • 최근3년이내 정부 R&D과제 성공기업 • 최근3년이내 지자체 및 산하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공기관 지원 R&D 성공과제 또는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성공기업 • 기술보증기금에서 정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자체수행 R&D성공과제

신청 · 접수 연중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제출 서류

	구 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기보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 후 사이버영업점에 제출하거나 팩스로 송부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발급수수료는 고객이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등·초본 등 ▷ 산업재산권 등록원부 ▷ 지방세 납세증명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산업재산권 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 회계자료	▷ 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기금홈페이지 내 "재무데이터 제출센터"에 인터넷/팩스 송부 또는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입력가능	재무 데이터
	국세청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에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 신청한 후 발급번호를 기보에 고지	홈택스 서비스

* 신청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요 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신청도 가능)
↓		
예비검토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면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보증액,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생산능력 등을 확인
↓		
심사·승인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 중소기업 정책정보 : www.bizinfo.go.kr



궁금해요! 중기맨

- 대출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 금융거래확인서를 대상으로 동 확인서의 기준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1개월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보유한 사실이 있거나, 3개월이내에 10일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용어 설명

- KTRS (Kibo Technology Rating System) 평가표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시스템으로, 기술 또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기타 경영환경을 등급화하여 제시한 표
- R&D평가표
 R&D개발과제기술의 개발성공가능성, 사업화성공가능성, 부실가능성을 등급화하여 제시한 표



4-8 특허기술가치평가 연계보증

특허권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가치평가를 통한 사업화자금 보증지원

사업화 이전단계에 있는 우수한 특허기술을 조기에 발굴하고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금융지원을 하는 제도로, 등록된 특허기술에 대해 기술가치평가를 거쳐 산출된 기술가치금액 이내에서 보증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특허권의 기술가치평가금액 이내(업체당 10억원 한도)

* 특허기술의 타기업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권을 담보취득(근질권 설정)

지원 대상 등록된 특허권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으로 KTRS 또는 KTRS-Startup에 따라 산출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기업

* 특허권은 개인기업은 대표자, 법인기업은 법인이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포함)인 경우에 한함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특허기술 기술가치평가에 따른 사업화자금 보증지원

* 특허청의 기술평가수수료 지원결정시 5백만원까지 지원함(업체부담금은 20만원)

신청·접수 연중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신청 서류

	구 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기보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 후 사이버영업점에 제출하거나 팩스로 송부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발급수수료는 고객이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등·초본 등 ▷ 산업재산권 등록원부 ▷ 지방세 납세증명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산업재산권 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 회계자료	▷ 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기금홈페이지 내 "재무데이터 제출센터"에 인터넷/팩스 송부 또는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입력가능	재무 데이터
	국세청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에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 신청한 후 발급번호를 기보에 고지	홈택스 서비스

* 신청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 중소기업 정책정보 : www.bizinfo.go.kr



궁금해요! 중기맨

- 특허출원중인 경우 '특허기술가치평가 연계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 등록된 특허권만 보증 대상이며, 이는 보증취급과 동시에 반드시 담보(근질권)취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용어 설명

- 특허기술 사업화 이전단계
 시제품제작 완료단계(연구개발이 완료되어 연구개발의 최종결과가 나온 상태)



4-9 문화산업완성보증

문화상품(콘텐츠)제작자금에 대한 보증 지원제도

문화상품의 제작사가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의 제작을 완성하여 인도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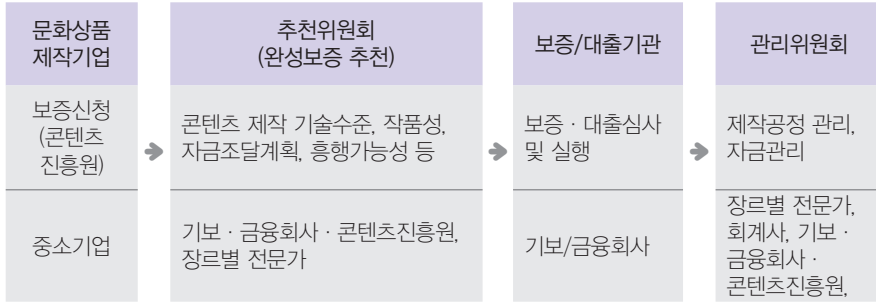
지원 규모 2,200억원(한도 소진시 까지)

* '12년 지원현황 : 32개 프로젝트, 375억원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 대상기업 :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기업으로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기업
 - 문화상품은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영화, 방송, 게임, 공연에 한함
- 최대 보증지원 금액 (아래 항목 모두 충족)
 - 프로젝트당 최고 50억원
- 보증금액 결정 (자금조달율에 따라 차등지원)
 - 제작비의 40%이상 자금조달 확정: 아래의 금액중 가장 작은 금액
 - * 보증신청금액
 - * 제작비의 30%
 - * 향후 소요자금
 - * 선판매금액 중 기수령금액을 차감한 금액
 - 제작비의 60%이상 자금조달 확정: 아래의 금액중 가장 작은 금액
 - * 보증신청금액
 - * 제작비의 30%
 - * 향후 소요자금

운영 체계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중앙평가원(1544-1120)
-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금융팀(02-3153-1280)



궁금해요! 중기맨

- 완성보증제도의 시행근거와 보증재원의 조달방법은 무엇인가요?
☞ 완성보증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근거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문화관광부와 수출입은행 등 금융회사가 재원을 출연하여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어 설명

- 선판매금액
콘텐츠 제작완료 전 제3자와 체결한 콘텐츠 판매계약서상에 명시된 판매금액

4-10 기술평가

무형의 기술에 대하여 그 기술의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평가

무형의 기술을 대상으로 그 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금액, 등급, 의견 등으로 표시하는 제도로써, 기술가치평가, 기술사업 타당성평가, 종합 기술평가 등으로 분류하며 평가목적, 용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 기술을 보유한자(승계인 또는 전용실시권자 포함)
- 투·융자, 현물출자 등을 위하여 평가를 필요로 하는 자 등

평가신청 제한기업

- 기술의 권리 등에 관하여 분쟁중에 있는 경우 등

평가 대상

- 특허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중인 권리
-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중인 권리
-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권리
- 신기술사업자가 보유한 기술 등

기술평가 종류 및 지원 내용

종류	주요 내용
기술가치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 현물출자 특례대상 산업재산권 등의 평가 ▷ 외국인 출자 산업재산권 등의 평가 ▷ 기술의 담보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평가 ▷ 기술의 이전·거래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평가 ▷ 기술관련 사업의 이전, 양수도 등을 위한 평가 ▷ 기타 기술 또는 기술사업 관련 가치평가

종 류	주 요 내 용
기술사업 타당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 확인 및 이노비즈기업 선정 평가 ▷ 발명의 사업성 평가 ▷ 금융기관 등의 여신심사용 기술평가 ▷ 기술이전·거래 등을 위한 타당성 평가 ▷ R&D 평가 ▷ 보증지원을 위한 평가
종합기술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의 투자용평가 ▷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평가 ▷ 주식가치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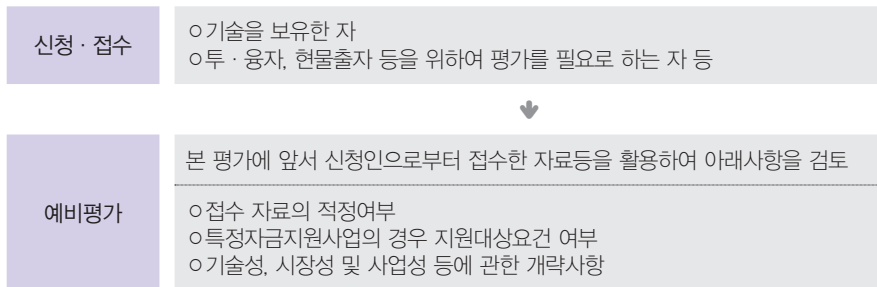
신청·접수 연중 상시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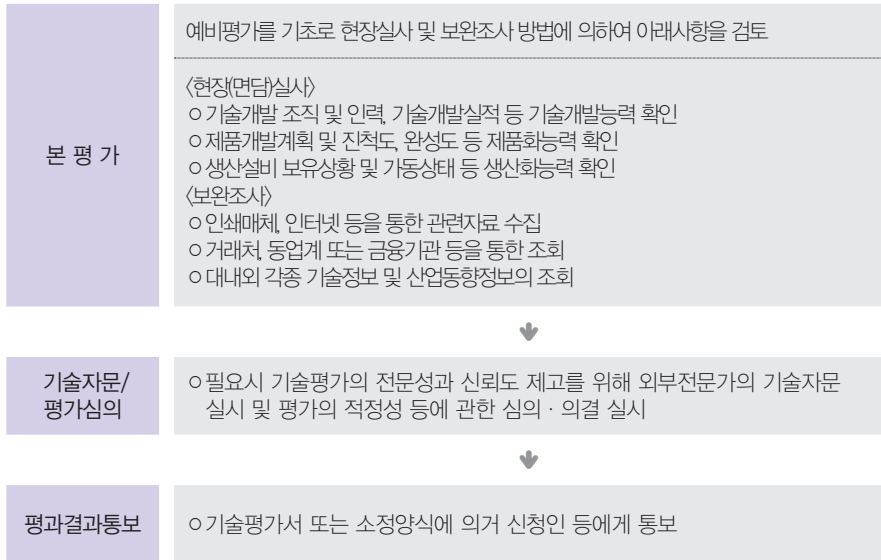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신청 서류

- 기술평가신청서
- 기술사업계획서(기술가치평가용, R&D평가용, 기타목적용)
- 기타 특허등록원부 등 기술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신청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 중소기업 정책정보 : www.bizinfo.go.kr



용어 설명

- **기술가치평가**
기술에 의하여 현재 시현되고 있거나 장래에 시현될 기술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
- **종합기술평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술을 경영환경, 사업전망 등 기업의 실체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정액평가료**
평가세부종류별로 업무를 구분하여 평가목적 또는 범위 등에 따라 사전에 일정금액을 정하여 운용하는 기술평가료
- **계약평가료**
정액평가료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평가의뢰인 또는 신청인 등과 개별계약을 통해 결정하여 운용하는 기술평가료

4-11 벤처확인평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의2 규정에 의한 평가

기술보증기금은 국내 기술평가 선도기관으로서 벤처확인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06.6월부터 벤처확인공시시스템 벤처인(www.venturein.or.kr)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벤처확인 평가유형 및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벤처기업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별표1)

벤처확인 평가유형 및 조건

벤처유형	벤처 요건
기술평가보증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성 평가가 우수할 것 ▷ 보증·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일 것(창업후 1년미만은 4천만원 이상) ▷ 보증·대출금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이상일 것 (창업후 1년미만 기업과 보증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비율적용 배제) * 보증이 불필요한 기업은 보증지원이 가능한 보증승인금액만으로도 벤처인증을 받을 수 있음.
연구개발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고,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 신청일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총매출액의 5~10% 이상일 것 (창업후 3년 미경과 기업과 매출액이 없는 기업은 비율적용 배제) ▷ 사업성 평가가 우수할 것
예비벤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 기술성, 사업성 평가가 우수할 것

*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년

평가료 및 수수료

벤처유형	벤처확인 평가료	벤처 요건
기술평가보증기업	20만원	10만원
연구개발기업		
예비벤처기업		

* 부가가치세 별도, 기술평가보증 신규취급후 6개월내 신청시에는 확인평가료 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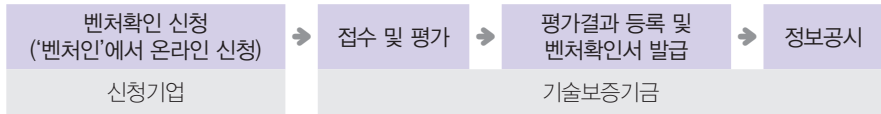
신청 · 접수

- 벤처인(www.venturein.or.kr)에서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기술평가센터

제출 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연구개발비 산정표
 - 벤처인 홈페이지(www.venturein.or.kr)에서 다운로드

처리 절차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 벤처인(www.venturein.or.kr) : 1577-0270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비즈인포(www.bizinfo.go.kr)



궁금해요! 중기맨

- 기존 벤처기업이 기한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확인서를 연장시키고자 할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벤처기업과 동일한 신청 및 평가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다만 신규 벤처기업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나, 기존 벤처기업은 유효기간 만료전 2개월부터 만료후 1개월 이내에 벤처인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실 경우 확인서 발급일이 아니라 기존 유효기간 익일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어 유효기간 연장의 효과가 있게 됩니다.

[별표 1]

벤처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세세분류)	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여관업
	55119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55909	그외 기타 숙박업
	56111	한식 음식점업
	56112	중식 음식점업
	56113	일식 음식점업
	56114	서양식 음식점업
	56120	기관구내식당업
	56119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56131	출장 음식 서비스업
	56192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56193	치킨 전문점
	56194	분식 및 김밥 전문점
	56132	이동 음식점
	56199	그외 기타 음식점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56219	기타 주점업
	56191	제과점업
56220	비알콜 음료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주거용건물임대업
	68112	비주거용건물임대업
	68119	기타부동산임대업
	68121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68122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68129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68221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골프장운영업
	91223	노래연습장운영업
	91291	무도장운영업
	91249	기타댄블링 및 베테업
	96111	이용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96112	두발미용업
	96113	피부미용업
	96119	기타미용업
	96121	욕탕업
	96122	마사지업
	96129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96912	가정용세탁업
	96913	세탁물공급업
	96921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96922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96991	예식장업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96993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96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4-12 이노비즈 인증평가

『중기청 공고』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 규정에 의한 평가

이노비즈(Inno-Biz)란 혁신(Innovation)과 기업(Business)의 합성어로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정부에서는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이노비즈기업에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연계 지원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자가진단 결과 650점 이상인 기업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이노비즈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별표2)
- 파산, 회생절차 신청한 기업 및 국세체납 등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자로 규제받고 있는 기업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구분	내 용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설립후 3년이상이고 정상 가동중인 기업
선정기준	▷ 기술혁신시스템 점수 700점 이상이고, 기술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기업

평가료

- 신규신청 70만원, 유효기간 연장 4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 Inno-Biz 인증평가와 Inno-Biz 금융지원협약보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Inno-Biz 금융지원협약보증에 관한 기술평가료는 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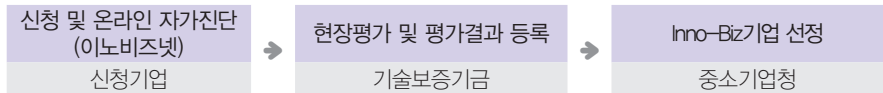
신청 · 접수

- 이노비즈넷(www.innobiz.net)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각종 인증서 및 산업재산권 관련 서류 등
 - 기술사업계획서는 이노비즈넷 홈페이지(www.innobiz.net)에서 다운로드

처리 절차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 이노비즈넷(www.innobiz.net) : 031-628-9651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비즈인포(www.bizinfo.go.kr)



궁금해요! 중기맨

- 이노비즈 실사시 준비사항은 어떻게 되는지요?

☞ Inno-Biz 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차 온라인 자가진단 후 2차 현장평가를 통한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Inno-Biz기업으로 선정됩니다.

2차 현장평가에서는 온라인 자가진단에서 자체 평가했던 내용에 대하여 기업이 사실대로 평가를 했는지의 신뢰성 유무를 확인하며, 기업이 보유한 개별기술에 대한 현황과 보유기술에 대한 혁신성 및 기술성 등을 평가하므로 실사기업은 이에 따른 검증자료와 기술에 대한 일련의 서류 및 설명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용어 설명

- 이노비즈 기업

<오솔로 매뉴얼>에 의한 2단계에 걸친 혁신성 평가를 통과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Inno-Biz 인증을 받은 핵심 기업군을 의미

[별표 2]

이노비즈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세세분류)	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여관업
	55113	휴양콘도 운영업
	55119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55909	그외 기타 숙박업
	56111	한식 음식점업
	56112	중식 음식점업
	56113	일식 음식점업
	56114	서양식 음식점업
	56120	기관구내식당업
	56119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56131	출장 음식 서비스업
	56192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56193	치킨 전문점
	56194	분식 및 김밥 전문점
	56132	이동 음식점업
	56199	그외 기타 음식점업
	56211	일반유희 주점업
	56212	무도유희 주점업
	56219	기타 주점업
	56191	제과점업
56220	비알콜 음료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주거용건물임대업
	68112	비주거용건물임대업
	68119	기타부동산임대업
	68121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68122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68129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68221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골프장운영업
	91223	노래연습장운영업
	91291	무도장운영업
	91249	기타캠블링 및 베틀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96111	이용업
	96112	두발미용업
	96113	피부미용업
	96119	기타미용업
	96121	욕탕업
	96122	마사지업
	96129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96912	가정용세탁업
	96913	세탁물공급업
	96921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96922	화장, 모지분양 및 관리업
	96991	예식장업
	96992	접술 및 유사서비스업
	96993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96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4-13 기술이전 및 M&A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이전·M&A의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지원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기술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내·외부의 다양한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효과적으로 배양할 수 있도록 우수 기술(기업)의 발굴, 이전 협상, 추가 기술개발 지원 등의 기술이전 및 M&A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술(기업 포함) 매도·매수기업

지원 내용

- 기술이전·M&A기업 분석 및 추진 계획의 타당성 진단
- 기업간 매수·매도 교섭지원
- 세무, 회계, 법무 컨설팅 알선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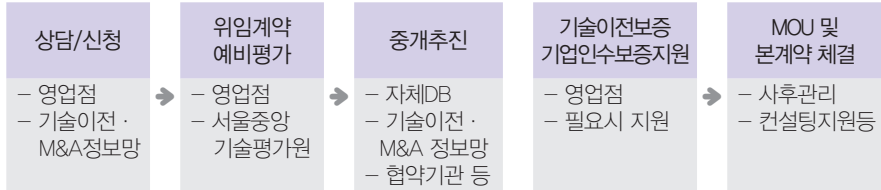
연중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 및 각 영업점

신청 서류

- 기술이전 중개신청서 또는 M&A 중개신청서
 - * 신청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 및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용어 설명

- **기업인수보증제도**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소요되는 기업인수자금, 기술개발자금, 설비도입자금, 사업화자금을 Package방식으로 단계별 보증지원하는 제도
- **기술이전보증제도**
기술이전과정에서 소요되는 기술도입자금, 기술완성화자금, 생산시설자금, 개발제품 생산자금을 Package방식으로 단계별 보증지원하는 제도

4-14 녹색인증평가

「지식경제부 고시」녹색인증제운영요령 및 지침에 의한 평가

기술보증기금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한 녹색인증관련 평가기관으로서 녹색기술·녹색사업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으로 인증대상을 구분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 신재생에너지 등 10대 분야(85개 중점분야) 유망기술	녹색산업설비 및 기반시설의 설치·공사, 녹색기술 및 산업의 응용·보급·확산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서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 9대 분야(녹색기술 10대 분야 중 신소재 제외) 105개 사업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 매출액의 30%이상인 기업

신청·접수 연중 상시 접수

- 녹색인증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를 통해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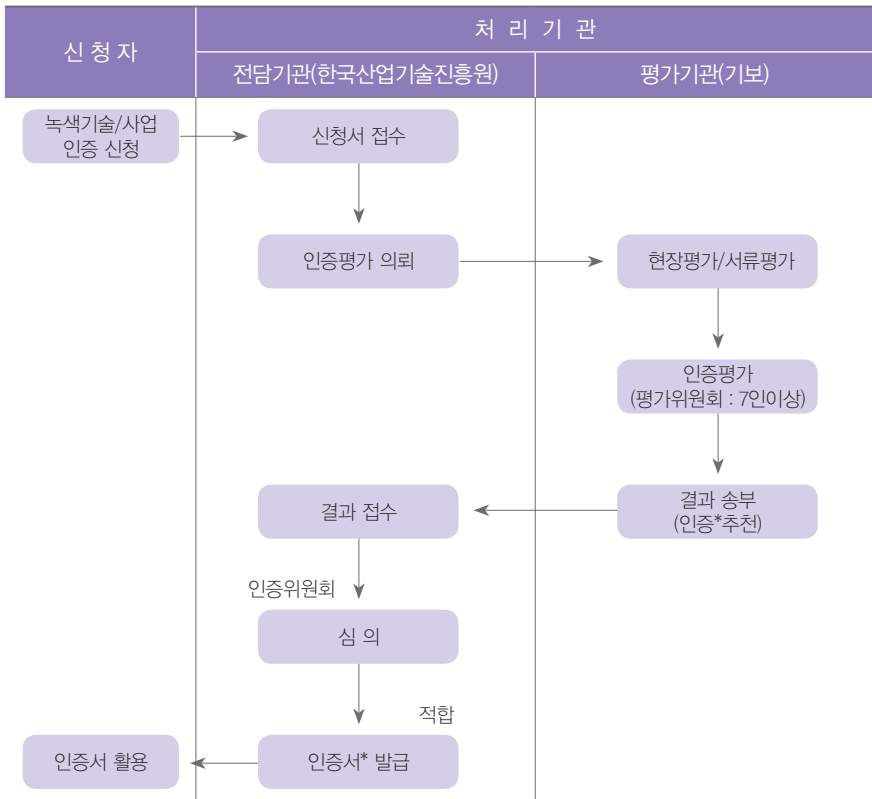
신청 서류

녹색기술인증	녹색사업인증	녹색전문기업확인
1. 신청 기술 설명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1. 신청 사업 설명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1. 매출비중 내역서 및 공인회계사확인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 신청양식은 녹색인증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 녹색인증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인증신청 접수 및 심의·발급을 전담하고 인증평가업무는 기보 등 지정된 평가기관에서 담당
 - 전담기관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녹색인증(전문기업 확인포함) 신청을 일괄접수 후 소관 부처 지정 평가기관에 평가의뢰
 - * 녹색인증에 대한 심의·의결 등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위촉한 산·학·연 전문가 15인 내외로 구성된 녹색인증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평가기관은 현장평가,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인증평가 수행



* 녹색전문기업 확인신청의 경우 평가기관에서(현장·서류평가 및 평가위원회 개최생략) 확인검토 실시후 추천하며 전담기관에서 확인서 발급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별표 1]

인증대상 녹색기술

(음영부분 기술만 기보 평가대상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번호
01 신재생 에너지	01 태양광	01 태양전지 및 모듈제조용 소재	T010101
		02 결정계 태양전지 및 모듈	T010102
		03 박막형 태양전지 모듈	T010103
		04 태양전지 및 모듈 생산 자동화 설비	T010104
		05 태양전지용 BOS (Balance Of system) 주변기기	T010105
	02 연료전지	01 건물용PEMFC(핵심소재)	T010201
		02 건물용PEMFC(핵심부품)	T010202
		03 건물용PEMFC(시스템보조기기(BOP))	T010203
		04 건물용PEMFC(시스템 양산제조기술)	T010204
		05 건물용PEMFC(연료전지 생산용장비)	T010205
		06 분산발전용 MCFC(핵심소재)	T010206
		07 분산발전용 MCFC(핵심부품기술)	T010207
		08 분산발전용 MCFC(시스템보조기기(BOP))	T010208
		09 분산발전용 MCFC(시스템및시스템양산제조기술)	T010209
		10 건물용SOFC (구성요소 및 스택)	T010210
		11 건물용 SOFC (관련 BOP)	T010211
		12 건물용 SOFC (시스템)	T010212
	03 풍력	01 풍력발전 시스템 요소부품	T010301
		02 풍력발전 운영/모니터링 시스템	T010302
		03 해상풍력	T010303
		04 풍력발전시스템	T010304
	04 IGCC(석탄/ 중질잔류 복합발전)	01 가스화공정	T010401
		02 합성가스정제 및 개질	T010402
		03 합성가스 이용 플랜트	T010403
	05 바이오·폐기물 에너지	01 바이오에탄올	T010501
		02 바이오부탄올	T010502
		03 바이오디젤	T010503
		04 바이오가스	T010504
		05 BTL (Biomass to Liquid)	T010505
		06 바이오 오일 연료	T010506
		07 식물성 기름 연료	T010507
	06 해양에너지	01 조력발전	T010601
		02 조류발전	T010602
		03 파력발전	T010603
		04 해수온도차 이용	T010604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번호
01 신재생 에너지	06 해양에너지	01 조력발전	T010601
		02 조류발전	T010602
		03 파력발전	T010603
		04 해수온도차 이용	T010604
	07 태양열	01 태양열 활용기기 기술	T010701
		02 태양열 소재 및 재료 기술	T010702
		03 중저온 태양열활용시스템기술	T010703
		04 고온 태양열활용시스템기술	T010704
	08 지열	01 지열냉난방기술	T010801
		02 심부지열 개발기술	T010802
		03 심부지열 활용기술	T010803
02 탄소 저감	01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01 연소후 CO2 포집플랜트	T020101
		02 연소전 CO2 포집플랜트	T020102
		03 연소중 CO2 포집플랜트	T020103
		04 CO2 압축플랜트	T020104
		05 CO2 저장플랜트	T020105
		06 CO2 수송플랜트	T020106
		07 CO2 이용 유용물질 생산플랜트	T020107
	02 Non-CO2 온실가스 처리	01 환경기초시설발생 메탄이용/저감기술	T020201
		02 모니터링 관리시스템	T020202
		03 불화가스 저감	T020203
		04 N2O 저감	T020204
	03 원자력	01 원자력노심 재료 및 핵연료	T020301
		02 원전 계통 및 안전	T020302
		03 원전제어계측기술	T020303
		04 원전성능향상	T020304
		05 원전환경	T020305
		06 방사화학/악티나이드 화학	T020306
		07 SMART	T020307
		08 수출맞춤형 연구로	T020308
	04 에너지저장	01 니켈-금속수소전지	T020401
		02 리튬이온전지	T020402
		03 리튬이온폴리머전지	T020403
		04 나트륨-황(NaS)전지	T020404
		05 레독스플로우(RedoxFlow) 전지	T020405
		06 초고용량 커패시터	T020406
		07 리튬이온 커패시터	T020407
		08 BMS(Battery Management System)기술	T020408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번호
05 청정연료		01 석탄가스화	T020501
		02 석탄가스 정제	T020502
		03 석탄가스 액화	T020503
		04 천연가스 리포밍	T020504
		05 천연가스 유래 FT합성	T020505
		06 육상용 GTL 통합공정	T020506
		07 해상 GTL-FPSO 통합공정	T020507
		08 GTL FPSO 핵심기자재	T020508
		09 SNG 합성	T020509
		10 DME·메탄올 합성	T020510
		11 천연가스 유래 MeOH 합성	T020511
		12 천연가스 유래 DME 합성	T020512
		13 Upgrading 공정	T020513
06 히트펌프		01 전기구동 히트펌프(EHP)	T020601
		02 열원구동 히트펌프(AHP)	T020602
		03 가스구동 히트 펌프(GHP)	T020603
07 신광원 고효율 조명		01 실내용 LED 조명기기 및 부품	T020701
		02 풀칼라 LED 감성 조명기기	T020702
		03 실외용 LED 조명기기 및 부품	T020703
		04 무전극 램프	T020704
		05 고효율HID램프	T020705
		06 CNT 조명	T020706
		07 OLED 조명	T020707
		08 지능형 조명시스템	T020708
08 소형열병합		01 스팀링엔진 열병합발전기술	T020801
		02 소형 가스터빈 열병합발전	T020802
		03 가스엔진 열병합발전	T020803
09 에너지 다소비 기기 및 산업공정 고효율화		01 시멘트 제조공정 고효율화기술	T020901
		02 제철 제조공정 고효율화기술	T020902
		03 제지 제조공정 고효율화기술	T020903
		04 공업로 고효율화기술	T020904
		05 건조기 고효율화기술	T020905
		06 보일러 고효율화기술	T020906
		07 전동기 고효율화기술	T020907
		08 조명기기 고효율화기술	T020908
		09 냉난방기기 고효율화기술	T020909
		10 가전기기 고효율화기술	T020910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번호
	10 핵융합	01 KSTAR	T021001
		02 ITER	T021002
		03 핵융합 실증로 노심 및 계통	T021003
		04 핵융합 실증로 재료	T021004
		05 핵융합 실증로 핵심장치	T021005
		06 핵융합 실증플랜트 종합 설계	T021006
		07 핵융합 실증플랜트 건설 및 시운전	T021007
		08 핵융합 실증플랜트 인허가 및 안전	T021008
		09 핵융합 실증플랜트 운전 보수유지	T021009
03 첨단 수자원	01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01 하천환경 조사/평가	T030101
		02 홍수터 보전·복원	T030102
		03 자연친화적 하도 조성	T030103
		04 생물서식환경 조성	T030104
	02 담수 플랜트	01 차세대 해수담수화 하이브리드 플랜트	T030201
		02 신재생 담수플랜트	T030202
	03 자연재해 대응시스템	01 홍수방어 시설	T030301
		02 홍수 대응·관리 시스템	T030302
		03 물부족 대응 시스템	T030303
		04 기후변화 평가·예측·적응	T030304
		05 가뭄·홍수예측 및 피해저감	T030305
	04 통합수자원관리	01 IT/GIS 기반 수자원 정보시스템	T030401
		02 유역 물 해석	T030402
		03 수자원 평가 및 관리	T030403
	05 수계 수질 평가/관리	01 인공위성 활용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T030501
		02 지상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T030502
		03 상·하수 관망 유량/오염도 모니터링 시스템	T030503
		04 오염 하천 정화	T030504
		05 유해물질 위해성 센싱시스템	T030505
	06 해양수자원	01 해양용존 리튬	T030601
		02 심층수	T030602
	07 고효율 농촌수자원	01 농업용수고도이용	T030701
		02 농업용수시설개선	T030702
		03 농업용수관리시스템	T030703
		04 청정농업용수 공급 및 관리	T030704
	08 고도 수처리	01 하·폐수 처리 기술	T030801
		02 하·폐수 재이용 기술	T030802
		03 이산화탄소 저 발생 수처리 기술	T030803
04 빗물 이용 장치		T030804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번호	
04 그린IT	09 누수방지 및 절수	05 지능형 분리막 및 장착 시스템	T030805	
		06 정수기술	T030806	
		01 상하수도관망 누수방지 기술	T030901	
		02 물 수요관리 및 절수기술	T030902	
		01 LED	01 RGB LED 칩	T040101
			02 LED 패키지	T040102
	03 차세대 LED 제조장비		T040103	
	04 수송용 LED 광원 모듈		T040104	
	05 의료/바이오/환경 LED 광원모듈		T040105	
	06 디스플레이 LED 광원모듈		T040106	
	02 시스템 반도체	01 정보통신/가전 반도체	T040201	
		02 친환경 절전형 전력반도체	T040202	
		03 임베디드 메모리 반도체	T040203	
		04 바이오 반도체	T040204	
	03 차세대 디스플레이	01 대화면 AMOLED 디스플레이	T040301	
		02 OLED 조명	T040302	
		03 친환경 초절전 LCD	T040303	
		04 친환경 초절전 PDP	T040304	
		05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전자종이 등)	T040305	
04 그린 SW & 솔루션	01 IT기기 에너지 절감 솔루션	T040401		
	02 가상화 SW	T040402		
	03 에너지 소비 모니터링 및 최적화기술	T040403		
	04 전동기제어솔루션	T040404		
	05 전자문서관리	T040405		
	06 전자문서 디지털 디바이스	T040406		
05 그린 컴퓨팅	01 그린컴퓨팅 하드웨어기술	T040501		
	02 그린컴퓨팅 소프트웨어 기술	T040502		
	03 그린클라우드 컴퓨팅기술	T040503		
	04 그린컴퓨팅 인프라기술	T040504		
06 그린 임베디드 SW	01 정보기기용 임베디드 SW 플랫폼	T040601		
	02 모바일용 임베디드 SW 플랫폼	T040602		
	03 초소형 운영체제 플랫폼	T040603		
	04 임베디드 SW 개발도구	T040604		
	05 CPS(Cyber Physical System) 컴퓨팅 플랫폼	T040605		
07 차세대 센서 네트워크	01 개별물품 인식 RFID	T040701		
	02 광역 USN 통신시스템	T040702		
	03 지능형 RFID/USN 미들웨어	T040703		
	04 지능형 에너지 절감용 USN 시스템	T040704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번호
		05 사회기반시설 모니터링 USN 시스템	T040705
	08 Digital 선박	01 선박내 정보인프라 시스템	T040801
		02 선박용 이동/위성통신시스템	T040802
		03 e-navigation 기반 운항정보 시스템	T040803
	09 스마트그리드	01 스마트변전시스템	T040901
		02 스마트송전시스템	T040902
		03 AMI시스템	T040903
		04 스마트배전시스템	T040904
		05 DC/FACTS(Flexible AC Transmission System)	T040905
	10 차세대 이차전지	01 초소형 박막 이차전지	T041001
		02 플렉서블 이차전지	T041002
		03 고체 전해질 전지	T041003
		04 리튬공기전지	T041004
	11 디지털방송	01 디지털 방송 전송 기술	T041101
		02 디지털 방송 측정 기술	T041102
		03 디지털 방송 요소기술	T041103
		04 디지털 방송 서비스 기술	T041104
		05 차세대 실감방송	T041105
	12 무선통신	01 이동통신	T041201
		02 TRS 통신	T041202
		03 LBS	T041203
		04 근거리 무선 데이터 통신	T041204
		05 해상/항공/위성 무선통신	T041205
	13 방송통신네트워크	01 초고속 네트워크	T041301
		02 홈 네트워크	T041302
		03 인터넷데이터 센터(IDC)	T041303
	14 전자파	01 전파응용	T041401
		02 전파지원 활용 기술	T041402
		03 전파기반	T041403
	15 콘텐츠 제작 및 응용 녹색기술	01 영상·뉴미디어 콘텐츠	T041501
		02 가상현실콘텐츠	T041502
		03 공연·전시 콘텐츠	T110203
05 그린 차량· 선박	01 그린카	01 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	T050101
		02 클린디젤 자동차	T050102
	02 저공해 고효율 차량	01 온실가스/배출가스 저감형 자동차	T050201
		02 신재생/저탄소연료/ 대체연료 자동차	T050202
	03 그린농기계	01 농작업기계	T050301
		02 농용 트랙터	T050302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번호	
	04 WISE Ship	01 미래형 친환경 선박	T050401	
		02 해양플랜트	T050402	
		03 친환경 레저 보트	T050403	
	05 첨단 철도	01 첨단철도용 에너지 저감 및 공급기술	T050501	
		02 첨단철도 친환경기술	T050502	
		03 첨단차량/ 부품 설계기술	T050503	
		04 차상/지상 신호시스템 기술	T050504	
		05 궤도토목 기술	T050505	
	06 그린자전거	01 고부가가치형 경량자전거	T050601	
	07 고효율 해상물류	01 물류시스템 계획 및 설계	T050701	
		02 물류시설 및 장비	T050702	
		03 물류운영 및 관리	T050703	
	08 해사안전	01 해상교통안전	T050801	
		02 해양인적안전	T050802	
		03 해양안전관리	T050803	
	06 첨단 그린 주책 · 도시	01 U-City	01 U-City 통합운영센터	T060101
			02 U-City 운영관리	T060102
			03 U-City 스마트그리드	T060103
			04 Eco-Road 조성	T060104
05 도시 물순환 통합관리			T060105	
06 U-Eco 공간구성 컴포넌트			T060106	
07 U-Eco 공간구축			T060107	
02 ITS (지능형교통시스템)		01 U-교통 서비스 기반	T060201	
		02 교통연계 및 환승시스템	T060202	
		03 Smart Highway	T060203	
03 GIS(공간정보)		01 실시간 능동형 국토 공간시스템	T060301	
		02 지능형 도시시설물 관리시스템	T060302	
		03 차세대 공간정보 융합시스템	T060303	
04 저에너지 친환경주책		01 고효율 외피시스템	T060401	
		02 저탄소 친환경 건축자재	T060402	
		03 고효율 설비시스템	T060403	
		04 농촌환경 농가주책	T060404	
07 신소재		01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01 고품위 마그네슘 원소재	T070101
			02 고기능 마그네슘 주조재	T070102
	03 고성형 마그네슘 판재		T070103	
	04 고강도 마그네슘 형재		T070104	
	05 고효율 마그네슘 융합소재		T070105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번호
02 Ionic Liquid 소재		01 전해질 소재	T070201
		02 분리정제 소재	T070202
		03 그린촉매공정 소재	T070203
		04 마찰저감 소재	T070204
03 나노탄소융합소재		01 탄소나노튜브(CNT)	T070301
		02 흑연 나노섬유(GNF)/탄소 나노섬유(CNF)	T070302
		03 탄소섬유	T070303
		04 복합소재	T070304
04 기능성 나노필름		01 광학용 나노필름	T070401
		02 열응용 나노필름 및 소재	T070402
		03 에너지변환 나노필름(농업용필름 포함)	T070403
05 농산자원유래 천연소재		01 건강기능성 식품 소재	T070501
		02 기능성 화장품 소재	T070502
		03 기능성 바이오 신소재	T070503
		04 천연식품첨가물	T070504
		05 향생제 대체 천연 사료첨가제	T070505
06 친환경 농자재		01 작물보호 관리 자재	T070601
		02 토양개량/작물생육 자재	T070602
07 희토류자성소재		01 Nd계 희토류 소결자석소재	T070701
		02 Nd계 희토류 본드자석소재	T070702
08 고특성 알루미늄 소재		01 친환경 알루미늄 원소재	T070801
		02 고기능 알루미늄 주조재	T070802
		03 고성형 알루미늄 판재	T070803
		04 고강도 알루미늄 형재	T070804
		05 고품위 알루미늄 재생 소재	T070805
09 그린섬유 소재		01 자원활용 친환경 녹색섬유소재	T070901
		02 에너지저감형 녹색섬유소재	T070902
10 LED용 사파이어 단결정 소재		01 대규모 사파이어 단결정	T071001
11 압전하베스팅 소재		01 나노기반 압전하베스팅	T071101
12 해양생명공학		01 해양유래신소재	T071201
		02 해양생물공정	T071202
13 바이오헬스케어		01 단백질의약품	T070101
		02 치료용항체	T070102
		03 백신	T070103
		04 유전자제의약품	T070104
		05 재생제의약품	T070105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번호	
		06 천연물의약품	T070106	
08 청정 생산	01 국제환경규제대응	01 유해물질 대체	T080101	
	02 무오염생산	01 유니 소재	T080201	
		02 그린프린팅 제품	T080202	
		03 그린 프로세스(E2) 제품 E2 : Ecological and Economic	T080203	
		04 무배출 그린생산	T080204	
		05 청정융합	T080205	
	03 자원순환	01 자원순환(HM2, Hidden Materials Mining)	T080301	
		02 재제조(Remufacturing)	T080302	
		03 에너지·자원순환네트워크(생태산업단지)	T080303	
	04 해양광물자원	01 바다모래 채취기술	T080401	
09 친환경 농식품	01 생태환경변화대응	01 식량자원 LCI(Life Cycle Inventory) 구축	T090101	
		02 농업환경	T090102	
		03 어업환경	T090103	
		04 산림환경	T090104	
		05 재해·질병 방제	T090105	
	02 생물자원	01 유전자원	T090201	
		02 산품종	T090202	
	03 저투입생산	01 대체에너지 이용	T090301	
		02 LED 이용	T090302	
		03 친환경생산	T090303	
	04 첨단자동화 시스템	01 작업용로봇	T090401	
		02 동식물공장시스템	T090402	
		03 어업(양식)자동화	T090403	
	05 식품생산	01 유기식품	T090501	
		02 저에너지/저탄소 식품	T090502	
		03 에너지절약형 가공기술	T090503	
	06 안전유통	01 검역시스템	T090601	
		02 품질관리시스템	T090602	
		03 냉각시스템	T090603	
		04 저장·포장재	T090604	
		05 에코주방시스템	T090605	
	10 환경 보호 및 보전	01 기후변화예측 및 모델링	01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	T100101
			02 지구시스템 모델링	T100102
			03 탄소수지 정량화	T100103
		02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01 기후변화영향 감시	T100201
			02 기후변화영향·취약성 평가	T100202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번호
		03 기후변화 적응	T100203
		04 기후변화 모니터링	T100204
	03 폐기물 및 폐자원	01 폐기물/자원 회수/처리	T100301
		02 폐기물/자원 재활용	T100302
		03 폐기물 저감	T100303
	04 유기성 부산물 에너지/자원화	01 폐목재 바이오매스	T100401
		02 하수슬러지/음식쓰레기	T100402
		03 가축분뇨	T100403
		04 농수산 부산물	T100404
	05 친환경제품	01 친환경 원부자재	T100501
		02 환경친화성 첨가제	T100502
		03 친환경제품 설계 및 생산/처리 기술	T100503
	06 생태계 보전 및 복원	01 생태계 모니터링 및 정보관리	T100601
		02 인간 활동에 대한 생태영향 평가	T100602
		03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관리	T100603
		04 토양/지하수 오염 정화/복원	T100604
	07 유해성 물질 모니터링 및 환경 정화	01 에코 실내 환기설비	T100701
		02 건물 공조용 공기정화설비	T100702
		03 기능성 건축자재	T100703
		04 유해성물질 측정 센서	T100704
		05 유해성물질 측정기	T100705
		06 실내환경 진단/개선	T100706
		07 악취/휘발성 유기화합물 처리설비	T100707
		08 유해 대기오염물질 제어/관리 기술	T100708
	08 기상관측장비/예보	01 상층관측	T100801
		02 지상관측	T100802
		03 원격탐사	T100803
		04 예보시스템	T100804

[별표 2]

인증대상 녹색사업

(음영부분 기술만 기보 평가대상임)

대분류	중분류	분류번호
01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사업	01 태양에너지 개발·보급·활용	P010100
	02 풍력(해상·육상)에너지 보급	P010200
	03 연료전지 개발보급	P010300
	04 석탄가스화복합발전(GCC) 플랜트 건설·운영	P010400
	05 바이오연료 고효율화 공정·설비 설치·운영	P010500
	06 목질계/에너지작물 개발·보급	P010600
	07 해양에너지(해양바이오연료 포함) 및 해양자원 보급·이용	P010700
	08 신재생에너지용 해양공간 조성	P010800
	09 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	P010900
	10 소각여열 회수 재이용	P011000
	11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플랜트 건설·운영	P011100
	12 매립가스 자원화	P011200
	13 지열에너지 개발·보급·활용	P011300
02 탄소저감 플랜트/시스템 구축 사업	01 CO2포집·저장·활용플랜트설치·운영	P020100
	02 온실가스 저감 실증 플랜트 조성	P020200
	03 Non-CO2배출저감	P020300
	04 도시기반 복합형 에너지 플랜트 설치·운영	P020400
	05 탄소저감을 위한 원자력 이용	P020500
	06 청정연료 고효율화 공정·설비 설치·운영	P020600
	07 신광원 고효율 조명시스템 개발·보급·활용	P020700
	08 열병합발전 시스템 플랜트 설치·운영	P020800
	09 에너지다소비 산업(제철, 제지, 시멘트) 고효율화 공정·설비 설치·운영	P020900
03 첨단수자원 개발·처리·관리 사업	01 해수 담수화	P030100
	02 공공 지하수 개발 및 함양	P030200
	03 우수 유출 저감 및 저류시설	P030300
	04 우수 수집·정화·이용시설 설치	P030400
	05 대하천 홍수 조절지 건설	P030500
	06 환경친화형 중소규모 댐 건설	P030600
	07 막여과 정수시설 설치·운영	P030700
	08 상수도 개발 및 관리	P030800
	09 첨단 광역 상수도 망 공급	P030900
	10 고효율 하·폐수처리 및 재이용 플랜트 건설·운영	P031000
04 그린IT 활용·보급 사업	01 스마트그리드 도입·확산	P040100
	02 LED 응용·보급·확산	P040200

대분류	중분류	분류번호
	03 RFID/USN 응용·보급·확산	P040300
	04 친환경·초절전 디스플레이(OLED 포함) 응용·보급·확산	P040400
	05 고효율 그린 IDC 전환·구축·보급 확산	P040500
	06 EMS(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	P040600
	07 원격협업시스템·스마트워크센터 구축	P040700
	08 디지털 방송 제작·보급·확산	P040800
	09 무선통신 서비스·인프라구축	P040900
	10 방송통신네트워크 서비스·설치·인프라구축	P041000
	11 전자파 서비스·설치·인프라구축	P041100
	12 실감형 3D/4D 콘텐츠 보급·확산	P041200
	13 가상 서비스 보급·확산	P041400
	14 e-book 콘텐츠 보급·확산	P041500
05 그린카·녹색교통수단 및 시스템 보급·확산 사업	01 친환경 그린카 보급	P050100
	02 그린카 지원인프라(충전, BD주유소 등) 구축	P050200
	03 친환경 자전거 이용기반(도로망, 공용운용시스템 등) 구축(*)	P050300
	04 차세대 첨단도로 구축	P050400
	05 차세대 고속철도 시스템(인버터형 전기기관차 포함) 구축	P050500
	06 도시형 경량철도 시스템(무가선 저상트램, 자기부상열차, 고무차륜 등 포함) 구축	P050600
	07 대도시권 교통체계(환승시설, 급행버스체계, 지하교통망 포함) 구축	P050700
	08 U-GIS 도시 인프라 구축	P050800
	09 지능형 교통체계 (ITS) 구축	P050900
	10 운행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P051000
06 첨단 그린주택· 도시·기반시설 보급·확산 사업	01 친환경 건설자재 보급	P060100
	02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초고층 빌딩 포함) 신·개축	P060200
	03 청정에너지 이용 주택 건축, 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P060300
	04 장수명 공동주택 건설	P060400
	05 실내 주거환경 개선	P060500
	06 도시재생(친환경 건축물 해체, 건축물 및 단지 녹화, 신항옥단지 조성 포함)	P060600
	07 U-City 통합 운영센터 구축	P060700
	08 U-Eco 공간 및 시설 구축	P060800
	09 에너지 자립형 마을(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P060900
	10 녹색도시 조성	P061000
07 청정생산 기반구축사업	01 기업간 용수 재이용 시스템 구축	P070100
	02 기업간 에너지 교환망 (폐열 재이용) 구축	P070200
	03 산업단지-지역사회 에너지 교환망 구축	P070300

대분류	중분류	분류번호	
	04 대중소기업 그린파트너십 구축	P070400	
	05 화학물질관리서비스(CMS) 구축	P070500	
	06 지역에코혁신 구축	P070600	
	07 그린오션기술이전 및 보급체계 구축	P070700	
	08 폐금속자원 재자원화 체계 구축	P070800	
	09 재제조 시스템 구축	P070900	
	08 친환경 안전 농식품 지원· 공급 사업	01 유기농축산물 기반구축·생산·가공	P080100
		02 밀폐형 청정 동식물 생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P080200
		03 지속가능한 식품클러스터 기반 구축	P080300
04 에너지절감 농업생산 시스템		P080400	
05 마을/온실용 지역난방네트워크 기반구축 및 활성화		P080500	
06 농지/농업용수 정화 및 관리		P080600	
07 가축분뇨/농산부산물 가공 및 재활용		P080700	
08 에너지 절감형 어선시스템 생산 및 보급		P080800	
09 환경보호 및 보전 사업	01 숲 조성 및 관리(*)	P090100	
	02 환경적 보호가치 높은 지역의 조정(*)	P090200	
	03 자연체험 학습시설 조성 및 관리(*)	P090300	
	04 농산어촌 녹색테마공원 조성	P090400	
	05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 및 복원(*)	P090500	
	06 생태축 조성(*)	P090600	
	07 습지보전·관리(*)	P090700	
	08 도서, 해안 사구 보전 관리(*)	P090800	
	09 하천변시설(둔치, 저류지, 지하수 관리 등) 정비	P090900	
	10 홍수예방 하천시설 및 상습침수지구 정비	P091000	
	11 폐기물 재활용 플랜트 설치·운영	P091100	
	12 폐전기전자제품 및 포장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P091200	
	13 지역기후변화 영향 감시·평가·적응(종합, 부문)	P091300	
	14 토양·지하수 보전 및 오염복원	P091400	
	15 수질오염물질 배출 저감 플랜트 설치·운영	P091500	
	16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플랜트 설치·운영	P091600	
	17 해양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구축	P091700	
	18 녹색거점(새만금 등) 연안공간 조성	P091800	
	19 해양생태계·해양환경 관리체계 구축	P091900	
	20 친환경적 폐석면 처리	P092000	
	21 생태관광 및 친환경 관광	P092100	
	22 생태우수마을/생태복원우수마을 조성(*)	P092200	

(*) 공공 인프라 성격의 사업



4-15 보증연계투자

기술혁신선도형기업에 대하여 보증과 연계하여 투자 지원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 초기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보증과 투자를 연계한 보증·투자복합상품으로, 기술보증기금이 창업초기 기술혁신선도형기업의 유가 증권권을 직접 인수하여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2013년 500억원(매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동)

- * 2011년까지 매년 100억원 규모(10여개 업체) 지원

지원 대상

- 보증거래기업 또는 보증과 투자를 함께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법인 설립후 5년 이내의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B등급이상이고, 재무등급이 BBB등급이상인 기업
 - *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BB등급이상으로서, 설립후 3년 이내의 기업 또는 투자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은 재무등급 적용 생략 가능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보증기관 사고기업 등

지원 내용

- 투자한도 : 업체당 30억원(보증금액 포함시 100억원)
 - 단, 투자금액은 해당기업에 보증한 금액 초과 불가
- 투자종류 : 주식(보통주, 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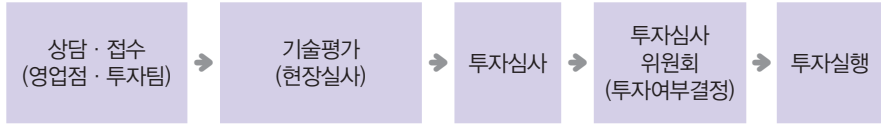
신청 · 접수 기술보증기금 본부 · 기술평가센터

제출 서류

	구 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기보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 후 사이버영업점에 제출하거나 팩스로 송부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발급수수료는 고객이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등 · 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산업재산권 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 회계자료	▷ 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기금홈페이지 내 "재무데이터 제출센터"에 인터넷/팩스 송부 또는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입력가능	사전 동의서
	국세청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에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 신청한 후 발급번호를 기보에 고지	홈택스 서비스

* 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투자팀 : 02-3215-5991, 4, 6~7
- 기술보증기금 본부·기술평가센터 : 1544-1120



4-16 경영개선지원제도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보증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

기술력과 사업성이 있으나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기업중 기업의 지원으로 경영애로 해소가 가능한 기업을 선정하여 신규보증지원, 보증재조정, 기업지도, M&A 또는 기술거래 중개, 기타 경영·기술지원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2013년 경영개선지원보증 1,000억원

* 12년 경영개선지원보증 지원현황 : 232개 업체 946억원(2012.11.30일 현재)

지원 대상

- 기술보증기금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한 “관찰대상기업”, “중점관리기업” 등 사업안정성 취약기업 및 보증사고유보기업중 기술력과 사업성이 있어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보증사고발생기업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의 적용을 받는 구조조정 대상기업

지원 내용

- 신규보증지원, 보증 재조정, 기업지도, M&A 또는 기술거래 중개, 기타 경영·기술지원 등 경영정상화 지원
- 세부지원 내역

분야	내용	비고
신규보증지원	• 신규보증은 일반 신규보증지원절차에 의하여 지원	
보증재조정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금액, 보증기한, 보증료 등을 조정하여 경영개선 유도	보증한도 70억원이내
기업지도	• 경영합리화 유도, 생산성 향상 또는 기술개발 지원	

분 야	내 용	비 고
M&A 또는 기술거래증개	• 자금부족 등으로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 성장한계 극복,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촉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기타 경영·기술지원	• 필요한 경우 기술보증기금 내규에 의해 경영지원 및 기술지원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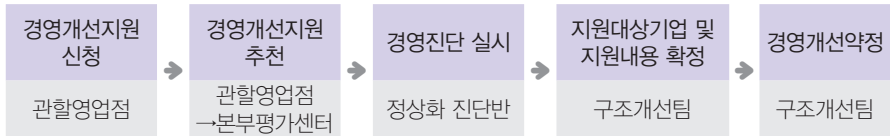
신청·접수 연중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보증관할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신청 서류 경영정상화계획서

* 신청양식은 보증관할 영업점 문의

처리 절차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궁금해요! 중기맨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지 않은 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경영개선지원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보증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기업은 경영개선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용어 설명

- 경영진단
기술보증기금 보증기업 담당팀장, 신청기업관련 기술전공 박사급 인력 등으로 구성된 정상화진단반에 의한 경영애로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 진단

05

신용보증재단중앙회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5-1 소기업 · 소상공인 등 신용보증지원 · 227
- 5-2 청년창업 특례보증 · 229
- 5-3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 230
- 5-4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 232
- 5-5 나들가게 특례보증 · 233
- 5-6 희망드림론 · 235
- 5-7 일자리창출 및 성장산업특례보증 · 236
- 5-8 햇살론 신용보증 · 238



5-1 소기업 · 소상공인 등 신용보증지원

담보력이 부족한 자영업자 신용보증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내 소기업 ·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유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12년 11월말 보증잔액 기준 13.5조원 지원(햇살론 포함)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1월
보증공급 (기한연장포함)	건 수	467,173	375,842	256,434	258,231
	금 액	83,909	67,940	60,801	58,418
보증공급 (기한연장미포함)	건 수	419,574	283,517	146,297	146,240
	금 액	71,360	46,904	37,279	34,889
보증잔액	건 수	660,367	833,412	835,802	828,824
	금 액	111,955	132,479	136,088	134,881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지원 금지 · 제한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보증 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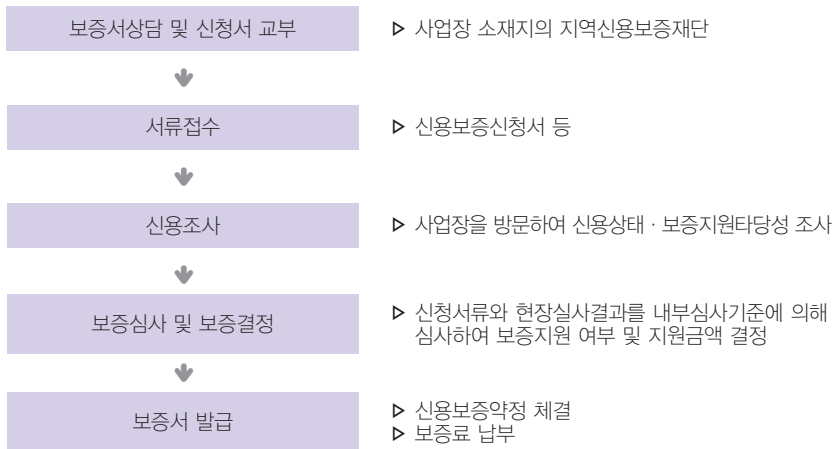
같은 기업당 8억원 이내

- 운전자금한도 : 매출액 한도 적용
- 시설자금한도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내

제출 서류

① 신용보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임차계약서 사본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자가사업장 및 자가주택인 경우 제출 생략 -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인터넷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출력사용함
④ 주민등록등본	▶공동대표자인 경우 각각 제출 - 보증신청접수일로부터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에 한함
⑤ 금융거래확인서	▶보증신청일 현재 여신잔액이 10백만원 이상인 금융기관 및 채권은행 - 단 채권은행의 경우 분건을 제외한 차입금이 10백만원 미만인 경우 제출 생략
※ 법인기업의 경우 추가 제출서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주주명부 사본

처리 절차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중소기업정책정보 : www.bizinfo.go.kr



5-2 청년창업 특례보증

우수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창업기업 신용보증

고용창출효과가 큰 지식서비스산업 등에서의 젊은 인재의 적극적인 창업유도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대표자(실제경영자)가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업, 제조업을 영위 중인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지원 금지 · 제한

- 업력 3년 초과 및 대표자가 연령 만 40세 이상의 기업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규모

보증공급 기준 1,600억원으로 운용

- *'12년 11월말 기준 : 3,925건/1,239억원 지원
- *협약체결 금융기관 : 기업은행, 우리은행

보증 한도

기업당 7천만원 이내(제조업은 1억원 이내)

문의 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중소기업정책정보 : www.bizinfo.go.kr



5-3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신용보증

사회적기업에 특화된 전용보증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제공 또는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상품입니다.

지원 대상

-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회적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한 사회적기업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

- 비영리법인·조합·단체, 상법상 회사 등의 조직형태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 실현
- 서비스 수혜자·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30% 이상
- 정관이나 규약 등을 구비
- (상법상 회사)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지원 규모

- * '12년 11월말 기준 : 95건/55억원 지원
- * 협약체결 금융기관 : 기업은행

보증 한도

같은 기업당 4억원 이내

신청 절차



신청 서류

- 신용보증신청서
- 사회적기업 인증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지방세완납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 사업장 및 거주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 금융거래 확인서
- 재무제표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중소기업정책정보 : www.bizinfo.go.kr



5-4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출연협약 금융기관 추천 자영업자 신용보증

금융기관이 재단 및 중앙회에 재원을 출연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에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영세자영업자 및 시설보수,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로 협약 체결 금융기관으로부터 추천된 자영업자

지원 금지·제한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협약 금융기관 농협, 국민, 신한, 기업, 우리, 하나, 산업은행

*'12년 11월말 기준 : 3조 2,414억원 지원

보증 한도 같은 기업당 8억원 이내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중소기업정책정보 : www.bizinfo.go.kr



5-5 나들가게 특례보증

시설현대화 소규모 슈퍼 신용보증

SSM(Super-Supermarket) 진출확대로 매출액 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매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소규모 슈퍼의 시설현대화 및 조직화에 의한 물류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나들가게(스마트샵)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보증상품입니다.

지원 대상

- 신용등급에 불문하고 중소기업청의 당해연도 「스마트샵(나들가게)육성 사업계획」에 의해 육성자금지원대상 점포총면적 300㎡이하의 소매점주로서 '선정위원회' 에서 나들가게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지방중소기업청 자금추천서 발급)

나들가게

- 쇼핑환경, 가격, 위생, 서비스 및 정보화수준 등에서 경쟁력을 갖춘 우수점포로 중소기업청의 나들가게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장

지원 규모

보증공급 기준 800억원으로 운용

- * '12년 11월말 기준 : 2,841건/910억원 지원
- * 협약체결 금융기관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보증 한도

사업자당 1억원 이내

1) 점포총면적 300㎡이하의 소매점주로서 '선정위원회' 에서 나들가게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

신청 절차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중소기업정책정보 : www.bizinfo.go.kr



5-6 희망드림론

새마을금고 연계 지역내 자영업자 신용보증

새마을금고와 연계하여 자활의지가 있는 지역 내 영세 소기업 ·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지역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획된 보증상품입니다.

지원 대상

- 6대 뿌리산업 및 농수축산 가공 · 유통산업, 영리 사회적 기업에 종사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영리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 중 상법상 회사 또는 영농조합법인

지원 규모

보증공급 기준 1,400억원으로 운용

- * '12년 11월말 기준 : 4,604건/960억원 지원
- * 협약체결 금융기관 : 새마을금고

보증 한도

사업자당 5천만원 이내(시설자금 1억원 이내)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중소기업정책정보 : www.bizinfo.go.kr



5-7 일자리창출 및 성장산업 특례보증

일자리창출 및 지식서비스업 등 신용보증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강화를 통해 고용촉진을 도모하고 실업난을 해소하며, 수출업, 1인창조기업, 지식서비스업 등 성장산업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를 통해 경제활성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지원 규모 보증공급 기준 3,000억원

* '12년 11월말 기준 : 4,017건/947억원 지원

* 협약체결 금융기관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중앙회

지원 대상

- 신용평가시스템의 신용등급 “CCC” 등급 이상 신규고용 창출 및 성장산업 영위중인 소상공인

신규고용 창출 소상공인

- 최근 3개월간 상시근로자 감소 사실이 없으며, 전년 말 대비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의 평균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업체

성장산업 영위중인 소상공인

- 최근 3개월 이내 수출실적 보유 수출기업, 1인 창조기업, 지식서비스업 소상공인

보증 한도 같은 기업당 5천만원 이내

신청 절차



신청 서류

- 신용보증신청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장 및 거주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 금융거래 확인서
- 고용창출기업 : 국민연금보험료 고지내역서
- 성장산업기업 :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취소불능화환신용장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중소기업정책정보 : www.bizinfo.go.kr



5-8 햇살론 신용보증

저신용 · 저소득 자영업자 및 근로자 채무보증

물적 담보력이 부족한 일반 영세기업, 저신용 · 저소득 자영업자 및 근로자에게 담보 처럼 활용할 수 있는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영세기업 및 근로자가 서민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구 분		사업자	근로자			
지원목표		5년간 10조원('10.7.26 ~)				
대출기관		지역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상호저축은행				
보증기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금융기관 업무위탁		▷ 보증신청서류 안내 및 접수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사고관리 (채권보전조치) 일체			
지원 대상	기본요건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소득자		
	공통요건	▷ 저신용자(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 ▷ 저소득자(신용등급 5등급 이상인 경우 연소득 2,600만원 이하)				
	추가요건	성실상환자(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의 변제계획에 따라 12회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자 / 대환자금 지원 불가)				
지원한도		운영자금	창업자금	대환자금	생계자금	대환자금
		2천만원	5천만원	3천만원	1천만원	3천만원
* 대환자금 : 대부업체 · 캐피탈사 · 저축은행 및 신용카드업을 경영하는 은행과 신용카드사의 20% 이상 고금리 채무 대환용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임차계약서 사본(사업장, 거주주택) · 금융거래확인서 · 소득금액 확인서류 · 사업사실 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근로소득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증명서 - 급여통장거래내역서 - 건강보험자격실확인서(가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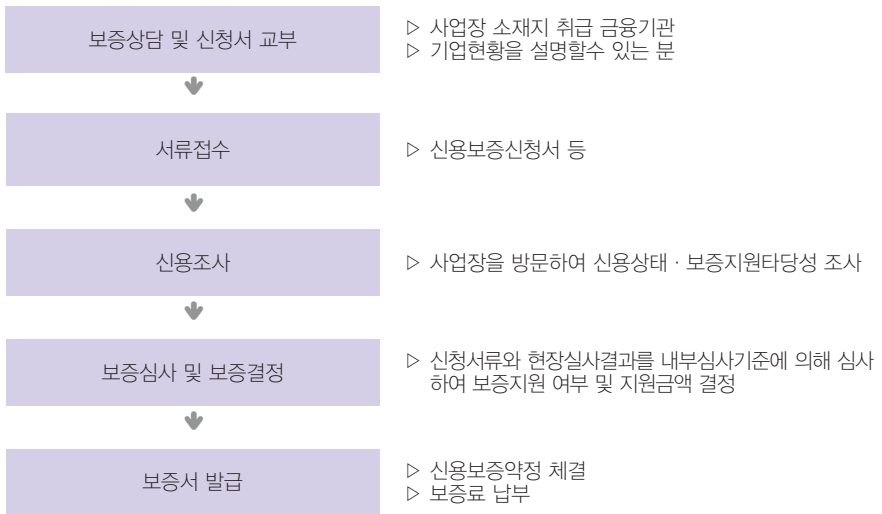
지원 규모

(단위 : 건/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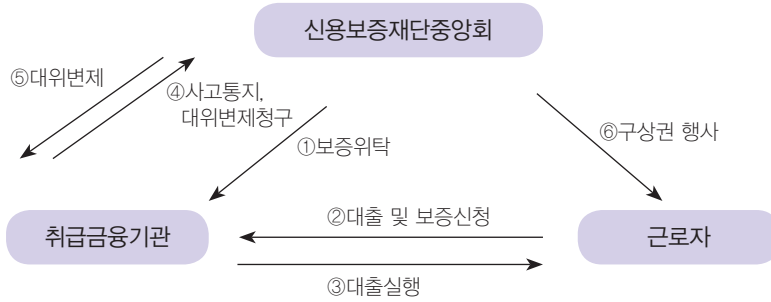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11월			
	합 계	햇살론 (사업자)	햇살론 (근로자)	합 계	햇살론 (사업자)	햇살론 (근로자)	합 계	햇살론 (사업자)	햇살론 (근로자)	
보증 공급	건수	152,731	62,266	90,465	56,097	22,589	33,508	60,775	16,710	44,065
	금액	11,781	5,912	5,869	4,109	1,998	2,111	4,735	1,448	3,287
보증 잔액	건수	150,967	61,864	89,103	185,189	76,243	108,946	208,568	78,417	130,151
	금액	11,279	5,866	5,413	12,203	6,960	5,243	12,748	6,740	6,008

처리 절차

● 사업자 보증절차



• 근로자 보증절차



대출취급 서민금융기관에서 보증과 대출이 원스톱(One-Stop)으로 이루어짐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중소기업정책정보 : www.bizinfo.go.kr

〈 참고 〉

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나라키움대전센터 13층,14층,15층 (우)302-847
 전 화 : (042) 480-4201~2 / 팩 스 : (042) 480-4007,4008
 홈페이지 : www.koreg.or.kr 햇살론안내: www.sunshineloan.or.kr
 대표전화 : 1588-7365

지 역	주 소	전화번호 (팩 스)
강 원 www.gwsinbo. co.kr	본 점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45 033-251-0011 (033-251-1356)
	원주지점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033-745-3295 (033-745-3297)
	강릉지점	강원도 강릉시 울곡로 2845 033-644-1378 (033-644-1351)
	속초지점	강원도 속초시 청학로 37 033-638-9780 (033-638-9783)
	태백지점	강원도 태백시 황지로 188-1 033-554-0630 (033-5540-0633)
	동해지점	강원도 동해시 중앙로 250 033-534-1411 (033-534-1441)
	영월센터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978-1 033-374-6300 (033-374-9600)
	철원센터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971 033-452-8400 (033-452-8900)
	홍천센터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9-1 033-433-2600 (033-433-2602)
경 기 www.gcgf.co.kr	본 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5 031-259-7700 (031-259-7777)
	수원지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5 031-888-5454 (031-888-5466)
	의정부지점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474-2 031-826-9092 (031-826-9086)
	성남지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7-1 031-709-7733 (031-703-9944)
	부천시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92 032-328-7130 (032-328-7409)
	평택지점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031-653-8555 (031-653-8556)

지 역	주 소	전화번호 (팩 스)
안양지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674-93	031-387-3525 (031-387-3678)
고양지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21-3	031-968-7744 (031-968-0020)
안산지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0	031-482-8401 (031-482-8412)
화성지점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474-3	031-366-8070 (031-366-8076)
남양주지점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42-2	031-559-8160 (031-559-8166)
이천지점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4-25	031-635-2514 (031-635-8796)
용인지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829	031-285-8681 (031-285-8610)
시흥지점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726-1	031-434-8797 (031-434-8798)
김포지점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931	031-997-1278 (031-997-1283)
포천지점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726-84	031-543-1737 (031-543-1739)
파주지점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952-1	031-942-7521 (031-942-7568)
광주지점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18-24	031-767-7100 (031-767-4100)
양주지점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654-4	031-844-7955 (031-844-7956)
동탄지점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104-13	031-613-8777 (031-613-8144)
군포출장소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35-2	031-391-7728 (070-7614-2311)
가평출장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476-1	031-581-7703 (070-7614-2317)
연천출장소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305-12	031-832-7708 (070-7614-2318)
의왕출장소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842	031-421-7739 (070-7614-2312)
광명출장소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384	02-2060-7768 (070-7614-2313)
안성출장소	경기도 안성시 동본동 40	031-672-7243 (070-7614-2314)
여주출장소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흥문리 22	031-883-7754 (070-7614-2315)
동두천출장소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3동 593-2	031-858-7728 (070-7614-2316)
하남출장소	경기도 하남시 신장2동 522	031-791-7780 (070-7614-2319)

경 기
www.gcgf.co.kr

지 역	주 소	전화번호 (팩 스)
경 남 www.gnsinbo.or.kr	본 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055-212-1250 (055-212-1276)
	진주지점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1042 055-743-5333 (055-743-5888)
	양산지점	경남 양산시 중앙로 138 055-364-2181 (055-364-2185)
	마산지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북성로 5 055-246-1788 (055-246-7260)
	거제지점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1895 055-634-5800 (055-634-5805)
	김해지점	경남 김해시 가락로 105 055-338-2390 (055-338-2396)
	창원지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055-212-1250 (055-212-1275)
	사천지점	경남 사천시 수남길8 055-835-7480 (055-835-7484)
	통영지점	경남 통영시 죽림로 73 055-902-8300 (055-902-8306)
경 북 www.gbsinbo.co.kr	본 점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054-474-7100 (054-474-7104)
	포항지점	경북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054-283-2730 (054-283-2704)
	경산지점	경북 경산시 원효로 15 053-811-0790 (053-811-0793)
	안동지점	경북 안동시 남문동 20 054-854-3300 (054-854-3340)
	경주지점	경북 경주시 중앙로 32 054-777-0140 (054-777-0139)
	영주지점	경북 영주시 번영로 149 054-631-8300 (054-631-8302)
	영천지점	경북 영천시 시장로 45 054-336-6800 (054-336-6900)
	김천지점	경북 김천시 김천로 154 054-433-1300 (054-434-1310)
	문경지점	경북 문경시 중앙로 141 054-556-7400 (054-556-7404)
광 주 www.kjsinbo.co.kr	본 점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 8번로 177 062-950-0011 (062-950-0063)
	동지점	광주시 동구 제봉로 225 062-236-0045 (062-236-2366)
	서지점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1114 062-362-0091 (062-363-0094)
	북지점	광주시 북구 설죽로 341 062-576-0091 (062-576-3535)
	남지점	광주시 남구 봉선로 13 062-654-8055 (062-654-8059)

지 역		주 소	전화번호 (팩 스)
대 구 www.ttg.co.kr	본 점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146-29	053-560-6300 (053-554-9905)
	범어동지점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223-5	053-744-6500 (053-744-9077)
	유통단지지점	대구시 북구 산격 2동 1676	053-601-5255 (053-601-5176)
	월배지점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 530-8	053-639-4343 (053-639-4146)
	동촌지점	대구시 동구 입석동 988-3	053-982-7500 (053-982-7515)
대 전 www.sinbo.or.kr	본 점	대전시 유성구 가장북로 96	042-380-3800 (042-380-3888)
	중부지점	대전시 중구 대종로 478	042-223-0470 (042-254-0475)
부 산 www.busansinbo.or.kr	본 점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051-860-6600 (051-816-4551)
	동부산지점	부산시 수영구 수영로 597	051-860-6750 (051-755-6030)
	북부산지점	부산시 사상구 새벽로 223	051-860-6700 (051-316-6788)
	중부산지점	부산시 중구 구덕로 87-1	051-860-6800 (051-831-6878)
	서부산지점	부산시 사하구 낙동강로 1424	051-860-6730 (051-831-1180)
서 울 www.seoulshinbo.co.kr	본 점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02-2174-5115 (02-3278-8114)
	마포지점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02-2174-5515 (02-3278-8134)
	종로지점	서울시 종로구 종로 189	02-3670-5815 (02-3278-8136)
	강북지점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57	02-901-5415 (02-3278-8140)
	성수지점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22길 37	02-2049-4312 (02-3278-8142)
	중랑지점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757	02-490-4215 (02-3278-8144)
	은평지점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830	02-350-4315 (02-3278-8146)
	명동지점	서울시 중구 퇴계로 131	02-3783-5715 (02-3278-8148)
	신설동지점	서울시 동대문구 난계로 252	02-2230-8715 (02-3278-8139)
	강남지점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01	02-3467-3635 (02-3278-8164)
	영등포지점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02-2168-7315 (02-3278-8166)

지역	주소	전화번호 (팩스)
서울 www.seoulshinbo.co.kr	구로지점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 32길 29 02-2027-7517 (02-3278-8168)
	강서지점	서울시 양천구 등촌로 216 02-2657-6415 (02-3278-8170)
	송파지점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13 02-2143-4512 (02-3278-8172)
	강동지점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012 02-2224-9725 (02-3278-8174)
	사당지점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 9 02-520-1915 (02-3278-8176)
	금천지점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34 02-6292-3613 (02-3278-8191)
	도봉지점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 136 02-2289-3712 (02-3278-8188)
울산 www.ulsanshinbo.co.kr	본점	울산시 북구 산업로 915 052-289-2300 (052-289-8964)
	남울산지점	울산시 남구 봉월로 5 052-283-0101 (052-266-7994)
인천 www.icsinbo.or.kr	본점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032-260-1515 (032-260-1570)
	남부지점	인천시 남구 경인로 59 032-889-3611 (032-889-3615)
	부평지점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23 032-508-1954 (032-508-1960)
	서인천지점	인천시 서구 서곶로 299 032-569-0321 (032-569-0325)
	계양지점	인천시 계양구 장제로 871 032-542-3911 (032-542-3918)
	남동지점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032-260-1500 (032-260-1571)
전남 www.jnsinbo.or.kr	본점	전남 순천시 백강로 38 061-729-0600 (061-729-0608)
	목포지점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061-285-0745 (061-285-0747)
	화순지점	전남 화순군 화순읍 진각로 126 061-374-0743 (061-374-0746)
	장성지점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68 061-392-9992 (061-392-9980)
	강진지점	전남 강진군 강진읍 영랑로 35 061-433-4363 (061-433-4366)
전북 www.jbcredit.co.kr	본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2 063-230-3333 (063-230-3377)
제주 www.jejuinbo.co.kr	본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33 064-758-5740 (064-758-5748)
	서귀포지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정로 67 064-733-8133 (064-733-8136)

지 역	주 소	전화번호 (팩 스)	
충 남 www.cnsinbo.co.kr	본 점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041-530-3800 (041-541-9838)
	공주지점	충남 공주시 봉황로 125	041-858-4701 (041-858-4704)
	서산지점	충남 서산시 고운로 168	041-668-8871 (041-668-8879)
	천안지점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041-622-9831 (041-622-9830)
	보령지점	충남 보령시 터미널길 29	041-933-9831 (041-933-9879)
충 북 www.cbsinbo.or.kr	본 점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043-236-2691 (043-237-0362)
	남부지점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	042-733-9711 (043-733-9714)
	충주지점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100	043-856-9061 (043-856-9064)
	제천시점	충북 제천시 풍양로 92	043-651-9100 (043-651-9104)

06

기업은행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6-1 2013년 중소기업 대출 지원현황 · 248
- 6-2 창업기업 대출 · 250
- 6-3 혁신형기업 대출 · 251
- 6-4 구매기업 추천서(발주서)에 의한 대출지원 · 252
- 6-5 어음할인 지원 · 253
- 6-6 기업구매자금대출 · 255
- 6-7 기업구매카드대출 · 256
- 6-8 시설투자대출 · 257
- 6-9 IBK-K · sure(한국무역 보험공사) 협약 보증 · 258



6-1 2013년 중소기업 대출 지원현황

담보력이 부족한 자영업자 신용보증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을 기업의 규모, 형태, 소요자금 한도내에서 대출을 지원합니다.

운전 자금

분류	주요 대출상품	대출 용도	비고
결제성여신	당좌대출	○약속어음, 당좌수표 발행후 만기 교환결제	-
	할인어음	○경상적인 상거래로 수취한 어음(전자어음 포함)을 어음만기일까지 할인 지원	-
	기업구매자금대출	○판매기업의 물품납품 후 환어음지급제시→ 구매자금으로 판매기업에 결제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기업이 물품구매 후 판매기업에게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지원	3가지 방식
	기업구매카드대출	○구매기업이 물품대금을 '구매카드' 또는 '역구매카드'로 결제하고, 해당 결제내역을 근거로 만기일까지 할인 지원	구매카드 역구매카드
	무역금융	○수출의 선적전 금융으로 지급보증 및 결제자금 지원(원자재구매, 생산자금, 완제품구매자금, 포괄금융)	-

분류	주요 대출상품	대출 용도	비고
중 소 기 업 연 계	중소기업자금대출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 운전자금 대출	-
	지급보증	○원화지급보증, 사채보증 등	-
	중소기업회전대출	○대출한도약정 후 필요자금 인출	-
	소기업대출	○소기업 소상공인 등 지원자금	-
	의료사업자대출	○메디칼네트워크론	-
	네트워크론	○구매기업에 납품하는 협력기업에게 구매기업이 발행한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지원 후 구매기업의 결제대전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대출	발주서 방식 실적방식
	수시로대출	○약정한도 범위내에서 마이너스통장대출	-

시설자금

주요 대출상품	대출 용도
IBK시설투자대출	경상적인 생산 및 영업활동 등을 위하여 시설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사업장분양자금 (집단대출)	건설분양 사업시행자로부터 일괄하여 대출신청을 받아 다수의 분양자에게 개별대출
회사인수자금대출	중소기업자가 업종전환 또는 사업다각화를 위하여 다른 주식회사의 인수(지분인수 포함)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6-2 창업기업대출

창업기업의 소요자금을 창업자금으로 대출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창업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소요자금을 창업자금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자

■ 창업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함

- ①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②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③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창업일

- ① 법인기업이면 법인설립등기일
- ② 개인기업이면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개업일)

지원 분야

운전자금, 시설자금

협약 보증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보증협약 운용

문의 처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6756



6-3 혁신형기업대출

기술인증기업에 자금지원

혁신형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보증기관과 부품소재산업진흥원, 벤처기업협회 등과 제휴로 별도의 특화상품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부 R&D과제 성공기업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우수기업으로 추천받은 기업
- 기술혁신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R&D 우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협약에 의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대출 한도

운전자금 10억원, 시설자금 30억원 이내

대출 기간

- 운전자금 : 3년 이내(기간연장 포함 최장 5년이내)
- 시설자금 : 15년 이내(거치기간 1/3 포함)

문의 처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6756



6-4 구매기업 추천서(발주서)에 의한 대출지원

납품전 생산자금 지원

납품기업과 구매기업의 추천서나 발주서로 납품전 생산자금 지원과 필요 운전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지원 내용

대기업 등 다수의 구매기업과 기업은행이 업무협약을 맺고 용자 추천하는 중소기업에게 납기 전 생산자금을 지원

대출 대상

당행과의 네트워크를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은 해당 구매기업으로부터 “용자추천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대출 한도

- 발주서방식 : 연간 납품예상금액 범위내에서 연간매출액의 1/2
- 실적방식 : 연간 납품예상금액 범위내에서 연간매출액의 1/2

대출 기간

- 발주서방식 : 발주서의 납품기한 + 6개월
- 실적방식 : 1년 이내(최장 5년 이내 기간연장 가능)

대출 실행 절차

- 발주서방식 : 구매기업이 전송한 발주내역을 은행 홈페이지의 기업전용 인터넷Site에서 차주가 직접대출 또는 은행 영업점에 내점하여 발주서별로 대출실행
- 실적방식 : 대출(마이너스통장) 한도 범위내 수시 입출상환

문의처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6756

6-5 어음할인 지원

출연협약 금융기관 추천 자영업자 신용보증

물품대금으로 수취한 어음(전자어음)을 보다 손쉽게 현금화하기 위해 어음금액을 어음 만기일까지 대출하는 상품입니다.

1. 우대어음 무담보·무보증 할인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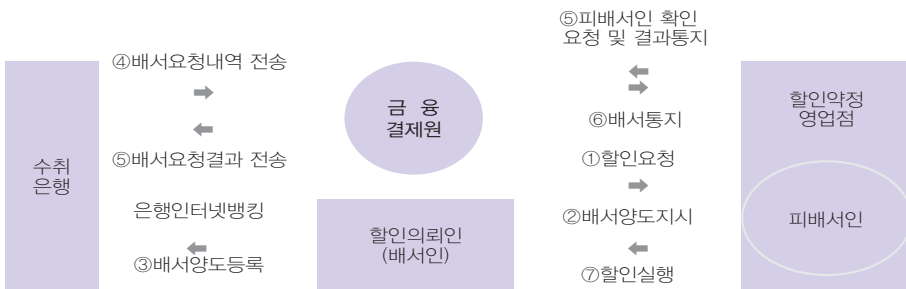
대출 한도 당·타행 할인어음, 외상매출채권, 판매카드 약정액을 포함하여 연간(추정)매출액의 1/2 범위내 또는 기업은행 기준 10억원 범위내 지원

우대어음별 할인지원

- 발행인기준 우대어음 : 신용도가 우수한 기업이 발행한 어음으로 어음군(1군~5군)에 따라 최고 50억원에서 5억원까지 저리의 신용대출로 지원
- 중소로얄어음 : 당행 거래 중소기업중 신용도가 우수한 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수취한 중소기업이 할인의뢰시 5억원까지 저리의 신용대출로 지원
- 중소골드어음 : 당행 거래 중소기업중 신용도가 우수한 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수취한 중소기업이 할인의뢰시 3억원까지 저리의 신용대출로 지원
 - * 상기 우대어음 이외의 일반어음을 상거래대전으로 수취하여 할인의뢰하는 경우 일반은전자금에 적용하는 신용도에 따른 금리차등율을 50%까지 우대

2. 전자어음 할인지원

전자어음 할인지원 절차



⑥ 기업은행

전자어음의 장점

- 기업인터넷뱅킹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존 종이어음을 이용한 구매기업의 대금결제와 판매기업의 수금관리 업무를 개선할 수 있어 비용절감이 가능
- 종이어음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변조, 분실, 기일관리 등의 문제 해결 가능
- 금융결제원과 연계하여 은행의 표준시스템을 표준화함으로써, 어느 은행에 서나 이용가능하여 전자상거래의 편리한 결제수단으로 사용가능
- 전자어음의 발행내용, 보관내역, 결제내역 등 실시간 조회 가능

전자어음 이용절차

- 구매기업 : 당좌거래영업점과 전자어음이용약정(발행인 자격) 및 인터넷뱅킹 가입 ⇒ 전자어음 발행 및 배서
- 판매기업 : 거래영업점과 전자어음이용약정(수취인 자격) 및 인터넷뱅킹 가입 ⇒ 전자어음 수취 및 배서

문의처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6756



용어 설명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기존 당좌예금의 지급결제수단인 “약속어음” 및
- “당좌수표”중 종이로 발행·유통되었던 “약속어음”을 “전자적으로 발행, 유통할 수 있는 약속 어음”



6-6 기업구매자금대출

기업 간 하도급거래에 따른 분쟁의 자율적 해결도모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 기업이 판매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할 판매대금에 대하여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형음을 발행하여 거래 은행에 추심토록하고, 구매기업은 환어음의 추심대금을 대출받아 결제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지원 내용

구분	내용
대출대상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기업으로 경상적 영업활동에 수반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기업
대출차주	구매기업
대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업체의 매출액 규모, 자금소요기간, 상환능력 등을 감안한 적정매입규모 이내로 산정하되, ○ 당타행 기업구매자금대출 한도가 당해연도 추정매출액의 1/3 이내
대출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업체가 판매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발행한 환어음 및 세금계산서상의 금액 범위내 ☞ 판매업체가 판매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전송한 판매대금추심의뢰서상의 추심의뢰 금액 범위내 ○ 대출실행 : 전자적방식(인터넷대출), 영업점실행(창구)
대출금리	○ 기업의 신용등급 및 담보 등에 따라 차등적용
건별대출기간	○ 180일 이내 (대출기간 연장가능)
이자징구	매월 후취
총액한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간 경상적 영업활동에 따른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로서 ○ 판매기업이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심의뢰(전송)하였고,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도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자금 대출 취급건 단, 30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 등 제외
정부지원내용	환어음,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구매카드, 플러스전자어음에 의해 판매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결제한 실적은 세액공제 대상

문의처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6756



6-7 기업구매카드대출

납품전 생산자금 지원

경상적 영업활동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 계약에 따라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 '기업구매카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하거나 판매대금 회수를 지원하는 여신상품입니다.

지원 내용

구분	내용
대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카드대출 : '기업구매카드대출' 약정에 따라 물품 등의 거래대금을 '기업구매카드'로 결제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역 구매카드대출 :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한 물품 등의 거래대금을 '역 구매카드'로 결제받기 위해 대출을 신청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대출차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카드대출 : 구매기업 ○ 역 구매카드대출 : 판매기업
약정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카드대출 : 전년도 손익계산서에 의한 매출액의 1/3 범위내에서 당 · 타행의 기업구매자금대출, 구매카드 및 구매론 약정한도를 차감하여 운용 ○ 역 구매카드대출 : 전년도 손익계산서에 의한 매출액의 1/2 범위내에서 당 · 타행의 할인어음, 역 구매카드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약정한도를 차감하여 운용
수수료	기업의 신용등급 및 담보 등에 따라 차등적용
건별승인기간	180일 이내, 다만, 역구매카드는 24개월 이내로 운용 가능
정부지원내용	환어음, 판매대금추심외뢰서, 구매카드, 플러스전자어음에 의해 판매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결제한 실적은 세액공제 대상

문의처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6756



6-8 시설투자대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필요한 시설투자에 필요한 소요자금 지원

지원 내용

-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 및 영업활동을 위하여 시설투자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부지자금, 사업장매입자금, 경락부동산자금, 건물자금, 기계자금, 수입기계자금, 사업장임차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 사업장부지자금 : 자가 사업장 마련을 위하여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물 착공이 가능한 부지구입(분양 포함)자금(토지정리비 및 토지조성비 포함)
- 사업장매입자금 : 기존 사업장의 매입자금 및 건설·분양중인 사업장(아파트형공장 포함)의 분양자금
- 경락부동산자금 : 법원(한국자산관리공사 포함) 경매(공매 포함) 부동산(기계기구, 설비 및 준부동산 포함) 매입자금
- 건물자금 : 건물(구축물 포함)의 신축 및 증·개축과 기타 이에 준하는 수선 또는 변경 등을 위한 개·보수자금
- 기계자금 : 기계기구(중고 기계기구 포함), 설비 및 준부동산의 구입 및 설치자금
- 수입기계자금 : 국외에서 기계기구, 설비 및 준부동산을 신용장방식(D/P, D/A 포함) 또는 송금방식으로 수입·결재하고자 하는 자금. 다만, 수출입공고에서 관련부처장관이 수입제한품목으로 고시한 품목은 제외
- 사업장임차자금 :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통해 사업장을 임차(대출취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임차사업장 입주 가능한 경우를 말함)하는 자금

용자 조건

- 용자범위 : 소요시설자금의 80%
- 대출기간 : 15년(일시상환 3년 이내)
- 상환방법 : 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중 선택

문의처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6756



6-9 IBK-K·sure(한국무역보험공사) 협약보증

IBK기업은행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기금을 출연·협약을 체결하여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

특별출연 협약보증(보험)

구분	협약 내용 <보증(보험)한도 우대>	
협약 상품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Nego), 단기수출보험(EFF), 수입보험(금융기관용)	
대상 기업	매출액 50억원 이상으로 당행 신용등급 BB+급 이상인 기업	
동일기업당 보증(보험)한도	제한없음	
주요 우대 내용	보증(보험)한도	책정가능한도의 최대 2배 범위내 우대
	보증(보상)비율	전액(100%) 보증서(보험증권) (단, 수출신용보증(선적전)은 부분 보증제로 전환시 기본 보증 비율에 10%p 가산비율 적용)
	수출진흥금융	동일기업당 한도 : 30억원 ⇒ 50억원으로 상향 자금용도 구분하지 않는 자금 : 3억원 ⇒ 5억원으로 상향
	수출신용보증(Nego)	수출신용보증(Nego) 가입대상 결제기간 - 120일 이내 ⇒ 180일 이내로 확대
	단기수출보험(EFF)	중견 수출기업 가입요건(예외사항) - 제조업체로서 매출액 : 500억원 이상 ⇒ 300억원 이상으로 완화 - 해당 수입자와의 결제실적 : 5백만불 ⇒ 1백만불로 완화
	보증(보험)료 및 금리우대	한국무역보험공사 : 보증료, 보험료 우대 IBK기업은행 : 금리 우대, 환가료 우대

보증(보험)료 지원 협약보증(보험)

구 분	협약 내용 (보증(보험)료 지원)
협약 상품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Nego), 단기수출보험(포괄보험 특약)
대상 기업	매출액 50억원 이상으로 당행 신용등급 BB+급 이상인 기업
지원 한도	동일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지원 비율	기업부담 보증(보험)료의 70%를 은행이 지원
지원 기간	공사 승인일로부터 1년

이용 절차



- 주1) 신용조사서류 : 신용조사의뢰서,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 및 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 주2) 청약신청서류 : (www.ksure.or.kr 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수출신용보증(선적후)청약서, 거래현황표, 수출실적증명서,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주주현황표, 법인인감증명서, 상사현황표, 납세증명서, 청약서류미변동확인서, 기타 필요한 서류

문의처 기업은행 외환사업부 : 02-729-6139



용어 설명

□ 단기수출보험

단기수출보험 (일반)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국 또는 수입자의 상황에 따라 수출대금을 적기에 회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단기수출보험 (포괄)	결제기간 180일 이내의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사전에 수출기업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포괄보험 특약을 체결함으로써 특정상품 또는 결제조건 등 미리 대상수출 거래 범위를 정하여 일괄적으로 수출보험에 부보하는 제도
단기수출보험 (EFF)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을 보유한 수출기업이 우량수입자 앞 수출채권을 비소구조건으로 은행에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 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매입은행에 수출채권의 대금미회수 위험을 담보하는 제도
수입보험	금융기관이 주요자원 등의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수입기업에 대출(지급보증)한 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공사가 보상하는 제도

□ 수출신용보증

수출신용보증 (선적전)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은행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또는 지급보증(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개설등 포함)을 실행함에 따라 기업이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를 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
수출신용보증 (선적후)	수출기업이 물품을 선적 후 은행에 환어음 등 선적서류를 매각하여 수출대금을 대출받는 경우 해당 대출금 상환 채무를 공사가 보증하는 제도
수출신용보증 (NEGO)	수출기업이 물품을 선적 후 은행에 환어음 등 선적서류를 매각하여 수출대금을 대출받는 경우 해당 대출금 상환 채무를 공사가 보증하는 제도

07

한국산업은행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7-1 기업금융 종합서비스 지원 • 262



7-1 기업금융 종합서비스 지원

기업금융, 국제·투자금융 및 컨설팅서비스 지원

설비투자 및 운영자금 지원, 회사채 주선 및 인수, 컨설팅서비스 제공 등 고객의 수요를 충족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구비하여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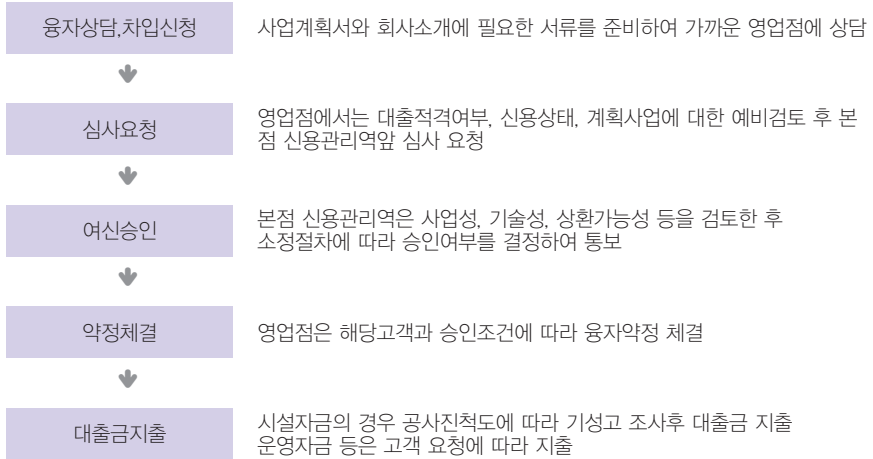
지원 분야

- 기업금융 지원
 - 시설자금(일반시설자금, 특별시설자금)
 - 운영자금(일반운영자금, 중소기업 전용 특별운영자금, 단기운영자금)
 - KDBpioneer 특별자금
 -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특별지원
 - 리스크관리형 상품(통화전환옵션부 대출, 자유자재금리전환대출 등)
 - 수출입금융(수입신용장 개설, 수출환어음 매입 등)
 - 보증 및 재정·기금
- 국제·투자금융 지원
 - 공모회사채 주선 및 인수, 국제금융 주선
 - ABS 발행 및 신용공여, M&A 업무, 주식 및 주식관련채 투자, PE업무
 - 파생금융상품, 인터넷 외환거래 서비스 등
- 컨설팅서비스 지원
 - 신규사업 타당성검토, 경영진단 컨설팅, 경영전략 컨설팅, 기업구조개선 컨설팅 등

대출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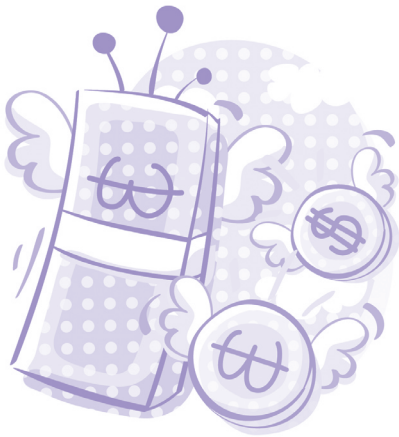
- **대출기간**
 - 시설자금은 계획사업의 성격, 투자회수기간, 고객요청 등을 감안하여 통상 8년 이내 (거치기간 포함)로 결정(최장 10년)
 - 운영자금은 3년(신보서 담보의 경우 5년) 이내로 운용되며, 1년 이내 단위로 연장가능
- **대출금리**
 - 수시 고시되는 자금별, 통화별, 금리변동주기별 기준금리에 일정스프레드를 가산하여 실행금리 결정
 - 스프레드는 고객의 신용도, 거래기여도, 담보가치,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통화**
 - 원화, US\$, ¥, 유로화(EUR)중 고객의 희망에 따라 선택 가능
 - 중소기업의 대출에는 통화전환옵션이 자동 부여되고, 일정 수수료 부담후 통화전환 가능

여신거래 절차



문의처

- 기업금융 지원 : 한국산업은행 영업점
- 국제·투자금융 지원
 - 공모회사채 주선 및 인수 : 발행시장부 02-787-6616
 - 국제금융 주선 : 발행시장부 02-787-6640
 - ABS 발행 및 신용공여 : 발행시장부 02-787-6605
 - M&A 업무 : 인수합병부 02-787-7254
 - 주식 및 주식관련채 투자 : 투자금융부 02-787-5824
 - Private Equity 업무 : 사모펀드부 02-787-6375
 - 파생금융상품 : 트레이딩센터 02-787-7339
 - 인터넷 외환거래 서비스 : 트레이딩센터 02-787-7339
- 컨설팅서비스 지원 : 컨설팅부 02-787-5024
- 중소기업 정책정보 : www.bizinfo.go.kr



[참고]

한국산업은행 주요 상품안내

I. 기업금융상품

1. 시설자금 상품

□ 일반시설자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시설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용 토지 및 건물 구입자금 · 공장건축 및 기계설비 구입자금 · 기존시설의 개보수 자금 · 타금융기관 상환용 시설자금 ▷ 기술개발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 개발기술의 사업화 자금 ▷ 특수용도 시설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직접투자자금 · 공장(사업장) 인수자금(경락자금 포함) · 기업인수를 위한 주식인수자금
대출비율	▷ 소요자금의 100% 이내
대출형식 및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대출 : 최장 10년 이내 ▷ 사모사채인수 : 최장 5년 이내
대출금리 (기준금리+스프레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화 : CD 또는 산금채유통수익률 · US\$, ¥, Euro : LIBOR

2. 운영자금 상품

□ 일반운영자금

대출대상	▷ 기업의 경상적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
대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내(신보서 담보의 경우 5년 이내) · 단, 1년 이내 단위로 연장가능
대출형식	▷ 일반대출, 사모사채인수
대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전 소요자금의 일정비율 범위내에서 타금융기관 운영자금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 · 단, B⁺이상 중소기업은 추정대출액의 40% 적용가능

□ 중소기업전용 특별운영자금 ('12년기준)

구 분		대 출 대 상	기간	통화	금 리
중소기업 우대운영 자 금	성장기업	▷신용등급 BB-이상 ▷kdb Venture Star ▷kdb Global Star ▷경영혁신기업 ▷기술혁신기업 ▷수출중소기업	3년 이내	원화 US\$ ¥ Euro	원화 △0.50%P0이내, 외화 △0.25%P0이내
	신규거래기업 및 상생협력기업	▷신규거래중소기업 및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업	2년 이내		
	녹색기업 및 고용창출기업	▷녹색기업 ▷고용창출기업	2년 이내		

□ 단기운영자금

구 분	약 정 기 간 (개별대출기간)	대 출 대 상
당좌대월	2년 이내	▷신용 및 거래상태가 양호한 당좌예금 거래고객
어음할인	2년 이내 (대기업 180일, 중소기업 1년이내)	▷실제상거래에의하여성립된 약속어음또는인수필 환어음
기업구매 자금대출	2년 이내 (180일 이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기업간 거래중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써 채화 및 용역의 구매
전자방식 외상 매출채권담보대출	2년 이내 (180일 이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기업간 거래중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써 채화 및 용역의 구매
통장식외화 한도대출	1년 또는 2년	▷수출입거래 등으로 정상적인 외화수요가 있는 당행 신용평가등급 B ⁺ 이상 기업
미래채권 담보대출	2년이내 (180일이내)	▷구매기업이 추천하는 협력기업에 물품납품 이전에 생산자금을 지원
다모아 플러스대출	2년 이내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다모아기업예금(연결계좌)에 수시인출·상환이 가능한 원화 한도대출 연계

〈전자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과 미래채권담보대출 비교〉

구 분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	미래 채권 담보 대출
차 주	협력기업	좌동
지원자금	납품자금	생산자금
용자시기	납품완료시	발주시
용자금액	매출채권 범위내	발주금액의 80%이내
담 보	확정매출채권	신보서(장래 매출채권)

3. KDBpioneer 특별자금

구분	대상기업	지원방법	기타
맞춤대출	▷미래선도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벤처기업 및 중소·중견기업·지식경제부 고시 신성장 동력산업 17개 부문	대출 및 투자	(금리우대) 시설△0.5%P, 운영△0.3%P 차감
동반펀드대출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 (해당 대기업과 은행이 추천)	원화운영대출	(금리우대) △2.0~2.25%P 차감
우량기업대출	▷신용등급 BB+이상인 중견·중소기업	시설·운영대출	(금리우대) 시설△0.5%P, 운영△0.3%P 차감
공장부지대출	▷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산업단지의 토지를 분양받은 기업	시설자금대출	(금리우대) 원가수준 금리우대
전략산업대출	▷KDB선정 6개 전략부문 해당기업 · 녹색산업육성, 성장동력확충, 서비스산업지원, 경쟁력강화지원 지역경제활성화, 고용창출산업지원	시설자금대출	(금리우대) 원화△0.3%P, 외화△0.15%P 차감
설비투자펀드대출	▷설비투자자금·연구개발소요자금이 필요한 중견·중소기업	대출 및 투자	(금리우대) △1.0%P 차감 (업체별 한도) 건별300억

4. 혁신형 중소·벤처 기업 특별지원

구분	대상 기업	지원방법	기타
기술·경영혁신기업 우대대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기술혁신형(Inno-Biz) 기업 또는 경영혁신형(Main-Biz)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시설 및 운영 자금	금리 우대 통화전환 수수료면제
대출전환옵션부 전환사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향후 기업가치 증대가 기대되는 기업	전환사채 인수	지원한도 : 100억원
혁신형중소기업 전용 채권 인수	신평사 2개로부터 BB-, BB°, BB+ 등급을 받은 기업	50억원 이내 공모채인수	채권만기 : 3년 이내 최소발행액 30억원
kdb Venture Star	당행 신용등급 BB-이상으로 - 외부회계감사의견 적정 -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기업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금리우대
kdb Global Star	당행 신용등급 BB-이상으로 - 국내 글로벌 대기업의 협력업체 - 해외시장에서 자체브랜드 보유기업 - 세계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기업	시설·운영자금 주식 (주스민련채) 인수	금리우대 외국환 수수료 우대

5. 리스크관리형 상품

	통화전환옵션부 대출	자유자재금리전환대출
내용	고객의 환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출통화를 전환할 수 있는 옵션 부여	기준금리를 변동에서 고정, 고정에서 변동으로 횡수 제한 없이 전환
적용여신	시설 및 운영자금대출	산업시설자금대출
대상	제한 없음	신용평가등급 B ⁺ 이상 중소기업
수수료	중소기업 0.15%, 대기업 0.3%	0.05%

	금리상하한부대출	금리상한부대출
내용	기준금리 변동폭을 상·하 일정밴드로 한정	기준금리 상한을 설정
적용여신	만기 3년 이내 CD연동 운영자금	만기 3년 이내 CD연동 운영자금
대상	신용평가등급 B ⁺ 이상 중소기업	신용평가등급 B ⁺ 이상 중소기업
수수료	없음	매월 고시

	조기상환부 시설자금대출	연장조건부 단기시설자금대출
내용	대출기간 1/3 경과후 기한전상환수수료 없이 기한전 상환할 수 있는 옵션부여	계획시설의 내용연수, 자금 용도 등을 감안하여 1년, 2년, 3년 단위로 최장 10년 까지 연장 가능
적용여신	시설자금대출	원화 및 외화 시설자금대출
대상	신용평가등급 A 이상 중소기업	제한 없음
수수료	없음	없음

6. 보증 상품

원화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무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에 당행이 그 채무의 상환을 보증하는 업무 ▷사채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이발행하는 사채의 상환을보증하는 업무 ▷지급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보증이외의 원화 관련 지급보증
외화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외화지급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관지급보증, 신용장개설을 제외한 모든 외화지급보증 ▷차관지급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차관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대외채무에 대하여 kdb가 외국차관선(또는 그 지정인) 앞 대외외화표시지급보증
해외건설 보증 (이행성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건설에 대한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보증(Bid Bond) ·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 선수금환급보증(Advance Payment Bond) · 하자보수보증(Maintenance Bond) · 유보금환급보증(Retention Payment Bond)
유가증권 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이 담보 등의 용도로 유가증권이 필요한 경우 당행이 보유한 유가증권(주로 상장된 유가증권)을 고객 앞 대여하는 업무
보증료율 (대여료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보증료율 + 스프레드(보증상품, 고객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적용)

7. 재정·기금 상품

기금명	차입처	대출기간 (거치기간)	지원부문
재정자금	기획재정부	10~20 (5)	선박현대화 지원사업, 복합화물터미널건설, 화물자동차공동차고지건설 등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3~10 (1~5)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 지방중소기업기술사업화기금, 경영안전자금, 사업전환기금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체육관광부	4~9 (2~4)	관광숙박시설건설 및 개보수, 국민관광시설확충, 관광사업체 운영
정보통신진흥기금	중소기업은행	5(2)	응용기술개발지원(일반, 기술담보)
정보통신기반조성자금	중소기업은행	5(2)	IT설비투자, 초고속공중망구축, 첨단IT콤플렉스조성지원 등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	지방자치단체	3~8 (1~3)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 창업지원, 경영안전지원 등
산업기술자금	중소기업은행	8(3)	자본재개발, 첨단기술제품개발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에너지관리공단	4~15 (2~8)	절약시설설치, 집단에너지공급,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
석유사업기금	한국석유공사	15(5)	도시가스배관
환경개선지원자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0(3)	오염방지시설설치, 기술개발
산업재해예방기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0(3)	산업재해 예방사업
재활용산업육성자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10 (2~3)	재활용산업, 폐기물자원화, 기술개발, 유통판매지원
가스안전관리기금	한국가스안전공사	4~8 (1~3)	도시가스시설개선, 가스유통구조 개선 등
직업능력개발훈련기금	한국산업인력공단	10(5)	직업훈련자금
천연가스공급시설 설치자금	환경관리공단	15(5)	천연가스공급시설
전력산업기반기금	한전 전력기반조성 사업센터	8~35 (3~5)	농어촌전기공급사업
축산발전기금	농협중앙회축산 발전기금사무국	1~10 (1~5)	가축계열화사업, 축산물 종합처리장 등
방위산업육성기금	방위사업청	3~7(2)	방산시설의 도입, 설치 비축용원자재의 확보 등
정보화촉진기금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중소기업은행	5(2)	IT설비투자확대지원 정보통신업기술개발지원 등
장애인고용촉진기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5~10 (0~5)	장애인고용에 따른 작업시설 및 편의시설 등
폐광지역대체 산업육성자금	한국광해관리공단	10(5)	시설 및 운영
환경산업육성자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2)	일반경영안전자금, 해외진출자금
KoFC 자금	한국정책금융공사	1~10 (1~5)	시설 및 운영(녹색, 신성장산업 등)

8. 수출입금융 상품

수입 신용장 개설	▷수입물품 결제를 신용장 방식으로 하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수입신용장 발행 · 일람불, 기한부신용장 및 내국신용장 개설 · 특수신용장 개설 · 농축산물 수입용 증기(2~3년) 분할지급 신용장 : 미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하는 국내기업(GSM-102 프로그램) · 자본재 수입용 중장기(3~6년) 분할지급 신용장 : 미국·독일 등 OECD 국가로부터 자본재를 수입하는 국내기업
수출 환어음 매입	▷신용장, 수출계약서(D/P, D/A조건 등)에 따라 선적 완료하고 발행한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를 할인하여 매입(추심) 및 내도 수출신용장 관련 서비스 · 수출(내국신용장 포함)환어음 매입(추심) · 수출신용장의 통지, 양도, 확인
무역어음 대출 및 할인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D/P, D/A조건 등)에 의해 물품, 건설 및 용역을 수출하거나 국내 공급하고자 하는 고객께 선적전금융 지원
위안화(RMB) 무역결제 서비스	▷무역거래가 증명되는 중국지정기업 및 PBOC(중국인민은행)으로부터 승인받은 중국 기업과의 송금 및 수출입 거래 ▷ RMB 통화 예금 취급
KDB장점	▷KDB는 국제무역거래에서 수출상이 선호하는 신용장개설은행임 · 양질의 Credit Line과 Global Network을 통해 유리한 조건의 기한부신용장 개설지원 ▷저리의 Nego 재원 확보로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절감 지원 ▷맞춤서비스와 함께 고객위주의 다양한 Merit System 제공 · 거래 및 우수고객에 대한 수수료 및 금리 우대 [중소기업고객은 거래실적(약정물량 포함) 1백만불 이상시 우대] · Nego 및 결제대전의 F/X Deal연계 또는 환율우대서비스 제공 · 수출입통합한도 운용을 통해 수입한도 여유분에 의한 수출거래 및 수출한도 여유분에 의한 수입거래 가능 · 당일 접수된 신용장개설 신청건은 당일중 대외 전문발송

II. 국제·투자금융상품

1. 공모회사채 주선 및 인수

- 공모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장점
 - 기업의 신인도 제고
 - 신용평가회사의 공인된 평가등급이 필요한 공모회사채 발행은 발행자체로 금융시장에서 고객위상이 올라가게 됨.

- **거액의 장기자금을 시장금리로 조달**
 - 다양한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발행은 대출보다 유리한 금리로 거액의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함
- **자금의 용도와 만기를 다양하게 정할 수 있음**
 - 고객의 필요에 따라 시설자금, 운영자금, 차환자금 등의 자금용도와 만기를 선택하여 발행할 수 있음
- **최적의 자금조달을 위한 맞춤발행이 가능**
 - 시장여건을 감안, 다양한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과의 연계를 통하여 자금조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발행구조의 선택이 가능함

□ 공모회사채 발행 절차

발행절차	관계법규	담당	시기
주관회사 선정 및 사전협의		고객/당행	D이전
이사회 결의 (상장사의 경우 한국거래소 통보)	상법 제469조	고객	D이전
인수단 구성, 총액인수 및 매출계약		당행	D
사채모집위탁계약 체결		당행	D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제출 (금융위 앞)	자본시장법 제119,123~4조	당행	D
상장신청(한국거래소 앞)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조	당행	D
발행 공고		당행	D+4~8
신고서 효력발생	자본시장법 제120조, 동법 규칙 제12조	금감원	D+4~8
투자설명서 제출(금융위 앞)	자본시장법 제123~124조	고객	D+4~8
청약·납입	상법 474~476조	인수단	D+5~9
채권등록(증권예탁원 앞)	공사채등록법 4조	고객	D+5~9
사채납입금 인출		고객	D+5~9
발행실적 보고(금융위 앞)	자본시장법 제128조 외	고객	D+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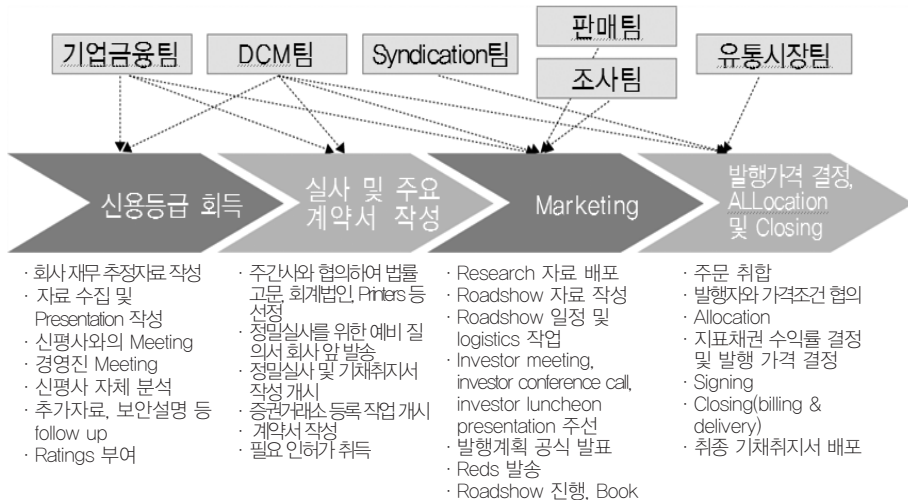
2. 해외공모외화채권 주선 및 인수

□ 해외공모외화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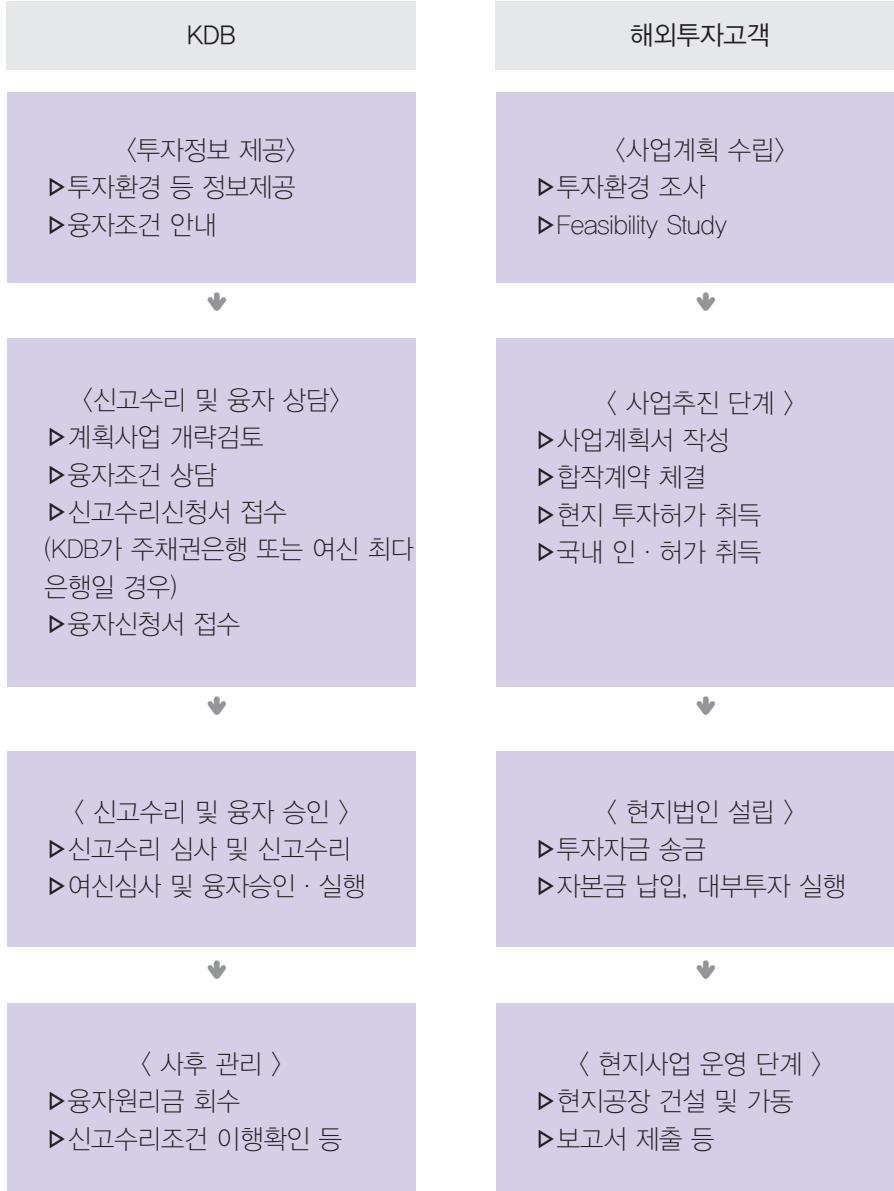
- 장기자금 조달 용이
 - 해외채권은 일반적으로 5년 이상의 형태로 발행(국내채권 : 만기 3년)
- 투자자 Base의 확대
 - 한정된 국내채권 투자자들에 비해 국제채권의 발행을 통하여 전세계 투자자를 대상으로 효율적 자금 조달 가능
- 대규모 자금 조달이 원활
 - 원활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해외채권발행의 기재금액은 대부분 1억불 이상
- 국내 신용등급 향상에 긍정적 영향
 - 국제채권발행을 통해 국내·외 인지도 향상, 자금력 확충, 차입원 다각화 등에 따라 장기적으로 국내 신용등급에도 긍정적 효과 유발 가능

[문의 : 발행시장부 02-787-6620]

□ 국제금융 주선 절차



□ 해외직접투자 절차



3. ABS 발행 및 신용공여

개 요	<p>▷자산유동화는 자산보유자(고객)가 보유자산(유동화자산)을 모아 특수목적회사(SPC)에 양도한 후 SPC가 이 자산을 기초로 유동화 증권(Asset-Backed Securities, ABS)을 발행하는 것으로, 당행은 ABS 발행시 주관회사, 신용공여자, 업무수탁자의 역할 수행</p> <p>▷유동화 대상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의 창출 및 시장평가가 가능하고 SPC앞 양도할 수 있는 매출채권, 부동산, 유가증권, 일반채권, 주책저당채권 등임</p>										
장 점	<p>▷유동성이 부족한 자산의 현금화를 통한 유동성 제고</p> <p>▷자산보유자의 신용등급보다 높은 신용등급의 증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비용 절감</p> <p>▷부채증가 없는 자금조달로 재무구조 개선</p>										
ABS발행 절차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65 685 1040 1049"> <p>▷고객의 보유자산 분석/타당성 조사 (고객/kdb)</p> <p>▷ABS 발행구조 설계 (kdb, 회계법인, 신용평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C앞 양도된 자산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투자자앞 발행 가능한 선순위 채권의 규모, 만기 등 결정 · 고객이 인수하는 후순위채권규모, 하자가 있는 양도자산에 대한 고객의 담보책임 등 리스크 보완방안 결정 <p>▷신용공여 및 Trustee업무 계약 (kd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공여 : 당초 설계된 ABS의 현금흐름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일시적인 대출실행으로 선순위채권의 원리금상환 재원을 보강하는 조치로 유동화 계획을 등록하기 전에 신용공여한도 약정 체결이 필요 · Trustee 업무 : 채권 원리금상환 등 SPC업무 대행 </td> <td data-bbox="1040 685 1143 1049">1개월 정도 소요</td> </tr> <tr> <td data-bbox="365 1049 1040 1160">▷금감원앞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kdb)</td> <td data-bbox="1040 1049 1143 1160">D-10</td> </tr> <tr> <td data-bbox="365 1160 1040 1271">▷금감원앞 자산양도등록 및 ABS 발행신고서 제출(kdb) · ABS채권 인수 또는 매출 (kdb)</td> <td data-bbox="1040 1160 1143 1271">D</td> </tr> <tr> <td data-bbox="365 1271 1040 1345">▷ABS 발행</td> <td data-bbox="1040 1271 1143 1345">D+6</td> </tr> <tr> <td data-bbox="365 1345 1040 1461">▷사후관리 · 기초자산에 의한 원리금회수 관리 · 일시적 자금부족시 신용공여(대출) 실행 등</td> <td data-bbox="1040 1345 1143 1461"></td> </tr> </table>	<p>▷고객의 보유자산 분석/타당성 조사 (고객/kdb)</p> <p>▷ABS 발행구조 설계 (kdb, 회계법인, 신용평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C앞 양도된 자산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투자자앞 발행 가능한 선순위 채권의 규모, 만기 등 결정 · 고객이 인수하는 후순위채권규모, 하자가 있는 양도자산에 대한 고객의 담보책임 등 리스크 보완방안 결정 <p>▷신용공여 및 Trustee업무 계약 (kd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공여 : 당초 설계된 ABS의 현금흐름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일시적인 대출실행으로 선순위채권의 원리금상환 재원을 보강하는 조치로 유동화 계획을 등록하기 전에 신용공여한도 약정 체결이 필요 · Trustee 업무 : 채권 원리금상환 등 SPC업무 대행 	1개월 정도 소요	▷금감원앞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kdb)	D-10	▷금감원앞 자산양도등록 및 ABS 발행신고서 제출(kdb) · ABS채권 인수 또는 매출 (kdb)	D	▷ABS 발행	D+6	▷사후관리 · 기초자산에 의한 원리금회수 관리 · 일시적 자금부족시 신용공여(대출) 실행 등	
<p>▷고객의 보유자산 분석/타당성 조사 (고객/kdb)</p> <p>▷ABS 발행구조 설계 (kdb, 회계법인, 신용평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C앞 양도된 자산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투자자앞 발행 가능한 선순위 채권의 규모, 만기 등 결정 · 고객이 인수하는 후순위채권규모, 하자가 있는 양도자산에 대한 고객의 담보책임 등 리스크 보완방안 결정 <p>▷신용공여 및 Trustee업무 계약 (kd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공여 : 당초 설계된 ABS의 현금흐름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일시적인 대출실행으로 선순위채권의 원리금상환 재원을 보강하는 조치로 유동화 계획을 등록하기 전에 신용공여한도 약정 체결이 필요 · Trustee 업무 : 채권 원리금상환 등 SPC업무 대행 	1개월 정도 소요										
▷금감원앞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kdb)	D-10										
▷금감원앞 자산양도등록 및 ABS 발행신고서 제출(kdb) · ABS채권 인수 또는 매출 (kdb)	D										
▷ABS 발행	D+6										
▷사후관리 · 기초자산에 의한 원리금회수 관리 · 일시적 자금부족시 신용공여(대출) 실행 등											
발행조건	▷ABS발행 만기구조, 금리 및 신용공여약정 기간, 금리 등의 조건은 발행구조,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유동화계획 등록전 고객과 협의 결정										

[문의 : 발행시장부 02-787-6605]

4. M&A 업무

<p>M&A 주요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M&A 관련 자문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기업간 인수합병,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주식양수도, 합작사업 등을 위한 자문 서비스 제공 ▶M&A 관련 여신·사후관리 및 금융주선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의 목적과 형태, 기업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한 금융주선 서비스 제공 ▶주식 또는 주식관련채/후순위 유가증권/담보부·비담보부 차입금/단기차입금(Bridge Financing)/ 장기차입금(Term Loan)등의 금융서비스 제공
<p>M&A 특 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성장전략 및 구조조정전략으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수자의 신규시장 진입시간 단축 · 피인수기업의 인력, 기술, Know-How를 단시간 내에 습득 · 한계기업의 퇴출전략 등 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 ▶기업가치의 평가, 협상전략의 수립, 법률문제의 검토 등의 복잡성으로 인해 외부자문기관의 자문용역 필요
<p>M&A 절 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M&A 의뢰 : 자문계약 체결, 절차 및 수수료 협의 ▶M&A전략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목표 및 전략의 규명 · 업계 현황분석 및 M&A 타당성 검토 · M&A 전략수립, 세부 실행계획 작성 ▶목표기업의 선정 및 접촉과 교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업 가치 평가, 가능성 타진 ▶기본의향서 교환 : 거래조건, 가격결정방법 등 ▶정밀실사 ▶협상 및 계약체결 ▶대금지급 및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대금 수수 및 정부 인허가 등 법적절차 완료 · Post M&A 업무수행 등 사후관리
<p>관련법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법 (주로 회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업결합 및 지주회사 관련) ▶증권거래법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관련)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의 국내기업 M&A 관련)

[문의 : 인수합병부 02-787-7254]

5. 주식 및 주식관련채 투자

투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자본금 증자에 투자자를 필요로 하는 국내/해외기업 ▶M&A 등을 통한 사업 다각화를 위한 외부 투자자를 위한 외부 투자자를 필요로 하는 국내/해외 기업 ▶프로젝트 형태의 단위 사업 운영을 위하여 투자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
투자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투자 · 보통주/우선주 등 ▶주식관련채권 · CB, BW, EB 등 ▶프로젝트투자 · 특정 사업 단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 투자계약증권 형태 ▶기타 · 투자대상별로 최적화된 별도의 구조화 투자상품 제공
투자조건	▶투자대상별 개별 합의

[문의 : 투자금융부 02-787-5824]

6. Private Equity 업무

개요	▶소수의 고액투자자로부터 장기자금을 조달하여 기업 및 금융기관 등에 투자하고 경영성과 개선 등을 통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장기투자 전문기구
PEF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Private ·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사모방식으로(비공개) 자금 모집 · 공모 펀드에 적용되는 규제 회피 가능, 다양한 펀드 구조 설계가능 ▶ Equity · 포트폴리오 투자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주로 비상장 기업의 사모 발행 증권에 대한 지분 인수 형태로 투자가 이루어짐 ▶ Fund · 간접투자, 고도의 전문가에 의한 투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운용자의 모럴헤저드 방지 장치
PEF 업무 Fl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펀드설립 ▶투자대상 발굴 (다양한 Networking을 통한 Deal Sourcing, 예비검토 및 투자여부 잠정결정) ▶투자승인 및 실행 (실사(회계, 법률 등), Valuation, Deal Structuring, 투자승인, 계약체결, 실행) ▶기업가치 제고 (경영진 선임(최소 1명의 이사), 투자계약서에 의한 사후관리, 기업가치 제고 컨설팅, 사업구조조정 등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실행) ▶투자회수 (M&A, IPO, Secondary Sale, Tag Along, Put Option 등) ▶펀드청산 (회수금 분배 및 법인 청산절차 진행)

[문의 : 사모펀드부 02-787-6375]

7. 대고객 외환거래

거래 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입 결제자금의 매매 ▷해외송금 및 수취자금의 매매 ▷해외 직·간접 금융을 통한 외화자금의 조달 및 상환 관련 외환매매 ▷기타 영업과 관련하여 수수한 외환의 매매 등
거래 방식	<p>【 현물환거래 Spot Transaction 】 외환매매거래일(deal date)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자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고객이 원할 경우 거래일 당일 또는 거래일 익영업일 결제거래로 스왑마진(자금비용)을 반영하여 거래 가능</p> <p>【 선물환거래 Forward Transaction 】 거래일로부터 2영업일(Value Spot)을 초과하여 결제되는 외환매매 거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의 정산 또는 조건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물환 거래를 한 고객은 결제일에 인수도(delivery) 정산하거나, 반대거래를 통해 차액 정산할 수 있음 · 선물환거래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거래에서 발생한 환차손익을 그 시점에서 정산 수수하여야 함 <p>【 외환스왑거래 FX Swap Transaction 】 특정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하여 사용한 후 만기일에 원래 통화로 재교환하는 외환매매거래(두 통화간 일시적 과부족을 외환 스왑거래를 통해 해소)</p>
이용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달러, 원화대 기타 통화간 거래 : 09:00 ~ 15:00 · 외화대 외화간 거래 : 24시간 거래 가능 ▷거래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거래계약 체결 : 장외파생상품거래 기본계약서 · * 선물환거래와 외환스왑거래는 거래실행전 한도승인 절차 필요 · 외환매매거래 실행 : 전화요청 및 거래환율 결정 · 외환거래확인 : 확인서(Confirmation Slip) 교부 및 확인 · 결제일에 거래대금 수수
기타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액 수출입 결제대금에 대해서도 우대환율 적용 ▷일일 외환시장 동향과 전망 자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www.kdb.co.kr)

[문의 : 트레이딩센터 02-787-7339]

8. 인터넷 외환거래 서비스

개 요	<p>▶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실시간 시장환율 기준으로 시장가 또는 지정가 방식으로 현물환 거래를 하는 시스템 : 거래수수료의 대폭인하로 소액의 외환거래도 저렴하고 편리하게 거래 가능</p>																																			
이용안내	<p>▶거래시간 : 09:00 ~ 14:3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거래통화 · 원화대 외화간 거래 : USD/KRW, JPY/KRW, EUR/KRW · 외화대 외화간 거래 : USD/JPY, EUR/USD ▶거래금액 · USD기준 1,000불이상 100만불 이하 ▶거래수수료 (1 US\$당)</p> <table border="1" data-bbox="371 709 1144 1175"> <thead> <tr> <th>거래금액 (US\$)</th> <th>수수료</th> <th>전년도 한도대비 거래실적 (USD 기준)</th> <th>실적 우대요율</th> </tr> </thead> <tbody> <tr> <td>1천~1만</td> <td>2.1원</td> <td>100%미만</td> <td>100%</td> </tr> <tr> <td>1만~5만</td> <td>1.8원</td> <td>100%이상~300%미만</td> <td>90%</td> </tr> <tr> <td>5만~10만</td> <td>1.4원</td> <td>300%이상~500%미만</td> <td>85%</td> </tr> <tr> <td>10만~20만</td> <td>1.1원</td> <td>500%이상</td> <td>80%</td> </tr> <tr> <td>20만~30만</td> <td>0.7원</td> <td></td> <td></td> </tr> <tr> <td>30만~50만</td> <td>0.5원</td> <td></td> <td></td> </tr> <tr> <td>50만~100만</td> <td>0.4원</td> <td></td> <td></td> </tr> </tbody> </table> <p>▶거래절차 · 인터넷뱅킹 가입 및 인터넷외환거래서비스 이용 신청 · 거래한도 부여 · 이용약정 체결 (전자서명) · 인터넷뱅킹을 통한 거래실행 * 거래 금액 및 수수료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p>				거래금액 (US\$)	수수료	전년도 한도대비 거래실적 (USD 기준)	실적 우대요율	1천~1만	2.1원	100%미만	100%	1만~5만	1.8원	100%이상~300%미만	90%	5만~10만	1.4원	300%이상~500%미만	85%	10만~20만	1.1원	500%이상	80%	20만~30만	0.7원			30만~50만	0.5원			50만~100만	0.4원		
거래금액 (US\$)	수수료	전년도 한도대비 거래실적 (USD 기준)	실적 우대요율																																	
1천~1만	2.1원	100%미만	100%																																	
1만~5만	1.8원	100%이상~300%미만	90%																																	
5만~10만	1.4원	300%이상~500%미만	85%																																	
10만~20만	1.1원	500%이상	80%																																	
20만~30만	0.7원																																			
30만~50만	0.5원																																			
50만~100만	0.4원																																			
기 타 서비스	<p>▶통화스왑, 통화옵션 등 파생상품의 주요 거래조건과 거래효과 등 상세정보 제공 및 파생상품 계산기를 이용한 모의거래 기능 제공 ▶고객의 환리스크를 분석해주고 모의거래를 통한 환리스크 헷지의 효과를 체험할 수 있는 환위험관리시스템 제공</p>																																			

[문의 : 트레이딩센터 02-787-7339]

9. 파생금융상품

주요고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입업무를 수행하는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또는 수입에서 발생하는 환리스크 헤지 · 원자재, 원유 등 상품가격의 변동리스크 헤지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화 차입시 환리스크 및 금리리스크 헤지 · 원화 차입시 금리리스크 헤지 및 금리절감 ▷기관투자자(보험사,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화 채권 및 예금을 통한 Yield Pick-Up(금리, 환율, 지수 및 상품연동 채권 및 예금) · 보유중인 외화자산의 금리 및 환리스크 헤지 · 보유중인 주식의 주가변동 리스크 헤지
기본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화파생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선물환 (Long-Term Forward) · 통화스왑 (Cross Currency Interest Rate Swap) · 통화옵션(Vanilla Option, Exotic Option) ▷금리파생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금리계약(FRA), 금리스왑(IRS) · 금리옵션(Cap/Floor, Swaption) ▷개별주식(주가지수)파생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주식(주가지수)관련 선도계약 및 옵션거래 · Equity Linked Swap ▷상품(Commodity)파생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원유, 금속 등)관련 선도계약 및 옵션거래 · Commodity Linked Swap
구조화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물환보다 유리한 조건의 환리스크 헤지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ange Forward, Enhanced Forward 등 Zero Cost 상품 ▷Yield Pick-Up을 위한 투자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화 산금채, 예금 판매 (Callable, CMS 등) · 구조화채권 발행기관 및 투자자 대상 헤지상품 판매 ▷주식을 활용한 Equity Finance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유 주식매각, EB/CB/BW 발행을 통한 Financing · 주식관련채의 주식과 채권부분 strip 및 매매 ▷상품(Commodity)가격 리스크의 헤지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 금리 등과 연계한 헤지상품

[문의 : 트레이딩센터 02-787-7339]

Ⅲ. 컨설팅 서비스

1. 공공프로젝트/개발프로젝트 컨설팅

□ 공공프로젝트 컨설팅

서비스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국책사업의 개발계획/실행 방안 수립 및 타당성 분석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추진 사업의 민자 유치방안 수립 ▶공기업 경영전략 및 민영화 추진 계획 수립 등
사 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북도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전라북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H시 리더스카운티 특구 사업성 검토 ▶I시 사이언스빌리지 Street Mall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H시 지역현안 사업부지 도시개발사업 컨설팅 ▶소프트웨어산업기반확충사업 관련 사업타당성 검토 등

□ 개발프로젝트 컨설팅

서비스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사업 및 지역특화 산업단지개발 사업성 검토 ▶산업입지, 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성 검토 ▶부동산개발사업 최적금융방안 수립 등
사 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계천 S구역 복합타운 개발계획 수립 ▶I시 공동주택 건설 및 분양사업 타당성 검토 ▶S지역 복합타운 개발 및 금융자문 ▶J도 드림타워 건설 및 분양사업 컨설팅 ▶S시 아파트형공장 사업타당성 검토 등

[문의 : 컨설팅부 02-787-5017]

2. 신규사업타당성검토/경영진단/경영전략 컨설팅

□ 신규사업타당성검토 및 프로젝트 실행 지원

서비스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검토 ▷시장분석 및 시장진입전략 수립 ▷자금계획 및 재무전략 수립 ▷ABS, PF 등 복합금융기법을 이용한 최적의 금융 솔루션 제공 ▷금융주선 및 자본유치 등
사 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A사 유전용 강관 제조사업 진출에 따른 사업타당성 검토 ▷S사 태양전지공장 신축에 따른 사업환경 분석 및 수익성 검토 ▷K사 자동변속기 신제품생산 프로젝트 사업타당성 검토 ▷E사 의료복합시설 신축사업에 대한 금융자문 컨설팅 ▷A사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컨설팅 등

□ 경영진단 컨설팅

서비스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및 재무상태 진단 ▷자산·부채실사 및 기업가치평가 ▷채무재조정 방안, Private Work-out Plan 수립 등
사 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P사에 대한 기업진단 컨설팅 ▷J항공 사업전망 및 재무진단 컨설팅 ▷Y사 재무진단 및 재무전략수립 컨설팅 등

□ 경영전략 컨설팅

서비스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전 및 중장기경영전략 수립 ▷제품/사업별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기업 운영방안 및 기업발전 전략(조직, 인사, 프로세스 개선, 수익성 향상 등) 수립 ▷Pre M&A, 전략적 실사, PMI 등 M&A관련 컨설팅 등
사 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E그룹 경영전략 및 재무전략 수립 ▷D사 경영개선 및 사업 재구조 전략 수립 ▷A사 중장기 성장전략 수립 ▷S계열사 사업분석 및, 향후 발전전략 수립 ▷D사 PMI전략 컨설팅 등

[문의 : 컨설팅부 02-787-5024]

3. Turnaround 컨설팅/해외프로젝트 컨설팅

□ Turnaround 컨설팅

서비스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경영개선 및 가치제고 등 Turnaround전략 수립 ▶Debt Restructuring, 자본구조 개선 등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 수립 ▶사업분할·매수, 사업 재구조 등 핵심역량강화 전략 수립 등
사 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S조선 경영정상화 자문 컨설팅 ▶U사 재무건전성 제고 및 경영개선방향 수립 ▶D사 재무구조 개선방안 도출 등

□ 해외프로젝트 컨설팅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공공기관, 기업의 해외진출 및 Global전략 수립 지원 ▶국제기구, 외국기업 등 해외 Client의 국내진출전략 수립 지원 ▶Global Project의 전략적 개발 및 금융지원 컨설팅 수행 ▶지역개발 및 투자사업에 대한 Feasibility Study, 경영전략, 경영개선, Cross-Border M&A 등 Global Base의 컨설팅 수행 등
사 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O사 해외 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자문 컨설팅 ▶중국 N공사 심양복합단지건설 사업성 및 금융자문 컨설팅 ▶뉴욕 A부동산 개발프로젝트 컨설팅 ▶S사 카자흐스탄 유전광구 탐사사업 타당성 검토 ▶D사 해외 전략적 투자자 모집을 위한 금융자문 컨설팅 ▶K공사 해외 M&A 자문 컨설팅 ▶UAE K-Cluster 조성 컨설팅 ▶몽골개발은행 설립 관련 컨설팅 등

[문의 : 컨설팅부 02-787-5021]

4. 기업구조개선 컨설팅

<p>개요</p>	<p>▷기업구조개선(BRS)는 영업/재무적 위기 또는 성장한계에 직면한 기업들의 Business Renovation Needs에 대한 종합자문을 통해 기업정상화 및 효율성 개선을 도모하는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구조 개선 지원, 재무/지배구조 개선 지원, 도출된 솔루션의 실행 지원 	
<p>주요업무</p>	<p>▷종합진단 컨설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시장/재무 현황에 대한 진단 · 다양한 이슈 및 계속 사업가치 도출 · 세부 추진전략 및 이행방안 도출
	<p>▷재무구조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채무의 재조정 및 Refinancing 등 금융자문/주선 · 감자, 증자 등 자본 구조조정 지원 · 재무적 투자자에 대한 전략적 옵션의 개발 및 협상 지원
	<p>▷사업구조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한 비즈니스 효율화 · 기업가치 증대를 위한 비수익조직 개편 · 자회사 또는 사업부의 통합/중복 투자를 없애기 위한 액션 플랜 수립 및 실행지원 · 사업구조 재구축을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
	<p>▷Operation(영업) 효율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사 운영체계 진단 및 효율화 방안 · 단기 현금흐름분석을 통한 Cash flow문제점 파악 및 대안 제시 · 비용 및 인력 운용의 효율화 방안 · 유동자산/부채관리, 회수/지급 프로세스 자문
<p>KDB의 강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Business Renovation 경험 및 Know-how 보유 ▷Total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보유 ▷KDB의 풍부한 고객 Network 및 금융지원 서비스 역량 <div data-bbox="721 1005 1040 1267" style="text-align: center;"> </div>	
<p>업무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 고객현황 파악 및 제안서 작성 ▷2단계: 자문용역계약 체결 ▷3단계: Business Assessment & Solution Roadmap 도출 ▷4단계: Solution Roadmap에 따른 실행방안 지원 	
<p>기업구조 개선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그룹 재무전략 및 금융자문 컨설팅 ▷ T그룹 구조조정 및 유동성 확보방안 컨설팅 ▷ G사 구조조정 및 유동성 확보방안 컨설팅 ▷ K사 사업 및 재무진단 컨설팅 	

[문의 : 컨설팅부 02-787-5875]

[참고]

□ 국내

한국산업은행 영업점

영업점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본 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02)787-4000	
본점영업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02)786-8503	02)787-5791
가산지점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8, 2층 (가산동, STX V타워)	02)2081-3500	02)857-7598~9
강남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08 (삼성동)	02)560-0300	02)553-8359
금천지점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488 (독산동)	02)3282-8900	02)852-7214
구로디지털 영업단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7, 203호 (구로동, 삼성IT밸리)	02)868-6482~5	02)868-6199
노원지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67, 1~2층 (상계동, 교보생명빌딩)	02)950-9500	02)934-7709
도곡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4, 2층 (도곡동, 아카데미스위트)	02)3498-3800	02)579-0246~7
마포지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27 (서교동)	02)3140-0400	02)338-0479
명동지점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3길 6(명동1가)	02)773-1150	02)773-1153
서초지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 (서초동)	02)3488-7500	02)581-1036
성동지점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310, 2층 (성수동2가, 푸조비즈타워빌딩)	02)3408-9600	02)3408-9697
압구정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78, 1층 (신사동, 중산빌딩)	02)3218-0900	02)548-7409
여의도지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여의도동)	02)2000-0600	02)782-8321
종로지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85 (관철동, 삼일빌딩)	02)398-6700	02)735-0136
◎ 경기지역			
김포지점	경기도 김포시 중봉로 15, 1~2층 (감정동, 청담메디칼센터)	031)980-8800	031)997-5112
남부평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549-5 금남빌딩 5층	032)502-2180	032)502- 2196
동탄지점	경기도 화성시 동탄솔빛로 51 인창프라자 2층	031)350-1200	031)350-1298~9
부천시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88 (상동)	032)620-1200	032)325-4761
부평지점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201호 (삼산동, 엘림타워)	032)363-5300	032)361-1198~9
분당지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200 (서현동)	031)789-1500	031)707-4152
송도기업 금융영업단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1층 (송도동, 미추홀타워)	032)833-8164	032)833-7798
수원지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5, 1~2층 (인계동, 경기도새마을회빌딩)	031)220-7300	031)226-7330
시화지점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 188 (정왕동)	031)496-4400	031)498-2924
안산지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71 (고잔동)	031)412-0600	031)487-6942
안양지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169번길 42 (관양동)	031)380-0900	031)388-0551
용인지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69, 2층 (중동, 벤포스타빌딩)	031)280-6100	031)280-61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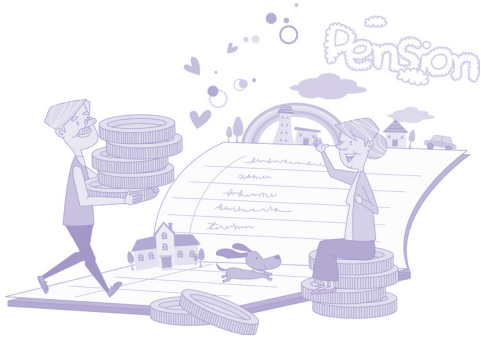
영업점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인천지점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407 (주안동)	032)450-3400	032)437-6028
일산지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01 (장항동)	031)920-4000	031)920-4088
판교지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26번길 128 마크시티그린빌딩 2층	031)779-8100	031)779-8198~9
평택지점	경기도 평택시 평택4로 39 1층 (합정동, 쌍용대신빌딩)	031)659-0500	031)654-8198~9
화성지점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107, 2층 (태성프라자)	031)350-3700	031)8059-0599
◎ 충청, 강원지역			
대덕지점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4로 105 (관평동)	042)939-8600	042)939-8698
대전지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37 (둔산동)	042)600-6200	042)489-7494
아산지점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 234번길 2 (모종동)	041)537-2300	041)537-2398~9
천안지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82 (신부동)	041)559-2600	041)562-8364
청주지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성안로 16 (북문로1가)	043)229-2900	043)255-9001
충주지점	충청북도 충주시 탄금대로 39 (봉방동)	043)850-7700	043)852-2194
원주지점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502 (단구동)	033)760-3800	033)765-1897~8
당진지점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중앙2로 211-15 (읍내동 266), 1층 (서해빌딩)	041)359-2600	041)356-3699
◎ 호남, 제주지역			
광주지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61 (우산동)	062)958-1000	062)953-7984~5
목포지점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306 (상동)	061)280-5400	061)285-0353~4
여수지점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30 (학동)	061)690-8500	061)682-0165
군산지점	전라북도 군산시 장미1길 18 (장미동)	063)440-3600	063)442-5245
전주지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5길 18 (경원동1가)	063)230-6600	063)230-6666
제주지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 44 (일도일동)	064)720-1700	064)759-9015
◎ 영남지역			
경산지점	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 233(중방동)	053)819-1900	053)819-1998
구미지점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107 (송정동)	054)450-4700	054)457-4644
금정지점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17 (구서동)	051)510-4700	051)510-4798
김해지점	경상남도 김해시 내외중앙로 8 2층 (내동, 동화선프라자)	055)310-2220~3	055)310-2299
녹산지점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35로 12-5, 4층 (송정동, JH빌딩)	051)974-4100	051)941-6199
대구지점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 1~2층 (동인동2가, 호수빌딩)	053)606-2500	053)255-1460
동래지점	부산광역시 동래구 총렬대로 225(수안동)	051)553-3980	051)553-3997
범일지점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 129(범일동) 대우증권빌딩 2층	051)632-2460	051)632-2471
부산지점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136 (중앙동2가)	051)240-1600	051)240-1678
성서지점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114 (월암동)	053)605-4600	053)584-6871~2
양산지점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687-1 BYC빌딩 2층	055)380-8500	055)380-8598
울산지점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56 (신정동)	052)270-4900	052)271-0484
진주지점	경상남도 진주시 향교로 3, 20호 (평안동, 롯데인벤스)	055)749-4300	055)743-9110
창원지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 (상남동)	055)268-2700	055)285-0187
포항지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156 1층 (죽도동)	054)288-4500	054)272-1655~6

□ 국외

재 단 명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토쿄지점 (KDB Tokyo Branch)	Room 305, Fuji Bldg, 2-3 Marunouchi 3-chome, Chiyoda-ku Tokyo, Japan 100-0005	81-3)3214-4541	81-3)3214-6933
베이징지점 (KDB Beijing Branch)	27th Floor, West Tower, Twin Towers, B-12 Jianguomenwai Avenue,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100022	86-10)6568-8858	86-10)6568-6078 /86-10)6568-6978
상하이지점 (KDB Shanghai Branch)	Room 3810, 38th Floor, Shanghai World Financial Center, 100 Century Avenue, Pudong New Area, Shanghai, China 200120	86-21)6887-1234	86-21)6877-5556
광저우지점 (KDB Guangzhou Branch)	Suite 1702, 17th Floor, International Finance Place, No.8, Huaxia Road, Pearl River New Town, Guangzhou, China 510623	86-20)8550-6008	86-20-8550-6010 /86-20-8550-6011
싱가폴지점 (KDB Singapore Branch)	8 Shenton Way, #07-01 AXA Tower, Singapore 068811	65)6224-8188	65)6225-6540
런던지점 (KDB London Branch)	16th Floor, 99 Bishopsgate, London EC2M 3XD, United Kingdom	44-20)7426-3550	44-20)7426-3555
뉴욕지점 (KDB NewYork Branch)	320 Park Avenue, 32nd Floor, New York, NY 10022, U.S.A.	212)688-7686	212)758-3296
KDB홍콩 (KDB Asia Limited)	KDB Asia Limited Suites 2005-9, 20/F, Two International Finance Centre, 8 Finance Street, Central, Hong Kong	852)2524-7011	852)2810-4447 /852)2537-3989
KDB아일랜드 (KDB Ireland Limited)	Ground Floor, Russell House, Stokes Place, St. Stephen's Green, Dublin 2, Ireland, KDB Ireland Limited	353-1)4753-644	353-1)4753-658
KDB헝가리 (KDB Bank (Hungary) Limited)	H-1054 Budapest V. Bajcsy-Zsilinszky ut 42-46 Hungary	36-1)374-9903	36-1)328-5454
KDB브라질 (Banco KDB do Brasil S.A.)	Av. Brigadeiro Faria Lima, 3400, 15° Andar Conj. 152, Ed. Faria Lima Financial Center, Itaim Bibi, S. o Paulo, Brasil, CEP 04538-132	55-11)2138-0000	55-11)2138-0150
KDB우즈베키스탄 (UzkDB Bank)	Oybek Street 32, Tashkent, Uzbekistan 100015	998-71)120-8000	998-71)120-6970
RBS Uz	Nasirov Street 77, Tashkent, Uzbekistan 100084	998-71)120-6141	998-71)120-6367
선양 사무소 (KDB Shenyang Representative Office)	29F E tower of Fortune Plaza, No.59 Beizhan Road, Shenhe District, Shenyang, Liaoning Province, China 110013	86-24)3128-9900	86-24)3128-9903
프랑크푸르트사무소 (KDB Frankfurt Representative Office)	Hochstrasse 29, 60313 Frankfurt am Main, Germany	49-69)92073-00	49-69)92073-99
호치민사무소 (KDB Shenyang Representative Office)	Unit 604, Kumho Asiana Plaza Saigon, 39 Le Duan Street, District 1, HCMC, Vietnam	84-8)6291-7871	84-8)6291-7672

□ 관계회사

구분	주 소	대표전화
KDB캐피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KDB캐피탈	02)6330-0114
KDB대우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번지 대우증권 빌딩	02)768-3355
KDB자산운용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 대우증권빌딩 16층	02)3774-8000
한국인프라자산운용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 태영빌딩 3층	02)6333-3500
KDB생명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9길(서소문동 3번지)올리브타워 10층~14층	02)6303-5000



08

한국수출입은행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8-1 2013년 수출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지원제도 · 290
- 8-2 글로벌 PaSS 상생협력 프로그램 ① · 291
- 8-3 글로벌 PaSS 상생협력 프로그램 ② · 293
- 8-4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 295
- 8-5 수출금융① - 포괄수출금융 · 297
- 8-6 수출금융② - 특례신용대출 · 299
- 8-7 수출금융③ - 시설확장·증설용 수출자금 대출 · 301
- 8-8 수출금융④ - 단기수출자금 대출 · 303
- 8-9 수출금융⑤ - 기술개발용 수출자금 · 305
- 8-10 수출금융⑥ - 해외시장개척자금 · 307
- 8-11 해외투자금융 · 309
- 8-12 수입금융 · 311
- 8-13 무역금융 · 313
- 8-14 이행성보증 · 315
- 8-15 환위험관리 금융·비금융서비스 · 316



8-1 2013년 수출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지원제도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전문적 지원 확대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및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을 지속 실시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상생 실현을 위한 글로벌 PaSS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전문적인 지원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조원)

구 분	'12년 실적	'13년 계획	증 감
중 소 · 중 건 지원	23.0	25.0	2.0
대 출	21.0	22.5	1.5
보 증	2.0	2.5	0.5

* '13년부터 중 소 · 중 건 지원 목표 통합 설정 · 운영

주요 금융지원 상품

수 출 금 융	포괄수출금융, 특례신용대출, 시설확장·증설용 수출자금대출, 단기수출자금대출, 기술개발용수출자금, 해외시장개척자금
해 외 투 자 금 융	해외투자자금대출,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대출
수 입 금 융	수입자금대출, 수입신용장 개설
무 역 금 융	수출환어음매입, 수출팩토링, 포페이팅
이 행 성 보 증	입찰보증, 선수금환급보증,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 등
간접금융지원	전대자금, 무역어음재할인, 무역금융 리파이낸스



8-2 글로벌 PaSS 상생협력 프로그램 ①

해외 동반진출 파트너십 프로그램

해외진출 대기업과 동반진출한 중소·중견기업 앞 금융을 직접 또는 현지은행을 통해 간접지원함으로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상생발전 지원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해외진출 대기업의 추천을 받은 동반진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용

① 직접 지원

● 개요

- 대기업과 해외 동반진출 또는 진출예정인 중소 협력업체의 금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출입은행과 상생협력약정을 체결한 대기업의 추천을 받아 당행이 직접 해당기업에 맞춤형 또는 패키지 금융을 지원
 - 기 진출기업은 팩토링·시설확장·운영자금, 신설기업은 시설·운영자금 지원

● 지원 조건

- 대출금리(또는 할인료) : 우대금리 적용
- 신용 또는 담보대출(단, 담보평가가 가능한 선진국의 경우)
- 지원절차
 - 당행과 현지진출 대기업간 상생협력 약정 체결
 - 대기업 중소·중견 협력업체 추천(명단 통보)
 - 중소·중견 협력업체 대출신청, 승인 및 집행

② 간접 지원

• 개요

- 중소기업협력업체 전용 전대자금을 설정, 현지 은행이 수출입은행과 상생협정을 체결한 대기업으로부터 신용보강을 통해 대출하거나 현지 팩토링 지원
 - 현지영업활동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현지화로 제공하여 환위험 관리 지원

• 지원 조건

- 대출금리(또는 할인료) : 우대금리 적용
- 대출통화 : 외화 또는 현지화
- 지원절차
 - 직접지원 절차와 동일, 단, 현지 전대은행이 대출집행 실시
- * 현지 전대은행은 대기업 또는 동반진출 중소기업·중견업체 추천은행을 우선 선정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기업성장지원단 상생금융팀) 및 전 지점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상생금융실 : 02-3779-6308



8-3 글로벌 PaSS 상생협력 프로그램 ②

수출중소중견기업 상생 프로그램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도가 취약한 신성장산업 분야 등 중소·중견협력기업에 대해 수출납품물품의 제작자금을 대기업의 추천 및 지원을 통해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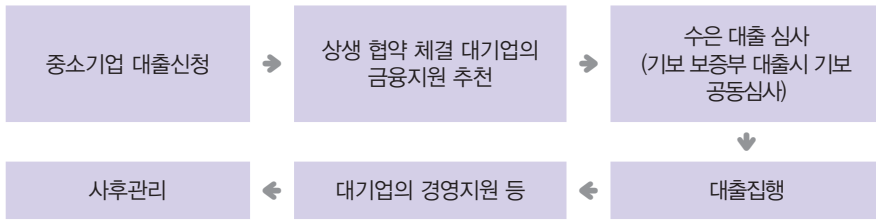
- 대기업(1차 협력사 및 공공기업 포함) 등에 납품하는 중소·중견 협력 기업으로서, 수출입은행과 대기업이 여신지원에 동의하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용

- 개요
 - 대기업으로부터 거래관계가 양호한 수출 중소중견협력기업 앞으로 수출용 물품의 제작자금 또는 수출이행을 위한 이행성보증을 지원
 - 대기업의 지원은 수출입은행과 체결하는 상생협력약정 내용에 따름
- 지원 조건 (단기수출자금 방식)
 - 대출금리 : 우대금리 적용
 - 대상거래
 - 대기업 및 1차 협력사 앞 로컬수출거래
 - 대기업 및 1차 협력사 해외 현지법인 앞 수출거래
 - 대상기간 : 최장 2년
 - 지원금액 : 수출계약금액의 80%(기수령 선수금 제외) 범위내 최대 100억원
 - * 기술보증기금 85% 부분보증서 담보부 대출 가능(기보 보증료를 감면)
- 지원 조건 (포괄수출금융 방식)
 - 대출금리 : 우대금리 적용
 - 대상거래
 - 대기업 및 1차 협력사 앞 로컬수출거래
 - 대기업 및 1차 협력사 해외 현지법인 앞 수출거래

- 대상기간 : 최장 6개월
- 지원금액 : 대출신청일 전월로부터 과거6개월 동안 대기업(혹은 1차 협력사) 앞 수출금액의 90% 범위내 최대 100억원

처리 절차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기업상생지원단 상생금융실) 및 전 지점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상생금융실 : 02-3779-6302, 6307



8-4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하여 금융서비스와 비금융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일괄지원함으로써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의 핵심 사업입니다.

* “수출 3억불 이상이고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이거나 “매출 1조원 이상이고 매출 대비 수출비중 50%이상”인 글로벌 중견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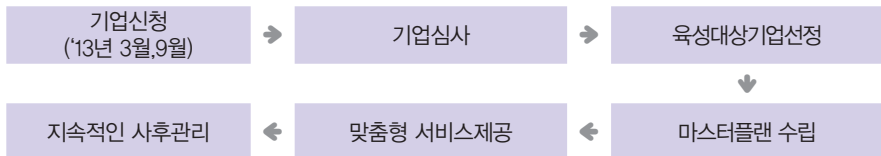
지원 규모

2013년 4,8조원

지원 대상

수출유망 중소·중견기업

처리 절차



● 기업신청

- 신청자격 : 수출유망 중소·중견기업 (단, 매출액 400억원 이상이면서 수출액 20억원 이상인 외감기업에 한함)
- 공모기간 : 수출입은행 홈페이지 참조(koreaexm.go.kr/hidden)

● 기업심사 및 육성대상기업선정('13년중 00개사 추가 선정)

-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뛰어나고 CEO의 성장의지가 강한 기업 우선 선정
- 선정기준 : 한국형히든챔피언 적합도(80%) + 재무안정성(20%)
- 선정절차 : 1차심사(60점) → 2차심사(40점) → 히든챔피언 운영위원회
 - 1차심사 : 서류심사로, 평가결과 30점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2차 심사 진행

- 2차심사 : 수출입은행 육성전문가가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CEO 역량, 중장기사업계획 등에 대한 상세평가 실시 및 외부기술평가기관의 기술력 평가 실시
- 히든챔피언 운영위원회 : 1, 2차 심사 결과(100점 만점) 총 60점 이상인 기업만 위원회에 상정되며, 위원회에서 육성대상기업 최종 선정
- **마스터플랜(Master Plan) 수립**
 - 육성대상기업 선정 후 성장전략 워크숍을 통해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장기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수출입은행의 중장기사업계획에 맞는 금융·비금융서비스 지원계획을 추가하여 마스터플랜 완성
- **맞춤형서비스 제공**
 - “제품개발 → 생산 → 해외판매”에 이르는 기업의 글로벌화 가치사슬(value chain) 전 범위에 걸쳐 필요한 맞춤형 금융 제공
 - 금리우대 및 신용여신한도 확대
 - 환관리 지원, 수입자신용조사 등 다양한 비금융서비스를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제공
- **지속적인 사후관리**
 - 매년 경영성과 및 사업참여도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부진시 마스터플랜 수정 또는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 선정 취소

신청·접수

- 기존고객기업 : 한국수출입은행 거래 담당부점
- 신규기업 :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www.koreaexim.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성장지원단 히든챔피언사업실 : 02-3779-5299

8-5 수출금융① - 포괄수출금융

수출물품을 생산하거나 수출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과거 수출 실적 범위 내에서 자금용도를 특정 수출 거래에 한정하지 않고 일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직접 수출하거나 수출물품 또는 수출용원자재를 공급하여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용

수출물품 생산 또는 수출시 필요한 자금대출

〈지원품목〉 모든 품목 (전기·전자, 부품, 기계류, 운수장비, 섬유 등).

* 단, 국제협약이나 국내법상 수출이 금지된 품목 제외

〈대출통화〉 원화 또는 외화 (미달러, 엔, 유로화등)

〈대출한도〉

- 단기포괄수출금융 : 최근 6개월 수출실적의 90% (녹색성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의 수출거래를 하거나 기술력을 인증받은 기업 등은 100%)
- 중기포괄수출금융 : 최근 1년 수출실적의 70% (중견기업의 경우 50%, 녹색성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100%)
- 중소기업은 150억원, 유예중소기업은 250억원 이내
 - * 다만, 수출규모가 현저히 크거나 최근 급격한 증가추세로 예외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0억원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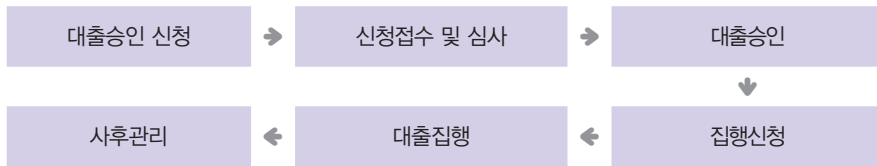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중소·중견금융부, 미래산업금융실) 및 지점

제출 서류

- 대출승인신청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부채현황표,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수출입실적 확인서류, 담보제공명세서, 기타 필요 서류

*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www.koreaexim.go.kr)에서 다운로드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중소·중견금융부, 미래산업금융실) 및 지점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및 국내지점 현황 참조)



8-6 수출금융② - 특례신용대출

신용도 또는 담보력이 취약한 수출중소기업의 소규모 수출거래(이행성보증 포함)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를 생략하고 수출기업의 수출이행 능력과 수출거래의 안정성을 평가하여 금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일반 특례 : 수출자의 수출이행능력과 해당 수출거래의 안전성을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가 일정기준을 상회하는 수출거래
- 기술기반 특례 : 설립 5년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기금등 외부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등급(BBB 이상)과 해당 수출거래의 안전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가 일정기준을 상회하는 수출거래

지원제외 · 제한

- 수출목적물을 단순히 구매하여 수출하는 수출거래
- 본지사(현지법인 포함)간 D/A, D/P 등의 무신용장 결제방식의 수출거래

지원 내용

신용도 또는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소규모 수출거래 지원

- 〈지원품목〉 수출입은행이 인정하는 품목
- 〈대출통화〉 원화 또는 외화 (미달러, 엔, 유로화 등)

<대출한도>

		일반 특례 (일반 수출거래)	기술기반 특례 (기술기반 신설 중소기업 수출거래)
기업별 대출한도 (자기자본의 100% 범위내)		총 20억원	3억원
수출거래별 대출한도	신용장 거래 및 이행성보증	20억원	3억원
	기타거래	10억원	3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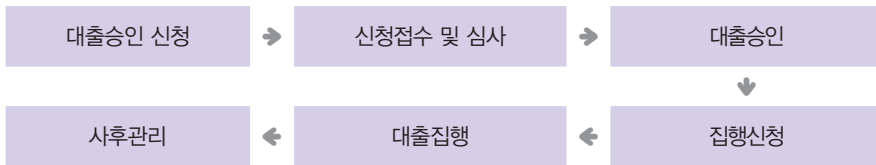
신청 · 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중소 · 중견금융부) 및 지점

제출 서류

- 대출승인신청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부채현황표,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수출계약서 및 수출입실적 확인서류, 담보제공명세서, 기타 필요한 서류

*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www.koreaexim.go.kr)에서 다운로드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중소 · 중견금융부) 및 지점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및 국내지점 현황 참조)



8-7 수출금융③-시설확장·증설용 수출자금 대출

수출중소기업의 수출물품 생산을 위한 시설 확장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기업

- 녹색성장산업 및 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수출거래 기업
- 수출입은행이 선정한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

지원 대상

- 신규공장 건설, 기존 공장의 증축 및 개·보수, 수출촉진효과가 있는 공장의 매입
- 기계류 및 설비의 구입·설치, 노후설비의 교체 및 개·보수
 - * 시설재 수입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입자금 대출 지원대상 물품 등'에 한함
 - ☞ 모든 경우, 시설완공 이후 수출입은행 지원대상 시설에서 발생한 연간 매출액의 30% 이상이 수출되는 경우 지원

지원 내용

수출물품 생산을 위한 시설 확장 및 증설에 소요되는 자금지원

〈대출통화〉 원화 또는 외화 (미달러화, 엔화, 유로화 등)

〈대출한도〉 실 소요자금의 80%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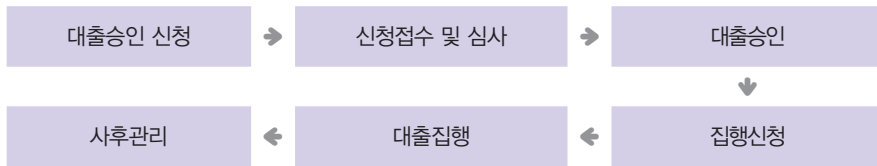
신청 · 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중소·중견금융부, 녹색성장금융부, 미래산업금융실) 및 지점

신청 서류

- 대출승인신청서, 시설확장·증설 사업계획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부채현황표,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수출입실적 확인 서류, 담보제공명세서, 기타 필요한 서류

*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www.koreaexim.go.kr)에서 다운로드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중소·중견금융부, 녹색성장금융부, 미래산업금융실) 및 지점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및 국내지점 현황 참조)

8-8 수출금융④-단기수출자금 대출

수출대금이 수출물품 인도 후 2년 이내에 결제되는 단기수출거래(선박 및 산업설비 제외)에 대하여 수출물품의 제작 및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선박 및 산업설비 수출을 제외한 단기수출거래

지원 내용 단기수출거래 자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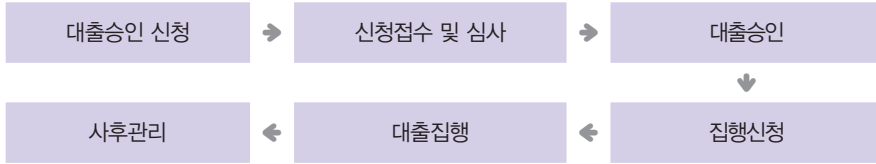
- 〈지원품목〉 선박 및 산업설비를 제외한 모든 품목, 단, 국제협약이나 국내 법상 수출이 금지된 품목 제외
- 〈대출통화〉 원화 또는 외화 (미달러화, 엔화, 유로화 등)
- 〈대출한도〉 ‘수출계약금액-이미 수령한 금액’이내에서 생산·수출에 필요한 금액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중소·중견금융부, 녹색성장금융부, 미래산업금융실) 및 지점

신청 서류

- 대출승인신청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부채현황표,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수출거래계약서, 담보제공명세서, 기타 필요한 서류
- *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www.koreaexim.go.kr)에서 다운로드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중소·중견금융부, 녹색성장금융부, 미래산업금융실) 및 지점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및 국내지점 현황 참조)





8-9 수출금융⑤ - 기술개발용 수출자금

연구설비의 설치, 연구개발용 기구 및 기자재 구입비, 시험생산시설 운전자금 등 수출물품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R&D)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

지원 대상

- 녹색성장산업 및 선성장동력산업의 수출거래 중소·중견기업,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 기술보증기금 등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등급이 양호한 기업

지원 내용

수출물품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R&D)에 필요한 자금

〈대상거래〉

- 기술개발 완료시점의 1년 이후 최초 도래하는 차주의 회계연도부터 지원 대상기준이 반영된 물품의 연간 매출액의 30% 이상 수출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원

〈자금용도〉

- 연구설비의 설치, 연구개발용 기구 및 기자재 구입비, 자체 및 위탁 R&D 비용, 기술도입비, 시험생산시설 운전자금 등

〈대출한도〉

- 실소요자금의 90% 이내. 단, 기업규모별로 아래와 같이 대출한도 차등
 - 중견기업 : 50억원 이내 (연구설비 포함 시 연구시설 구입비 50억원 추가 지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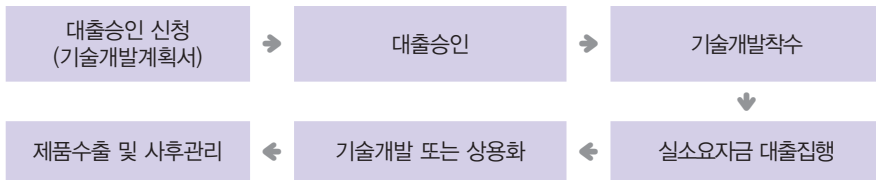
- 중소기업 : 30억원 이내 (연구설비 포함 시 연구시설 구입비 20억원 추가 지원 가능)

* 단, 동일 기술개발과 관련된 정부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경우는 그 금액을 대출한도에서 제외

신청 · 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중소·중견금융부, 녹색성장금융부, 미래산업금융실 및 지점

제출 서류 기술개발계획서, 기술평가서, 대출승인신청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부채현황표, 기타 필요 서류

처리 절차



문의 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중소·중견금융부, 녹색성장금융부, 미래산업금융실) 및 지점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및 국내지점 현황 참조)



8-10 수출금융⑥ - 해외시장개척자금

해외시장조사, 전시회 참가, 해외바이어 발굴, 해외네트워크 구축 등 수출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개척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녹색성장산업 및 선성장동력산업의 수출거래 중소기업
- 수출입은행이 선정한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

지원 내용

수출기업의 해외시장개척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대출

<자금용도>

- 해외시장조사·해외진출컨설팅, 해외바이어 발굴, 전시회 박람회 세미나 참가, 해외홍보 활동, 해외네트워크 구축 등

<대출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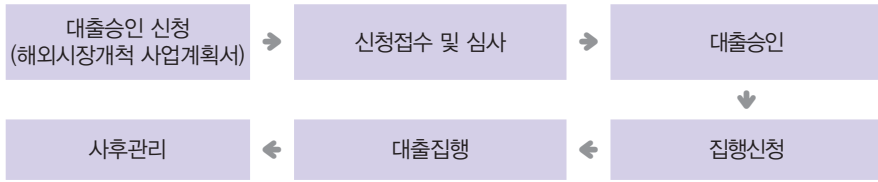
- 전년도 수출실적의 1/3 이내 (단, 중견기업은 30억원, 중소기업은 20억원 이내)
 - * 중소기업청의 '수출기업화사업', 한국무역협회의 '무역기금(해외시장개척자금)용자'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해외시장개척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대출한도에서 제외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중소·중견금융부, 녹색성장금융부, 미래산업금융실) 및 지점

제출 서류 해외시장개척 사업계획서, 수출실적확인서, 대출승인 신청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부채현황표, 기타 필요 서류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중소·중견금융부, 녹색성장금융부, 미래산업금융실) 및 지점(한국수출입은행 본점 및 국내지점 현황 참조)



8-11 해외투자금융

해외투자, 해외사업 및 주요자원 개발사업 등을 하는 국내 기업 또는 국내 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이 현지에서 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해외투자자금대출 : 투자예정업종에 대한 사업경력 3년 이상인 해외 투자를 추진하는 국내기업
-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자회사 또는 해외 손회사가 필요로 하는 시설·투자·운전자금

지원 분야

- 해외투자자금대출 : 국내기업이 해외투자를 하거나 외국에 국산 설비를 대여하는데 필요한 장기 금융을 지원
-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 국내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에게 외국에서 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을 직접 대출

〈대출한도〉

- 해외투자자금대출 : 소요자금의 90% 범위내
-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 소요자금 100% 범위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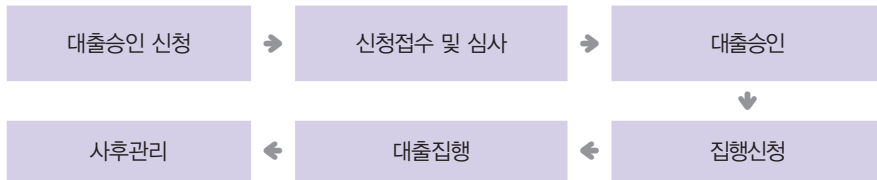
신청 · 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중소·중견금융부, 녹색성장금융부, 미래산업금융실) 및 지점

제출 서류

- 대출승인신청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부채현황표,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현지사업계획서, 담보제공명세서, 기타 필요한 서류

*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www.koreaexim.go.kr)에서 다운로드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중소·중견금융부, 녹색성장금융부, 미래산업금융실) 및 지점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및 국내지점 현황 참조)

8-12 수입금융

장기안정적인 확보 또는 적기 수입을 요하는 나프타, 원목, 광물, LNG·LPG 등 주요자원, 시설재 및 첨단제품 등의 수입거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수입자금대출 : 지원대상물품을 수입하는 모든 국내수입업체(제조업 영위기업 우선지원)
- 수입신용장 개설 : 지원대상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

지원 분야

- 수입자금대출 : 국민 경제에 매우 중요한 주요자원, 시설재 및 첨단제품 등의 수입을 위해 수입대금의 결제 (수입 유전스 L/C결제 포함) 또는 수입대금의 선급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 수입자 앞으로 금융을 지원
- 수입신용장 개설 : 국내 수입자를 대신하여 해외수출자 앞 수입화물의 대금지급을 보증하며, 수입화물선취보증 등 부가 서비스를 지원

〈지원품목〉

- 첨단제품 (지식경제부 고시)
- 주요광물자원 및 반제품
- 원유, 천연가스, LPG 등 에너지자원과 목재, 펄프 등 천연자원
- 주요자원의 개발을 위한 개발수입거래

• 기타 국민경제상 적기수입을 요하는 주요자원 및 상품

☞ 해당품목 여부는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www.koreaexim.go.kr) → 금융상품 → 금융 지원상품 → 수입금융 → 수입자금대출'에서 확인

〈대출한도〉

- 수입자금대출 : 수입금액 또는 수입선급금액의 90% 이내
- 수입신용장 개설 : 건당 미화 5만불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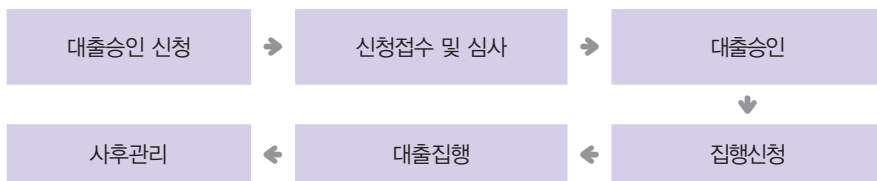
신청 · 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중소 · 중견금융부) 및 지점

제출 서류

- 대출승인신청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부채현황표,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수입대상 거래 계약서 및 수입실적확인서, 담보제공 명세서, 기타 필요한 서류

*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www.koreaexim.go.kr)에서 다운로드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중소 · 중견금융부) 및 지점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및 국내지점 현황 참조)

8-13 무역금융

수출거래를 이행한 후에(선적후) 바로 수출대금을 받을 수 있는 수출팩토링, 포페이팅 등 다양한 금융상품 지원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수출환어음매입 : 신용장 방식 또는 무신용장 방식(D/A, D/P, O/A 등) 수출거래를 바탕으로 발행되는 수출환어음
- 수출팩토링 : 사후 송금방식 또는 D/A방식 외상수출거래, 1년 이상 동종 품목 제작 및 수출 실적이 있거나 동일 해외 수입자와 과거 1회 이상 거래 경험이 있는 수출기업
- 포페이팅 : 자유로운 매입이 가능하고 취소불능인 보증(주로 신용장)이 수반된 거래. 1년 이상의 동종품목 제작경험 및 수출실적 보유기업 또는 동일 수입자와의 과거 1회 이상 거래기업

지원 분야

- 수출환어음매입 : 결제기간 2년 미만의 신용장 또는 무신용장 방식 수출거래를 근거로 발행된 수출환어음을 매입
- 수출팩토링 : 사후송금방식(Open Account방식) 외상수출거래(D/A거래 포함)에 의해서 발생된 수출채권을 수출 기업으로부터 무소구조건(Without Recourse)으로 매입
- 포페이팅 : 결제기간 2년 미만의 기한부 신용장 방식 또는 국외은행이 보증하는 무신용장 방식의 수출거래 (개도국앞 거래포함)를 바탕으로 발행된 수출환어음을 무소구조건(Without Recourse)으로 매입

〈금 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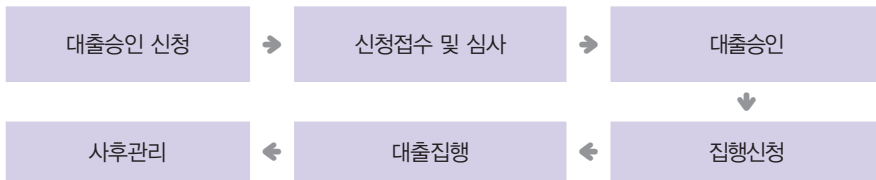
- 수출환어음매입 : 건당 미화 5만불 이상
- 수출팩토링 : 미화 1천만불 이하
- 포페이팅 : 건당 미화 1만불 ~ 2천만불

신청 · 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무역금융부) 및 지점

제출 서류 수출환어음매입/수출채권매입한도/포페이팅 신청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부채현황표, 기타 필요한 서류

*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www.koreaexim.go.kr)에서 다운로드

처리 절차



문 의 처

- 한국수출입은행 무역금융부 및 지점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및 국내지점 현황 참조)



용어 설명

- 무소구(Without Recourse) 조건
 해외수입자가 만기일에 수출대금을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수출입은행이 수출기업에게 수출대금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 수출대금 회수 위험은 수출입은행이 부담

8-14 이행성보증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에 관련된 수주, 사업진행 등에 필요한 제반 이행성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증 종류

- **입찰보증** :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낙찰시 계약체결 의무를 포함하여 입찰에 수반되는 모든 조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발주처 앞으로 제공되는 지급보증
- **선수금환급보증** : 수출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출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수출자에게 지급된 선수금 환급을 보장하기 위해 발주처 앞으로 제공되는 지급보증
- **계약이행보증** : 수출계약 등의 확실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발주처 또는 수입자 앞으로 제공되는 지급보증으로서, 수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계약조건대로 수출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수출금액의 일정비율 보상
- **하자보수보증** : 시공자가 일정기간 동안 공사완공 부분에 대한 하자를 보수할 것을 계약서에 약정한 경우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주자 앞으로 제공되는 지급보증
- **기타 이행성 보증** : 유보금보증, 관세환급보증 등

보증금액(기간)

보증대상거래의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금액(기간) 범위 내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중소·중견금융부, 녹색성장금융부, 미래산업금융실) 및 지점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및 국내지점 현황 참조)



8-15 환위험관리 금융·비금융서비스

수출중소기업의 환위험관리를 위한 각종 금융 및 비금융서비스 제공

수출중소기업의 대외거래에 따른 환위험관리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금융·비금융 서비스입니다.

환위험관리 금융서비스

- 통화전환옵션부 대출 : 포괄수출금융대출 취급시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출통화를 ‘외화↔ 원화’ 또는 ‘외화↔여타 외화’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무상으로 부여
- 선물환거래 서비스 : 수출중소기업에게 선물환거래 한도를 부여함으로써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개별 수출거래에 따른 환위험 관리를 지원
- 환율고정부 대출 : 포괄수출금융대출 취급시 외화대출금 상환시 적용하는 환율을 현재의 선물환율로 미리 고정하여, 상환시점에 환율 상승/하락과 관계없이 환차손익 고정
 - ☞ 수출입은행과 금융거래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 수출거래에 대해 환위험 헤지 금융 서비스 제공중

환위험관리 비금융서비스

- 환위험관리 컨설팅 : 환위험관리 전문기관의 전문가가 고객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업체의 환위험을 진단하고 맞춤형 환위험관리 방안 제시
- 환위험관리 실무전문가 교육 : 중소기업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위험관리 교육 실시
- 환위험관리 설명회 : 지방소재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환위험관리 개요, 필요성 및 관리방법 등에 대한 주기적 설명회 개최

문의처

- 금융서비스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중소·중견금융부) 및 지점
- 비금융서비스 : 한국수출입은행 히든챔피언실(02-3779-5299)

[참고]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및 국내지점 현황

〈본점〉

대표전화: 02) 3779-6114

부서명	업무	전화번호	팩스번호
녹색성장금융부	환경산업, 지식문화콘텐츠 금융지원 E-mail: newis@koreaexim.go.kr	02)3779-6466	02)3779-6751
중견·중소 금융부	포괄수출금융,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 단기수출자금대출, 수입자금 대출, 해외투자금융, 시설확장·증설용 수출자금 E-mail: smallbiz@koreaexim.go.kr	02)3779-6919	02)3779-6744
플랜트금융부	프로젝트 파이낸스, 직접대출, 해외건설관련보증, E-mail: wyjang@koreaexim.go.kr	02)3779-6416	02)3779-6747
선박금융부	선박수출자금대출, 직접대출, 외항선박자금 E-mail: ship@koreaexim.go.kr	02)3779-6335	02)3779-6745
전대금융실	전대자금대출, 투스텝복합금융 E-mail: relend@koreaexim.go.kr	02)3779-6361	02)3779-6747
해외투자금융부	해외투자자금대출, 해외M&A, 금융주선 E-mail: overinv@koreaexim.go.kr	02)3779-6421	02)3779-6749
미래산업금융실	첨단융합산업 지식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 E-mail: newgroth@koreaexim.go.kr	02)3779-5266	02)3779-6779
무역금융부	수출환어음매입, 포페이팅, 팩토링, 수입자금대출 E-mail: strade@koreaexim.go.kr	02)3779-6488	02)3779-6764

〈국내지점〉

지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수도권	인천지점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27 한국씨티은행 인천본부빌딩 15층 E-mail: inchon@koreaexim.go.kr	032)235-6114	032)442-6121
	수원지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 906-5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9층 E-mail: suwon@koreaexim.go.kr	031)259-6600	031)259-6609
중부권	대전지점 대전시 서구 둔산2동 931 캐피탈타워 16층 E-mail: daejeon@koreaexim.go.kr	042)489-9715	042)489-9716
	청주지점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08-1 충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6층 E-mail: cheongju@koreaexim.go.kr	043)237-0475	043)237-0476
영남권	부산지점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2동 257-5 우리투자증권빌딩 6층 E-mail: pusan@koreaexim.go.kr	051)817-5050	051)817-6060
	대구지점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190-5 삼성증권빌딩 13층 E-mail: daegu@koreaexim.go.kr	053)754-1021	053)754-1020
	창원지점 경남 창원시 용호동 7-4 경남무역회관 5층 E-mail: changwon@koreaexim.go.kr	055)287-6830	055)287-6831
	울산지점 울산시 남구 달동 1358-8 동양종합금융증권빌딩 5층 E-mail: ulsan@koreaexim.go.kr	052)274-5276	052)274-5278
호남권	광주지점 광주시 동구 금남로3가 9-2 제일은행빌딩 7층 E-mail: gwangju@koreaexim.go.kr	062)232-6944	062)232-6946
	전주지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9-1 한국교직원공제회 전북회관 10층 E-mail: jeonju@koreaexim.go.kr	063)271-6134	063)271-6139

09

한국무역보험공사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9-1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 320
- 9-2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322
- 9-3 수출신용보증(선적후) · 324
- 9-4 단기수출보험 · 325
- 9-5 중소기업Plus+보험 · 328
- 9-6 환변동보험 · 329
- 9-7 부품 · 소재 신뢰성보험 · 332
- 9-8 수입보험(수입자용, 금융기관용) · 333
- 9-9 해외채권 추심업무 대행 · 335



9-1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수입자 신용조사

해외신용조사기관으로부터 입수된 수입자 신용정보를 근거로 공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신용등급을 평가합니다.

지원 내용

- 국외기업(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전세계 70여개의 신용조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간 5만건 이상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제공
 -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은 공사가 제공하는 신용조사보고서를 통해 국외기업의 기본정보, 재무현황, 경영성과 등을 확인

〈유의사항〉

- 공사 홈페이지 방문 및 사이버영업점 회원가입 후 이용

〈수수료 청구시기 및 방식〉

수납방식	청구시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납부기한
후불제	당월 중 조사 완료건에 대한 수수료를 익월 1일자 일괄청구	수수료 청구시 세금계산서 함께 발급(1장/월)	세금계산서 발행 월 27일까지

- *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는 매월 초 마스터 사용자 이메일로 발송 식제 ('10년 1월부터 시행), 사이버영업점에서도 직접 조회·출력하여 사용 가능
- * 신용조사완료일의 익월(세금계산서 발행월) 27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향후 신용조사서비스 이용불가
- 조사보고서 종류(요약, Full Report 등)에 따라 신용조사 수수료가 달라짐

〈신용조사 수수료〉

보고서종류	가격(VAT 포함)		
	일반조사	재무제표미비	신용조사불가자 or 장기소요(40일초과)
요약보고서	33,000원	22,000원	면제
Full Report	110,000원	55,000원	면제

- * 현지사정에 따라 재무자료를 입수하지 못하는 경우 보고서 내에 재무자료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 국외기업 신용조사에는 건당 평균 7~8만원의 비용이 소요(공사부담)되는 바, 요약보고서의 내용이 미흡(재무자료 미비)한 경우에도 신청인에게 실제 소요비용의 일부인 3만3천원 부과

신청 · 접수

- 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신청 서류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 공사 승인 후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사이버영업점 가입	▶ www.ksure.or.kr 접속 ▶ 우측의 사이버영업점 메뉴 접속 ▶ 회원가입→사업자등록증 송부→ [승인]→회원가입
로그인	▶ 로그인 : 공인인증서 등록

신청 절차

- 신용조사 신청 → 조사 및 평가 → 보고서 조회 → 수수료 납부의 순서로 이용

신용조사 신청	▶ '국외기업신용조사-신청-신용조사신청' 메뉴 선택 ▶ 공사 DB검색(최근 6개월 이내 조사된 자료 있을시 시간절약) ▶ 조사방법 선택(구매/신규신청) ▶ 수입자 기본정보 입력 → 신청완료
공사에 의한 신용조사 및 평가	▶ 보고서 접수(평균 조사기간 2~4주 소요) ▶ 접수된 보고서 검토 후 등급평가
보고서 조회	▶ 사이버영업점 접속(or 신청자 E-mail로 발송) ▶ '국외기업신용조사-신청-신용조사 내역 및 보고서 조회' 메뉴에서 보고서 조회
수수료 납부	▶ 가상계좌(신용조사수수료 계좌)로 수수료 납부 ▶ 공사 담당자 확인 후 수수료수납

◎ 한국무역보험공사

문의처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9-2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수출자금 대출시 공사가 연대보증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외국환은행, 수출유관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지원 분야

- 무역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 완제품 내국 신용장(Local L/C)개설
- 중진공 수출지원자금/ 무역협회 무역기금
- 수출입은행 수출자금대출의 제작금융 및 포괄수출금융
-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내국수입유산스 신용장개설 포함)
- 기타 공사가 인정하는 자금 대출

지원 내용

-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조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 → 수출기업이 자체담보 제공 없이 수출이행 자금대출 가능

신청·접수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보증 방법

- 회전보증 : 근보증, Revolving방식
- 개별보증 : 개별 신용장기준 수시보증

신청 서류

- 청약서, 상사현황표,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수출실적확인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주주현황표,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사업장국민연금납부증명서(월별), 법인인감증명서, 임차계약서 등

* 신청양식은 홈페이지(www.ksure.or.kr) '신청서류 - 보험보증청약 - 수출신용보증'에서 다운로드

보증 절차

- 신용보증 청약 → 신용보증 한도심사 → 보증약정 체결 → 보증료 납부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부 대출

문의처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9-3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수출물품 선적후, 수출채권 매입시 공사가 연대보증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NEGO)하는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지원 분야

수출대금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거래(L/C, D/A, D/P, T/T 등)

지원 내용

수출기업이 선적후 금융기관에 선적서류 등을 NEGO(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

신청·접수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신청 서류

- 청약서, 상사현황표,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거래현황표, 수출거래실적증명서, 재무제표, 주주현황표,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국민연금납부증명서(월별) 등

* 신청양식은 홈페이지(www.ksure.or.kr) '신청서류 - 보험보증청약 - 수출신용보증'에서 다운로드

처리 절차

- 수출자·수입자 신용조사→ 신용보증 청약→ 신용보증한도 책정→ 보증약정체결→ 보증서 발급→ 대출통지(기업⇒공사)→ 보증료 및 보험료 납부(기업⇒공사)→ 신용보증부 대출

문의 처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9-4 단기수출보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담보

수출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L/C거래의 경우 개설은행)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지원 대상

-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자가 수출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대금미회수위험 담보
- 단기수출보험은 건전한 수출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적인 목적으로 수출기업이 보다 안심하고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며, 특히 대량의 수출거래를 지속적으로 하는 수출기업에 있어서 대금미회수위험에 대한 관리장치로서 중요한 역할 수행

지원 분야

- 신용위험 : 수입기업(또는 L/C개설은행)의 지급불능, 지급지체, 수입화물에 대한 인수거절 등
- 비상위험 : 전쟁위험, 송금위험, 환거래 제한 등

지원 내용

〈가입대상 거래〉

구 분	내 용
일반수출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수출을 말하며,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수출하는 방식
위탁가공무역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제3국 기업에 위탁하여 동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제3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선적하는 거래
중계무역	▷제3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매하여 제3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선적하는 방식
재 판 매	▷수출자가 해외지사(현지법인 포함)에 물품을 수출하고, 동 해외지사가 당해 물품을 현지 또는 제3국에 재판매하는 거래

〈운영 방식〉

- 개별보험 : 수출자와 특정 수입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위험을 평가하여 수출보험에 부보하는 방식
- 포괄보험 : 사전에 보험계약자(수출기업)와 보험자(무역보험공사)가 포괄보험 특약을 체결함으로써, 특정상품 또는 결제조건 등 미리 대상 수출거래의 범위를 정하여 의무적으로 수출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보험자도 이를 자동적으로 인수하는 방식
- 개별보험과 포괄보험의 장단점

구 분		개별보험	포괄보험
장점	수출자	▷고위험거래에 대해서만 선택적 보험부보 신청 가능	▷고위험거래에 대한 보험부보 용이
	공 사	▷고위험거래에 대한 인수거절 가능	▷위험분산용이
단점	수출자	▷고위험거래 부보 곤란	▷저위험거래 · 부보 의무
	공 사	▷위험분산 곤란	▷고위험거래 인수 의무

• 인수한도 및 보상한도

구 분	개 별 보 험
인수한도	▷특정 바이어와의 수출거래에 대하여 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최대한도(최대보험계약 체결 가능한도) ☞ 다만, 예외적으로 수출입자간 수출계약 건별로 보험계약 체결 가능
보상한도	▷포괄보험에 있어서 동일한 수출입자간 거래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최대 누적액 ☞ 개별보험에 있어서 인수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부보가 불가능하나, 포괄 보험의 경우, 한도 제한 없이 보험관계는 성립되나 사고발생시 보상한도 범위내에서 보상

• 보험 조건

구 분	내 용
보험가액	수출대금
부 보 율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 중소기업 100%, 중견기업 97.5%, 대기업 95% ▷중계무역 : 95% 이내 ▷국별인수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험금액	보험가액×부보율
지급보험금	손실액×부보율

〈보험료〉

- 보험료는 보험금액에 수입자 신용등급(신용장거래인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 소재 국가등급), 결제조건 및 결제기간에 따라 결정
-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자보험으로서 약관의 면책사항에 해당하거나 수출계약이행과정에서 귀책이 있는 경우 보상받을 수 없음

신청·접수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신청 서류

〈수출자 평가〉

- 수출자 신용조사 의뢰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최근3년간 재무제표(감사보고서)
- 사이버영업점 미가입 업체의 경우, 마스터 대표사용자 지정(변경)신청서

〈수입자 신용평가〉

- 온라인 신청이므로, 서류제출 필요없음 (사이버영업점 가입 및 로그인 후, 신용조사신청에서 수입자상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기재)
- 요약보고서 선택시 수수료 33,000원(부가세 포함)

〈단기수출보험 청약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온라인 청약
- 필요시 거래경위서, 수출거래실적증명서 등 첨부 가능

문의처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9-5 중소기업Plus+보험

중소기업전용상품

보험계약자인 수출기업은 연간 보상한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며, 수입자 위험, 신용장 위험, 수입국 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 공사는 책임금액 범위 내에서 손실을 보상합니다.

지원 내용

- 해외 바이어가 수출대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수출중소기업에게 보상
- 200만원의 보험료로 1년간 최대 20개 수입자와의 모든 수출거래에 대해 최대 3억원(기본담보 가입시)까지 보상

담보내용 및 책임한도

담 보 위 험	기 본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수입자 미결제위험 [신용]
	선 택	수입국 위험 [비상]
책 임 한 도	기 본	최대 3억원 (필수가입)
	선 택	최대 10억원 (선택가입)
수출자	전년도 혹은 최근년간 수출실적 3백만불 이하이고 신용도에 문제가 없는 기업	
수입자	공사 신용등급 R급 제외, 보험가입 수입자수 최대 20개사	

신청·접수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처리 절차 수출자·수입자 신용조사 → 거래수입자 등록 → 책임금액 선택 보험료 납부

문의처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9-6 환변동보험

환위험관리 지원을 위한 제도

수출, 수입 및 해외투자에 따른 외화획득 또는 대금지급 과정에서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금액을 원화로 확정하여 환율변동의 불확실성 위험을 커버하는 상품입니다.

지원 대상 수출기업, 수입기업, 해외투자기업중 신용상 문제가 없는 기업

*수입의 경우 수출용원자재 등 수입보험 지원대상 물품에 대해서만 지원

지원 내용

- 환변동보험은 환율변동의 불확실성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보험상품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을 사전에 원화로 확정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통화 : USD, JPY, EUR, CNY)
- 시중은행을 통한 환위험 헤지가 어려운 중소수출입기업이 손쉽게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및 비용부담 축소
- 환변동보험은 기본적으로, 환율하락시에는 손실을 보상하지만 환율 상승시에는 이익금을 환수하는 환위험'헤지'가능 (수출형 기준)

〈환변동보험 상품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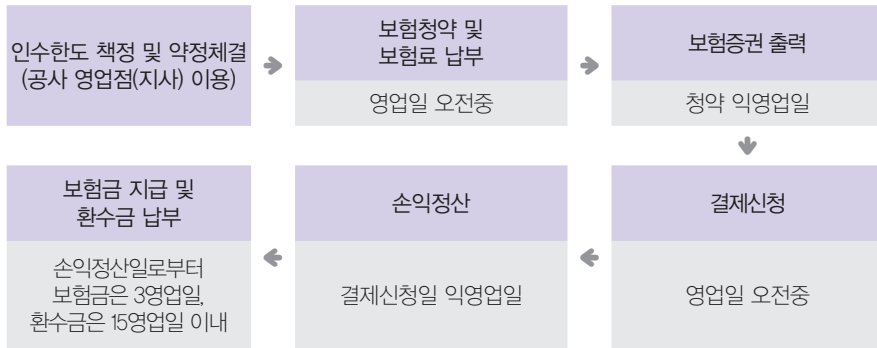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특 징
일반선물환 (Forward) (수출형 기준)	환율하락시 보험금 지급 환율상승시 이익금 납부	환율하락시 보장탁월 하나, 환율상승시 이익금 부담이 큼

신청 서류

- 인수한도 책정신청서(www.ksure.or.kr에서 다운로드)
- 헤지수요 조사표, 고객 확인서, 이익금 분할상환약정 불가 동의서

- 최근 3년간 재무제표(www.ksure.or.kr, 재무제표 제출센터에서 파일 업로드 가능)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 최근 1년간 수출입실적 증명서(무역협회 또는 은행 확인)
 - * 대표이사 공사 내방하여 약정 체결(약정서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중)
- 파생상품잔액내역서(은행연합회 또는 은행 발급),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처리 절차



신청·접수

사이버영업점 홈페이지(cyber.ksure.or.kr)에서 청약 및 결제신청

* 필요시 공사양식(공사홈페이지 <http://www.ksure.or.kr>에서 다운로드)이용, 팩스 신청 가능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궁금해요! 중기맨

- 환변동보험 인수한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 수출기업의 경우 최근 1년간(또는 전년도) 수출실적의 최대 70%범위내에서 수출기업의 신용등급, 실수요 해지금액 등을 감안하여 책정됩니다.
- 보장되는 환율과 정산의 기준이 되는 결제환율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 (보장환율) = 청약일의 시장평균환율 + 결제일의 월말기준 SWAP POINT
 ☞ (결제환율)
 ①결제일 월말지정 = 결제일자의 최고고시 매매기준율
 ②결제일 월중지정 = 결제일 전영업일 시장평균환율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SWAP POINT
 ③조기결제 신청시 = 조기결제신청일 시장평균환율 + 만기일이 속한 월의 최종영업일까지 SWAP POINT



용어 설명

- 환헤지
 환율변동에 따른 환손실을 없애기 위하여, 현재 시점에서 미래의 환율을 확정하여 수출이나, 수입, 투자에 따른 거래금액을 사전에 고정시키는 것



9-7 부품·소재 신뢰성보험

부품·소재의 신뢰성을 보장

중소기업이 생산한 부품·소재의 신뢰성을 보장하여 동 제품을 사용하는 수요기업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담보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부품·소재 전문기업이 생산한 제품

지원 내용

- 부품·소재 신뢰성을 획득한 부품·소재 또는 부품·소재 전문기업이 생산한 부품·소재가 타인에게 양도된 후 부품·소재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

지원 분야

보증책임, 회수비용 및 배상책임 및 기업휴지(삭제) 등 위험을 종합 담보

위험유형	담 보 내 용
제조물 보증책임	▷부품·소재업체가 제조·판매한 제조물이 양도된 후, 부품·소재의 결함으로 법률상 배상해야 할 손해중 수리비용 또는 대체가격
제조물 회수비용	▷부품·소재업체가 제조·판매한 부품이 회수가 불가피하게된 경우 회수에 따른 제반비용 보상
제조물 배상책임	▷부품업체가 제조·판매한 부품이 양도된 후 그 제조물로 생긴 제3자의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로 부품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손해배상금액
기업휴지	▷부품업체가 제조·판매한 부품이 제 3자 양도된 후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제3자에 기업휴지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상실이익

신청·접수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문의처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9-8 수입보험(수입자용, 금융기관용)

수입거래 지원

장기안정적인 확보 또는 적기 수입을 요하는 원유, 원목, 광물, LNG 등 주요자원, 시설재 및 첨단제품 등의 수입거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분야

- 수입자용 : 국내기업이 선급금 지급조건 수입거래에서 비상위험 또는 신용 위험으로 인해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 보상
- 금융기관용 : 금융기관이 주요자원 등의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수입기업에 대출(지급보증)한 후에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 보상)

〈지원 품목〉

- 철, 동, 아연, 석탄, 원유 등의 주요자원
- 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첨단제품 (지식경제부 발급 ‘첨단제품 확인서’ 필요)
- 관세법에서 정한 오염물질 배출방지·처리물품 등
 - * 품목 해당 여부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 → 무역지원사업 → 수입보험지원물품조회

〈보상 한도〉

- 수입자용 : 선급금 비율은 수입계약금액의 30% 이내로 하며, 부모율 100% (중견기업 97.5%, 대기업은 95%)
- 금융기관용 : 대출원금(지급보증) + 약정이자

지원 대상

- 수입자용 : 선급금 지급후 2년 이내 선적되어야 하는 지원대상물품의 수입거래 (중계무역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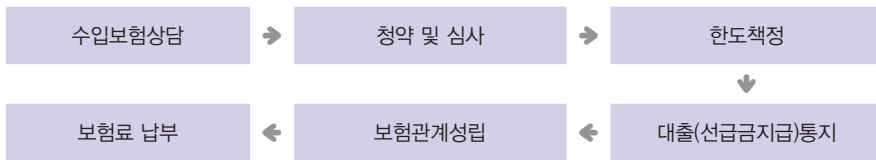
- 국내 수입자(보험계약자) 공사신용등급 F급 이상, 해외 수입계약상대방 공사신용등급 F급 이상
- 금융기관용 : 대출기간 1년 이내의 대출 또는 지급보증 (중계무역 제외)
 - 국내 수입자(채무자) 공사신용등급 F급 이상

신청·접수 무역보험공사 본사 수입보험팀 및 국내지사

준비 서류 수입보험청약서, 상사현황표, 수입실적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 → 무역지원사업 → 신청서류 → 보험·보증 청약관련 → 기타보험 : 수입보험

처리 절차



문의처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9-9 해외채권 추심업무 대행

해외 미수채권 회수

무역보험을 이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해외 미수채권 회수를 도모하고자 해외채권추심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채권회수 대행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 내용

- 국내기업이 해외 기업으로부터 미회수된 해외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사 해외사무소, 현지 수출보험기관, 현지 채권추심기관 등과 연계 채권 회수 대행

〈유의 사항〉

- 채권추심 의뢰시 채무자 앞 채권추심을 위한 관련 증빙자료 구비시 의뢰가 가능하며 수수료수준은 해당 채권소재지에 따라 상이하나 약 20%(성공수수료) 내외 수준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시), 채권추심위임장(공사 홈페이지 다운로드), 계약서, 선적서류 등 채권증빙서류 및 참고자료(공사 홈페이지-신청서류-채권추심 참고)

채권추심 절차

- 채권추심 신청 → 위임 승낙 통지 → 채권 추심방향 결정 → 추심활동 착수 → 채권추심 진행상황 조회 → 채권추심(현지회수) → 회수금 송금, 수수료 정산

문의처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1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10-1 해외지사화 사업 · 337
- 10-2 해외공동 물류서비스 · 340
- 10-3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 343
- 10-4 해외 비즈니스 출장지원 서비스 · 346
- 10-5 무역사절단 파견 · 349
- 10-6 해외전시회 · 352
- 10-7 지역별 시장정보, 투자정보 서비스 · 354
- 10-8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 356
- 10-9 KOTRA 글로벌연수원 연수 프로그램 · 359
- 10-10 온라인 화상 상담회 · 364
- 10-11 B2B e-마켓플레이스 “buyKOREA.org” · 366



10-1 해외지사화사업

KOTRA 해외무역관이 중소기업의 지사역할을 수행

KOTRA 해외무역관이 1년간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지사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며, 시장조사, 수출거래선 발굴 등 거래성사를 위한 해외마케팅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2,050개사

* '12년 지원현황 : 신청기업 약 3,800개사 중 2,050개사 선정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위주로 선정/지원하되, 대기업 및 수출 유관기관은 제한적 지원
 - 수출 유관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정부출자 또는 민간) 기관, 조합 등
 - * 유관기관이 가입 희망시 KOTRA 본사에서 참가목적을 검토하여 수용 여부 결정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등

〈선정시 우대〉

- 해외공동 물류서비스 및 BI 참여기업
- 기타 수출유망중소기업 등

지원 내용

- 해외시장정보 수집 / 바이어 발굴, 상담, 관리 / 출장 지원 등

- 지사화사업 종료 후 협약기간 중 거래관계에 있는 바이어와의 상담 내용에 한해 6개월 간 A/S 제도 시행
- 부가서비스

서비스 형태	세부 서비스 유형
Sales Rrp.	• 기업이 현지인을 채용하여 자사 마케팅만 1:1 전담
My Office	• 기업 본사 직원을 해외무역관에 파견하여 사무공간 등 제공
주문형 프로젝트	•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투자허가, 공장건설) 서비스 제공
거래선관리지원	• 4년차 졸업대상 업체에 한해 기존 거래선과의 업무 지원

※ 계약체결 대행, 무역클레임 해결 및 법적분쟁 해결, 대금결제 등 KOTRA의 법적 성격상 지원할 수없는 사항은 제외

신청 · 접수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 · 평가내용>
- 안정적 해외마케팅 가능여부
- 수출준비여부(제조, 인력, 영문홈페이지 등)
- 자본금, 연간 매출액(수출액) 등

신청 시 구비 자료

- 제품 및 회사 소개자료
- 영문 카탈로그, 브로셔, 제품소개 동영상, 기본적인 수출정보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국내 기업 소재지별 KOTRA 본사 담당자
 - 서울, 울산 : 02-3460-7735
 - 부산, 경남, 광주, 전라 : 02-3460-7367
 - 대구, 경북, 강원, 제주 : 02-3460-7393
 - 경기 : 02-3460-7736
 - 인천, 대전, 충청 : 02-3460-7386



궁금해요! 중기맨

- 지사화 전담직원이 우리 회사 소속으로 대외활동을 할 수 있는지요? 또한 해외무역관을 우리 회사 현지지사로 바이어에게 홍보할 수 있는지요?
 - ☞ 현지 법률상 해외무역관은 비영리기관으로 설립되어 있으므로, 무역관을 귀사의 현지지사로 홍보할 경우 현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무역관을 현지지사로 홍보하실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사화 전담직원 또한 영리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고객사 소속으로는 대외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지사화 전담직원이 무역관 소재지역 또는 지방, 여타 관할국가로 출장을 가서 업무지원이 가능한지요?
 - ☞ 바이어와의 미팅 등 지사화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 승인 후 지원이 가능하며, 원거리 동행출장 또는 대리출장의 경우 숙박비, 교통비 등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2 해외공동 물류서비스

국내 중소기업에 물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해외마케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무역관이 해외 현지의 전문 물류서비스 업체를 선정하여 국내 수출기업이 저렴하게 물류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하고, 해외 마케팅활동 및 물류컨설팅 지원을 통해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 '12년 지원현황 : 390개사

지원 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해외에 수출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국내기업의 해외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 현지 지정 물류 전문업체를 통해 통관지원, 창고입/출고 및 내륙운송 지원, 해외마케팅활동 지원, 물류 관련 컨설팅 지원 등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물류 관련 컨설팅 지원 및 해외마케팅활동을 중점 지원하여 해외시장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함

신청·접수

신청은 연중 가능

- ① 참가희망업체는 홈페이지(www.kotra.or.kr)에서 참가 신청

- ② 해외무역관은 신청 후 2주 이내에 적정성 검토 및 지원여부를 결정
- ③ 참가신청업체의 참가비 납부
 - 참가비 (단순물류: 150만원, 지사화패키지 : 지사화가입 + 30만원)
- ④ 해외무역관-참가신청업체간 공동물류센터 참가 협약 체결
- ⑤ 물류업체-참가신청업체간 물류위탁 계약 체결
- ⑥ 공동물류센터 이용(기간 : 1년)

운영현황

지역	물류센터명	지역	물류센터명
중 국	상하이	구 주	브뤼셀
	베이징		암스테르담
	충칭		부다페스트
	칭다오		런던
	우한		프랑크푸르트
	청두		함부르크
	광저우	아 /대양주	호치민
	다렌		싱가포르
	시안		뉴델리
북미주	뉴욕		멜버른
	로스앤젤레스	중남미	파나마
	시카고		부에노스아이레스
	디트로이트		산티아고
	마이애미		상파울루
	토론토	CIS	모스크바
밴쿠버	블라디보스톡		
일 본	도쿄	중.아	나이로비
	후쿠오카		카이로
합 계		36개소	

문의처 KOTRA 시장개척팀

- 국내기업 소재지별 담당자 연락처
 - 서울, 울산 : 02-3460-7735
 - 경기 : 02-3460-7736
 - 부산, 경남, 광주, 전라 : 02-3460-7367
 - 강원, 제주, 대구·경북 : 02-3460-7393
 - 인천, 대전, 충청 : 02-3460-7386
 - 인천, 대전, 충청 : 02-3460-7386
- 지자체 문의처 : 02-3460-7734

궁금해요! 중기맨

- 물류지원금은 어떻게 지원받나요?
 - ☞ 물류지원금은 창고보관료, 통관지원, 내륙운송비 등에 대하여 지원하고, 참가신청한 지역에 한하며 400만원 한도 내에서 KOTRA가 현지 물류업체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10-3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바이어찾기 · 원부자재공급선조사 · 맞춤형시장조사 · 바이어연락처확인

전 세계 81개국 118개 해외 무역관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 요청에 따른 시장정보를 현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로, 현지 바이어, 시장동향 등 다양한 정보 조사를 대행

지원 규모

* '12년 지원현황 : 9,200건 지원 (2012.12.21기준)

지원 대상

국내 중소수출기업 대상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 3개월 이내에 기 조사된 품목
- 지사화업체 중복 품목
- 수입제한 품목
- 시장성 미약 품목
- 기타 (무역관 사정 등)

지원 내용

- 고객의 조사 요청에 따라 해외무역관을 통해 현지 바이어 정보 및 시장 동향 등 다양한 맞춤형 조사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
 - 바이어찾기 : 수출희망국가 바이어조사
 - 원부자재공급선조사 : 원부자재 · 부품소재의 해외 공급업체를 발굴
- * 국내에서 가공절차를 거치지 않는 소비재, 사치품 등은 지원품목에서 제외

- 맞춤형시장조사 : 고객의 관심분야 위주의 해외시장정보 제공
- 바이어연락처확인 : 해외바이어 연락처 및 컨택포인트를 단순 확인해주는 서비스

● 세부사업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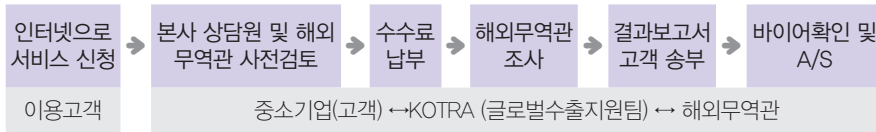
구분	수수료	회신 기간	비고
바이어찾기	150,000원(부가세 포함)	입금후 3주	KOTRA 수출전문위원
원부자재공급선조사	220,000원(부가세 포함)	입금후 3주	KOTRA 수출전문위원
맞춤형시장조사	110,000원(부가세 포함)	입금후 3주	KOTRA 수출전문위원
바이어연락처확인	무료	신청후 2주	무료 서비스

● 신청·접수 서비스 이용고객이 개별신청(연중 수시)

- 코트라 홈페이지(www.kotra.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신청하기 → 해외시장서비스 (조사) - 「신청하기」

● 신청 서류 신청시 영문 카달로그 및 조사 품목 자료를 필히 첨부 (단, 바이어찾기, 원부자재공급선조사, 맞춤형시장조사 서비스에 한함)

● 처리 절차



● 문의처

- KOTRA 거래지원팀: 02-3460-7437/ 7737/ 7388/ 7383
- KOTRA 사업관련 종합문의: 1544-4704



궁금해요! 중기맨

- 서비스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해야 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해외시장조사 서비스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합니다.
- 수수료는 언제 납부하나요?
☞ 해외 무역관의 사전검토 후 조사 가능시, 본사 담당자가 고객님의 견적서를 드리고 있습니다. 견적서를 받으신 후 수수료 납부하시면 됩니다.



용어 설명

- 수출전문위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서비스를 신청하신 고객님의 완성도 높은 보고서를 제공하고자 수출 품목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수출전문위원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서비스 접수부터 보고서 검토까지 해당품목의 수출전문위원이 지원하는 맞춤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10-4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 서비스

해외세일즈출장지원 · 해외투자출장지원 · 그룹해외비즈니스출장지원

국내기업이 해외비즈니스 출장시 KOTRA 해외무역관의 마케팅 전문요원이 바이어와의 상담주선, 호텔예약 등 비즈니스와 관련된 각종 출장업무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300개사 내외

* '12년 지원현황 : 320건(2012.12.20기준)

지원 대상

- 해외 출장을 계획하는 모든 기업 대상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기업
- 제조사가 아닌 수입업체

〈우대사항〉

- KOTRA 자문위원단 10%할인
- 시장조사중 바이어찾기, 원부자재공급선을 같은 무역관에 선행수행한 50%할인

지원 내용

- 해외 출장시 현지에서의 상담주선, 호텔예약 및 통역알선 등 출장 제반 활동 지원

- 해외투자환경조사 출장지원 : 투자유관기관 및 현지투자업체 상담주선, 관할지역 투자환경 브리핑, 투자관련 참고자료 제공 등

● 세부사업 내역

구분 (유형)		수수료	표준 지원사항
해외세일즈 출장지원	단순지원	무료	▷ 호텔예약, 통역정보제공(각 해외무역관별 홈페이지에서 호텔 및 통역원 정보 확인가능)
	상담주선	무역관별 차등책정	▷ 호텔예약, 통역알선 ▷ 바이어 상담주선(출장업체 사전접촉, 출장자료 제공, 해외무역관을 상담장으로 제공 등) ▷ 현지 체제시 애로사항 종합지원

구분 (유형)		수수료	표준 지원사항
해외투자환경조사 출장		무역관별 차등책정	▷ 일정 주선(호텔/차량 예약, 통역알선 포함) ▷ 무역관 관할지역 투자환경 브리핑 ▷ 관할지역 투자환경 개황, 투자관련 참고자료 제공 ▷ 현지 한국 투자업체, 투자유관기관, 투자대행서비스 기관, 로펌 등 상담 주선

* 상기 수수료는 1개 해외KBC 이용기준 금액임

● 신청 · 접수

서비스 이용고객이 개별 신청(연중 수시)

- 사업계획서 신청 : www.kotra.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회원가입→로그인→해외시장개척사업→해외비즈니스출장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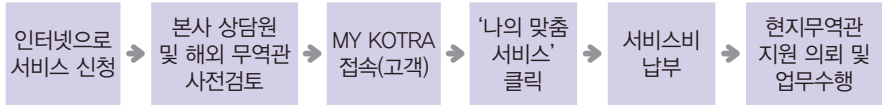
<평가절차>

- 당해연도 CRM완료처리 된 업체

● 신청 서류

- 온라인 접수

처리 절차



문의처

- KOTRA 거래지원팀 : 02-3460-7738
- KOTRA 사업관련 종합문의 : 1544-4704



궁금해요! 중기맨

- 바이어 컨택은 필요없고 통역원 지원 및 호텔예약만 따로 지원가능한가요?
☞ 예, 가능합니다. KOTRA 홈페이지 > “통역정보”에서 각 무역관별 통역원명단과 예약 가능한 호텔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5 무역사절단 파견

시장조사, 현지바이어와의 수출상담회 개최 등 시장개척 활동지원

KOTRA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해외시장진출을 희망하는 관내 중·소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세일즈단을 구성하여 파견하고, KOTRA 해외 무역관에서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업체의 수출진흥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규모

217회 파견, 2,230개사 업체

* '12년 지원현황 : 235회 파견(2,716개사 업체 참가)

지원 대상

- 지자체가 지원할 경우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하며 수출유관기관이 지원할 경우는 전국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
- * 신청지역은 파견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광역·기초지자체 혹은 수출유관기관에 문의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파견기관(광역·기초 지자체 및 수출유관기관) 관할지역 이외 소재기업 혹은 취급 품목 부정확 기업 등 지원요건 미충족 기업

지원 내용

-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성한 해외시장 개척단(세일즈단)을 해외 진출 유망지역에 파견,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 및 시장조사 활동을 지원
- * 파견기관 별 참가비용 지원은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해당기관 문의

-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
 - 현지 시장동향 설명회 개최
 - 종합(개별) 수출상담회 개최
 - 현지 시장조사 지원 및 사후 A/S 제공
 - 현지 바이어 상담주선을 위한 교통편, 상담장, 통역, 방문국 기초정보자료 제공 등
- * 항공임, 숙박비 및 개인경비는 참가업체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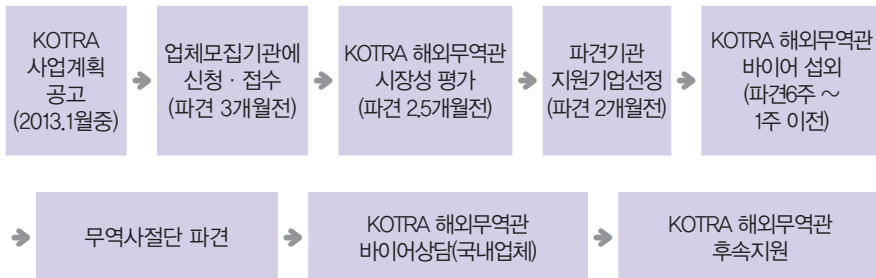
평가 내용

- 파견지역 특성에 맞는 품목 상담희망 여부
 - * 자세한 일정은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의 무역사절단 신청란 참고 요망
- 요구자료 충족여부(영문홈페이지, 카탈로그 등 수출상담에 필요한 대외영문 홍보자료 필수)
 - * 세부 심사요건은 파견기관별로 상이하므로 해당기관 문의

제출 서류

- 기업정보, 상담희망품목 등 국·영문으로 작성된 자료 등
 - * 세부 제출서류는 파견기관별로 상이하므로 해당기관 문의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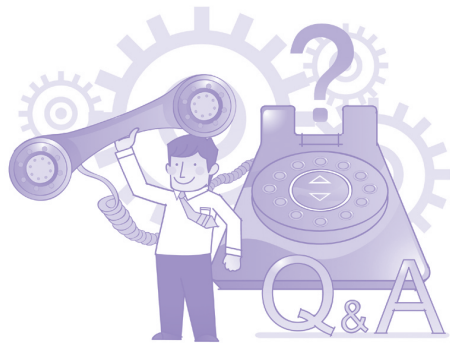
문의처

- 코트라 중소기업협력팀 : 02-3460-7487



궁금해요! 중기맨

- 무역사절단 참가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 먼저 코트라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사절단 일정을 파악합니다.(통상 3개월전). 그리고 해당지역 관련기관(광역·기초지자체,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수출유관기관 등)에 문의하여 필요한 자료와 신청양식을 제출하여 참가하시면 됩니다.
- 무역사절단을 참가하면 바이어상담이 잘 이루어지나요?
 - ☞ 무역사절단 참가시 참가기업의 영어로 된 정확한 품목정보자료를 제공하시면 해당 무역관에서 바이어매칭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절단 출발전 무역관에서 상담주선 바이어리스트를 보내드리오니 사전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10-6 해외전시회

해외 유망전시회 참가지원

해외에서 개최되는 유망전시회에 KOTRA와 유관단체가 공동으로 한국관을 구성하여 수출업체들의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상품전시 및 전 세계 내방 바이어와의 상담을 현지 KOTRA 무역관을 통해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2013년 115회 해외전시회 참가

* 2012년 지원 현황 : 100개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대상 사업자등록번호를 소지한 중소, 중견기업

- * 국가연구기관이 연구개발제품의 시장홍보 및 시장테스트를 목적으로 할 경우 참가가능
- * 전시회에 따라 대기업 참가도 가능

선정 시 우대기업

- 제조기업 여부
- 수출유망 중소기업, 세계일류화상품 기업 등
- 정부기관 인증서 취득 여부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2012년까지 동일 해외전시회에 총 4회 이상 참가한 기업

지원 내용

- 직접 소요경비의 최대 50% 이내 국고 지원
 - * 직접 소요경비 : 부스 임차료, 장치비, 전시품 편도 운송비 등

● 한국관 참가기업 전시회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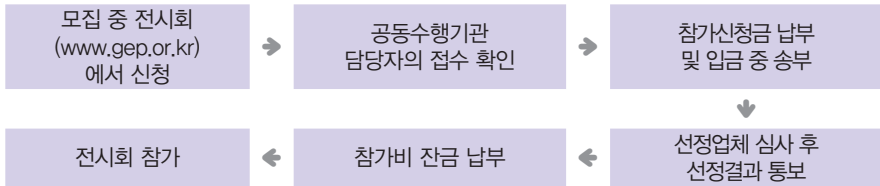
- 상담 바이어 주선 및 사후관리
- 부스임차, 국가관 장치 디자인, 전시품 편도운송 등 행정지원
- 숙박예약 및 통역원 섭외 지원
- * 추가 장치비, 전시품 반송비, 출장자 여행경비(항공, 숙박, 통역비)등은 참가업체 부담

● 신청 · 접수 글로벌 전시포털(GEP)를 통한 온라인 신청(www.gep.or.kr)

●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 시 관련 제출서류를 파일로 첨부하거나 팩스로 전송 (FAX : 02-3460-7916)

● 처리 절차



* 참가업체 모집은 공동수행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관련 문의는 동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KOTRA 해외전시팀 : 02-3460-7675
- 글로벌 전시포털 사이트(GEP) : www.gep.or.kr



10-7 지역별 시장정보, 투자정보 서비스

국가별, 지역별 시장정보와 투자진출 정보서비스 제공

KOTRA는 기획조사, 지역별 해외시장 정보 및 속보를 비롯한 국가정보의 데이터베이스 및 동영상, 해외투자진출가이드를 제공하여 고객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① 웹사이트를 통한 수출·투자 정보 제공

- 해외 119개 무역관을 통해 수집한 생생한 현장 정보를 무역투자정보포털(www.globlawindow.org)과 해외진출정보시스템(www.ois.go.kr)을 통해 제공
 - 뉴스레터, rss, 트위터(@globalwindow), 모바일웹(m.globalwindow.org) 등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 가능
 - 주요 정보 : 해외시장정보, 국가정보, 기획조사, 동영상브리핑, 국가별 투자진출 가이드, 해외투자속보

② 해외시장 설명회 개최

- 해외 각국의 시장동향, 상품 및 마케팅 정보, 투자환경과 투자절차 등 수출과 투자진출 의사결정에 필요한 해외시장 정보 제공
 - 공사 개최 설명회 및 세미나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글로벌윈도우(www.globalwindow.org)를 통해 온라인 제공

③ 맞춤형 컨설팅서비스

- 고객이 원하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출 타겟국가를 선정하고 시장동향 및 전망, 경쟁분석, 시장구조 분석, 바이어 발굴, 마케팅 전략수립 정보를 제공(유료, 최소 1,000만 원부터 컨설팅서비스 제공)

④ 무역자료실 운영

- 해외무역을 관하여 수집된 각국 경제, 무역 및 투자 관련 최신 정보의 자유로운 열람 및 복사 가능
- 무역자료실 운영

서비스 유형	주요 내용	문의
자료 열람	해외업체 디렉토리, 각종통계, 관세율표 등 경제/무역/투자 관련 5만여 자료 및 정기간행물 700여종 등 소장	무역자료실 (02-3460-7404/7408)
해외업체 검색서비스	CD-ROM 자료검색을 통해 해외수입상 정보 제공 이용방법 : 직접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무역자료실 (02-3460-7405)
관세율/무역통계 팩스 서비스	HS코드에 따라 관세율표 및 무역통계 자료를 FAX 서비스 - 신청방법 : 홈페이지 무역자료실에서 신청	
발간자료 원문서비스	공사발간자료 중 무로자료의 원문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 - 무역자료실)소장자료검색)검색후 원문보기 클릭	무역자료실 (02-3460-7408)

• 간행물관매 코너 운영 (KOTRA 발간자료 판매)

- 방문 및 온라인 구매 가능

서비스 유형	주요 내용	문의
국가정보 발간 제공	87개국의 국가개황, 경제무역통계, 주요산업, 상담요령, 투자환경 등 각종 비즈니스 정보 제공 - 발간대상국 : 87개국 - 가격 : 평균 3만원(국가별로 상이)	간행물관매 (02-3460-7389/7390)
간행물 판매	KOTRA 발간 주요 간행물 판매	

문의처

- KOTRA 정보기획실(www.globalwindow.org) : 02-3460-7333
- 중소기업 정책정보 : www.bizinfo.go.kr



궁금해요! 종기맨

- GLOBAL WINDOW 해외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한가요?
☞ 해외시장정보, 국가정보 등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획조사 등 심도있는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KOTRA 홈페이지 회원인 경우,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KOTRA 홈페이지 ID와 동일한 내용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으로도 GLOBAL WINDOW를 볼 수 있나요?
☞ 네, 스마트폰의 경우 m.globalwindow.org를 통해 GLOBAL WINDOW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0-8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외국인투자가 대상 투자환경 홍보, 투자상담, 행정지원 및 생활정책 서비스 제공

Invest Korea는 한국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초기단계의 투자 컨설팅과 투자이행 과정에서의 행정업무 처리는 물론 투자완료 후 한국정착에 필요한 생활지원까지 외국인투자 전 과정에 대한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부 민간 전문가와 정부 주요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투자종합상담센터는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투자 진출을 위한 One-Stop Service를 지원합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 해외 유력투자가 및 주요 프로젝트를 발굴(종류 : 단독, 합작, 구주 인수 등)하여 무역관-본사 PM 연계 1:1 맞춤형 지원, 관련 지자체 및 국내 기업과 연계한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상담회 개최

서비스 유형	서비스 내용
상품화 투자유치단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지자체, FEZ 등 투자유치 유관기관이 해외로 파견하는 투자유치단 활동 지원 ▷ 담당 : 투자총괄팀
맞춤형 투자유치 T/F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유망 잠재투자자를 대상으로 산업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 Team 파견하여 투자자와 knock door 상담 지원 ▷ 담당 : 제조업/서비스/금융/전략지역유치팀 ▶ 주요산업 :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신재생에너지, 부동산, 물류, 문화컨텐츠, 금융, 전기전자, 화학, IT, BT 등
FIW(외국인투자주간) 행사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산업별 투자자를 향한 초청하여 투자환경설명회, 1:1상담회, 개별 현장시찰 서비스 제공 ▷ 담당 : 투자총괄팀, 투자유치처 각 팀
지자체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 조사를 통해 투자자에게 대한 투자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투자유치 프로젝트의 적합성, 실현가능성 제고 (대일 부품소재, 항공우주, 신소재, 기계 등) ▷ 담당 : 투자총괄팀
대일 투자유치 로드쇼 및 사절단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유관기관, 기업 등 사절단을 구성하여 대한투자 희망 일본 부품소재기업 대상 투자설명회 및 상담 지원 ▷ 담당 : 전략지역유치팀

서비스 유형	서비스 내용
글로벌 선도기업 다중협력사업(GA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기업이 국내기업과 협력을 희망하는 경우, 설명회 지원 및 협력희망 국내기업의 제안을 접수하여 협력 파트너 결정을 지원(협력방법 : 벤처투자, 지분투자, R&D자금 지원, 공동R&D, JV설립 등) ▷ 담당 : 제조업유치팀
글로벌 PE/ VC 대상 해외로드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PE/VC 대상 Pre-IPO 기업, 우수기술 국내기업의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국내 GP/LP와 해외 GP/LP 매칭, 국내기업과 해외투자자의 1:1 상담 ▷ 담당 : 금융산업유치팀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기반조성 및 투자환경 홍보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투자유치기관 업무협조 및 네트워킹, 투자 거점 해외무역관 운영 및 지원 ▷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정책, 외투기업 활동 및 성공사례, 유망산업 등을 소개하는 월간지 IK Bulletin 발간 및 각종 홍보자료 기획 ▷ 담당 : 투자총괄팀, 투자홍보팀
외국인투자 조사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투자유치 정책 및 전략수립 지원 등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정책센터 운영 및 외국인투자기업 동향 파악 및 조사, 투자환경 개선과제 발굴 ▷ 담당 : 투자정보팀
외국인 창업지원센터 (IKP)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가 전용사무실 입주 외투기업(투자가) 유치 및 지원(www.ikp.or.kr) ▷ 담당 : 투자총괄팀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UAE, 말레이시아 등 신흥국으로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신흥자본유치팀 신설('11.6월 : 국내 최초 러시아 모스크바 투자유치 IR 개최/ 11월 : 인도 뭄바이 투자유치 IR 개최 등)

문의처

- KOTRA 제조업유치팀 : 02-3460-7617
- KOTRA 서비스산업유치팀 : 02-3460-7503
- KOTRA 금융산업유치팀 : 02-3460-7589
- KOTRA 전략지역유치팀 : 02-3460-7613
- KOTRA 투자총괄팀 : 02-3460-7515, 3497-1011(IKP)
- KOTRA 투자홍보팀 : 02-3460-7532
- KOTRA 투자정보팀 : 02-3460-7964

외국인 투자유치 상담서비스

- 행정지원 및 투자상담 서비스 제공, 한국생활 정착사업 추진

지원분야	지 원 내 용	
행정지원 서비스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신고(상담),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변경신고), 수입 자본재에 대한 세부사항 검토 신청
	국세청	조세감면제도, 사업소득세 ID 등록
	관세청	자본재 현물출자 완료 확인서 발급, 관세 관련 상담
	법무부	투자자 (D-8), 동반 가족 (F-3) 등 체류자격 부여, 외국인 등록 체류지 변경 신고
	고용노동부	외국인투자기업 인사노무 관련 상담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 알선
투자상담	초기 상담	투자절차 및 요건, 인센티브 등 외국인투자 전반 상담
	분야별 전문 상담	세무, 회계, 법률 분야 관련 전문 컨설팅 제공
생활정착 서비스	주거, 교육, 의료, 운전면허 취득 등 한국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 및 상담 제공	

문의처

- KOTRA 투자종합상담센터 : 02-3497-1972 (한국어, 영어, 일본어)

외국기업 고충처리

- 노무, 세무, 법무, 법률, 금융, 관세통관, 출입국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흠닥터가 국내 기진출한 외투기업의 경영 및 생활상의 애로사항을 파악 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문제해결 지원 및 증액투자 유도(www.i-ombudsman.or.kr)

문의처

- KOTRA 외국기업고충처리단 : 02-3460-7635



10-9 KOTRA 글로벌연수원 연수 프로그램

맞춤형 위탁연수 프로그램 제공

KOTRA의 해외조직망과 무역·투자분야에서의 강점을 활용하여 국제 비즈니스 감각을 지닌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원 규모 4,000명 내외

* '12년 지원현황 : 3,400명

지원 내용

- 지역전문가육성과정, 글로벌마케팅과정, 외국인투자유치과정과 산업별 특화연수 등 자체개발과정 및 특정 기관이나 기업을 위한 맞춤형 위탁 연수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제공
- 세부사업 내역
 - 자체개발과정

과정명	시 기	참가비
신흥시장 비즈니스 스쿨 - 미얀마	01.29(화) ~ 01.30(수)	300,000
주제별 시장 진출 전략 - 유통(인도네시아)	02.19(화) ~ 02.20(수)	300,000
리스크 관리(노무/세무) - 캄보디아	02.25(월) ~ 02.26(화)	300,000
해외투자진출실무	03.13(수) ~ 03.15(금)	500,000
해외전시마케팅	03.14(목) ~ 03.15(금)	300,000
FTA 지역 진출 - FTA 인증수출자	03.18(월) ~ 03.19(화)	300,000
리스크 관리(노무/세무) - 중국	03.18(월) ~ 03.20(수)	500,000
글로벌 비즈니스 - 협상	03.20(수) ~ 03.22(금)	500,000
신흥시장 집중 분석 - 인도	03.21(목) ~ 03.22(금)	300,000
신흥시장 집중 분석 - 베트남	03.26(화) ~ 03.27(수)	300,000

과 정 명	시 기	참 가 비
주제별 시장 진출 전략 - 플랜트 프로젝트시장(중동)	03.28(목) ~ 03.29(금)	300,000
글로벌 전문가 과정	3월 ~ 10월	2,500,000
글로벌 CEO 스쿨	03월 ~ 10월	4,000,000
신흥시장 집중 분석 - 아프리카	04.03(수) ~ 04.05(금)	500,000
글로벌 마케팅	04.04(목) ~ 04.05(금)	300,000
외국인 한국어 교육	04.01(월) ~ 07.04(목)	-
신흥시장 집중 분석 - 미얀마	04.09(화) ~ 04.10(수)	300,000
신흥시장 집중 분석 - 필리핀	04.11(목) ~ 04.12(금)	300,000
신흥시장 비즈니스 스쿨(야간, 8주) - 중국	04.11(목) ~ 05.30(목)	1,500,000
FTA 지역 진출 - 한-미 FTA, 미국진출전략	04.11(목) ~ 04.12(금)	300,000
계약·협상 실무 - 중국 계약 협상 실무	04.17(수) ~ 04.19(금)	500,000
글로벌 비즈니스 - 계약	04.18(목) ~ 04.19(금)	300,000
신흥시장 집중 분석 - 브라질	04.23(화) ~ 04.24(수)	300,000
M&A 실무 - 중국	04.25(목) ~ 04.26(금)	300,000
리스크 관리(노무/세무) - 인도네시아	04.29(월) ~ 04.30(화)	300,000
해외창업 - 캄보디아/미얀마	4월중	2,000,000
해외창업 - 라오스/베트남	4월중	2,000,000
해외투자스쿨 - 미얀마	4월중	2,500,000
실버산업 - 일본(오사카)	4월중	2,000,000
히든 챔피언 유럽(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	4월중	6,000,000
주제별 시장 진출 전략 - 유통시장(일본)	05.02(목) ~ 05.03(금)	300,000
신흥시장 집중 분석 - 러시아/CIS	05.08(수) ~ 05.10(금)	500,000
계약 실무 - 베트남 계약 협상 실무	05.14(화) ~ 05.15(수)	300,000
해외전시 마케팅	05.23(목) ~ 05.24(금)	300,000
계약·협상 실무 - 인도네시아 계약 협상 실무	05.20(월) ~ 05.21(화)	300,000
외국인 투자유치 PM 양성	05.20(월) ~ 05.23(목)	500,000
리스크 관리(노무/세무) - 베트남	05.27(월) ~ 05.28(화)	300,000
아세안진출지역선정 Work Shop	05.29(수) ~ 05.31(금)	500,000

과 정 명	시 기	참 가 비
글로벌 비즈니스 - 협상	05.29(수) ~ 05.31(금)	500,000
해외투자자쿨 - 캄보디아	5월중	2,500,000
주제별 시장 진출 전략 - 프렌차이즈시장(베트남)	06.03(월) ~ 06.04(화)	300,000
리스크 관리(노무/세무) - 인도	06.03(월) ~ 06.04(화)	300,000
글로벌 비즈니스 - 커뮤니케이션	06.03(월) ~ 06.05(수)	600,000
외국인 투자유치 실무	06.10(월) ~ 06.11(화)	300,000
신흥시장 집중 분석 - 터키	06.11(화) ~ 06.12(수)	300,000
글로벌 비즈니스 - 계약 실무	06.13(목) ~ 06.14(금)	300,000
신흥시장 집중 분석 - 인도네시아	06.18(화) ~ 06.19(수)	300,000
글로벌 마케팅	06.27(목) ~ 06.28(금)	300,000
주제별 시장 진출 전략 - 의료바이오시장(브라질)	06.24(월) ~ 06.25(화)	300,000
신흥시장 집중 분석 - 중남미(페루, 칠레, 멕시코)	06.26(수) ~ 06.28(금)	500,000
해외투자진출실무	06.26(수) ~ 06.28(금)	500,000
신흥시장 집중 분석 - 중동	07.03(수) ~ 07.04(목)	300,000
신흥시장 집중 분석 - 베트남	07.09(화) ~ 07.10(수)	300,000
글로벌 비즈니스 - 계약	07.11(목) ~ 07.12(금)	300,000
기술사업화 - 이스라엘 연수단	07.13(토) ~ 07.19(금)	4,000,000
신흥시장 집중 분석 - 폴란드	07.16(화) ~ 07.17(수)	300,000
해외전시 마케팅	07.18(목) ~ 07.19(금)	300,000
주제별 시장 진출 전략 - 유통시장(중국)	07.23(화) ~ 07.24(수)	300,000
신흥시장 집중 분석 - 미얀마	08.27(화) ~ 08.28(수)	300,000
리스크 관리(노무/세무) - 캄보디아	08.29(목) ~ 08.30(금)	300,000
외국인 한국어 교육	09.02(월) ~ 12.05(목)	-
글로벌 비즈니스 - 협상	09.04(수) ~ 09.06(금)	500,000
FTA 지역 진출 - FTA 인증수출자	09.12(목) ~ 09.13(금)	300,000
해외투자진출실무	09.25(수) ~ 09.27(금)	500,000
FTA 지역 진출 - 한-미 FTA, 미국진출전략	09.26(목) ~ 09.27(금)	300,000
신흥 시장 집중 분석 - 인도	09.26(목) ~ 09.27(금)	300,000

과 정 명	시 기	참 가 비
글로벌 마케팅	09.26(목) ~ 09.27(금)	300,000
글로벌 중견기업 벤치마킹 연수(오사카)	9월중	2,000,000
히든챔피언 벤치마킹 연수 - 유럽(독일/스위스/ 오스트리아)	9월중	6,000,000
글로벌 비즈니스 - 계약	10.10(목) ~ 10.11(금)	300,000
신흥시장 집중 분석 - 태국	10.07(월) ~ 10.08(화)	300,000
주제별 시장 진출 전략 - 유통시장(미국)	10.10(목) ~ 10.11(금)	300,000
계약 실무 - 베트남 계약협상실무	10.14(월) ~ 10.15(화)	300,000
신흥시장 집중 분석 - 브라질	10.17(목) ~ 10.18(금)	300,000
홍보/커뮤니케이션	10.17(목) ~ 10.18(금)	600,000
리스크 관리(노무/세무) - 중국	10.21(월) ~ 10.23(수)	500,000
신흥시장 집중 분석 - 아프리카	10.23(수) ~ 10.25(금)	500,000
신흥시장 비즈니스스쿨(야간, 8주) - 중국	10.24(목) ~ 12.12(목)	1,500,000
해외전시 마케팅	10.24(목) ~ 10.25(금)	300,000
리스크 관리(노무/세무) - 인도네시아	10.28(월) ~ 10.29(화)	300,000
주제별 시장 진출 전략 - 프렌차이즈시장(중국)	10.29(화) ~ 10.30(수)	300,000
글로벌 비즈니스 - 커뮤니케이션	10.30(수) ~ 11.01(금)	600,000
해외투자스쿨 - 미얀마	10월중	2,500,000
실버산업 - 일본(도쿄)	10월중	2,000,000
해외연수과정 신재생에너지 - 수처리 유럽연수단	11.03(일) ~ 11.10(일)	5,000,000
M&A 실무 - 유럽	11.04(월) ~ 11.05(화)	300,000
신흥시장 집중 분석 - 터키	11.05(화) ~ 11.06(수)	300,000
주제별 시장 진출 전략 - 의료바이오시장(중국)	11.07(목) ~ 11.08(금)	300,000
글로벌 비즈니스 - 계약 실무	11.07(목) ~ 11.08(금)	300,000
외국인 투자유치 PM 양성	11.04(월) ~ 11.07(목)	500,000
리스크 관리(노무/세무) - 베트남	11.11(월) ~ 11.12(화)	300,000
글로벌 비즈니스 - 협상	11.13(수) ~ 11.15(금)	500,000
신흥시장 집중 분석 - 러시아/CIS	11.13(수) ~ 11.15(금)	500,000
신흥시장 집중 분석 - 미얀마	11.19(화) ~ 11.20(수)	300,000

과정명	시기	참가비
신흥시장 집중 분석 - 중남미(페루, 칠레, 멕시코)	11.20(수) ~ 11.22(금)	500,000
주제별 시장 진출 전략 - 플랜트 프로젝트시장(브라질)	11.25(월) ~ 11.26(화)	300,000
계약·협상 실무 - 중국 계약 협상 실무	11.27(수) ~ 11.29(금)	500,000
글로벌 마케팅	11.28(목) ~ 11.29(금)	300,000
리스크 관리(노무/세무) - 인도	12.02(월) ~ 12.03(화)	300,000
신흥시장 집중 분석 - 중동	12.05(목) ~ 12.06(금)	300,000
계약·협상 실무 - 인도네시아 계약	12.10(화) ~ 12.11(수)	300,000
해외전시 마케팅	12.12(목) ~ 12.13(금)	300,000
신흥시장 집중 분석 - 인도네시아	12.17(화) ~ 12.18(수)	300,000
해외투자진출실무	12.18(수) ~ 12.20(금)	500,000
글로벌 비즈니스 - 계약	12.19(목) ~ 12.20(금)	300,000

* 상기교육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글로벌 CEO 스쿨은 토요일, 주말 과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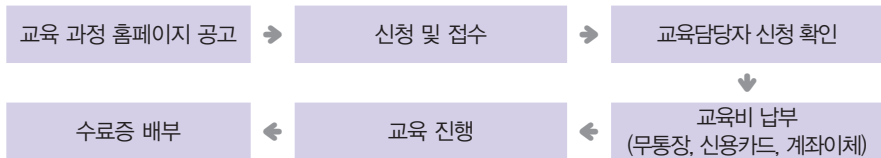
● 맞춤형 위탁연수

정규 프로그램 외에도 고객의 수요에 따라 업종, 교육대상, 교육목적 등에 따라 개발·운영하는 맞춤형 위탁연수 제공

● 신청·접수

- 글로벌연수원 홈페이지(www.kotraacademy.com) 통한 온라인 신청

● 처리 절차



● 문의처

KOTRA 글로벌연수원 : 02-3497-1188, 1198

* 홈페이지 : www.kotraacademy.com



10-10 온라인 화상 상담회

연 평균 15회의 온라인 화상 상담회로 중소기업의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가지고 있으나 시간과 인력의 부족으로 마케팅 인력을 해외로 출장 보내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 출장에 따른 업무 공백 없이 원거리 바이어와의 상담도 가능합니다.

지원 규모

최대 300개사

지원 대상

모든 수출 중소기업, 산업별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유의사항

- 상담회 참여 무역관의 시장성평가 자료를 토대로 상위권의 업체를 선별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참가신청이 상담회 참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지원 내용

- KOTRA 해외 무역관을 통해 바이어 발굴, 상담 주선이 되며, 상담 장비(헤드셋, 웹캠 등)와 통역원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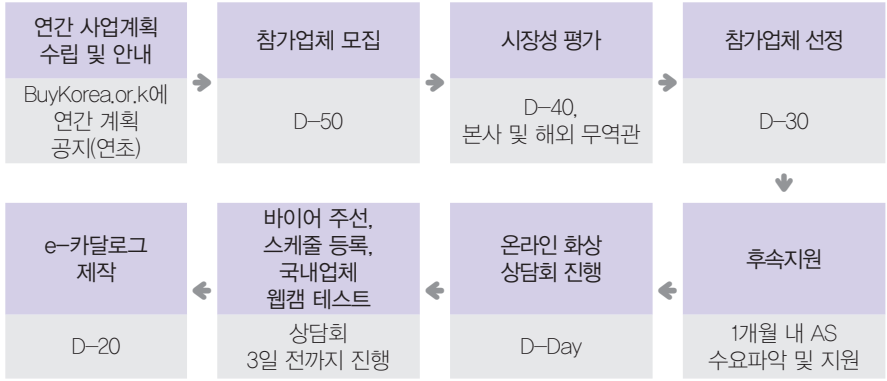
신청·접수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회원가입 → 로그인 → 해외시장 개척지원 -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 페이지의 온라인화상상담회 연간일정안내 확인 후 신청

제출 서류

온라인화상상담회 참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www.buykorea.or.kr의 안내 페이지 참조

처리 절차



문의처

KOTRA 온라인마케팅팀 02-3460-7148/7154/7155



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11 B2B e-마켓플레이스 buyKOREA.org

KOTRA가 운영하는 B2B e-마켓플레이스

buyKOREA.org는 전 세계 바이어와 한국공급업체를 연결해 주는 글로벌 B2B e-마켓플레이스입니다. buyKOREA.org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국 상품 해외홍보, 해외 구매정보 중개는 물론 거래대금 결제, EMS 국제배송 등 거래프로세스를 모두 지원하는 B2B e-마켓플레이스입니다.

지원 대상

모든 수출 중소기업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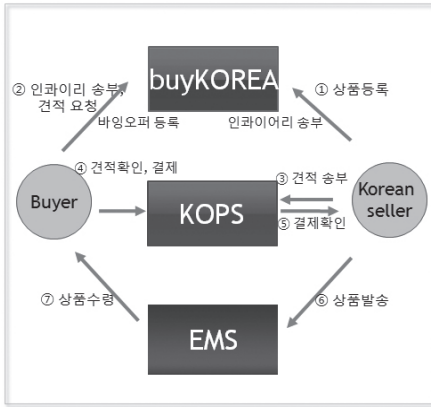
- 국내업체의 상품 홍보, 바이오퍼 전파를 통한 거래알선 및 결제, 배송 등 일관된 프로세스 제공으로 수출창출 지원

지원 분야	지원 내용	
통합 거래기능 제공	상품정보 등록	○ 전 세계 바이어들이 방문하는 buyKOREA.org에 상품 등록 및 홍보 - 인콰이어리 수발신 기능 제공 - 1개사당 최대 20개 상품 등록 가능
	바이오퍼* 검색	○ 전 세계 81개국 119개 KOTRA 무역관이 발굴하여 실시간으로 등록하는 바이오퍼 검색 - 인콰이어리 수발신 기능 제공
	신용카드 수출대금 결제 서비스(KOPS)	○ 수출업체가 샘플이나 소액 수출거래 시 수입자의 신용카드로 온라인 결제를 할 수 있는 국제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 다른 결제수단 대비 저렴한 수수료(2.6%)로 신속한 대금 회수 및 일정조건하에 무역보험 제공
	EMS 국제특송 할인제공	○ buyKOREA.org 회원으로서 KOPS 서비스 개통 고객의 EMS국제 특송 이용 시, 최대 15%할인 제공 - buyKOREA.org 사이트 내에서 EMS 배송 현황 조회 가능
마케팅 기능	맞춤형 매칭정보 제공	○ 기 등록 상품 정보와 일치하는 카테고리와의 일치하는 바이오퍼 자동 제공 - 사이트 내 My buyKOREA 메뉴에서 맞춤형 매칭오퍼 일괄 조회 가능
	모바일/SNS 인터페이스 지원	○ 최적화된 해상도의 모바일 앱 제공 - 모바일앱 푸시서비스를 통한 즉각적인 인콰이어리 응대 가능 ○ SNS 연계로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SNS로 퍼나르기 지원 - SNS를 통한 상품 홍보 강화
	검색엔진 최적화 적용	○ 검색엔진 최적화 적용으로 상품홍보효과 배가 - 검색엔진 최적화로 주요 검색엔진을 통한 상품 노출 증대

신청 · 접수

www.buyKOREA.org 접속 → 회원가입 → 기업회원 전환
→ 서비스 활용

처리 절차



- ① 한국셀러가 바이코리아에 상품을 등록합니다.
- ② 바이어가 바이코리아에서 상품을 선택하고 제품문의 인과이어리 및 견적요청을 보냅니다.
- ③ 셀러가 견적서를 송부합니다.
- ④ 바이어가 견적서를 확인하고 KOPS를 통해 결제합니다.
- ⑤ 셀러는 바이어의 결제여부를 바이코리아에서 확인합니다.
- ⑥ 셀러는 우제국 EMS를 통해 상품을 발송합니다. (타 배송수단 이용 가능)
- ⑦ 바이어는 바이코리아에서 EMS 배송현황을 조회하고 상품을 수령합니다.

문의처

KOTRA 거래지원팀 02-3460-7158



용어 설명

- 바잉오퍼
해외 바이어가 사고자/찾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로써, 바잉리즈(buying leads)라고도 불림. buyKOREA.org에서는 '바잉오퍼(Buying Offer)'로 표기함

11

한국무역협회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11-1 무역서비스할인클럽 · 369
- 11-2 무역전문컨설팅 서비스 · 371
- 11-3 해외지사(사무소) 설치 인증 추천 · 373
- 11-4 APEC 기업인 여행자카드(ABTC) 발급 · 375
- 11-5 무역분야 외국인 사증(VISA) 발급 추천 · 378
- 11-6 수출중소기업 외국어지원컨설팅 서비스 · 380
- 11-7 TradeSOS 현장컨설팅 서비스 · 382
- 11-8 트레이드 벤처플라자(Trade Venture Plaza) 운영 · 383
- 11-9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 384
- 11-10 무역기금 융자 · 386
- 11-11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 388
- 11-12 해외 한국상품 전시상담회 개최 · 390
- 11-13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서비스 · 392
- 11-14 특허청 공동 해외 출원비용 지원 · 394
- 11-15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개최 · 396
- 11-16 수출입 화주기업 물류개선 컨설팅 지원 · 398



11-1 무역서비스할인클럽

수출입 부대비용 절감지원

무역서비스할인클럽은 무역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분야별 우수업체와 제휴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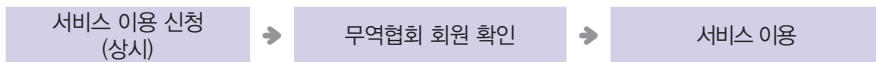
제휴분야별 5~60% 할인혜택 제공

제공서비스	할인 혜택	제휴업체
국제특송/국내택배	서류/샘플/소화물 40%, 기타25% 할인	FedEx
	수출/수입화물(서류, 소화물) 30% 할인 수출 소화물 2.5kg 이하는 50% 이상 할인	DHL
	EMS 프리미엄 10% 할인	EMS
	공식운임의 47~60% 할인	대한통운
특허/지재권	무료상담, 국내 대리인수수료의 20% 할인	경은국제특허법률사무소
시험/검사/포장	포장비 3~10%, 출장/운송비 5% 할인 위험물포장취급수수료 5% 할인	인테크CNS
	서비스 요금 5~10% 할인	SGS Testing Korea
신용정보/대금회수	접수비 50%, 성공보수 수수료 할인 (채권금액, 연체기간에 따라 할인을 변동)	한국신용정보
	해외기업신용보고서(BIR), 해외기업심층보고서(CR) 각각 17% 할인	NICE D&B
통역 및 번역	자사 책정가격의 20% 할인	팬트랜스넷
	자사 책정가격의 30% 할인	엔터스코리아

제공서비스	할인 혜택	제휴업체
여행/호텔예약/보험	해외·국내 출장/여행보험 할인서비스 : 산출보험료의 20% 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호텔 정상이 대비 최고 70% 기본 할인 회원사 특전 : 최대 7% 추가 할인	호텔패스
소모품공동구매	시중구매가 대비 평균 10~20% 할인	아이마켓코리아
홈페이지/카탈로그	카탈로그/브로슈어/홈페이지/홍보영상 30% 할인 리플렛 20% 할인	한국홍보진흥공사
	카탈로그/브로슈어/리플렛/홈페이지 등 20% 할인	비즈플러스애드
	Trade HOME(통합수출인프라구축) 25% 할인	EC21
휴대폰판매/로밍	3G/4G LTE 구매 특전 및 로밍렌탈서비스 할인	와이드모바일
해외법인 설립대행	해외법인 설립대행, 비자취득대행 및 투자컨설팅 20% 할인	캐프컨설팅
통관/원산지발급 /관세환급대행	FAT 컨설팅 및 통관대행 수수료 등 15~20% 할인	관세법인 청진
	FTA 컨설팅 및 통관대행 수수료 등 20% 할인	스카이브릿지
해외마케팅	유료계정 서비스 및 easy_Business 서비스 10% 할인	한국콤포스

신청·접수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11-2 무역전문컨설팅 서비스

온/오프라인 무역상담 지원

무역업체의 원활한 무역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관련 애로 및 실무 상담과 전문가에 의한 분야별 상담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지원 분야

- FTA 원산지증명, 국제특허/해외인증, 세무/회계, 국제계약/클레임까지 분야별 최고의 컨설턴트가 전문화된 컨설팅 제공

신청 · 이용

- Trade SOS 홈페이지(tradesos.kita.net) 또는 전화(1566-5114) 신청
- 내방상담 : 한국무역협회(트레이드타워 1층) 무역상담실 내방

상담분야	전화번호	상담시간	상담자
무역실무	1566-5114	월~금 09:00~18:00	전문상담역
FTA원산지/HS Code/통관절차			관세사
국제특허		월 13:00~18:00	변리사
해외인증		화 09:00~18:00	인증전문가
국제계약/클레임		화/목 09:00~18:00	국제변호사
세무 및 회계		수 13:00~18:00	공인회계사
외환		목 09:00~18:00	외환전문가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궁금해요! 중기우먼

- 무역상담시 별도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나요?
☞ 종합무역컨설팅 서비스는 무역협회 회원사들의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어컨설팅의 경우 업체별 이용한도를 (1개사당 200만원) 초과할 경우 개별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1-3 해외지사(사무소) 설치 인증 추천

중소기업 해외지사 설치 지원

해외지사 및 해외사무소 설치를 희망하는 무역업체를 추천합니다.

지원 대상

-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업체이고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
 - 해외지점설치인증추천 :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 10만불 이상인 업체
5만불 이상의 취소불능수출신용장을 수취한 업체
 - 해외사무소설치인증추천 :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모든 개인업체와 설립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지원 내용

해외지사 또는 해외사무소 설치가 필요한 업체추천

신청 · 접수

한국무역협회 회원협력실

제출 서류

추천서, 수출실적증명서, 사업계획서

-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해외지사설치인증추천란에서 다운로드

〈유의사항〉 사업계획서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회사현황 : 개요 및 연혁, 연간매출액, 인원현황, 생산능력 및 가동률, 주요생산시설

• 해외사업부문(향후 1년)

- 해외지점(사무소)의 설치목적(목적, 파견인원, 운영비용 등)
- 사업배경 : 시장규모/특성/유통 등의 현황, 수출계획 및 전망 등
수지개선 효과
- 판매사업계획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궁금해요! 중기맨

• 신청에서 인증추천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 추천서를 접수한 후 보통 1주의 검토기간이 소요되며 검토 후 인증추천 여부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11-4 APEC 기업인 여행자카드(ABTC) 발급

신속한 출입국 수속 지원

APEC 회원국 기업인들의 자유롭고 편리한 해외여행을 위해 별도의 입국비자 없이 60~90일간 체류를 보장하는 출입국카드 발급을 추천합니다.

지원 대상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수출입 또는 투자업무 담당자
 - 무역업체 : 직전연도 또는 해당연도(최소 6개월 이전) 수출 또는 수입 실적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또는 해당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
 - 해외투자업체 : 해외직접투자액이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또는 해당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
 - 해외건설업체 : 해외건설업면허를 취득한 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있는 업체
 - 외국인투자업체 :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기업
 - 전시업체 : 실내 전문전시장(부대시설은 제외) 규모가 10,000㎡ 이상이며 국제전시연합이 인증한 국제전시회를 카드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3회 이상 개최한 기업이나 단체

지원제외 · 제한

- 용역이나 전자적무체물 수출입업체

지원 내용

- APEC 회원국중 ABTC 가입 18개국 방문시 별도의 입국비자 없이 출입국
- 가입국 공항내의 ABTC 소지자 전용레인을 통해 신속한 출입국

〈ABTC 18개 가입국〉

- 대한민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페루, 칠레, 멕시코
 - * 미국과 캐나다는 비자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국제공항에서 전용레인을 통한 신속한 수속만 보장하는 잠정회원이나 입국시 별도 비자가 필요함
 - * 러시아는 가입 유보

〈카드의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년

신청·접수 한국무역협회 ABTC 홈페이지(abtc.kita.net)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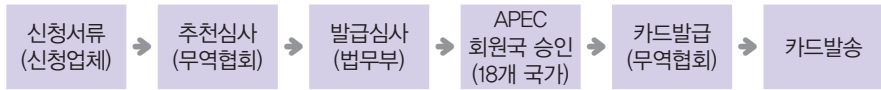
- 업체 공통서류(각 1부)
 - 추천의뢰서, 신청자명단(규정 양식)
 - 소지자 명단(규정 양식-ABTC 소지자가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 신청자격 확인용 증빙서류-표 참고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한 달전, 인감날인)

[신청자격 확인용 증빙서류]

신청대상	증빙서류	발급처
무역업체	수출/입실적증명서 - 직전년도 또는 해당년도	직수출/입:한국무역협회 간접수출:외국환은행
해외투자업체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외국환은행
건설업체	해외건설 수주(시공, 기성)실적증명서	해외건설협회
외국인투자업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기관

- 개인서류(각 1부)
 - 영문신청서(규정양식) : 배경 하얀 여권용 사진 1매 부착, 굵은 펜을 이용한 자필서명
 - 여권사본 : 유효기간 최하 3년 이상(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 기한연장 확인란 포함)
 - 서약서(규정양식) : 자필서명 및 인감날인
 - 신청인의 재직증명서 : 각사 소정양식, 신청 전 2달 이내 발급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용어 설명

- ABTC(APEC Business Travel Card)
APEC 회원국간 기업인의 신속한 출입국을 보장하는 카드



궁금해요! 중기맨

- ABTC를 신청하고 발급받기까지의 소요기일은 얼마인가요?
☞ ABTC를 신청하신 후 추천심사에서 발급심사를 거쳐 각 국가별 승인이 이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3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각 국가별 승인 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ABTC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거나 ABTC 홈페이지의 FAQ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 무역분야 외국인사증(VISA) 발급 추천

외국인력 고용 촉진 지원

외국인 고용이 필요한 무역업체에 사증(VISA) 발급을 추천합니다.

지원 대상

-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추천
 - 신청업체는 무역업고유번호를 가지고 있는 무역업체이어야 함
 - 신청업체는 신청일 기준 전년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이어야 함
 - 사증발급 추천대상 외국인은 무역관련 전공(경제, 경영학 포함) 학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였거나, 국내외에서 1년 이상 무역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함
 - 하나의 신청업체는 동일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을 2명이상 추천할 수 없음 다만,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불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지원 내용

무역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사증 발급추천

신청·접수

한국무역협회 회원협력실 (우편접수)

-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1 트레이드타워 1층(우 135-729) 한국무역협회 무역분야 외국인 사증 발급추천 담당자

제출 서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무역분야외국인사증발급추천란에 게재된 구비서류로 해당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글 번역본 포함
 - 사증발급 추천신청서 1부
 - 회사소개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증 사본 1부
-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1부
- 외국인 여권 사본 1부
- 외국인 이력서 1부
- 외국인 학력증명서(졸업장 사본 가능) 1부
- 경력증명서(현지 공증서 첨부) 1부
- 고용계약서 사본 1부
- 외국인 고용 사유서(외국인 고용의 불가피성 서술) 1부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궁금해요! 중기맨

- 신청에서 인증추천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 ☞ 추천서를 접수한 후 보통 1주의 검토기간이 소요되며 검토 후 발급추천 여부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11-6 수출중소기업 외국어지원컨설팅 서비스

외국어 통번역 지원

외국어 전문인력이 부족한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하고, 차질없는 국제거래를 지원하여 수출능력을 배양합니다.

지원 규모

업체당 150만원 한도(100만원까지 무료지원, 100만원 초과시 30% 이용업체 부담 - 계약서 번역 및 통역은 업체부담 없음)

지원 대상

- 연간 수출실적 200만 달러 미만(직전년도)의 수출중소기업
- 무역업무 경험이 없는 수출초보기업
- 중소기업청의 수출기업화 사업 선정 업체중 통번역 분야의 자금을 배정 받은 업체
 - * 단, 수출실적 200만 달러 이상 500만 달러 미만인 업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제외한 기타언어는 이용가능

지원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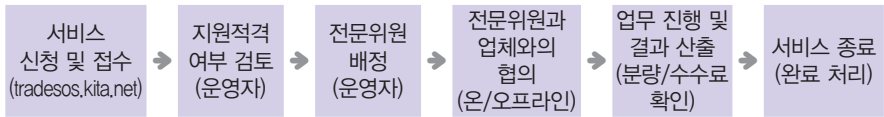
수출관련 무역거래와 관련된 업무로 발생하는 문서의 번역 및 통역

- 통역 : 내방 바이어 상담(국내 상담에 한함-일주일전 신청 가능)
- 번역 : 무역서신 및 통신문, 수출계약서, 수출을 위한 제품 카달로그
 - 대상언어(18개 언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헝가리어, 우즈베크어, 몽골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포르투갈어, 터키어, 이란어, 인니말레이어
 - 대상지역 : 전국 모든 지역, 단 통역의 경우 통역료 이외의 기타 경비(체제비 등)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하여 의뢰업체가 지급

신청 · 접수

Trade SOS 홈페이지(tradesos.kita.net)를 통한 온라인 신청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수출중소기업 외국어지원컨설팅 운영자 : 02-6000-5337(영어)
5646(기타언어)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한국무역협회



11-7 TradeSOS 현장컨설팅 서비스

맞춤형 1:1 종합컨설팅

지방중소기업의 무역현장에서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대해 1:1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회비를 납부한 무역협회 회원사

※ 비회원사의 경우 1회 무료서비스 이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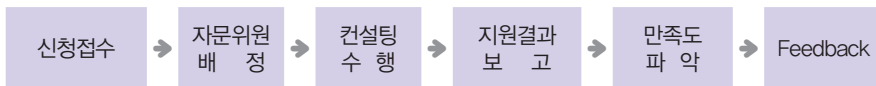
지원 분야

- FTA · 원산지증명서, 해외시장정보, 해외거래선 발굴, 서류작성, 수출입대금결제, 통관/관세환급, 운송/물류, 수출입절차, 무역클레임 등 제반 분야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애로의 맞춤형 컨설팅 제공

신청 · 접수

- 홈페이지(tradesos.kita.net) 접속 후, "현장컨설팅 신청" 클릭
-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 전화 후, 현장컨설팅 담당자 연결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11-8트레이드벤처플라자(Trade Venture Plaza)운영

무역업 창업자를 위한 저렴한 임대료의 사무공간

무역업 창업자 및 지방중소기업에게 무역센터 내 저렴한 사무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무역업창업 지원을 통한 수출저변확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중 무역업 창업 3년 이내인 자

지원 내용

48개 사무실(1인실 23개, 2인실 25개) 임대

〈이용기간〉 1년 (1년 입주 후 평가 통해 1년 연장 가능, 최대 2년)

〈공용공간〉 탕비실, 휴게공간, 비즈니스센터 회의실 등

〈집기비품〉 사무집기(책상, 의자, 책장), 전화, 인터넷전용선, 공동OA기기 (복사 및 팩스사용, 단, 사용요금 이용자 부담)

신청 서류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입주자 주민등록등본 1부, 기타 증빙서류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11-9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유망전략시장 진출 지원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진출하기 어려운 수출유망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 개척단 등 무역투자사절단을 파견합니다.

지원 대상 무역협회 회원사

지원 내용

- 항공임 및 개별기업 체제비(숙박비)를 제외한 통역비(1社 1人), 파견국 내 이동 차량임차비, 오만찬 행사비, 상담회장 임차비 등 공통경비 전액 지원

주요 행사

- 1대1 무역투자상담회 개최
- 한국경제 및 문화소개 로드쇼 개최
- 현지 주요 기업/기관 방문

신청·접수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를 통한 온라인 신청

- * 개별 사업계획에 따라 팩스/이메일 접수 병행 실시

제출 서류 신청서, 자사제품 카탈로그/제품정보(수출만 해당)

- * 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한국무역협회



11-10 무역기금 융자

수출중소기업에 자금 지원

수출중소기업의 수출 마케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000억원

지원 대상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0만달러 이하이고 신청일 현재 한국무역협회 연회비를 완납한 무역기금 융자 신청업체

지원 내용 시중은행(8개) 및 지방은행(6개)의 본지점을 통하여 융자

- 한국무역협회 본부(무역기금사무국) 및 12개 국내지역본부가 대상업체 선정 및 추천

유의사항

-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 또는 업체자체 신용이나 부동산 등의 담보를 제출하여야 함

융자 조건

- 금리 : 연 4%(고정)
- 기간 : 3년(2년 거치, 연 4회 균등 분할상환)
- 융자한도 : 최고 2억원 (과거 1년 수출실적 \times 1/3)
 - ※ 단,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수출실적이 없는 신규업체는 사업계획서, 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금액을 산정

신청 · 접수

무역기금 홈페이지(fund.kit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기간〉 2013년 3월부터 9월까지(총 7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용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홈페이지에서 작성 후 인쇄), 사업자 등록증 사본, 최근 2년간 수출실적증명서(은행 발급분),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회차별(월별) 신청일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역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제출방법 : 우송 또는 직접제출(우송의 경우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문의처

- 트레이드 콜센터(1566-5114) 및 해당지역의 지역본부에 문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11-11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부스 임차료 최대 50%, 장치비 최대 50% 지원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한 해외시장개척, 능력제고 및 수출 확대에 기여 / 해외 유명전시회에 참가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마케팅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2개 해외전시회, 62개 업체 한국관 참가 지원

* 지원 전시회 및 업체 수 변동 가능

	전시회명	시 기	모집업체	공동 수행기관	비 고
1	라스베가스 보안기기 전시회	4.10 ~ 4.12	30	지식경제부	
2	홍콩 선물용품 박람회	4.27 ~ 4.30	32	지식경제부	

지원 분야 부스 임차료(최대 50%) 및 장치비(최대 50%) 지원, 장치·운송·상담·현지언론 홍보 등 애로사항 지원, 전시정보·시장동향 등 정보 수집

* 지원기관 방침 및 전시회 여건에 따라 상기 지원 내역 변동 가능

신청·접수 공동수행기관 사이트 온라인 신청 및 무역협회로 서류제출(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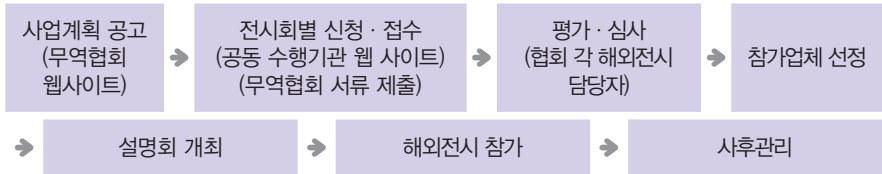
*공동 수행기관 웹 사이트

중소기업청 공동 수행 전시회 : www.sme-expo.go.kr, 지식경제부 공동 수행 전시회 : www.gep.or.kr

제출 서류 참가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정산용통장 사본 1부, 제품카탈로그 1부(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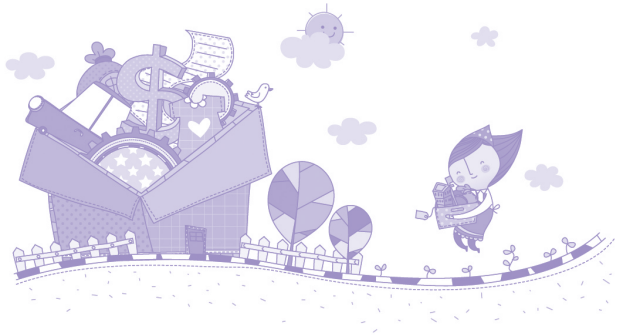
선정 필요서류 최근 3년간 수출실적증명서, 특히관련증명서, 해외수출
규격인증서, 포상 실적 증명서, 해외 및 국내전시회
참가 증명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11-12 해외 한국상품 전시상담회 개최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중소무역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규모 5개 해외 전시상담회 개최, 340개 중소기업 참가

* 모집 업체 수 변동 가능

	전시회명	시 기	모집업체
1	동경 한국상품 전시상담회	4.16 ~ 4.17	100
2	산둥 한국상품 전시상담회	6월중	100
3	오사카 한국상품 전시상담회	10.16 ~ 10.17	60
4	베트남 한국상품 전시상담회	11.28 ~ 11.30	30
5	인도 한국상품 전시상담회	12.5 ~ 12.7	50

지원 분야 현지 해외바이어 매칭 및 비즈니스 미팅 주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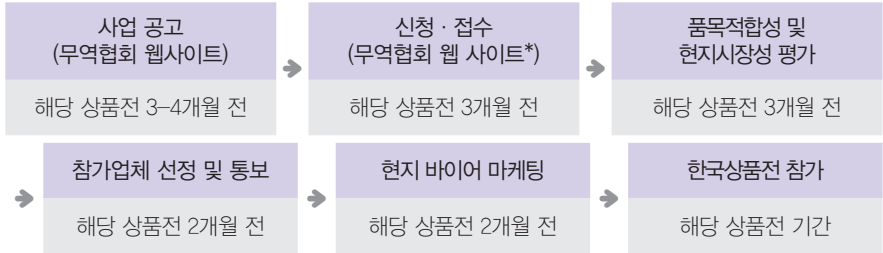
신청 · 접수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개별 사업계획에 따라 팩스/이메일 접수 병행 실시

제출 서류 참가신청서 및 출품 품목 명세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카탈로그 3부, 국제규격인증서, 해외특허, 유망중소기업인증서 등 사본 1부

선정 필요서류 UL, CE, ISO 등 해외수출규격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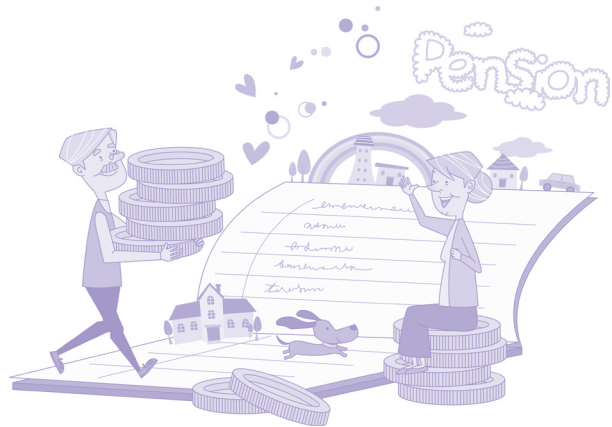
처리 절차



* 무역협회 웹사이트 : www.kita.net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11 한국무역협회



11-13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서비스

해외바이어/오피어/신용정보 제공 및 e-카탈로그 제작 지원

글로벌 B2B 마켓플레이스, tradeKorea.com을 통해 해외 마케팅 정보 및 해외 기업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유망수출기업을 대상으로 e-카탈로그 제작,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 서비스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분야

- 글로벌 유통 빅바이어 상시거래알선 프로그램
- 온라인 마케팅을 위한 e-카탈로그 제작 지원
- 맞춤형 바이어 정보제공 서비스(70개국 330만 DB 대상)
- 해외바이어 인콰이어리 제공 서비스
- 해외 오피어 검색 및 신용정보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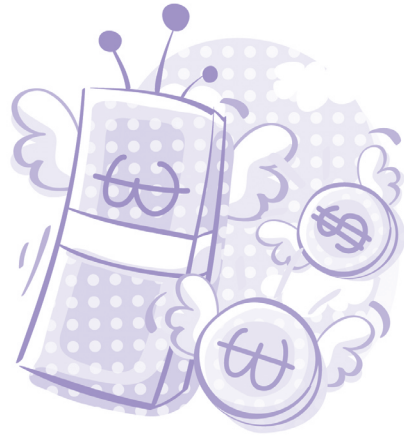
- tradeKorea.com에서 아래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명	지원 대상	서비스 내용
글로벌 유통 빅바이어 상시 거래알선	일반 회원	▷ 3M, 월트 디즈니 등 빅바이어 상시 거래알선
e-카탈로그 제작 지원	협회 회원사중 유망수출기업	▷ 협회 신규 회원사 중 유망수출기업 대상으로 e-카탈로그 제작 지원
맞춤형 바이어정보 제공	협회 회원사	▷ 상/하반기 각 50개 바이어 리스트 제공 (Kompas 기업DB 연계)
해외바이어 인콰이어리 제공	일반 회원	▷ TradeKorea 이용 바이어 인콰이어리 제공 (매일 업데이트)
해외 오피어 검색	일반 회원	▷ 60만건의 해외기업/바이어/오피어정보 (단, tradeKorea 회원등급에 따라 차등)

* 글로벌 e-마켓플레이스, tradeKorea.com 회원가입 필요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마케팅전략실 : 02-6000-5408/5486
- tradeKorea 서비스센터 : 02-6000-4414/4412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11-14 특허청 공동 해외출원비용 지원

중소기업 해외특허 출원 지원

외국에 특허출원, 실용신안·디자인등록을 출원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PCT출원료, 번역료, 심사청구료, 중간심사·보정료 및 국내·외 대리인 수수료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최대 1,4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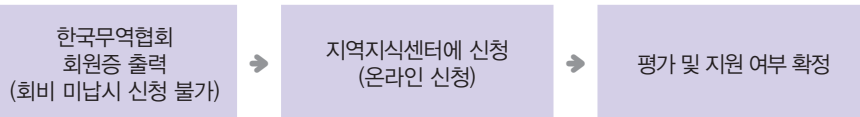
- PCT출원의 경우 국제단계는 300만원, 국내단계는 700만원 이내
- 개별국 출원의 경우 700만원 이내
- 브랜드는 250만원 이내

선정기준(특허청, 지역지식센터 주관)

- 등록가능성 평가 : 특허청 심사관에 의한 평가(신규성, 기술성 등)
- 기술성 평가(70%) : 기술의 경쟁력, 기술의 파급성·독창성
- 활용성 평가(30%) : 기술의 실용성, 상품의 시장성, 기술의 확산성 등

지원 대상 협회 회원사로서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해외에 특허출원한 중소 수출기업

신청·접수



처리 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 접수 (지역지식센터)	▷ 지역지식센터 홈페이지 게재 홍보(1월 중) ▷ 연중 수시 접수 *온라인, 우편 및 FAX 등
↓	
(1단계)등록가능성 평가 (특허청 심사관)	▷ 특허청 심사관에 의한 등록가능성 평가 * 신규성 · 진보성 및 기술성에 대한 의견서 작성
↓	
(2단계)기술성 · 활용성 평가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 기술 분야별(4개)로 5명의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 심사관이 작성한 평가서를 활용하여 접수화
↓	
(3단계)수혜자 확정, 자금지원 (지역지식센터)	▷ 최종 수혜대상자 확정 및 자금지원 * 심사위원회에서 수혜자 결정, 5.8.11월에 자금집행 예정
↓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 사업성과 평가 (12월)

문의처

-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지역지식센터 : 1661-1900(해당 지역지식센터로 자동연결)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11-15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개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해외 우량 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 중소기업들과 비즈니스 상담 주선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지원 대상 무역협회 회원사

지원 내용 해외 초청 우량바이어와의 매칭 및 비즈니스 상담 주선

주요 행사

- EU 빅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2월)
- ASEAN 빅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3월)
- 대구그린에너지 비즈니스 상담회(4월)
- IT 비즈니스 상담회(5월)
- Korea Grand Sourcing Fair - 빅바이어 초청 전문상담회(6월, 11월)
- EU 비즈니스 상담회(6월)
- 인도 빅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7월)
- 일본 기계부품 수출상담회(8월)
- 러시아/CIS 빅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9월)
- 그린에너지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10월)
- 중국 업종별 바이어 초청 상담회(11월)
- FTA 수혜품목별 상담회 개최(연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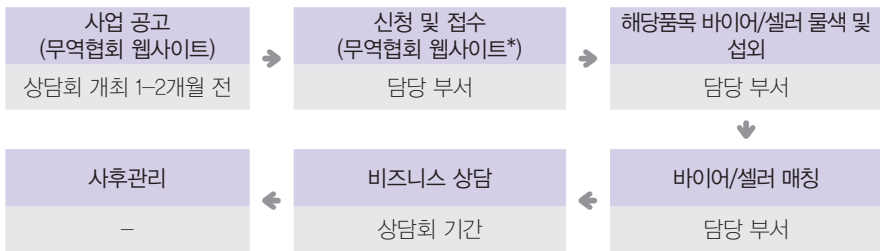
신청 · 접수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개별 사업계획에 따라 팩스/이메일 접수 병행 실시

제출 서류 신청서, 자사제품 카탈로그/제품정보

* 무역협회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처리 절차



* 무역협회 웹사이트 : www.kita.net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11-16 수출입 화주기업 물류개선 컨설팅 지원

1:1 맞춤형 컨설팅

수출입 화주 기업의 물류 프로세스를 진단하고 최적의 물류 체계 구축을 제안하는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으로, 화주기업이 제3자 물류로의 전환 또는 물류 공동화를 통해 물류혁신과 물류비 절감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지원 대상

수출입 화주기업 (제조 및 유통기업 포함)

지원 분야

- 제3자물류(3PL) 활용 유도 컨설팅
 - 물류 컨설팅을 희망하는 화주기업에 대해 전문 물류기업이 물류프로세스 진단 및 컨설팅을 수행하고 물류 최적화 모델을 제시
 - 화주기업이 부담하여야 할 컨설팅 비용의 50%를 지원
- 공동물류 컨설팅
 - 물류비 절감을 위한 타 기업과의 공동물류를 희망하는 중소 화주기업 컨소시엄을 구성 및 컨설팅 지원
 -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화주기업 당 컨설팅 비용 1천만원 내외 지원

신청·접수

- 국제물류지원단 홈페이지(kilc.kita.net)에 매년 초 당해 연도 사업 공지를 확인하여 신청
-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 전화 후, 한국무역협회 물류사무국 컨설팅 담당자 연결

처리 절차



* 서비스 신청 및 진행내용은 kilc.kita.net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12

중소기업유통센터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12-1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 · 401
- 12-2 중소기업 구매상담회 지원 · 404
- 12-3 중소기업 공동 A/S센터 · 407
- 12-4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 · 410
- 12-5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 · 413



12-1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

언론 매체와 온라인을 활용한 1,400여 건의 제품 소개

품질과 성능이 뛰어난 중소기업제품을 발굴하여 방송, 신문 및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하여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제품 인지도 강화와 판로확대 자발적 마케팅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도와드립니다.

지원 규모 1천 4백여 건 제품 홍보(14억원)

* '12년 지원현황 : 1,200여개 제품 홍보

* '13년 지원계획 : 1,500여개 제품 홍보

지원 대상 국내 중소기업 제조 제품(소비재 완제품). IT기업은 서비스콘텐츠 및 소프트웨어제품 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국민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주류, 건강보조/기능식품, 의약품
- 산업재, 중간재, 원부자재, 환경재, 기계설비류 등
- 공동상표 홍보지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연계생산지원사업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공동상표지원기준 및절차 등)에 의한 중소기업공동상표 대표자
 - 홍보지원은 정부가 개발지원한 상표 외에 자율적으로 개발·사용하는 상표도 법적 요건을 구비하면 신청 대상이 됨

우선선정

- 중소기업청의 각종 지원정책(혁신형 중소기업, 공동상표 사업 등)에 참여하거나, KS, 특허, 실용신안 등 인증기관의 품질인증 제품
- 각 항목별 가점(3점) : 본사기준 수도권 이외 소재 중소기업, 창업초기 기업, 마케팅 우수중소기업

지원 내용

- 방송, 신문, 잡지, 온라인(소셜커머스)를 활용하여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인지도 확대를 지원하고 마케팅 교육을 통해 자발적 마케팅 역량 확보를 지원
- 세부사업 내역

분 야	내 용	비 고
방송 홍보지원	• 3개 채널(KBS 2TV, 종편채널, 한국경제 TV 등)	채널 내 고정 제품 홍보 프로그램 송출
신문 홍보지원	• 5개 매체(매일경제신문, 한겨레신문, 전자신문, 서울경제신문, 내일신문)	신문 내 고정 제품 홍보 지면 게재
월간지 홍보지원	• 2개 매체(KTX매거진, 아시아나엔터테인먼트)	잡지 내 고정 제품 홍보 지면 게재
온라인 홍보지원	• 1개 매체(위메이크프라이스, www.wemakeprice.com)	전용 기획관 입점 지원
상시 마케팅 무료교육	• 연간 4회(SNS, 모바일 마케팅 실무 및 유통망 개척 역량 교육 지원)	희망하는 기업에 한해 무료 지원

- * 홍보매체는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공동 상표홍보 : 예산과 지원수요를 감안하여 TV, 신문 등 광고매체를 정하고 소요비용의 70%까지 지원
- * 지원금액과 대상매체는 선정심사 후 최종 결정

신청·접수

연중수시(예산 소진시까지, 월 1회 홍보실무위원회 개최)

- 전용정보사이트(www.bizfinder.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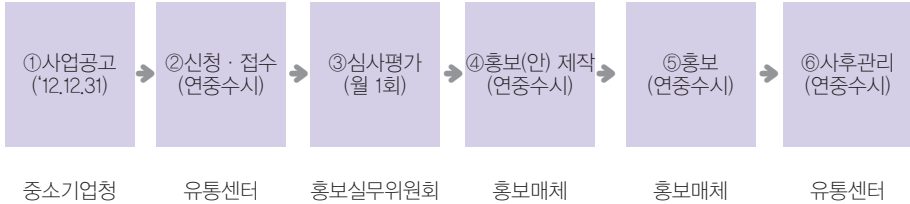
- 시장전망 및 독창성(20점), 품질 및 기술력(20점), 마케팅활동(20점), 홍보 적합성(10점), 가격경쟁력(10점), 안정성 및 환경성(20점), 가점(5점)으로 평가하여 5등급 평가 후 70점 이상 제품을 선정

신청 서류

홍보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특허 및 인증서 사본, 제품 소개서(사진 2매 포함)

- * 신청양식은 전용정보사이트(www.bizfinder.go.kr)에 게재된 사업 안내 참조

처리 절차



* 사업실무처리 : 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지원팀

문의처

- 중소기업청 판로정책과 : 042-481-4376
- 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지원팀 : 02-6678-9322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코너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비즈인포(www.bizinfo.go.kr)



궁금해요! 중기맨

- 홍보지원사업이란 제품의 광고를 대행해 주는 것인가요?
 ☞ 일반 제품 광고와 같이 전문적인 광고를 대행하거나 광고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 매체별로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해 주는 코너를 활용하여 홍보지원사업에 선정된 제품을 소개해 드리는 거랍니다.



12-2 중소기업 구매상담회 지원

국내 구매상담회 개최 단체 지원 및 상담회, 판매전 참가 지원

중소기업 제품들의 국내 판로개척을 할 수 있도록 구매상담회 개최(단체) 지원 및 중소기업과 전문 바이어와의 구매상담회를 지원합니다. 구매상담회 개최지원(단체), 상담회 참가지원(업체), 대형유통점 판매전 참가지원 등 다양한 판로지원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 구매상담회 16회, 상품판매전 10회 진행

- * '12년 지원현황 : 유통업체 상담회 (2회), 단체상담회 개최 지원 (10회), 중기우수상품전 (10회)
- * '13년 지원계획 : 유통업체 상담회 (4회), 단체상담회 개최 지원 (12회), 중기우수상품전 (10회)

지원 대상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직전년도 직수출 실적이 100만불 이하인 기업

구 분	내 용
구매상담회 개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앙회 등 •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관련 비영리 업종단체(협회) 및 기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단체
대형유통업체 구매상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제조업체
우수 제품 특별 판매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제조업체(백화점 등에 판매 가능한 공산품)

지원이 안되는 단체

- 지식경제부 등 타 정부기관에서 중복으로 구매상담회 비용을 지원받는 주관단체

지원 내용

- 구매상담회 개최 지원 :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개최하는 구매상담회 지원 (10회 내외)
 - * 임차료, 설치비, 홍보비 등 행사 예산의 70% 이내 지원(30,000천원 이내)
- 구매상담회 지원 : 대형유통업체와 중소기업간의 상담회(2회) 개최
- 특별판매전 지원 : 백화점, 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를 활용한 판매행사(70회) 진행
 - *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해외 판매전(1회), 지방자치단체 연계 판매전(2회) 등 포함
- 대형유통망 진출 및 입점전략 세미나(4회)

신청·접수

매년 초 공고 후 접수(1월 ~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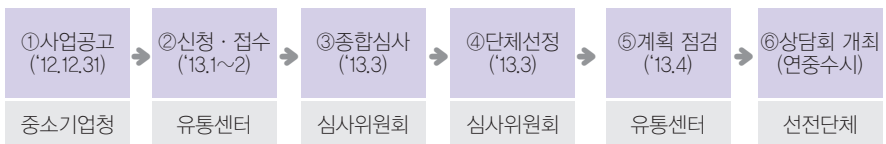
- 온라인신청(www.bizfinder.go.kr)

신청 서류

- 구매상담회 개최지원 : 지원신청서, 개최 계획서, 보조금사용 계획서, 서약서
- 대형유통업체 구매상담회 : 지원 신청서, 제품 소개서, 사업자등록증
- 우수제품 특별 판매전 : 지원 신청서, 제품 소개서, 판매 계약서,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 * 신청양식 : 마케팅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bizfinder.go.kr) 참고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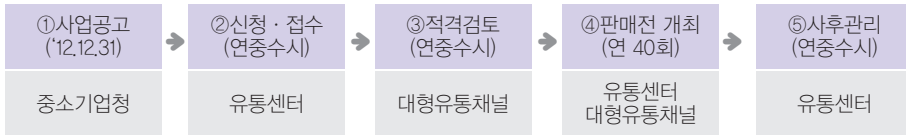
- 구매 상담회



• 대형유통업체 구매상담회



• 우수제품 특별 판매전



문의처

- 중소기업청 판로정책과 : 042-481-8950
- 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지원팀 : 02-6678-9313, 9321
- 전용정보사이트 : www.bizfinder.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코너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비즈인포(www.bizinfo.go.kr)



궁금해요! 중기맨

- 개별 기업의 전시회 및 상담회 참가비용도 지원 대상이 되나요?
 ☞ 구매상담회 지원 사업은 구매상담회를 개최하는 단체를 지원하여 해당 구매상담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직접 상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과 대형유통바이어간에 구매상담회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참가비 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나 지역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니 관할 기관으로 문의해주세요.



12-3 중소기업 공동 A/S센터

통합 콜센터와 전국 A/S 지점망을 이용한 중소기업 A/S 지원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자금, 인력 등이 부족해 자체적으로 A/S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공동 콜센터와 전국적 A/S시스템을 구축하여 제품의 A/S를 지원하여 제품의 시장 경쟁력과 소비자 신뢰 강화를 도와드립니다.

지원 규모 1,500여 개 중소제조업체 A/S제공

- * '12년 지원현황 : 163개 기업 신청접수, 154개 기업 선정지원
- * '13년 지원계획 : 1,500개 기업 대상 전국적 A/S 지원

지원 대상

- 국내 공장에서 일반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자체 A/S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업
- 가정용 전기·전자제품을 중심으로 A/S 지원이 필요한 13개 제품군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건설자재, 부품 등 중간재 및 의류, 일회성·소모품 생활 소비재 등
- A/S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A/S수요가 적은 제품, 외국 생산 제품 등

우선선정

- 중소기업청의 각종 지원정책(혁신형 중소기업, 공동상표 사업 등)에 참여하거나, KS, 특허, 실용신안 등 인증기관의 품질인증 제품
- 각 항목별 가점(3점) : 본사기준 수도권 이외 소재 중소기업, 창업초기기업, 마케팅 우수중소기업

지원 내용

- 통합 콜센터와 전문 상담요원을 운영하여 제품 사용안내, 구매 문의, 불만처리

-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A/S시스템 구축을 위해 콜센터 장비 및 시스템 무료이용
- A/S대행사를 통한 제품 수리 교환·반품요구에 대한 A/S 실시
- 참여업체가 제품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 및 A/S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상담 자료를 DB화하여 제조업체에 제공
- A/S에 관련한 각종 서비스 교육 및 기술 교육을 지원하여 실무능력 배양
- A/S 비용 및 통신료 등은 업체 부담

신청·접수 연중수시(신청업체에 한하여 월 1회 심사위원회 개최)

- 온라인 신청(www.askorea.or.kr, www.bizfinder.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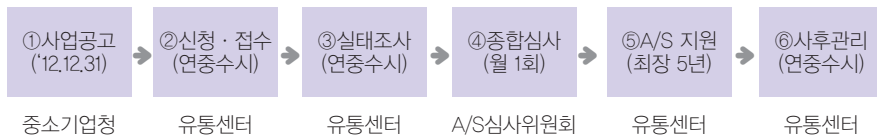
심사·평가내용

- 실태조사(개별 방문 및 현황 실사를 통한 사업장 실태 파악) 후 60점 이상 업체를 선정·심사위원회에 상정
 - * 기초자료현황(30점), 사업장 실태(30점), A/S제품 실태(40점)
- 심사위원회를 통해 운영실태(20점), 제조업체역량(40점), 참여적정성(40점)을 평가하여 총 60점 이상 기업을 선정

신청 서류 중소기업공동A/S센터 신청서, 기업현황, A/S희망제품 설명서 등

- * 신청양식은 마케팅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bizfinder.go.kr) 및 공동A/S센터 홈페이지(www.askorea.or.kr)를 참조

처리 절차



- * 사업 실무담당 : 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지원팀

문의처

- 중소기업청 판로정책과 : 042-481-4376
- 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지원팀 : 02-6678-9312, 9391, 9395, 9396
- 전용정보사이트 : www.bizfinder.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코너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비즈인포(www.bizinfo.go.kr)



궁금해요! 중기맨

- 공동 A/S 참가할 수 있는 A/S 품목군 13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 참여하실 수 있는 A/S 품목군에는 생활가전군, 주방가전군, AV기기군, PC군, 멀티미디어군, 차량용품군, 조명기기군, 가구군, 의료기기군, 유아용품군, 스포츠용품군, 소프트웨어군, 산업용장비군이 있으며 이에 해당되시는 품목은 동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2-4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

브랜드 인지도 높이는 공동상표 개발·홍보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마케팅을 위하여 공동상표 개발을 추진할 경우 상표 개발비를 지원하고, 공동상표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언론매체 홍보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상표개발 3개

- * '12년 지원현황 : 개발 3개, 홍보 9개 상표 선정 지원
- * '13년 지원계획 : 공동상표 개발 지원(3개 상표)

지원 대상

- 공동상표 개발지원 : 공동상표를 도입·이용하고자 하는 5개 이상 중소기업자의 상표 대표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사업을 선도하여 참여하는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자들이 공동상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무도장·골프장·스키장·도박장·주점 또는 목욕탕을 운영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영업

지원 내용

- 공동 상표개발 : 상표개발 및 컨설팅 비용의 70%, 상표당 5,000만원 한도

신청·접수 1~2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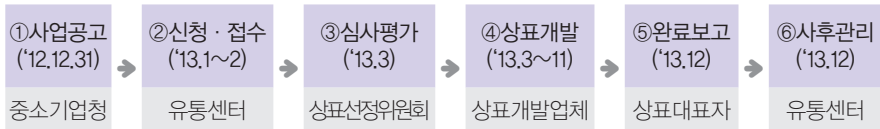
- 온라인신청(www.bizfinder.go.kr)

신청 서류

- 공동상표 개발 지원신청서, 공동상표사업추진계획서, 공동상표규약서, 참여업체 재무제표, 공동상표부착대상품목, 특허청상표등록서, 품질통제기준 및 시스템
 - * 신청양식 : 마케팅정보시스템(www.bizfinder.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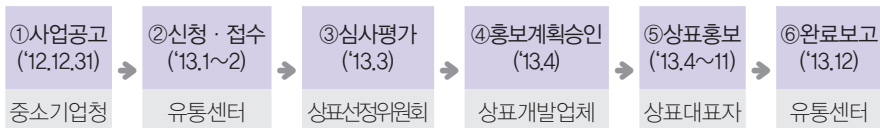
처리 절차

- 공동상표 개발 지원



* 사업 실무담당 : 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지원팀

- 공동상표 홍보 지원



* 사업 실무담당 : 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지원팀

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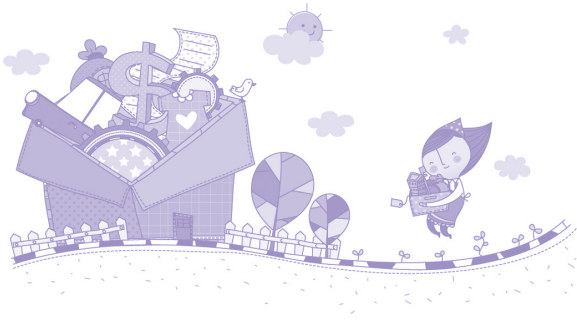
- 중소기업청 판로정책과 : 042-481-8950
- 중소기업유통센터 브랜드지원팀 : 02-6678-9354
- 마케팅정보시스템 : www.bizfinder.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중기 지원시책」코너 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궁금해요! 중기맨

• 현재 활동 중인 주요 공동상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썬키스트가 미국 오렌지 재배농가의 공동상표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에서도 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들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상표를 지속적으로 개발·육성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동상표로는 펌프로(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 겨비(한국한복공업협동조합), 실라리안(경북도우수기업브랜드) 등이 있고, 이외에도 케이폴, 첸슬러 등 다양한 공동상표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12-5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

국내 중소 MRO관련 중소납품업체 종합판로지원

종합지원센터는 국내 유일의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지원센터로서 실태조사, 마케팅지원, 공동 MRO물 시스템을 통한 구매대행사업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 500개사(전체 예산 10억원)

* '12년 지원현황 : 300개사 선정지원, 39억원 판로지원

지원 대상 국내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중소납품업체, 중소기업 구매대행사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5항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재 구매대행업자

지원 내용

- 실태조사, 마케팅 지원(MRO교육, 홍보지원, MRO정보강화 등) 및 판로 지원(공동MRO물 시스템, 물류지원 등)을 통한 입체적 중소납품업체 지원 서비스 제공

● 세부사업 내역

분 야	내 용	지원 한도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조사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수집 및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함 • 실태조사 주요 조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모성자재 납품업 시장환경 및 현황 조사 - MRO몰 시스템 운영현황 조사 -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관련 애로사항 및 필요정책 구상 -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의 체계적 육성방안수립 	격년제 조사
중소납품업체 발굴 및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 MRO몰 시스템내 중소납품업체 Pool등록을 통한 신규 중소납품업체 발굴로 다수의 중소납품업체에게 고른 판로기회 제공 	
홍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지원센터 및 우수중소납품업체 홍보를 통한 중소납품업체의 판로확대 기회 제공 • 주요 홍보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렉토리북 제작 및 배포 - 주요 언론매체 홍보 - 기타 중소납품업체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등 	
정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기관 소모성자재 입찰정보 및 중소납품업체 현황, 취급제품 등 납품·구매와 관련된 종합 정보를 지원 	
전문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RO관련 교육을 통하여, 중소납품업체의 업무역량을 배양시키고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주요교육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참여방법, 구매대행상품 기획 및 영업방법 - 구매대행 물류처리 및 MRO시스템 운영방법 등 	회당 선착순 50개 업체
상담 및 기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오프라인을 통한 중소납품업체 애로상담, 법률자문 및 신규 지원사업 개발 등 다양한 상담과 자문을 통한 중소납품업체 지원 	
중소기업 공동MRO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기관 소모성자재 입찰정보 및 중소납품업체 현황, 취급제품 등 납품·구매와 관련된 종합 정보를 지원 	중소납품업체 Pool등록업체 우선선정

● 신청·접수

- 세부 사업별로 신청·접수기간이 상이함에 따라 사전문의 필수

● 신청 서류 사업신청서 등

* 세부신청서류는 지원사업별로 상이함에 따라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bmro.or.kr)에 게재된 세부공지사항 참고

처리 절차



- * 세부지원사업별로 처리절차가 상이함에 따라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bmro.or.kr)에 게재된 세부공지사항 참고

문의처

-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bmro.or.kr) 및 대표전화(1544-0906)



궁금해요! 중기맨

- 중소기업업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존 중소기업자는 모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 ☞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라 해도 “독과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 계열회사인 경우 중소기업업체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 MRO
Maintenance(유지), Repair(보수) and Operation(운영)의 약자로, 기업과 직접 관련된 원자재를 제외한 소모성 자재와 간접 자재를 통칭하는 것으로, 기업 시설의 유지와 보수 등에 필요한 모든 간접 자재와 서비스를 말합니다. 공구, 모터, 베어링 등 전기 자재와 각종 기계 부품, 문구류, 청소용품 등 수많은 종류의 제품이 MRO에 해당합니다.

13

대 · 중 · 소기업협력재단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13-1 구매협력네트워크 구축 · 417
- 13-2 수 · 위탁 분쟁조정 · 419
- 13-3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영사업 · 422
- 13-4 원가절감형 대 · 중소기업 공동사업 · 424



13-1 구매협력네트워크 구축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및 구매방침설명회

대·중소기업간 만남의 장(Business match-making fair)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등 실질적인 협력기회를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술력과 시장잠재력을 확보한 중소기업에게 납품(입점) 등 대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400개사

* '12년 지원현황 : 397개 중소기업 구매상담 지원(총 5회 구매상담회 개최)

지원 대상 국내 주요 대기업과 납품(입점) 등의 상담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 중소기업이 대기업 구매상담 품목을 매치넷(www.matchnet.or.kr)에 사전등록하여 참가 신청 후, 대기업이 상담대상 중소기업 선정
- 대기업 및 공공기관 구매방침설명회
 - 주요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협력회사 등록기준, 절차, 동반성장 현황 소개
- 개최일정

구 분	1회	2회	3회
행 사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및 구매방침설명회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및 구매방침설명회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및 구매방침설명회
시 기	5월	9월	11월

신청 · 접수

- 매치넷 홈페이지(www.matchnet.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구매상담회 참가희망 중소기업은 매치넷에 회사의 일반현황, 보유설비 등에 대한 정보 입력 필요

처리 절차



문의처

-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 동반협력부 : 02-368-8792
 - 매치넷 홈페이지 (www.matchnet.or.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3년 지원시책」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비즈인포(www.bizinfo.go.kr)



궁금해요! 중기맨

- 구매상담회에 중소기업 참가기준(신규법인, 개인사업자등), 비용등이 있나요?
 - ☞ 구매상담회는 대기업과 납품(입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별도의 참가비용은 없습니다.



용어 설명

- 매치넷이란?
매치넷은 대 · 중소기업간 구매상담을 위해 사전 정보 교환을 나누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임

13-2 수·위탁 분쟁조정

무료 법률자문 및 자율 분쟁조정 지원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률자문 및 분쟁조정을 지원하여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합니다.

지원 규모 법률자문 40개사 지원(전체 예산 0.9억원)

* '12년 지원현황 : 분쟁조정 52건 접수, 법률자문 41개사 지원

지원 대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위탁거래에서 분쟁 및 애로가 있는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

지원 내용

- 수·위탁거래에서 분쟁발생시 협상력과 법률적 지식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
 - * 지원금액 : 기업당 100만원 한도이내
-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
- 수·위탁거래 공정화 교육 지원
 - 각 지역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수·위탁거래 공정화 교육 실시

신청·접수 연증상시 접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홈페이지(www.win-win.or.kr)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 후 제출 또는 온라인 신청
- 이메일 및 팩스, 우편 접수(상담 후 접수)
 - 이메일 : kimjh@win-win.or.kr, 팩스 : 02-368-8499
 - 우 편 : 152-759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12층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수·위탁거래 분쟁조정 협의회 사무국

제출 서류

- 수·위탁 분쟁조정 신청서 1부
- 수·위탁 분쟁조정신청 사유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타 관련 증거자료
 - 예 : 수·위탁거래 계약서(하도급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이메일 내역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동반성장정책부 : 02-368-8444, kimjh@win-win.or.kr
- 중소기업 정책정보 : www.bizinfo.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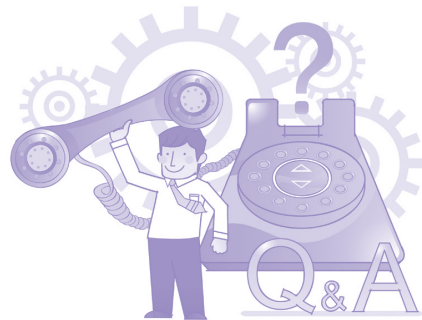
궁금해요 ! 중기맨

- 공정한 수 · 위탁거래를 위한 Tip이 있나요?
 - ☞ 통상적인 법원판례에서 지체 상금은 계약금의 100분의 40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판례상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계약서 이외에 작성한 각서의 경우 분쟁 발생 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 ☞ 또한, 기존 계약과 변경(일정, 제작사양등)이 있을시 각서 또는 합의서를 작성하기 보다 계약서를 변경 작성해두는 것이 사전 분쟁 방지에 유리
 -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제품개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충분한 협의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의사항의 경우 회의록을 남겨 향후 분쟁에 대한 예방 필요



용어 설명

- ☞ 수탁 · 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위탁기업)이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또는 용역(이하 “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수탁기업)에게 위탁하고, 이를 위탁 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
- ※ 대 ·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13-3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영사업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기반 마련 및 영업비밀의 안전한 보호장치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기업 간에 기술의 안정적 사용도 동시에 보장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타 업체의 모방특허 등이 우려 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한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 대기업 등 사용기업에게 핵심 기술의 제공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영업단계에서 사용기업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 소프트웨어 등의 IT기술을 정부에 납품·용역하는 기업

지원 내용

-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사용기관)과 기업(개발기관)이 서로 합의하여 핵심 기술자료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안전하게 보관해 두고
- 중소기업의 개발사실 입증, 기술멸실, 폐업·파산 등 계약상 교부조건이 발생하는 경우,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해당 임치물을 교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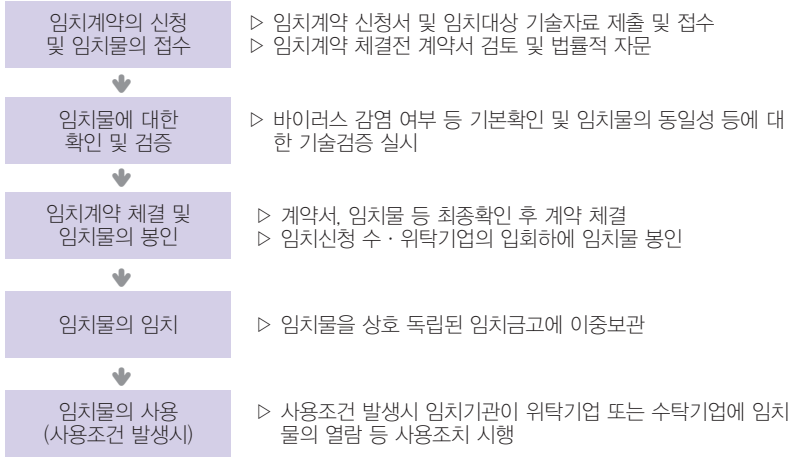
- 기술임치 신청서 및 계약서 작성 후 제출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제도 이용 전 사전 상담 필수)

제출 서류

- 기술임치 신청서 및 임치기술의 개요
- 위임장(대리인에 의한 계약 시, 신분증 사본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정부 및 공공기관의 경우 고유번호증 사본)
 - * 계약 체결 시 법인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추가 제출)
 - * 신청양식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홈페이지(www.kescrow.or.kr)를 통해 다운로드

처리 절차



문의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 02-368-8761~5(www.kescrow.or.kr)

궁금해요! 중기맨

- 기술자료 임치제도와 특허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구분	특허제도	임치제도
권리 발생	설정등록 방식으로 특허청 심사를 거친 후 효력발생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순간 기술에 대한 추정효과 발생
정보 공개	특허 등록정보는 누구든지 열람·복제 가능	임치물에 대한 기술정보는 개발기업을 제외하고 열람 불가
보호 대상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기술	지식재산권 및 물품 등의 제조방법, 생산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
보호 기간	특허 등록 후 20년	기술이 유출되지 않으면 영구적 기술보호 가능

⑬ 대·중·소기업협력재단



13-4 원가절감형 대·중소기업 공동사업

원가경쟁력 확보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 등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지양하고,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통해 글로벌 가격경쟁력 확보하기 위해 설계·디자인 개선, 부품구조변경, 재료변경, 시작품 제작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30과제 (전체 예산 15억원)

* '12년 지원현황 : 신청과제 74개중 35개 과제 선정 지원, 과제당 평균 4,847만원

지원 대상 대기업(공공기관)과 중소기업(협력사)간 또는 중견기업·중소기업(1차 협력사)과 중소기업(2·3차 협력사)간 컨소시엄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우선선정

- 중견기업·중소기업(1차 협력사)과 중소기업(2·3차 협력사)간 컨소시엄
* 산업발전법 제10조2의에 의한 중견기업

지원 내용 제품기획에서 시작품(pilot) 제작까지 원가절감 효과가 큰 분야(설계·디자인 개선, 부품구조변경, 재료변경, 시작품 제작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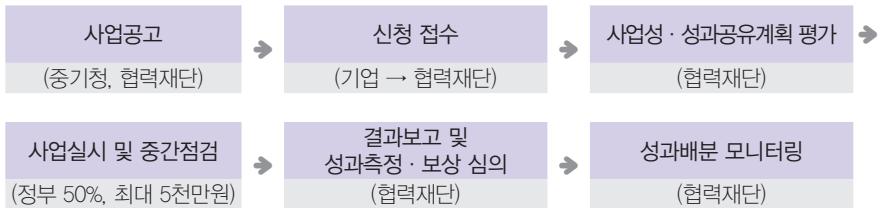
- 지원한도 : 과제 수행 최대 5천만원 이내(총 소요비용의 50% 이내)
 - 지출항목 : 재료비, 테스트장비, 시제품제작비용 등
 - 기업부담금 : 총 사업비의 10%이상을 현금 부담

신청·접수 사업계획서/신청양식 이메일·우편 송부 또는 방문 제출
심사·평가 주요내용

- 현장평가(1차)시 관련 증빙서류 및 추진의지 확인, 대면평가(2차)시 사업 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처리 절차



문의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동반협력부 : 02-368-8791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3년 지원시책」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 비즈인포(www.bizinfo.go.kr)



궁금해요! 중기맨

원가절감이란

기업의 생산 활동에 투입되는4M(Man, Machine, Material, Method)을 효율적으로 관리 (Control)하고, 지속적으로 절감(Reduction)하는 반복적인 개선활동입니다.

14

대한상공회의소 (싱글PPM품질혁신추진본부)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4-1 뿌리기업 품질혁신 지원 · 427



14-1 뿌리기업 품질혁신 지원

생산제품의 불량감소, 품질향상 등을 통한 기업의 품질경쟁력 향상 지원

무결점, 무결함의 완전제품 생산을 목표로 불량률을 관리하기 위해 품질혁신시스템 구축 지도, 품질혁신 교육 등을 지원하며, 또한 싱글PPM 품질인증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향상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아래의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① 뿌리산업인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공정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별표1〕참조)
 - ② 뿌리기술 공정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별표2〕참조)

지원 규모 600개사(전체 예산 : 20억원)

* '12년 지원현황 : 249개사 지원, 업체당 평균 150만원 지원

지원 내용

- 뿌리기업 품질혁신지도
 -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 불량요인해소, 작업환경개선, 품질경영, 품질관리기법, 품질인증획득 등 지도
 - 기업 당 연간 15일 이내
 - 정부지원 : 지도비 중 지도수당(50%) 및 일비 지원

〈지도위원 1인 1일기준 지도비〉

(단위 : 원)

구 분	지도수당	일 비	식 비	계
정부지원금	160,000	20,000	-	180,000
기업부담금	160,000	-	20,000	180,000
합 계	320,000	20,000	20,000	360,000

- 뿌리기업 품질혁신 교육
 - 품질혁신 마인드 함양 및 품질개선을 위한 전문교육 등 실시
 - 정부지원 : 모기업 순회교육 및 업종별 집합 교육(무료)
- 중소기업 싱글PPM 품질인증 심사
 - 싱글PPM 품질인증 신청 중소기업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
 - 품질인증비용은 전액 기업부담(싱글PPM 품질인증 요령-중소기업청 고시)
- 정부포상(품질혁신 전진대회 개최)
 - 품질혁신이 우수한 기업과 유공자에 대해 정부 포상 시행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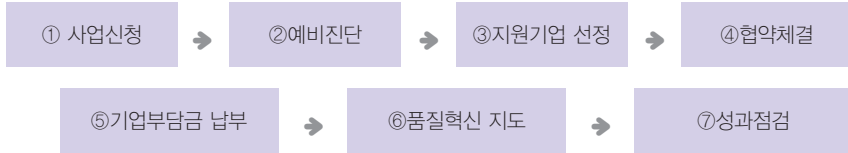
- 중기청 홈페이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싱글PPM품질혁신추진본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대한상공회의소 싱글PPM품질혁신추진본부에 제출(우편 또는 팩스)
- 뿌리기업 품질혁신지도 신청 <http://sppm.korcham.net> → 품질지도→ 신청서 다운로드 · 작성→신청서 제출
- 싱글PPM 품질인증 심사 신청 <http://sppm.korcham.net> → 품질인증→신청서 다운로드 · 작성→신청서 제출

신청 서류

뿌리기업 품질혁신지도 신청서 또는 싱글PPM 품질인증 신청서

처리 절차 매년 초 중소기업청에서 사업 공고

• 뿌리기업 품질혁신지도



• 중소기업 싱글PPM 품질인증



문의처 대한상공회의소 싱글PPM 품질혁신추진본부 02-6050-3851~6 (<http://sppm.korcham.net>)



궁금해요! 중기맨

• 뿌리기업 품질혁신지도를 받게 되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볼 수 있나요?

- ☞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최근 3년간 싱글PPM 지도를 받은 중소기업들의 출하불량률 감소율은 연평균 60%에 이릅니다. 그리고 지도의 성과가 좋은 기업들은 중소기업청에서 인증하는 “싱글PPM 품질인증”에 도전해 인증획득을 하고 있으며, 품질혁신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포상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어 설명

• 싱글(Single) PPM 품질혁신

생산 제품 100만개 중 불량품 개수를 한 자리 숫자로 줄이기 위해 기업체 임직원 전원이 참여하는 품질관리운동

*PPM은 Parts Per Million 즉 백만분율을 의미

부 록

중소기업청 및 지원기관 연락처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중소기업청 · 431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ombudsman실 · 432
- 지방중소기업청 · 432
-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435
- 중소기업진흥공단 · 436
- 중소기업중앙회 · 438
- 지역신용보증재단 · 439

중소기업청 및 지원기관 연락처

중소기업청

☎1357 www.bizinfo.go.kr

부	서	명	전	화	팩	스
			(042-481-)	(042-472-)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청	장	실	042)481-4309		042)472-3252	
차	장	실	4312		3255	
중소기업정책국						
정	책	총	4507, 8948		7929	
기	업	금	4347, 4454		3275	
인	력	개	4424, 4467		3278	
규	제	영	3984, 3985		3272	
소상공인정책국						
소	상	공	4567, 4568		6958	
중	소	기	3988, 4366		5641	
소	상	공	3952, 4495		042)489-2961	
시	장	상	4562, 8930		7935	
창업벤처국						
벤	처	정	4426, 4428		3282	
벤	처	투	4419, 4578		042)481-4418	
창	업	진	3967, 4497		042)481-3972	
지	식	서	4524, 4525		3428	
경영판로국						
판	로	정	4378, 4515		7932	
공	공	구	4581, 8995		3294	
해	외	시	4461, 4514		3293	
기술혁신국						
기	술	정	4440, 4573		3287	
녹	색	성	4496, 4508		3289	
기	술	개	4448, 4451		3289	
공	정	혁	4450, 4460		3291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	02-2100-4900	02)2100-4941
(110-300) 서울 종로구 관훈동 151-8 동덕빌딩 2층		

지방중소기업청

구 분		전 화	팩 스
서울청	청 장 실	02)509-6710	02)504-6545
	창 업 성 장 지 원 과	6730	504-6545
	공 공 판 로 지 원 과	6749	507-5769
	수 출 지 원 센 터	6661~2	509-6659
	기 업 환 경 개 선 과	6756~9	502-9847
	기 술 혁 신 지 원 과	6773~9	504-6548
	* 주소 : (477-724)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중앙동 2번지)		
부산·울산청	청 장 실	051)601-5101	051)334-4333
	창 업 성 장 지 원 과	5114, 5157	334-4333
	공 공 판 로 지 원 과	5123~6	335-4334
	수 출 지 원 센 터	5163~6	341-0364
	기 업 환 경 개 선 과	5133~5	335-4335
	제 품 성 능 기 술 과	5137~8	341-4204
	시 험 연 구 지 원 팀	5146~8	341-4204
	울 산 사 무 소	052)283-0350~1	052)283-0354
* 주소 : (618-819)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송정동 1633-1)			
대구·경북청	청 장 실	053)659-2202	053)626-2604
	창 업 성 장 지 원 과	2205, 2208	624-3656
	공 공 판 로 지 원 과	2233~8	627-0194
	수 출 지 원 센 터	2241~5	626-8771
	기 업 환 경 개 선 과	2211, 2264	654-1714
	제 품 성 능 기 술 과	2293, 2288	625-0117
	산 학 협 력 팀	2504~7	592-260
	* 주소 : (704-833) 대구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32(월암동 1111번지)		

	구 분	전 화	팩 스
광주·전남청	청 장 실	062)360-9116	062)366-1955
	창 업 성 장 지 원 과	9104~7	366-1955
	공 공 판 로 지 원 과	9145~8	362-6229
	수 출 지 원 센 터	9191~4	366-9671
	기 업 환 경 개 선 과	9133~6	366-9662
	제 품 성 능 기 술 과	9157~9	366-9669
	시 험 연 구 지 원 팀	9161~2	366-9669
	제 주 시 험 연 구 센 터	064)723-2101~3	064)723-2107
* 주소 : (502-723)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 2길 14번지			
경기청	청 장 실	031)201-6900	031)201-6919
	창 업 성 장 지 원 과	6911~2	201-6919
	창 업 서 비 스 팀	6852~4	201-6919
	공 공 판 로 지 원 과	6931~5	201-6939
	수 출 지 원 센 터	6944~6	201-6949
	기 업 환 경 개 선 과	6955~8	201-6959
	제 품 성 능 기 술 과	6974~9	201-6969
	북 부 사 무 소	820-9023~4	201-9029
* 주소 : (443-76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반달공원길 66			
인천청	청 장 실	032)450-1103	032)818-7469
	창 업 성 장 지 원 과	1114~7	818-7469
	기 업 환 경 개 선 과	1140~2	818-0206
	수 출 지 원 센 터	1132~7	818-8364
	제 품 성 능 기 술 과	1158~9	818-8339
	시 험 연 구 지 원 팀	1163~4	818-8363
* 주소 : (405-849)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34(논현동 445-1 30B/1L)			
대전·충남청	청 장 실	042)865-6103	042)865-6119
	창 업 성 장 지 원 과	6125~6	865-6119
	수 출 지 원 센 터	6150~5	865-6159
	기 업 환 경 개 선 과	6130, 6141	865-6139
	제 품 성 능 기 술 과	6142~3	865-6149
충 남 사 무 소	041)564-2284~6	564-3855	
* 주소 : (305-343) 대전시 유성구 신성로 70(유성구 장동 23-3)			

	구 분	전 화	팩 스
강원청	청 장 실	033)260-1700	033)260-1619
	창 업 성 장 지 원 과	1611~8	260-1619
	수 출 지 원 센 터	1671~3	260-1679
	기 업 환 경 개 선 팀	1623~4	260-1629
	제 품 성 능 기 술 과	1636~7	260-1639
	연 구 개 발 지 원 팀	1641~5	260-1659
	* 주소 : (200-944)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충북청	청 장 실	043)230-5303	043)235-2492
	창 업 성 장 지 원 과	5357~8	235-2492
	수 출 지 원 센 터	5371~4	235-2494
	기 업 환 경 개 선 팀	5321, 5324	235-2492
	제 품 성 능 기 술 과	5331~4	235-2493
	건 강 관 리 팀	5325, 5341	235-2493
	* 주소 : (363-883)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803-1		
전북청	청 장 실	063)210-6403	063)210-6429
	창 업 성 장 지 원 과	6415~7	210-6429
	수 출 지 원 센 터	6485~6	210-6489
	기 업 환 경 개 선 팀	6431~5	210-6460
	제 품 성 능 기 술 과	6441~5	210-6449
	건 강 관 리 팀	6411, 6414	210-6429
	* 주소 : (560-86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청	청 장 실	055)268-2501	055)262-5146
	창 업 성 장 지 원 과	2521~5	262-5146
	수 출 지 원 센 터	2543~5	262-5012
	기 업 환 경 개 선 팀	2530, 2581	262-5560
	제 품 성 능 기 술 과	2553~5	262-5074
	시 험 연 구 지 원 팀	2572~3	268-2552
	* 주소 : (641-06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50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지 방 청	전 화	팩 스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2)509-6661~2	02)509-6659	(427-724)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1)601-5165~6	051)341-0364	(68-89)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3)659-2241~2	053)626-8771	(704-833) 대구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32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62)360-9191~4	062)366-9671	(502-723) 광주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1)201-6944~6	031)201-6949	(443-76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반달공원길 66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42)865-6150~1	042)865-6159	(305-343) 대전시 유성구 신성로 70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2)450-1132~3	032)818-8364	(405-849)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82
강원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3)260-1671~3	033)260-1609	(200-944) 강원도 춘천시 인마산로 28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43)230-5371~2	043)235-2494	(363-883)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로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63)210-6485~6	063)210-6489	(530-86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5)268-2542~3	055)262-5012	(641-06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광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시험연구지원센터)	064)723-2101~3	064)723-2107	(680-130) 제주도 제주시 월평9길 2-21
광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시험연구지원센터)	064)723-2101~3	064)723-2107	(680-130) 제주도 제주시 월평동 299-1

중소기업진흥공단

구 분	주 소	전화 및 팩스	
본부	150-7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Tel. 02)769-6700 Fax. 02)784-9230	
수도권본부	158-721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중소기업유통센터 사무동 13층)	Tel. 02)6678-4021 Fax. 02)6678-4008	
수도권 지역본(지)부	서울지역본부	158-721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중소기업유통센터 사무동 14층)	Tel. 02)6678-4127 Fax. 02)6678-4198
	서울동남부지부	137-88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한국벤처투자 1층)	Tel. 02)2156-2222 Fax. 02)2156-2209
	서울북부지부	150-7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9층	Tel. 02)769-6816 Fax. 02)769-6838
	인천지역본부	406-840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갯벌타워 14층)	Tel. 032)450-0521 Fax. 032)442-3236
	인천서부지부	404-841 인천광역시 서구 검바위로 46(코레일공항철도빌딩 1층)	Tel. 032)450-0560 Fax. 032)450-0580
	경기지역본부	443-76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511(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1층)	Tel. 031)259-7911 Fax. 031)259-7901
	경기동부지부	463-4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유스페이스 A동 503호)	Tel. 031)628-6888 Fax. 031)628-6899
	경기서부지부	429-450 경기도 시흥시 만해로 49(중소기업기술센터 내)	Tel. 031)496-1083~4 Fax. 031)496-1080
	경기북부지부	410-72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호)	Tel. 031)920-6700 Fax. 031)920-6789
	강원지역본부	200-042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2가 96번지(우리은행빌딩 5층)	Tel. 033)259-7600 Fax. 033)256-9614
강원영동지부	210-703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강릉시청사 15층)	Tel. 033)655-8870 Fax. 033)646-9960	
중부권본부	305-34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Tel. 042)866-0181 Fax. 042)866-0189	
중부권 지역본(지)부	대전지역본부	305-34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Tel. 042)866-0114 Fax. 042)866-0149
	충남지역본부	331-98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층)	Tel. 041)621-3687 Fax. 041)621-3689
	충북지역본부	361-26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Tel. 043)230-6811 Fax. 043)230-6888
	충북북부지부	380-100 충청북도 충주시 번영대로 200 2층	Tel. 043)841-3600 Fax. 043)841-3619
	전북지역본부	561-73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북경제통상진흥원 6층)	Tel. 063)210-9900 Fax. 063)210-9988
	전북서부지부	573-870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331(대한생명빌딩 4층)	Tel. 063)460-9800 Fax. 063)460-9888

구 분		주 소	전화 및 팩스
중부권 지역본 (지)부	대구지역본부	702-010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90(대구전시간벤션센터 4층)	Tel. 053)601-5300 Fax. 053)601-5301
	경북지역본부	730-350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경북경제진흥원 2층)	Tel. 054)476-9322 Fax. 054)476-9319
	경북동부지부	790-83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자곡로 334(포항테크노파크 본부동 11호)	Tel. 054)223-2047 Fax. 054)223-2049
	경북남부지부	712-210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01호)	Tel. 053)212-3300 Fax. 053)212-3305
남부권본부		645-48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영로473번길 22 (부산경남연수원 내)	Tel. 055)548-8069 Fax. 055)548-8079
남부권 지역본 (지)부	광주지역본부	506-301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중소기업지원센터 3층)	Tel. 062)600-3000 Fax. 062)956-7518
	전남지역본부	530-831 전라남도 무안군 상항읍 오룡3길 2(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Tel. 061)280-8000 Fax. 061)280-8080
	전남동부지부	540-969 전라남도 순천시 장산배기길 33	Tel. 061)724-1056 Fax. 061)724-1057
	부산지역본부	617-050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57(보생빌딩 A동 1층)	Tel. 051)630-7400 Fax. 051)646-0516
	부산동부지부	612-05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99(벽산 e-센텀클래스원 201~202호)	Tel. 051)712-9670 Fax. 051)712-9669
	울산지역본부	680-815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74(W-Center 14층)	Tel. 052)703-1100 Fax. 052)703-1190
	경남지역본부	641-996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창원컨벤션센터 3층)	Tel. 055)212-1350 Fax. 055)212-1360
	경남동부지부	621-905 경상남도 김해시 구지로 46 (KT&G빌딩 1층)	Tel. 055)310-6600 Fax. 055)310-6677
	경남서부지부	660-844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99(바이오21센터 벤처지원동 201호)	Tel. 055)756-3060 Fax. 055)756-3068
제주지역본부	690-0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제주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Tel. 064)751-2054 Fax. 064)751-2058	
연수원	중소기업연수원 (안산)	425-78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연수원로 87	Tel. 031)490-1472 Fax. 031)490-1116
	청년창업 사관학교	425-78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연수원로 87	Tel. 031)490-1373 Fax. 031)490-1379
	호남연수원	500-150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456번길 40	Tel. 062)250-3000~2 Fax. 062)250-3077/8
	대구·경북 연수원	712-100 경상북도 경산시 경청로 222길 86	Tel. 053)819-5001~2 Fax. 053)819-5050
	부산·경남 연수원	645-48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영로473번길 22	Tel. 055)548-8045~6 Fax. 055)548-8081

중소기업중앙회

구 분	주 소	전화 및 팩스
본부	150-74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Tel. 02)2124-3114 Fax. 02)761-6109
서울지역본부	138-220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81-5 (서일빌딩 8층)	Tel. 02)761-7991 Fax. 02)761-6425
부산·울산지역본부	611-839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702-1 (프라임빌딩 6층)	Tel. 051)637-2061 Fax. 051)637-2066
울산지부	683-804 울산시 북구 연암동 758-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03호)	Tel. 052)283-4323 Fax. 052)267-4320
대구·경북지역본부	704-130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268-5 (드림피아 3층)	Tel. 053)524-2110 Fax. 053)524-2117
인천지역본부	405-841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464 (한국토지공사 2층)	Tel. 032)437-8705 Fax. 032)437-8708
부천시지부	421-809 경기도 부천시 삼정동 364 (부천테크노파크 관리동 4층)	Tel. 032)234-2810 Fax. 032)234-2813
경기지역본부	443-27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5(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0층)	Tel. 031)259-7800 Fax. 031)259-7810
경기북부지부	480-070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801-1 (경기북부상공회의소 2층 203호)	Tel. 031)851-0164 Fax. 031)851-2862
안산지부	425-85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3-2(한국산업단지공단 서부지역본부2층)	Tel. 031)492-2574 Fax. 031)492-2594
광주·전남지역본부	506-301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621-15(광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Tel. 062)955-9966 Fax. 062)951-9966
강원지역본부	200-944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770-3 (강원도향토공예관 3층)	Tel. 033)241-0010 Fax. 033)241-0015
원주지부	220-952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450-29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08)	Tel. 033)733-0513 Fax. 033)733-0516
충북지역본부	361-802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08-1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Tel. 043)236-7080 Fax. 043)236-7084
대전·충남지역본부	302-86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1267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 2층)	Tel. 042)864-0901 Fax. 042)864-0902
천안지부	331-170 충남 천안시 성정동 1437 (충남타워 901호)	Tel. 041)622-3823 Fax. 041)622-3826
전북지역본부	561-841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1가 337-2(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Tel. 063)214-6606 Fax. 063)214-5166
경남지역본부	641-200 경상남도 창원시 대원동 123 (창원컨벤션센터 401호)	Tel. 055)212-1177 Fax. 055)212-1170
제주지역본부	690-824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390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Tel. 064)758-8579 Fax. 064)757-5673
중소기업 인력개발원	449-870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사암리 900	Tel. 031)320-0153 Fax. 031)320-0713
LA사무소	4801 Wilshire Blvd, Suite 312, Los Angeles, CA 90010, USA	Tel. 1-323-634-0455 Fax. 1-323-634-0415

지역신용보증재단

구 분	주 소	전화 및 팩스	홈페이지(www.)
중앙회	302-280 대전 서구 월평동 282-1 (나라키움 대전센터 14/15층)	Tel. 1588-7936 Fax. 042480-4007~9	koreg.or.kr
강원재단	200-041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가 80(제일은행 3층)	Tel. 033)251-1353~5 Fax. 033)251-1356	gwsinbo.co.kr
경기재단	443-76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5(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3층)	Tel. 031)259-7700 Fax. 031)259-7777	kgsb.co.kr
경남재단	641-200 경남 창원시 대원동 123 (창원컨벤션센터내 4층)	Tel. 055)212-1250 Fax. 055)212-1275	gnshinbo.co.kr
경북재단	730-350 경북 구미시 임수동 92-30 (경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7층)	Tel. 054)474-7100 Fax. 054)474-7104	gbsinbo.co.kr
광주재단	506-301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621-15(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 내)	Tel. 062)950-0011 Fax. 062)950-0063	kjsinbo.co.kr
대구재단	704-954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146-29(대구은행 죽전지점 4층)	Tel. 053)560-6300 Fax. 053)554-9905	ttg.co.kr
대전재단	305-34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23-14(중소기업종합지원 센터 내)	Tel. 042)380-3800 Fax. 042)380-3877	sinbo.or.kr
부산재단	611-08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702-1(프라임시티빌딩 5층)	Tel. 051)860-6600 Fax. 051)816-4551	busansinbo.or.kr
서울재단	121-80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68	Tel. 1577-6199 Fax. 02)2174-5279	seoulshinbo.co.kr
울산재단	683-804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758-2(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 3층)	Tel. 052)289-2300 Fax. 052)289-8964	ulsanshinbo.co.kr
인천재단	405-817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36(인천종합비즈니스 센터9층)	Tel. 032)260-1500~3 Fax. 032)260-1570	icsinbo.or.kr
전남재단	540-951 전남 순천시 연향동 117-7(전남도청동부청사내 1층)	Tel. 061)729-0600 Fax. 061)729-0608	jnsinbo.or.kr
전북재단	560-04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 1가 140-11(전주상공회 의소 1층)	Tel. 063)230-3333 Fax. 063)230-3388	jbcredit.co.kr
제주재단	690-802 제주시 노형동 722 (KT&G 제주본부 4층)	Tel. 064)747-0277 Fax. 064)758-5748	jejusinbo.co.kr
충남재단	336-813 충남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244-19(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 1층)	Tel. 041)541-9831~4 Fax. 041)541-9838	cnsinbo.co.kr
충북재단	361-802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08-1(충북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5층)	Tel. 043)236-2691 Fax. 043)236-2695	cbsinbo.or.kr

구 분	대표전화	홈페이지(www.)
신용보증기금	1588-6565	www.kodit.co.kr
기술보증기금	1544-1120	www.kibo.or.kr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031-628-9646	www.innobiz.or.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2-3787-0400	www.tipa.or.kr
(사)한국산학연합회	042-720-3300	www.sanhak.net
중소기업유통센터	02-6678-9000	www.sbdc.co.kr
벤처기업협회	02-890-0600	www.venture.or.kr
한국여성벤처협회	02-2156-2160	www.kovwa.or.kr
한국벤처투자(주)	02-2156-2000	www.k-vic.co.kr
(사)창업진흥원	042-480-4300~5	www.iked.or.kr
(사)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042-256-1070	www.kmcca.net
한국여성경제인협회	02-369-0900	www.womanbiz.or.kr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326-6200	www.debc.or.kr
소상공인진흥원	042-363-7700	www.sbdc.or.kr
소상공인지원센터	1588-5302	www.sbdc.or.kr
전국상인연합회	042-721-0120~9	www.ukma.or.kr
시장경영진흥원	02-2174-4339	www.sijang.or.kr
한국무역협회	1566-5114	www.kita.net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부	02-3779-6295	www.koreaexim.go.kr
KOTRA 중소기업원본부	02-3460-7491	www.kota.or.kr
한국산업은행	1588-1500	www.kdb.co.kr
기업은행	1566-2566	www.ibk.co.kr
한국무역보험공사	1588-3884	www.ksure.or.kr
대·중소기업협력재단	02-368-8700	www.win-win.or.kr
대한상공회의소 싱글PPM품질혁신추진본부	02-6050-3853	www.sppm.korcham.net

2013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발행일 : 2013년 1월

발행처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 정책총괄과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전 화 : (042)481-3965

팩 스 : (042)472-7929

중소기업청



www.smba.go.kr